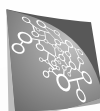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2018 - 2022)

2019. 01.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2018-2022)」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장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3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 / 5

1. 시간적 범위 / 5
2. 공간적 범위 / 5
3. 내용적 범위 / 5

제3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 6

제2장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9
----------------------------------	---

제1절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 9

1. 묘지현황 / 9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14

제2절 경기도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 24

1. 매 · 화장 추이 / 24
2. 매장 현황 / 25
3. 화장 현황 / 26

제3절 경기도 장사시설 문제점과 향후 과제 / 32

제3장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37

제1절 조사 설계 / 37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37

제2절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 3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
2. 시민의식조사 결과 / 40
3. 장사문화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70

제4장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75

제1절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 / 75

1. 정책의 필요성 / 75
2.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75
3.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77

제2절 2013-2017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평가 / 81

1. 경기도 장사정책의 추진배경과 비전 / 81
2. 경기도 장사시설의 확충 전략 / 83
3.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 / 84

제3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요 추계 / 86

1. 장사시설 수요 추계 개요 / 86
2.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위한 기초 통계 추정 / 87
3. 화장률 추정 / 90

제4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 92

1. 화장시설 수급분석 / 92
2. 화장 후 유골처리방법에 대한 선호 / 104
3. 자연장지 수급 분석 / 105
4. 봉안시설 수급 분석 / 116
5. 묘지 수급 분석 / 124
6. 장례식장 수급 분석 / 128

제5장 장사시설 설치 사례 133

제1절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 / 133

1. 묘지 재개발 / 133
2. 장사시설 공동 설치 · 운영 / 144
3. 종합장사시설 설치 / 150
4.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에 대한 시사점 / 156

제2절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 / 159

1. 스페인 / 159
2. 오스트리아 / 163
3. 프랑스 / 166
4. 스위스 / 170
5. 네덜란드 / 172
6. 오스트레일리아 / 174
7. 일본 / 178
8. 스웨덴 / 181
9.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에 대한 시사점 / 183

제6장 묘지 재개발 방안 187

제1절 묘지실태 조사 방법 및 무연분묘의 처리 / 187

1. 묘지실태 조사 방법 / 187
2. 무연분묘의 처리 / 194
3.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법 19조) / 195

제2절 묘지 재개발 방안 / 199

1. 집단묘지의 재개발 및 종합장사시설로 전환 유도 / 199
2. 무연분묘의 정비 / 199
3. 묘지의 재개발 계획을 위한 법제도 정비 / 200
4. 묘지 유형별 분류 및 세부 재개발방안 / 200
5. 묘지의 공원화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 / 201
6. 경기도내 시 · 군 묘지 재개발 계획 / 203

제7장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발전 방향 219

제1절 경기도 장사정책 방향 / 219

1. 경기도 장사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 219
2. 경기도 장사정책 과제 / 222
3. 경기도 장사정책 세부 추진 과제 / 225

제2절 경기도 장사시설 재정 투입 분석 / 230

1. 화장시설 / 230
2. 자연장지 / 231
3. 봉안시설 / 232
4. 묘지 재개발 / 233

제8장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해소방안 237

제1절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의 원인 및 유형 / 237

1.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의 원인 / 238
2. 갈등의 유형 / 240

제2절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해소방안 / 241

1.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 241
2.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 최소화 방안 / 246
3.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 관리 전략 / 251

참 고 문 헌 255

참 부 자 료 257

- 첨부1. 경기도민 의식조사 설문지 / 259
- 첨부2. 경기도민 의식조사 결과 / 270
- 첨부3. 경기도 공설묘지 목록 / 312
- 첨부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소개 / 316

표 목 차

[표 2-1] 전국 공설묘지 현황	9
[표 2-2] 경기도 묘지현황(공설, 공동, 법인)	10
[표 2-3] 경기도 공설묘지 현황	11
[표 2-4] 경기도 공동묘지 현황	12
[표 2-5] 경기도 법인묘지 현황	13
[표 2-6] 경기도 권역별 묘지 현황	14
[표 2-7]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15
[표 2-8] 경기도 화장시설 설치현황	16
[표 2-9] 경기도 화장시설 사용료	17
[표 2-10] 경기도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 현황	17
[표 2-11] 경기도 공설 봉안시설 현황	18
[표 2-12] 경기도 권역별 공설 봉안시설 현황	18
[표 2-13] 경기도 사설 봉안시설 현황	19
[표 2-14] 경기도 권역별 봉안시설 현황	20
[표 2-15] 경기도 공설 자연장지 현황	21
[표 2-16] 경기도 사설 자연장지 현황	22
[표 2-17] 경기도 권역별 자연장지 현황	22
[표 2-18] 경기도 장례식장 현황	23
[표 2-19] 2017년 경기도 매장 실적	25
[표 2-20] 2017년 경기도 공설·공동묘지, 법인묘지의 매장 현황	26
[표 2-21] 경기도 화장률 추이	27
[표 2-22] 2017년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27
[표 2-23]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추이	28
[표 2-24] 수원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29
[표 2-25] 성남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30
[표 2-26] 용인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31
[표 3-1]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개요	37
[표 3-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표 3-3] 희망하는 장사방법	41
[표 3-4] 희망하는 묘지 유형	44
[표 3-5]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49

[표 3-6] 선호하는 1순위 자연장 형태	53
[표 3-7]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	56
[표 3-8]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	58
[표 3-9]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1순위 주요요인	62
[표 3-10]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방법	65
[표 4-1] 경기도 권역 구분	87
[표 4-2] 경기도 인구 전망	88
[표 4-3] 경기도 조사망률	88
[표 4-4] 경기도 사망자 추계	89
[표 4-5] 경기도 및 권역별 화장률 추계	91
[표 4-6] 경기도 사망자 및 화장자	92
[표 4-7] 경기도 권역별 화장자 추계	93
[표 4-8] 경기도 전체 적정 화장로수	95
[표 4-9] 경기도 권역별 적정 화장로수	96
[표 4-10]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수	97
[표 4-11] 경기도 전체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97
[표 4-12]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98
[표 4-13]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권역별 화장로수	99
[표 4-14]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전체 적정 화장로수	100
[표 4-15]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권역별 적정 화장로수	101
[표 4-16]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전체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102
[표 4-17]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103
[표 4-18]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에 대한 선호	104
[표 4-19] 경기도 전체 화장 후 안치방식별 수요 규모	104
[표 4-20] 권역별 자연장 선호도	105
[표 4-21] 권역별 자연장지 수요 추계	105
[표 4-22] 권역별 자연장 유형별 선호도	106
[표 4-23] 경기도 자연장 유형별 수요	106
[표 4-24] 권역별 잔디형 자연장 수요	107
[표 4-25] 권역별 화초형 자연장 수요	107
[표 4-26] 권역별 정원형 자연장 수요	108
[표 4-27] 권역별 수목형 자연장 수요	108
[표 4-28] 권역별 공설 자연장지 조성현황	109
[표 4-29] 경기도 공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109
[표 4-30] 권역별 공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110

[표 4-31]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조성현황	112
[표 4-32] 경기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112
[표 4-33]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114
[표 4-34] 권역별 봉안시설 선호도	116
[표 4-35] 권역별 봉안시설 수요 추계	116
[표 4-36] 권역별 공설 봉안시설 조성현황	117
[표 4-37] 경기도 공설 봉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117
[표 4-38] 권역별 공설 봉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118
[표 4-39] 권역별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 조성현황	120
[표 4-40] 경기도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120
[표 4-41] 권역별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122
[표 4-42] 권역별 묘지 수요	124
[표 4-43] 경기도 매장자 및 묘지 설채 주체별 수요	124
[표 4-44] 권역별 매장 가능 묘지 수	125
[표 4-45] 경기도 공설 · 공동묘지 수급분석 결과	125
[표 4-46] 권역별 공설 · 공동묘지 수급분석 결과	126
[표 4-47] 권역별 장례식장 조성현황	128
[표 4-48] 경기도 공설 및 사설 장례식장 수급분석 결과	128
[표 4-49]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장례식장 수급분석 결과	129
[표 5-1] 광주시 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경위	133
[표 5-2] 광주시 중대공원 시설현황	134
[표 5-3] 광주시 중대공원 이용요금	134
[표 5-4] 광주시 중대공원 운영관리 현황	134
[표 5-5] 여주 추모공원 연혁	136
[표 5-6] 여주 추모공원 시설현황	137
[표 5-7] 여주 추모공원 이용요금	137
[표 5-8] 여주 추모공원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	137
[표 5-9]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연혁	139
[표 5-10]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시설현황	140
[표 5-11]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이용요금	140
[표 5-12]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	140
[표 5-13]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시설현황	141
[표 5-14]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이용요금	141
[표 5-15] 인천가족공원 연혁	142
[표 5-16] 인천가족공원 시설 현황	142

[표 5-17] 인천가족공원 이용요금	143
[표 5-18]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연혁	144
[표 5-19]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현황	145
[표 5-20]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요금	145
[표 5-21] 공주시 나래원 연혁	148
[표 5-22] 공주시 나래원 시설현황	149
[표 5-23] 공주시 나래원 이용요금	149
[표 5-24] 울산하늘공원 연혁	150
[표 5-25] 울산하늘공원 시설현황	151
[표 5-26] 울산하늘공원 이용요금	151
[표 5-27] 남해 추모누리 시설현황	153
[표 5-28] 남해 추모누리 이용요금	153
[표 5-29] 스페인 몬쥬익 묘지 시설현황	159
[표 5-30]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시설현황	163
[표 5-31]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코뮈날 공설묘지 시설현황	165
[표 5-32] 스위스 루체른 시립묘지 시설현황	170
[표 5-33] 네덜란드 뉴오스터 묘지 시설현황	172
[표 5-34]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시설현황	174
[표 5-35] 일본 우리와라에이렌 묘지 시설현황	178
[표 5-36] 일본 메모리얼 그린 시설현황	179
[표 5-37] 스웨덴 스콕스시르코고텐 묘지 시설현황	181
[표 6-1] 묘지 유형별 분류 및 세부 재개발방안	201
[표 6-2] 경기도 묘지 재개발 사례	202
[표 7-1] 연도별 · 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설치 비용	230
[표 7-2] 연도별 · 자치단체별 자연장지 설치 비용	231
[표 7-3] 연도별 · 자치단체별 봉안시설 설치 비용	232
[표 7-4] 연도별 · 자치단체별 묘지 재개발 비용	23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2-1] 경기도 화장시설	16
[그림 2-2] 자연장 유형	20
[그림 2-3] 전국 분묘설치 기수	24
[그림 2-4] 수도권 화장률 추이	25
[그림 2-5] 전국 화장률 추이	26
[그림 2-6]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추이	28
[그림 2-7] 수원 화장실적 추이	29
[그림 2-8] 성남 화장실적 추이	30
[그림 2-9] 용인 화장실적 추이	31
[그림 3-1] 희망하는 장례장소	40
[그림 3-2] 희망하는 장사방법	42
[그림 3-3] 권역별 희망하는 장사방법	42
[그림 3-4]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	43
[그림 3-5] 희망하는 묘지 유형	45
[그림 3-6] 권역별 희망하는 묘지 유형	45
[그림 3-7] 권역별 희망하는 사설묘지 유형	46
[그림 3-8]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	47
[그림 3-9]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48
[그림 3-10] 권역별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48
[그림 3-11] 선호하는 1순위 봉안시설 형태	50
[그림 3-12] 권역별 선호하는 1순위 봉안시설 형태	51
[그림 3-13]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52
[그림 3-14] 권역별 선호하는 1순위 자연장 형태	54
[그림 3-15] 권역별 선호하는 2순위 자연장 형태	54
[그림 3-16] 권역별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	55
[그림 3-17]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	57
[그림 3-18] 기존 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	59
[그림 3-19]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	60
[그림 3-20]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60
[그림 3-21]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1순위 주요요인	61

[그림 3-22]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	63
[그림 3-23] 화장시설 설치 시 운영주체	64
[그림 3-24]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방법	64
[그림 3-25] 화장시설 공동설치 시 예산분담 방식	66
[그림 3-26] 경기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67
[그림 3-27] 다른 시·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68
[그림 3-28] 한시적 매장제도에 의한 분묘 이관 시 희망하는 장사시설	69
[그림 4-1]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목표	77
[그림 4-2] 경기도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82
[그림 5-1] 여주 추모공원 봉안담	138
[그림 5-2] 여주 추모공원 자연장지	138
[그림 5-3]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장사시설	146
[그림 5-4]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152
[그림 5-5] 남해 추모누리 매장묘역	154
[그림 5-6] 남해 추모누리 평장시설	155
[그림 5-7] 남해 추모누리 봉안시설	155
[그림 5-8] 스페인 몬주익 묘지 장사시설	161
[그림 5-9] 스페인 몬주익 묘지의 투어 산책 루트	162
[그림 5-10]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전경	164
[그림 5-11] 프랑스 종쉬롤 묘지 전경	167
[그림 5-12]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자연장지	168
[그림 5-13] 프랑스 니스 장사시설	169
[그림 5-14] 스위스 루체른 시립묘지 장사시설	171
[그림 5-15] 네덜란드 뉴오스터 묘지 전경	173
[그림 5-16]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화장 추모시설	175
[그림 5-17]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매장 추모시설	176
[그림 5-18]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개인 및 문화적 추모구역	177
[그림 5-19] 일본 메모리얼 그린 묘지 형태	180
[그림 5-20] 스웨덴 스크스시르코고덴 묘지 전경	182
[그림 6-1] 묘지 실태조사 절차	187
[그림 6-2] 묘지 일련번호 표지판	190
[그림 6-3] 묘지 안내판	191
[그림 7-1] 경기도 장사정책 비전 및 목표(2018~2022)	220
[그림 7-2] 봉안시설 사례	227
[그림 8-1] 경기도 비선회시설 기피 분쟁 현황	237

[그림 8-2]	기본적 인식의 공유 모형	242
[그림 8-3]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모형	245
[그림 8-4]	서울 추모공원 배출가스 측정현황	247
[그림 8-5]	여주군 장사시설 현장견학	248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5개년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재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장례 문화 및 장사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장사정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됨.
 -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은 14.3%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의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 가구가 162만 3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102만 1천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2025년에는 1인 가구가 146만 9천 가구로 부부와 자녀 가구 146만 5천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 특히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가 2015년 25만 7천 가구에서 2025년 51만 2천 가구로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묘지 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을 이유로 화장 및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17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88.3%로 전국의 평균 화장률 84.6%보다 높은 것에 반해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며, 31개 시·군의 공설묘지가 대부분 만장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장사정책은 분묘개장 촉진, 집단묘지 재개발 및 자연장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례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따라서 경기도는 정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반영한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연구의 목적

- 장사시설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회필수시설로 공공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경기도는 장사시설 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각 시·군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적인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조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경기도의 기존 장사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용의사를 조사하여 필요한 장사시설을 추계함과 동시에,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향후 5년(2018~2022) 간 일관적인 경기도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시·군의 장사정책 추진 시 기본지침의 근거자료가 되고 시·군의 장사시설 설치 시 예산수요 및 과부족 시설의 판단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 자료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자료 기준, 최근 자료 활용
- ☐ 계획목표연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 수급계획연도 : 2018년부터 2035년까지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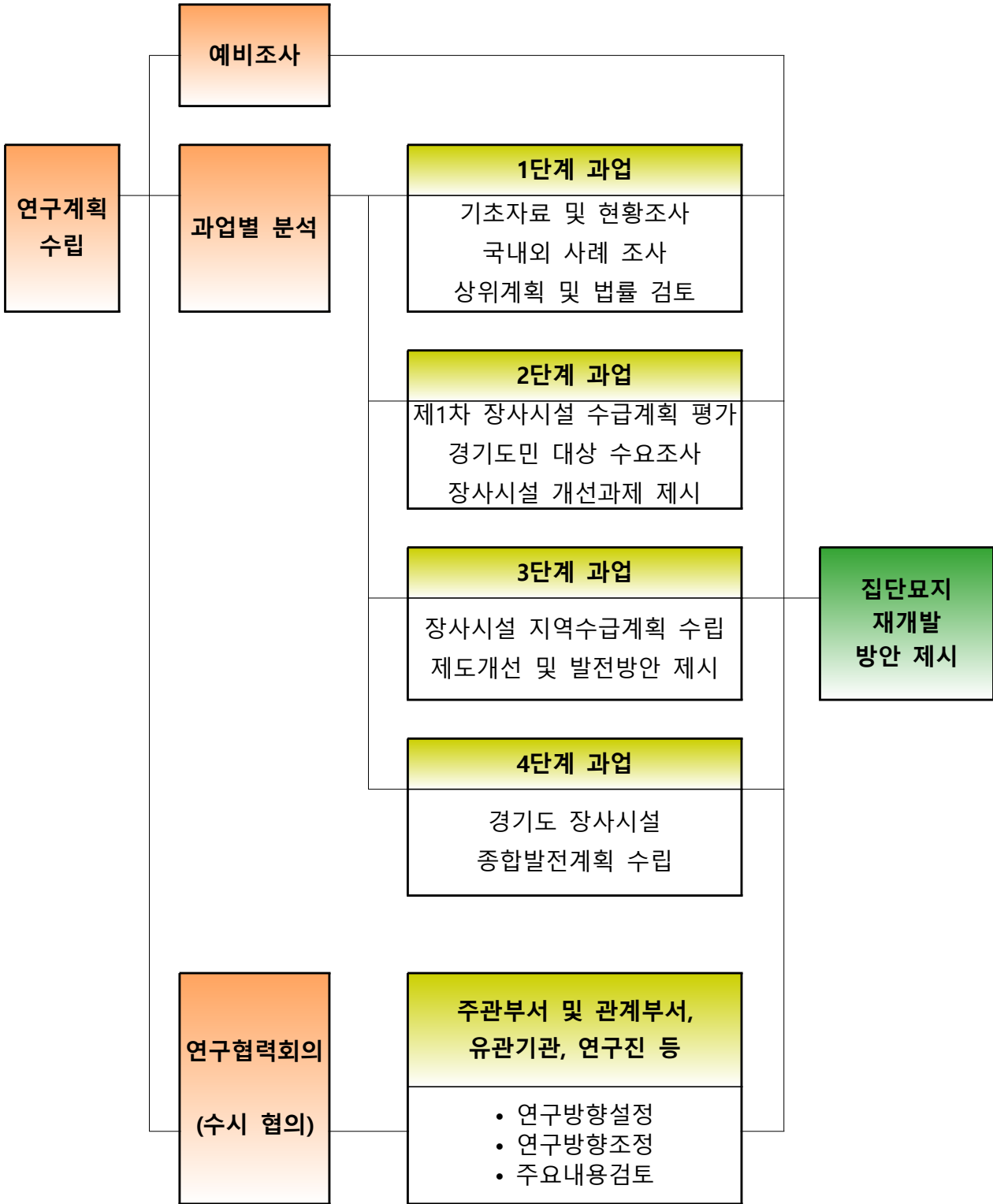
- ☐ 경기도

3. 내용적 범위

- ☐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 조사
- ☐ 상위계획 및 법률 분석
- ☐ 국내 및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 분석
- ☐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 설문조사
- ☐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 ☐ 경기도 장사시설 발전방안 제시

제 3 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제1절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제2절 경기도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제3절 경기도 장사시설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 2 장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제 1 절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1. 묘지현황

가. 전국 공설·법인 묘지 현황

- 전국 공설묘지는 2017년 기준 총 34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면적은 총 28,454,637㎡이며, 분묘설치 기수는 482,588기임.
- 경기도 공설묘지는 119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묘지면적은 2,886,140㎡로 서울, 인천 다음으로 넓음.
 - 경기도 분묘설치 예정기수는 85,418기로 인천, 전남, 서울 다음으로 크며, 분묘설치 기수는 77,027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표 2-1> 전국 공설묘지 현황

(단위 : 개소, m², 기)

구분	개소수	묘지면적	분묘설치 예정기수	분묘설치 기수	비고
계	340	28,454,637	734,430	482,588	
서울	5	7,143,300	89,391	58,747	
부산	1	743,219	29,021	25,237	
대구	4	1,926,481	12,501	12,109	
인천 ¹⁾	82	3,049,953	144,205	55,866	
광주	2	1,625,618	56,957	55,542	
대전	1	500,616	10,482	6,615	
울산	0	0	0	0	
세종	1	37,372	2,490	2,251	
경기	119	2,886,140	85,418	77,027	
강원	17	2,025,271	29,306	12,770	
충북	6	2,244,045	28,965	25,457	
충남	9	837,717	36,427	18,174	
전북	16	565,070	36,400	28,782	
전남	38	2,866,762	90,290	67,748	
경북	8	345,190	8,071	7,524	
경남	16	659,691	26,557	15,275	
제주	15	998,192	47,949	13,464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1) 인천은 공동묘지가 공설묘지에 포함됨

나. 경기도 공설·공동묘지·법인 묘지 현황

□ 경기도 묘지현황을 살펴보면, 공설·공동묘지와 법인묘지를 합쳐 총 56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가장 묘지가 많은 곳은 총 59개소가 있는 화성과 여주이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균 36,348기(18%)임.

<표 2-2> 경기도 묘지현황(공설, 공동, 법인)

(단위 : 개소, 천㎡, 기)

시·군명	개소수	총 면적 (천㎡)	매장기수			비고
			매장능력	안치	향후매장	
계	567	25,005	694,023	486,555	201,437	
수원시	1	29	2,275	2,275	0	
고양시	14	547	13,286	10,371	1,131	
용인시	26	3,083	86,164	59,138	27,026	
성남시	5	543	11,279	10,176	1,046	
부천시	0	0	0	0	0	
안산시	17	449	15,415	14,615	800	
화성시	59	738	14,104	14,104	0	
남양주시	30	1,848	45,620	33,789	11,831	
안양시	2	409	10,000	9,833	167	
평택시	33	586	15,888	15,496	0	
의정부시	1	22	1,229	1,229	0	
파주시	43	2,200	79,291	56,906	20,242	
시흥시	9	194	6,554	6,554	0	
김포시	18	611	23,646	21,635	2,011	
광명시	12	101	4,189	4,189	0	
광주시	28	2,530	58,370	46,127	12,243	
군포시	2	14	764	465	0	
이천시	37	788	49,445	14,354	35,091	
오산시	1	19	635	635	0	
하남시	3	112	4,995	4,995	0	
양주시	32	1,044	29,258	22,447	6,811	
구리시	1	69	4,248	4,213	35	
안성시	5	952	36,282	24,160	12,122	
포천시	39	2,806	58,200	39,794	18,406	
의왕시	4	197	3,943	3,627	316	
여주시	59	1,281	27,055	16,484	10,571	
양평균	40	2,731	72,070	35,722	36,348	
동두천시	3	238	4,494	3,909	585	
과천시	0	0	0	0	0	
가평군	33	462	10,369	6,139	2,874	
연천군	10	402	4,955	3,174	1,781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7년 기준 경기도 공설묘지²⁾는 총 119개소이며, 총 매장가능 기수는 85,418기임.

- 공설묘지의 경우 안치기수가 78,848기(92.3%)로 대부분 만장상태이거나 향후 매장계획이 없는 시·군들도 있음.

<표 2-3> 경기도 공설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기)

시·군명	개소수	총 면적 (천㎡)	매장기수			비고
			매장능력	안치	향후매장	
계	119	2,886	85,418	78,848	6,570	
수원시	0	0	0	0	0	
고양시	2	26	1,280	1,221	59	
용인시	1	21	1,583	1,583	0	
성남시	0	0	0	0	0	
부천시	0	0	0	0	0	
안산시	2	178	7,170	7,170	0	
화성시	2	60	1,089	1,089	0	
남양주시	2	13	149	149	0	
안양시	2	409	10,000	9,833	167	
평택시	3	97	8,219	8,219	0	
의정부시	1	22	1,229	1,229	0	
파주시	4	14	1,321	1,321	0	
시흥시	1	52	2,361	2,361	0	
김포시	3	51	2,527	2,527	0	
광명시	6	51	2,144	2,144	0	
광주시	2	45	1,687	1,612	75	
군포시	0	0	0	0	0	
이천시	4	148	6,797	5,736	1,061	
오산시	1	19	635	635	0	
하남시	0	0	0	0	0	
양주시	29	290	11,397	7,239	4,158	
구리시	1	69	4,248	4,213	35	
안성시	2	110	2,972	2,760	212	
포천시	30	321	8,796	8,796	0	
의왕시	3	100	1,821	1,821	0	
여주시	5	57	946	772	174	
양평군	1	496	1,619	1,619	0	
동두천시	1	27	1,500	1,500	0	
과천시	0	0	0	0	0	
가평군	6	47	2,414	2,157	257	
연천군	5	162	1,514	1,142	372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2017년 기준 경기도 공동묘지³⁾는 총 397개소이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60,807기(31.9%)임.

- 경기도 시·군 중 이천시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34,030기(56%), 양평군 23,172기(38%)로 공동묘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경기도 공동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기)

시·군명	개소수	총 면적 (천㎡)	매장기수			비고
			매장능력	안치	향후매장	
계	397	7,393	190,908	124,070	60,807	
수원시	1	29	2,275	2,275	0	
고양시	10	209	6,215	4,431	0	
용인시	21	538	4,613	4,613	0	
성남시	4	147	2,669	2,612	0	
부천시	0	0	0	0	0	
안산시	14	164	5,226	4,514	712	
화성시	57	679	13,015	13,015	0	
남양주시	24	347	7,566	7,566	0	
안양시	-	-	-	-	-	
평택시	30	489	7,669	7,277	0	
의정부시	0	0	0	0	0	
파주시	33	786	20,607	18,464	0	
시흥시	8	142	4,193	4,193	0	
김포시	11	208	7,168	7,168	0	
광명시	6	50	2,045	2,045	0	
광주시	20	481	3,886	3,675	211	
군포시	2	14	764	465	0	
이천시	33	640	42,648	8,618	34,030	
오산시	-	-	-	-	-	
하남시	3	112	4,995	4,995	0	
양주시	-	-	-	-	-	
구리시	-	-	-	-	-	
안성시	-	-	-	-	-	
포천시	-	-	-	-	-	
의왕시	-	-	-	-	-	
여주시	53	900	6,317	6,252	65	
양평군	35	905	39,399	16,227	23,172	
동두천시	1	19	742	742	0	
과천시	-	-	-	-	-	
가평군	27	415	7,955	3,982	2,617	
연천군	4	121	941	941	0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3)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립묘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설치하는 공설묘지, 민간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중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묘지를 말함.

□ 경기도 법인묘지는 총 51개소이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134,060기(32.1%)임.

- 법인묘지 향후 매장가능 기수의 경우 전체 묘지의 64.6%를 차지함.

<표 2-5> 경기도 법인묘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기)

시·군명	개소수	총 면적 (천㎡)	매장기수			비고
			매장능력	안치	향후매장	
계	51	14,726	417,697	283,637	134,060	
수원시	0	0	0	0	0	
고양시	2	312	5,791	4,719	1,072	
용인시	4	2,524	79,968	52,942	27,026	
성남시	1	397	8,610	7,564	1,046	
부천시	0	0	0	0	0	
안산시	1	107	3,019	2,931	88	
화성시	0	0	0	0	0	
남양주시	4	1,488	37,905	26,074	11,831	
안양시	0	0	0	0	0	
평택시	0	0	0	0	0	
의정부시	0	0	0	0	0	
파주시	6	1,399	57,363	37,121	20,242	
시흥시	0	0	0	0	0	
김포시	4	353	13,951	11,940	2,011	
광명시	0	0	0	0	0	
광주시	6	2,004	52,797	40,840	11,957	
군포시	0	0	0	0	0	
이천시	0	0	0	0	0	
오산시	0	0	0	0	0	
하남시	0	0	0	0	0	
양주시	3	753	17,861	15,208	2,653	
구리시	0	0	0	0	0	
안성시	3	842	33,310	21,400	11,910	
포천시	9	2,485	49,404	30,998	18,406	
의왕시	1	97	2,122	1,806	316	
여주시	1	324	19,792	9,460	10,332	
양평군	4	1,330	31,052	17,876	13,176	
동두천시	1	192	2,252	1,667	585	
과천시	0	0	0	0	0	
가평군	0	0	0	0	0	
연천군	1	119	2,500	1,091	1,409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경기도 권역별⁴⁾ 묘지 현황은 아래 <표 2-6>과 같음.

- 공설묘지의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동북부가 4,450기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 서북부, 남부, 서부 순으로 나타남
- 공동묘지의 경우, 동부가 57,478기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묘지의 경우 남부가 38,936기(29%)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 동북부, 서북부, 서부 순으로 나타남.

<표 2-6> 경기도 권역별 묘지 현황

(단위 : 개소, 기)

권역	전체		공설		공동		법인	
	개소	향후매장	개소	향후매장	개소	향후매장	개소	향후매장
계	567	201,437	119	6,570	397	60,807	51	134,060
동 부	172	95,299	12	1,310	148	57,478	12	36,511
서 부	123	3,294	19	167	98	712	6	2,415
남 부	66	39,148	7	212	52	0	7	38,936
동북부	139	40,542	70	4,450	52	2,617	17	33,475
서북부	67	23,154	11	431	47	0	9	22,723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가.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전국 화장시설은 2017년 기준 총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경북 11개, 경남 10개, 강원 8개 순으로 가장 많은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전국 화장시설에서 363,444건의 화장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에서는 3개의 화장시설에서 한해 37,303건의 화장이 이루어져, 서울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음.

4) 동부(6개) : 광주, 성남, 양평, 여주, 이천, 하남
 서부(10개) :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 화성
 남부(5개) : 수원, 안성, 오산, 용인, 평택
 동북부(7개)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서북부(3개) : 고양, 연천, 파주

- 봉안시설은 전국에 총 4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4,082,787구를 봉안할 수 있으며 2017년 기준 1,583,951구가 봉안되어 있음.
- 경기도에는 85개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1,309,136구를 봉안할 수 있으며 2017년 398,581구가 봉안되어 있어 전국에서 봉안능력이 가장 높음.

<표 2-7>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구분	화장시설		봉안시설			비고
	개소수	화장건수	개소수	봉안능력	봉안수	
계	59	363,444	412	4,082,787	1,583,951	
서울	2	56,945	24	148,307	95,532	
부산	1	21,578	6	189,889	153,678	
대구	1	14,460	11	73,511	36,141	
인천	1	23,790	8	152,078	91,277	
광주	1	13,121	4	76,447	42,420	
대전	1	9,121	4	50,270	37,810	
울산	1	6,746	3	24,108	8,441	
세종	1	8,180	5	33,372	7,664	
경기	3	37,303	85	1,309,136	398,581	
강원	8	15,405	28	131,804	44,648	
충북	3	14,523	32	326,570	74,859	
충남	3	20,033	27	362,617	187,045	
전북	5	21,987	24	212,133	105,203	
전남	6	40,274	37	234,141	67,750	
경북	11	20,374	45	303,981	90,395	
경남	10	28,535	57	395,736	106,716	
제주	1	11,069	12	58,687	35,791	

주) 화장건수 :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 포함
 봉안당 : 공설, 법인,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경기도 화장시설 현황

□ 경기도 화장시설은 2017년을 기준으로 수원(연화장), 성남(영생관리사업소), 용인(평온의 숲)에 총 3개소가 있음.

- 수원시 화장시설은 2001년 화장로 3로를 설치하였고 이후 6로를 증설하여 총9로의 화장로가 있으며, 2017년 한해 화장건수는 11,210건임.
- 성남시 화장시설은 1982년에 개소하였으며 21,264㎡ 부지에 연면적 6,720㎡로 15로의 화장로가 있으며 2017년 한해 화장건수는 13,789건임.
- 용인시 화장시설은 2013년 화장로 10로를 설치하였고 이후 화장로를 1로 증설하여 총11로가 있으며, 2017년 한해 화장건수는 12,304건임.

<표 2-8> 경기도 화장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운영주체	설치연도	시설규모		화장로	유택동산 설치여부	2017년 화장실적
			부지(㎡)	연면적(㎡)			
계			680,115	52,913	35		37,303
수원 연화장	수원도시공사	2001	56,612	18,066	9	유	11,210
성남 영생관리 사업소	성남시	1982	21,264	6,720	15	유	13,789
용인 평온의숲	용인도시공사	2013	602,239	28,127	11	유	12,304

주) 유택동산 :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함

화장실적 : 죽은태아, 개장유골 포함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그림 2-1> 경기도 화장시설



수원 연화장의 승화원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용인 평온의 숲의 나래원

※ 검색 : 수원연화장 홈페이지(<http://www.suwonyhj.or.kr/>)

성남영생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ww.skyland.or.kr/>)

용인평온의숲 홈페이지(<http://www.tranquil-forest.or.kr/>)

□ 경기도 화장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표 2-9> 경기도 화장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화장시설명	관내		준관내		관외		비고
	요금	지역	요금	지역	요금	지역	
수원 연화장	100,000	수원시	500,000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5동	1,000,000	다른지역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50,000	성남시	500,000	광주시 4동	1,000,000	다른지역	
용인 평온의 숲	100,000	용인시	450,000	안성시 양성면	900,000	다른지역	
			600,000	경기도민			
서울 시립승화원	120,000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	-	-	1,000,000	다른지역	

다. 경기도 봉안시설 현황

□ 경기도 봉안시설은 총 185개소로, 공설 봉안시설은 20개소, 사설 봉안시설 16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 봉안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2,166,292구이며 2017년 기준으로 554,223구(25.6%)가 안치되어 있음.
- 향후 봉안가능 구수는 총 1,612,069구로 이 중 사설 봉안시설이 1,451,039구(90%)로 나타남.
- 총 봉안율은 25.6%이며, 사설이 공설에 비해 향후 봉안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경기도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

구분	개소수	봉안능력	기봉안	향후봉안	봉안율	비고
계	185	2,166,292	554,223	1,612,069	25.6	
공설	20	286,248	125,218	161,030	43.7	
사설	165	1,880,044	429,005	1,451,039	22.8	

주) 봉안율 : 기 봉안구수를 총 봉안능력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임

사설 봉안시설 : 법인 외 가족, 종중, 종교시설을 모두 포함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각 시·군의 구체적인 공설 봉안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1>과 같음.

- 도내 공설 봉안시설은 1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김포시·성남시에 각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봉안능력이 높은 지역은 용인시 55,652구, 성남시, 화성시, 광명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봉안가능 구수가 많은 곳은 용인시 42,910구, 광명시, 화성시, 하남시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1> 경기도 공설 보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시·군명	보안시설				보안구수			비고
	계	보안당	보안담	보안묘	보안능력	기보안	향후보안	
계	20	14	4	2	286,248	125,218	161,030	
수원시	1	1	0	0	29,792	27,111	2,681	
용인시	1	1	0	1	55,652	12,742	42,910	
성남시	2	2	0	0	35,219	30,067	5,152	
안산시	1	0	1	0	10,204	9,400	804	
화성시	1	1	0	0	31,548	8,407	23,141	
평택시	1	1	0	0	18,716	6,745	11,971	
김포시	2	1	1	0	12,628	4,729	7,899	
광명시	1	1	0	0	30,317	8,148	22,169	
이천시	1	1	0	0	9,044	4,722	4,322	
오산시	1	1	0	0	11,798	3,363	8,435	
하남시	1	1	0	0	20,100	3,691	16,409	
양주시	1	1	0	0	2,360	264	2,096	
의왕시	1	1	0	0	6,900	2,227	4,673	
여주시	1	1	0	0	6,528	350	6,178	
양평군	1	0	1	0	4,212	2,953	1,259	
동두천시	1	0	1	0	1,152	271	881	
가평군	1	0	0	1	78	28	50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경기도 권역별 공설 보안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2> 경기도 권역별 공설 보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권역	보안시설				보안구수			비고
	계	보안당	보안담	보안묘	보안능력	기보안	향후보안	
계	20	14	4	2	286,248	125,218	161,030	
동 부	6	5	1	0	75,103	41,783	33,320	
서 부	6	4	2	0	91,597	32,911	58,686	
남 부	5	4	0	1	115,958	49,961	65,997	
동북부	3	1	1	1	3,590	563	3,027	
서북부	0	0	0	0	0	0	0	

□ 경기도 사설 봉안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3>과 같음.

- 도내 사설 봉안시설은 22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설에 비해 봉안율이 낮아 향후 사설의 봉안가능 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봉안가능 구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시, 양평군, 파주시, 성남시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3> 경기도 사설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시·군명	봉안시설					봉안구수		
	계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봉안능력	기봉안	향후봉안
계	165	85	50	12	18	1,880,044	429,005	1,451,039
고양시	12	9	3	0	0	192,856	104,324	88,532
용인시	16	6	4	4	2	112,093	18,007	94,086
성남시	3	1	1	1	0	138,192	16,490	121,702
화성시	7	4	3	0	0	107,218	38,796	68,422
남양주시	10	5	4	0	1	98,387	23,708	74,679
안양시	1	1	0	0	0	10,800	3,503	7,297
평택시	6	4	2	0	0	97,806	28,980	68,826
의정부시	1	1	0	0	0	5,350	2,142	3,208
파주시	11	9	1	0	1	210,315	54,804	155,511
김포시	7	4	2	0	1	16,393	3,891	12,502
광주시	8	4	4	0	0	349,721	43,862	305,859
이천시	6	3	3	0	0	19,716	7,083	12,633
양주시	10	3	3	1	3	19,187	6,332	12,855
구리시	1	0	0	0	1	33	33	0
안성시	8	6	2	0	0	95,616	24,184	71,432
포천시	8	3	3	1	1	38,455	5,689	32,766
의왕시	2	2	0	0	0	4,186	2,801	1,385
여주시	9	4	3	0	2	30,288	9,795	20,493
양평군	11	3	4	2	2	225,709	11,256	214,453
동두천시	8	3	3	1	1	59,377	6,622	52,755
가평군	11	5	3	1	2	13,600	10,920	2,680
연천군	9	5	2	1	1	34,746	5,783	28,963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경기도 봉안시설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권역별로 봉안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공설의 경우 남부의 향후 봉안 가능 비율이 전체의 약 41.0%로 가장 높았고 동북부는 1%대에 불과하며 서북부는 봉안가능 구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설의 경우 동부 권역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공설에 비해서는 고른 분포를 보임.

<표 2-14> 경기도 권역별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권역	공설				사설			
	계	봉안구수			계	봉안구수		
		봉안능력	기봉안	향후봉안		봉안능력	기봉안	향후봉안
계	20	286,248	125,218	161,030	165	1,880,044	429,005	1,451,039
동 부	6	75,103	41,783	33,320	37	763,626	88,486	675,140
서 부	6	91,597	32,911	58,686	17	138,597	48,991	89,606
남 부	5	115,958	49,961	65,997	30	305,515	71,171	234,344
동북부	3	3,590	563	3,027	49	234,389	55,446	178,943
서북부	0	0	0	0	32	437,917	164,911	273,006

라. 경기도 자연장지 현황

□ 자연장이란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임(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⁵⁾).

<그림 2-2> 자연장 유형



잔디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5)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소개를 참조



수목형 자연장⁶⁾



수목장림⁷⁾

□ 도내 공설 자연장지는 12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85,709㎡로 자연장 능력은 60,204구이며 향후 46,708구(77.6%)를 안치할 수 있음.

□ 경기도 공설 자연장지 조성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5> 경기도 공설 자연장지 현황

(단위 : 개소, ㎡, 구)

시·군명	시설명	형태	조성면적 (㎡)	자연장구수		
				자연장능력	기자연장	향후자연장
계		12	185,709	60,204	13,496	46,708
수원시	연화장	잔디형	6,300	6,450	1,668	4,782
용인시	용인평온의숲	수목형 잔디형	15,497	11,928	809	11,119
안산시	꽃빛공원 수목장림	수목형 잔디형	5,613	2,492	448	2,044
시흥시	정왕 공설공원	잔디형	2,900	2,015	1,825	190
김포시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잔디형	3,000	1,100	94	1,006
광주시	중대공원	잔디형	3,084	1,800	1,487	313
	신월자연장	잔디형	3,000	2,000	110	1,890
의왕시	의왕하늘쉼터	수목형 잔디형	12,140	2,746	499	2,247
여주시	여주추모공원	잔디형	18,355	7,008	402	6,606
양평군	하늘숲추모원	수목형	100,000	18,965	5,417	13,548
양주시	경신 하늘뜰 공원	잔디형	4,713	2,500	218	2,282
포천시	내촌공설 자연장지	수목형	11,107	1,200	519	681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6) 수목형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사방법임.

7) 수목장림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도내 사설 자연장지는 392개소가 있으며, 총 자연장능력은 182,154구이며 향후 163,904구(89.9%)를 안치할 수 있음.

<표 2-16> 경기도 사설 자연장지 현황

(단위 : 개소, m², 구)

구분	시설수						면적 (m ²)	자연장구수		
	계	개인	가족	중증	종교 단체	법인		자연장능력	기자연장	향후자연장
계	392	11	151	196	25	9	580,376	182,154	18,250	163,904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경기도 권역별 자연장지 현황은 <표 2-17>과 같음.

- 자연장지는 총 40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장능력은 242,358구이며 기자연장 구수가 많지 않아 향후 210,612구(86.9%)를 안치할 수 있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장지 총수는 동북부, 동부, 서부, 남부 순으로 많으나 총 자연장능력은 동부 45.7%, 남부, 서부, 동북부, 서북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자연장가능 구수 또한 동부 48.5%, 남부 33.3% 순으로 많았으며 서부 11.8%, 동북부 6.4%, 서북부는 0%로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7> 경기도 권역별 자연장지 현황

(단위 : 개소, 구)

권역	시설 수	자연장구수			비고
		자연장능력	기자연장	향후자연장	
계	404	242,358	31,746	210,612	
동 부	101	110,853	8,718	102,135	
서 부	93	29,179	4,283	24,896	
남 부	63	81,528	11,465	70,063	
동북부	116	20,696	7,178	13,518	
서북부	31	102	102	0	

마. 경기도 장례식장 현황

□ 경기도 장례식장은 총 177개소로, 빈소수는 848개소이며 안치능력은 1,503구로 나타남.

<표 2-18> 경기도 장례식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시·군명	합계			공설			사설		
	개소수	빈소수	안치 능력	개소수	빈소수	안치 능력	개소수	빈소수	안치 능력
계	177	848	1,503	12	85	142	165	763	1,361
수원시	8	52	88	2	17	26	6	35	62
고양시	9	62	120	1	9	18	8	53	102
용인시	9	44	80	1	12	12	8	32	68
성남시	7	45	87	1	7	16	6	38	71
부천시	9	50	88	0	0	0	9	50	88
안산시	12	50	88	0	0	0	12	50	88
화성시	9	47	82	0	0	0	9	47	82
남양주시	7	29	60	0	0	0	7	29	60
안양시	5	31	51	0	0	0	5	31	51
평택시	8	51	80	0	0	0	8	51	80
의정부시	7	32	62	1	6	8	6	26	54
파주시	10	39	70	1	6	10	9	33	60
시흥시	7	30	46	0	0	0	7	30	46
김포시	6	30	38	0	0	0	6	30	38
광명시	2	11	20	0	0	0	2	11	20
광주시	6	24	44	0	0	0	6	24	44
군포시	2	7	14	0	0	0	2	7	14
이천시	5	25	40	1	5	8	4	20	32
오산시	1	8	10	0	0	0	1	8	10
하남시	1	6	12	1	6	12	0	0	0
양주시	6	23	46	0	0	0	6	23	46
구리시	4	17	22	0	0	0	4	17	22
안성시	7	29	58	1	7	14	6	22	44
포천시	7	24	56	1	5	10	6	19	46
의왕시	2	4	10	0	0	0	2	4	10
여주시	5	25	34	0	0	0	5	25	34
양평군	8	20	40	0	0	0	8	20	40
동두천시	4	16	25	0	0	0	4	16	25
과천시	0	0	0	0	0	0	0	0	0
가평군	2	10	16	0	0	0	2	10	16
연천군	2	7	16	1	5	8	1	2	8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제 2 절 경기도 장사시설 이용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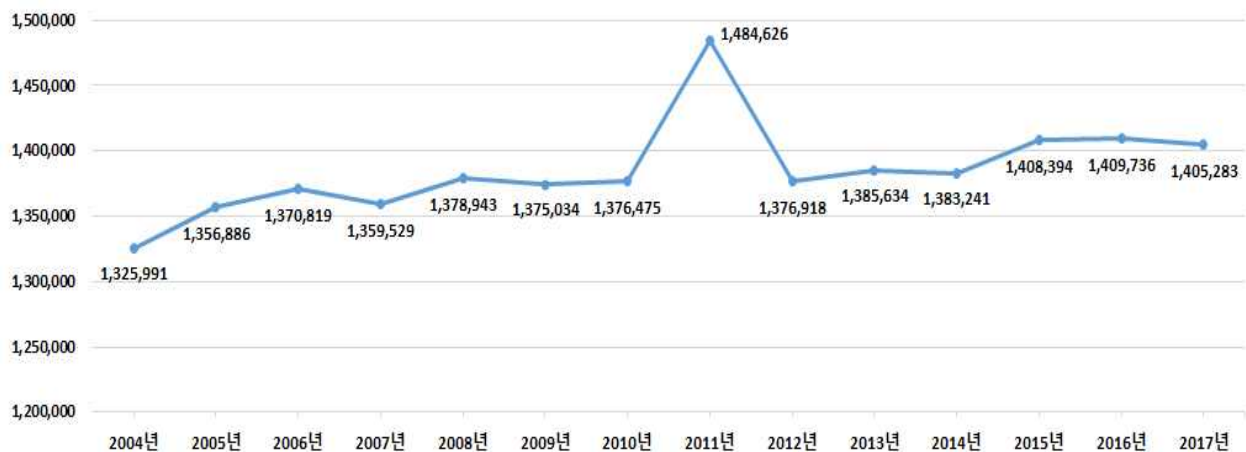
1. 매 · 화장 추이

□ 2004년~2017년 전국 분묘설치 기수(공설묘지와 법인묘지)는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 급상승하였음. 2012년 분묘설치 기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약간 감소하였음.

- 전국 분묘설치 기수는 2004년 1,325,991기에서 2017년 1,405,283기로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전국 분묘설치 기수

(단위 :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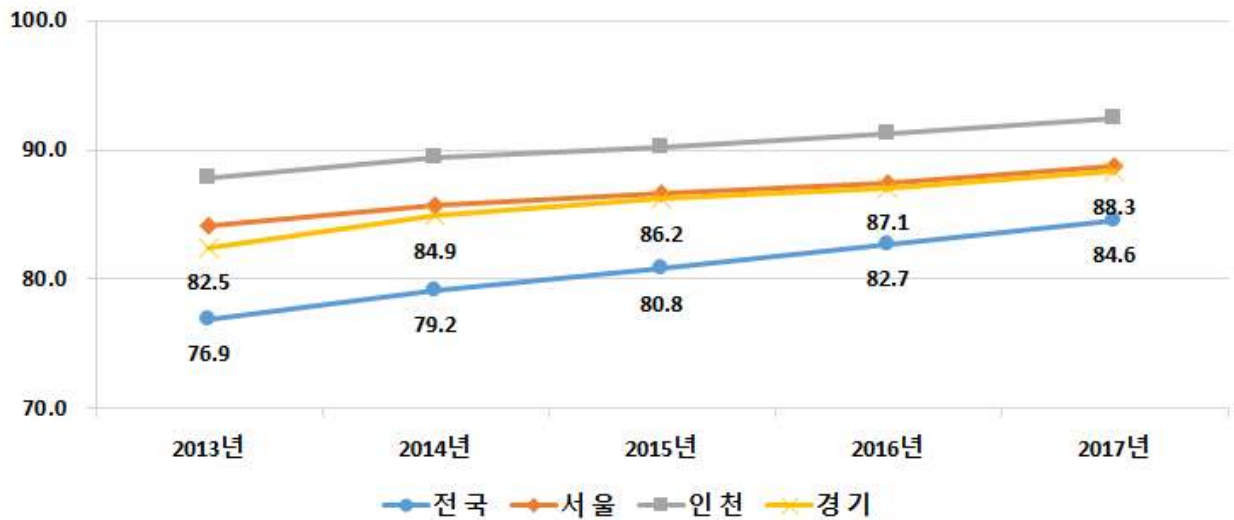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3년~2017년 전국 화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76.9%에서 84.6%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7년 수도권 화장률을 살펴보면, 인천의 화장률이 92.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 88.8%, 경기도 88.3%로 전국의 화장률 84.6%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4> 수도권 화장률 추이

(단위 : %)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시스템

2. 매장 현황

□ 2017년 경기도 매장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매장가능 기수는 694,023기이며 이중 매장 기수는 486,555기로 향후 201,437기(29%) 매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9> 2017년 경기도 매장 실적

(단위 : 천㎡, 기)

총면적	매장기수			비고
	계	안치	향후매장	
25,005	694,023	486,555	201,437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7년 경기도 묘지의 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설 · 공동 묘지의 경우 총 매장가능 기수는 276,326기이며, 이미 202,918기가 매장되어 있어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67,377기(24.4%)임.
- 법인 묘지는 417,697기 중 67.9%가 기매장되어 있어, 향후 134,060기 매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0> 2017년 경기도 공설·공동묘지, 법인묘지의 매장 현황

(단위 : 천㎡, 기)

구분	개소수	매장기수	매장	향후매장	비고
공설·공동	516	276,326	202,918	67,377	
법인	51	417,697	283,637	134,060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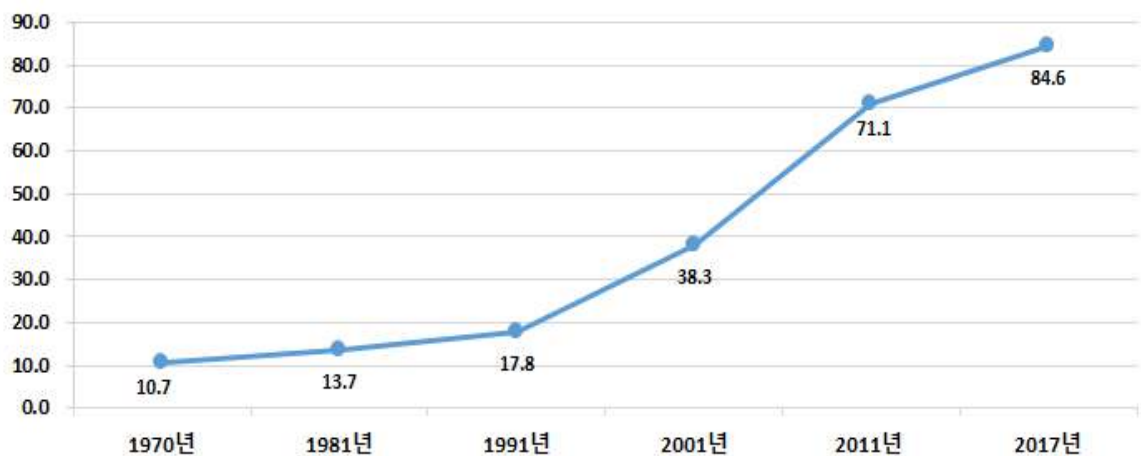
3. 화장 현황

가. 경기도 화장률 추이

- 전국 화장률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70년도 화장률은 10.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화장률은 84.6%로 약 8배 정도 증가하였음.

<그림 2-5> 전국 화장률 추이

(단위 : %)



※ 자료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 보고서」(2014)

□ 경기도 화장률을 살펴보면 2010년 73.8%(35,197건)에서 2017년 88.3%(50,212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그림 2-4>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2017년 경기도의 화장률은 전국의 화장률보다 높음.

<표 2-21> 경기도 화장률 추이

(단위 : %, 구,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 장 률	73.8	77.5	80.0	82.5	84.9	86.2	87.1	88.3
사망자수	47,687	48,394	50,830	50,959	51,425	53,005	55,215	56,852
화장건수	35,197	37,526	40,683	42,046	43,682	45,680	48,068	50,212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경기도민 화장시설 이용실태

□ 2017년 경기도 내 화장시설의 연간 화장실적은 37,303구로 이 중 수원화장시설 11,210구, 성남화장시설 13,789구, 용인화장시설 12,304구를 화장하였음.

- 유형별 화장실적을 살펴보면 시신 80.1%, 개장유골 19%, 죽은태아 0.9%로 나타남.

<표 2-22> 2017년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단위 : 구, %)

구분	계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		비고
계	37,303	(100.0)	29,884	(80.1)	331	(0.9)	7,088	(19.0)	
수원 연화장	11,210	(100.0)	9,623	(85.8)	185	(1.7)	1,402	(12.5)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13,789	(100.0)	12,049	(87.4)	77	(0.6)	1,663	(12.1)	
용인 평온의숲	12,304	(100.0)	8,212	(66.7)	69	(0.6)	4,023	(32.7)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7년 도내 화장실적은 2013년 24,282건에서 2017년 37,303건으로 약 65% 증가하였음.

- 수원 화장시설의 경우 2013년 8,489건에서 2017년 9,607건으로 13.2%, 성남 화장시설의 경우 2013년 11,058건에서 2017년 12,059건으로 9.1% 증가하였음.

- 용인 화장시설의 경우 2013년 중 개원하여 4,735건에서 2017년 123,04건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음.

<표 2-23>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추이

(단위 : 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24,282	33,292	31,607	33,303	37,303	
수원 연화장	8,489	10,026	9,653	9,904	11,210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11,058	12,738	12,126	12,707	13,789	
용인 평온의숲	4,735	10,528	9,828	10,692	12,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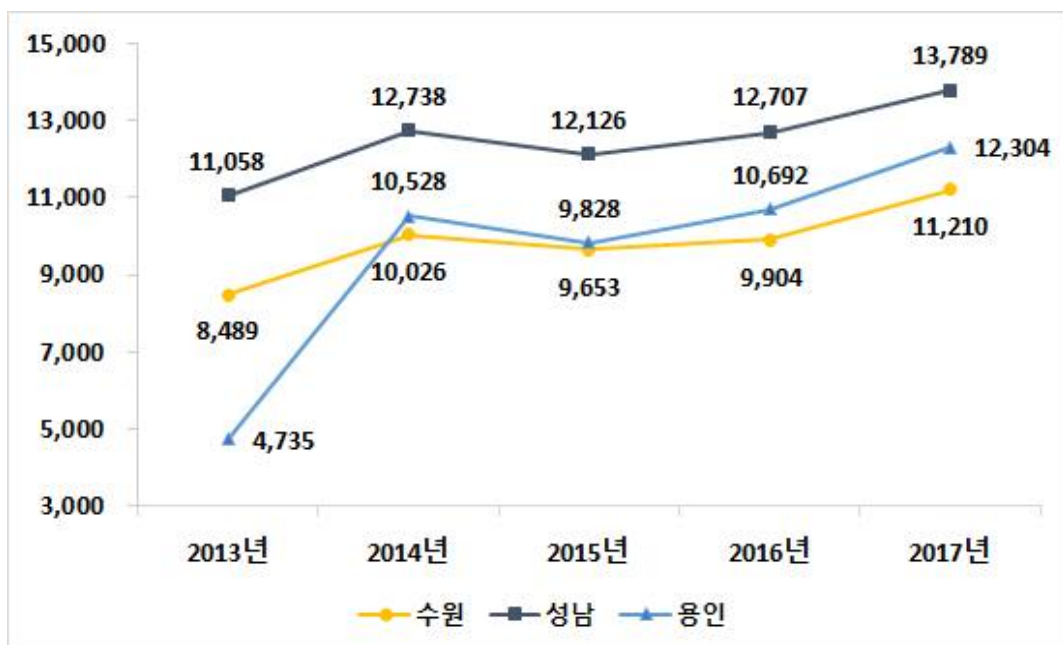
주) 화장실적 : 죽은태아, 개장유골 포함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수원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연구」(2017)

-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추이를 다음 그림으로 살펴보면 수원과 성남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폭으로 등락이 지속되었으며, 용인의 경우 2013년에 개원하여 2014년의 화장실적이 대폭 상승한 후 2015년까지 소폭 하락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2-6> 경기도 화장시설별 화장실적 추이

(단위 : 건)



(1) 수원 연화장

- 수원 화장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경기도민 전체 이용자 비율은 89.2%이며, 이 중 42.5%가 수원시민이며 수원시민을 제외한 경기도민은 46.8%로 나타남.

<표 2-24> 수원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9,040	9,184	9,390	9,808	10,401
수원시민	3,664 (40.5)	3,721 (40.6)	3,757 (41.5)	3,932 (41.4)	3,989 (42.5)
도민(수원 외)	4,753 (52.6)	5,622 (51.1)	5,102 (48.6)	4,908 (48.6)	4,675 (46.8)
서울시민	145 (1.6)	147 (1.9)	177 (3.1)	289 (3.1)	284 (3.9)
인천시민	31 (0.3)	36 (0.3)	26 (0.4)	40 (0.4)	38 (0.4)
기타	447 (4.9)	500 (6.1)	591 (6.5)	635 (6.5)	621 (6.5)

주) 화장실적 : 개장유골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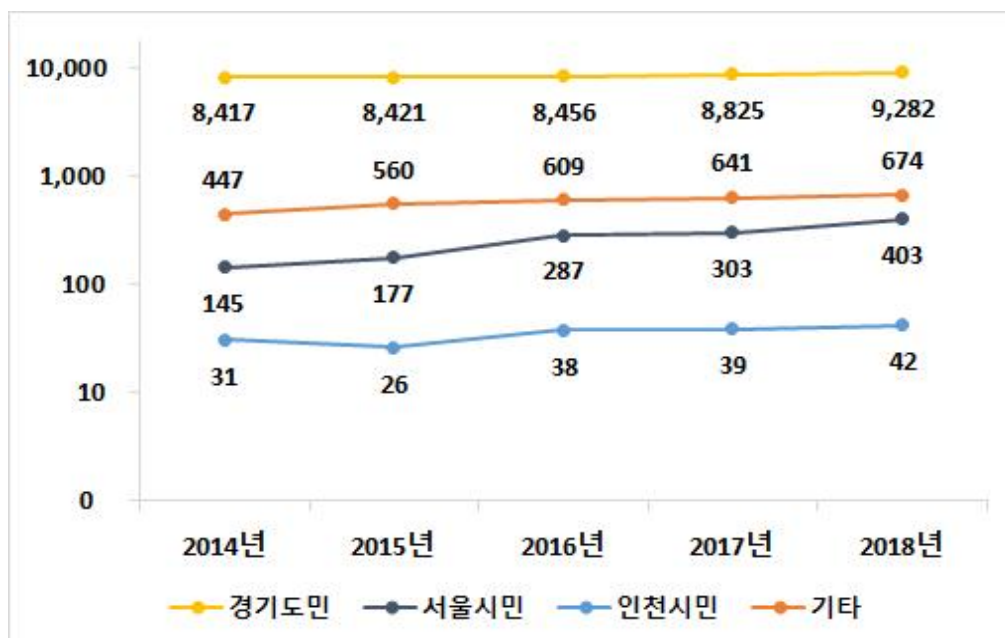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용자 현황 추이를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면 경기도민이 지속적으로 전체 화장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하다 2018년 89.2%로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2-7> 수원 화장실적 추이

(단위 : 건)



(2)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 성남 화장시설의 2018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민 전체 이용자 비율은 88.6%(12,372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 27.2%가 성남시민임. 성남을 제외한 도민이 61.3%를 차지하여 성남 화장시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관외 경기도민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5> 성남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867	11,604	11,990	12,136	13,967
성남시민	3,360 (30.9)	3,482 (30.0)	3,672 (30.6)	3,613 (29.8)	3,806 (27.2)
도민(성남 외)	5,762 (53.0)	6,189 (53.3)	6,689 (55.8)	7,075 (58.3)	8,566 (61.3)
서울시민	658 (6.1)	912 (7.9)	957 (8.0)	919 (7.6)	1,044 (7.5)
인천시민	90 (0.8)	84 (0.7)	67 (0.6)	40 (0.3)	34 (0.2)
기타	997 (9.2)	937 (8.1)	605 (5.0)	489 (4.0)	517 (3.7)

주) 화장실적 : 개장유골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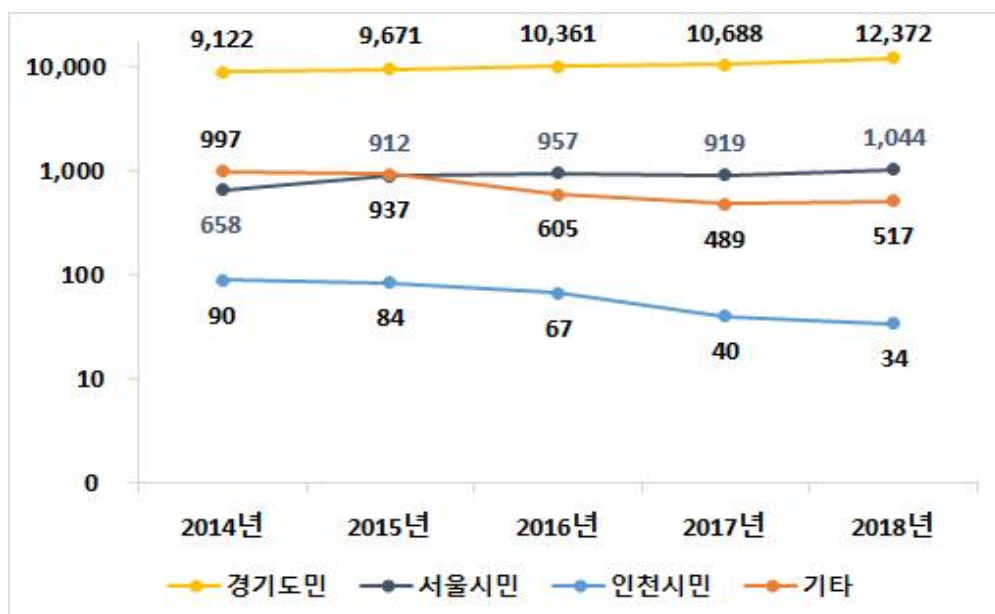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민의 경우 꾸준히 전체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경우 5%에서 7% 중반으로 살짝 증가하였음.

<그림 2-8> 성남 화장실적 추이

(단위 : 건)



(3) 용인 평온의 숲

- 용인 화장시설의 2017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민 전체 이용자 비율은 8,094명으로 90.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36.1%가 용인시민임. 용인시민을 제외한 이용자가 63.9%를 차지하여 용인 화장시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용인 화장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938	7,396	8,088	8,281	8,942
용인시민	2,568 (37.0)	2,703 (36.5)	2,812 (34.8)	2,970 (35.9)	3,224 (36.1)
도민(용인 외)	3,780 (54.5)	4,166 (56.3)	4,514 (55.8)	4,586 (55.4)	4,870 (54.5)
서울시민	190 (2.7)	201 (2.7)	315 (3.9)	336 (4.1)	372 (4.2)
인천시민	33 (0.5)	27 (0.4)	40 (0.5)	31 (0.4)	42 (0.5)
기타	367 (5.3)	299 (4.0)	407 (5.0)	358 (4.3)	434 (4.9)

주) 화장실적 : 개장유골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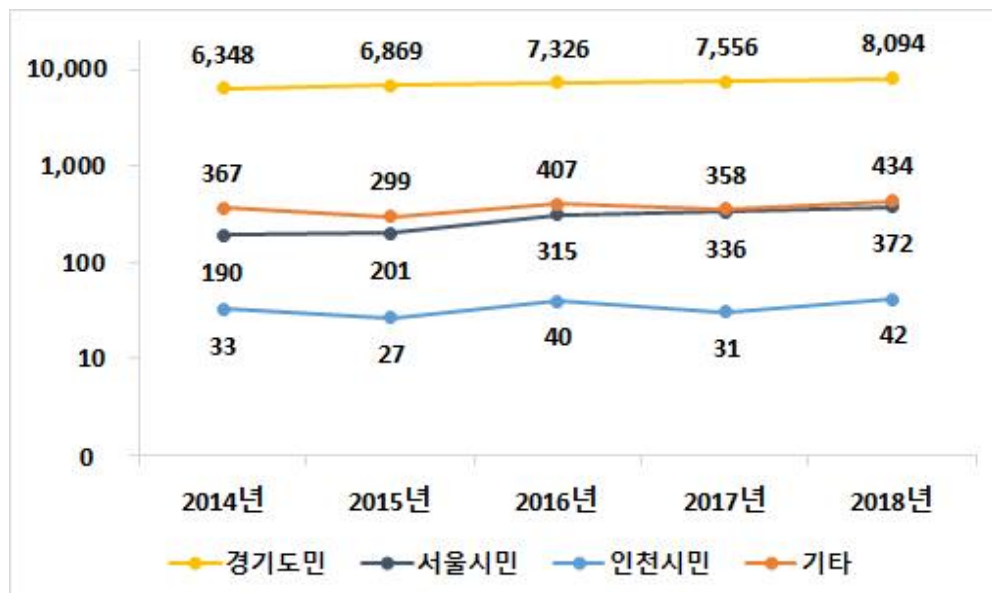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용자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민이 지속적으로 전체 화장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용인 화장실적 추이

(단위 : 건)



제 3 절 경기도 장사시설 문제점과 향후 과제

-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매장묘지의 경우, 분묘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이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인 만큼 신규 묘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봉안시설의 경우 8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에서 봉안능력이 가장 높아 추가적인 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이 자연장지의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화장시설의 경우, 경기도의 화장률이 전국의 평균 화장률보다 높은 것에 반해 화장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여 시설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정부의 장사정책 목표가 2022년까지 화장률 90%를 달성하는 것이며, 앞서 살펴본 경기도 화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화장시설을 적절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절감, 이용률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 지방단체들이 장사시설을 공동 설치·운영하는 사례에서 하나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 특히, 공동 복합형 장사시설은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설치 및 운영 방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모두 공설이나, 화장 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사설시설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화장시설의 확충 시, 현재 공설 화장시설이 경기도의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자연장지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례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설 자연장지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 전체 자연장지의 경우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자연장지 확충 계획을 수립할 시 이 같은 편차를 고려하여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제 3 장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제 3 장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 및 향후 장사시설 이용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통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조사방법을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었음.

- 경기도가 매우 광범위함을 전제로 하여 조사지역은 경기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구분하였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였음.
 - 조사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로 나타남.

<표 3-1>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여
조사방법	패널자료를 통한 이메일 조사
조사기간	2018년 10월 15일 ~ 10월 30일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표본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제 2 절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 50.1%, 여 49.9%, 연령은 20대 12.1%, 30대 24.3%, 40대, 36.9%, 50대 이상 26.7%, 거주 지역은 동부 17.5%, 서부 34.3%, 남부 19.8%, 북부 28.4%로 나타났음.
- 경기도 거주기간은 5년 미만 11.0%, 5년 이상-10년 미만 16.6%,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30년 이상 17.9%로 나타남.
-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0.5%, 고졸이 20.6%, 대학교 재학 이상이 78.9%로 조사되었음.
- 종교는 무교가 52.3%, 기독교 20.9%, 불교 14.7%, 천주교 11.4%, 기타 7%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4.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750만원 이상 13.5%로 나타났음.
- 장례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74.9%, 장례경험이 없는 조사 대상자는 25.1%로 나타남.

<표 3-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인원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1	50.1
	여성	499	49.9
연령	20대	121	12.1
	30대	243	24.3
	40대	369	36.9
	50대 이상	267	26.7
거주지역	동부	175	17.5
	서부	343	34.3
	남부	198	19.8
	북부	284	28.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11.0
	5년 이상-10년 미만	166	16.6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33.7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20.8
	30년 이상	179	17.9
학력	중졸 이하	5	0.5
	고졸	206	20.6
	대재 이상	789	78.9
종교	무교	523	52.3
	불교	147	14.7
	기독교	209	20.9
	천주교	114	11.4
	기타	7	0.7
월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0	4.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15.9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25.3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27.5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13.8
	750만원 이상	135	13.5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74.9
	없음	251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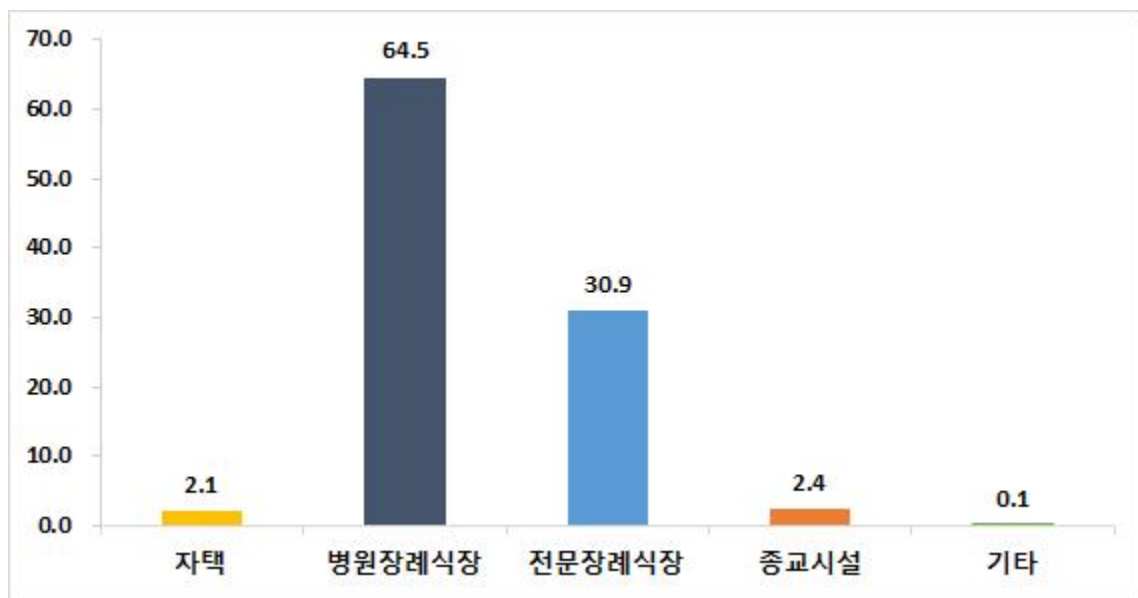
2. 시민의식조사 결과

가. 희망하는 장례장소와 장사방법

- 장사방법에 관한 의식 조사 사항으로는 먼저 희망하는 장례장소가 어디인지, 희망하는 장사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음.
- 희망하는 장례장소를 분석한 결과 병원장례식장 64.5%, 전문장례식장, 종교시설, 자택, 기타 순으로 나타나 병원장례식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 희망하는 장례장소

(단위 : %)



□ 희망하는 장사방법을 분석한 결과 화장 88.4%로 매장보다 화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3> 희망하는 장사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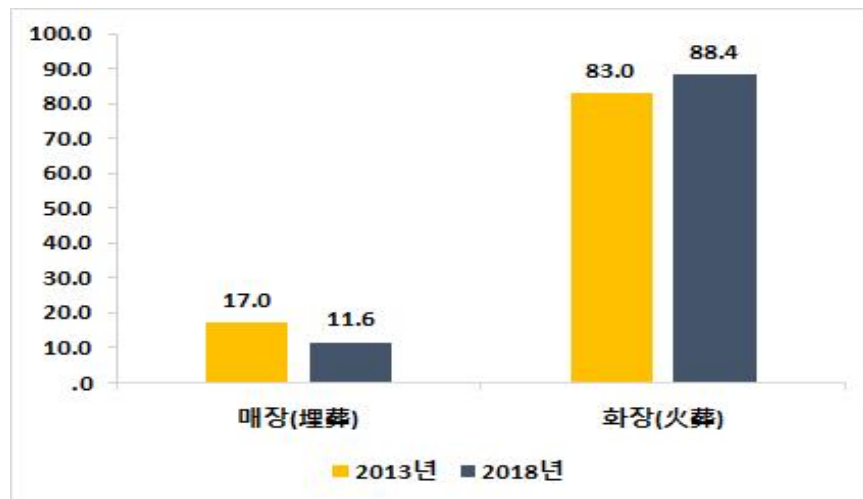
구분		인원수(명)	매장	화장
전체		1,000	11.6	88.4
성별	남성	501	13.6	86.4
	여성	499	9.6	90.4
연령	20대	121	12.4	87.6
	30대	243	14.0	86.0
	40대	369	11.4	88.6
	50대 이상	267	9.4	90.6
거주지역	동부	175	12.0	88.0
	서부	343	11.1	88.9
	남부	198	12.1	87.9
	북부	284	11.6	88.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12.7	87.3
	5년 이상-10년 미만	166	13.3	86.7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11.3	88.7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10.1	89.9
	30년 이상	179	11.7	88.3
학력	중졸 이하	5	0.0	100.0
	고졸	206	7.3	92.7
	대재 이상	789	12.8	87.2
종교	무교	523	10.5	89.5
	불교	147	13.6	86.4
	기독교	209	12.0	88.0
	천주교	114	13.2	86.8
	기타	7	14.3	85.7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7.5	92.5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12.6	87.4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10.3	89.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10.2	89.8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13.8	86.2
	750만원 이상	135	14.8	85.2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12.0	88.0
	없음	251	10.4	89.6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학력, 종교, 월 가구소득, 장례경험에 상관없이 모두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 문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에서 화장 83%, 매장 17%로 나타나 매장(11.6%)보다 화장(88.4%)을 선호하는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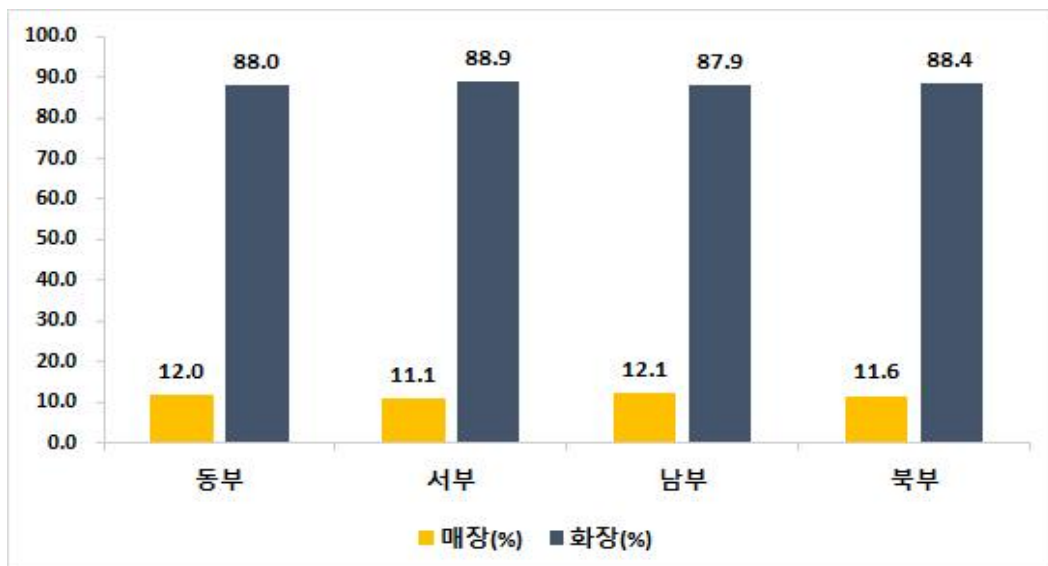
<그림 3-2> 희망하는 장사방법

(단위 : %)



□ 희망하는 장사방법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동부 88.0%, 서부 88.9%, 남부 87.9%, 북부 88.4%로 나타나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서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3-3> 권역별 희망하는 장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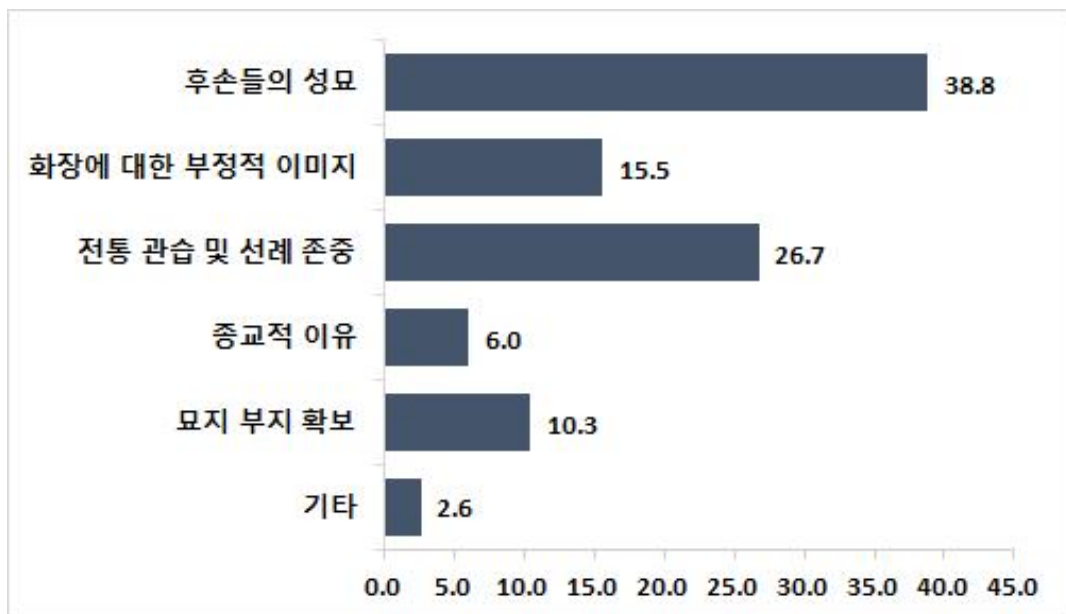
나. 매장

(1)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

- 매장을 희망하는 116명을 대상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후손들이 성묘를 할 수 있어서’가 38.8%,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가 2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 ‘화장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15.5%로 다른 답변과 비교해야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희망하는 묘지 유형

□ 매장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희망 묘지유형을 살펴보면 공설묘지 31.9, %사설묘지 68.1%로 나타났다.

<표 3-4> 희망하는 묘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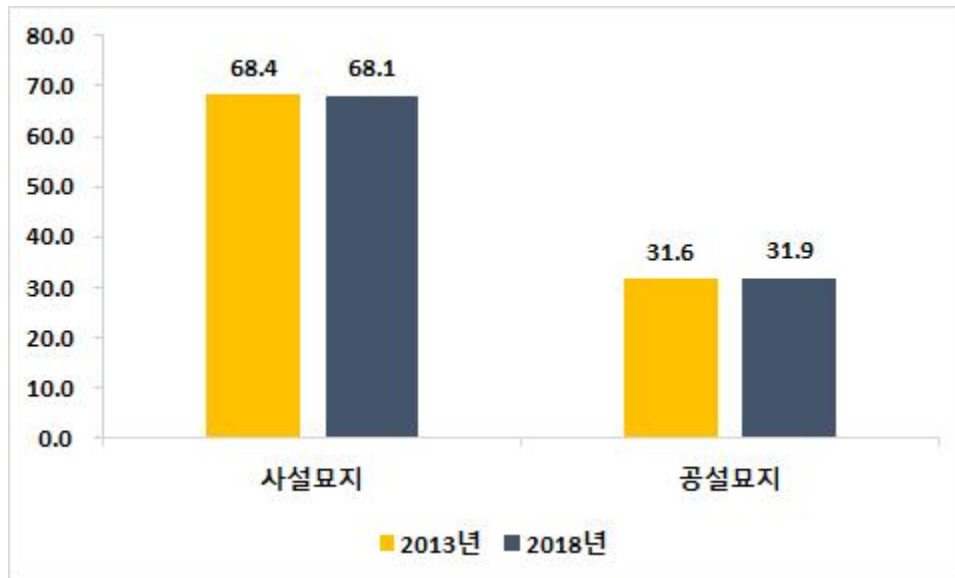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공설묘지	사설묘지
전체		116	31.9	68.1
성별	남성	68	36.8	63.2
	여성	48	25.0	75.0
연령	20대	15	20.0	80.0
	30대	34	35.3	64.7
	40대	42	31.0	69.0
	50대 이상	25	36.0	64.0
거주지역	동부	21	19.0	81.0
	서부	38	31.6	68.4
	남부	24	41.7	58.3
	북부	33	33.3	66.7
거주기간	5년 미만	14	7.1	92.9
	5년 이상-10년 미만	22	59.1	40.9
	10년 이상-20년 미만	38	28.9	71.1
	20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61.9
	30년 이상	21	19.0	81.0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고졸	15	20.0	80.0
	대재 이상	101	33.7	66.3
종교	무교	55	25.5	74.5
	불교	20	30.0	70.0
	기독교	25	48.0	52.0
	천주교	15	33.3	66.7
	기타	1	0.0	10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	0.0	10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35.0	65.0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6	42.3	57.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8	28.6	71.4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9	15.8	84.2
	750만원 이상	20	40.0	6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90	32.2	67.8
	없음	26	30.8	69.2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와 비교해보았을 때 사설묘지는 68.4%, 공설묘지는 31.6%를 차지해 본 연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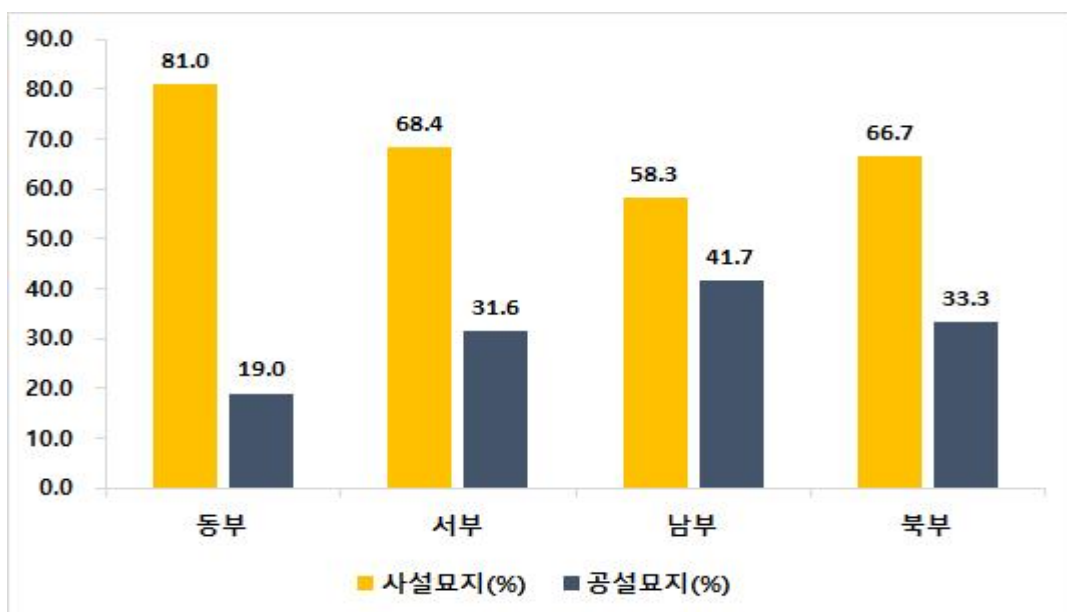
<그림 3-5> 희망하는 묘지 유형

(단위 : %)



- 희망하는 묘지 유형을 경기도의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설묘지에 대해 동부 81.0%, 서부 68.4%, 남부 58.3%, 북부 66.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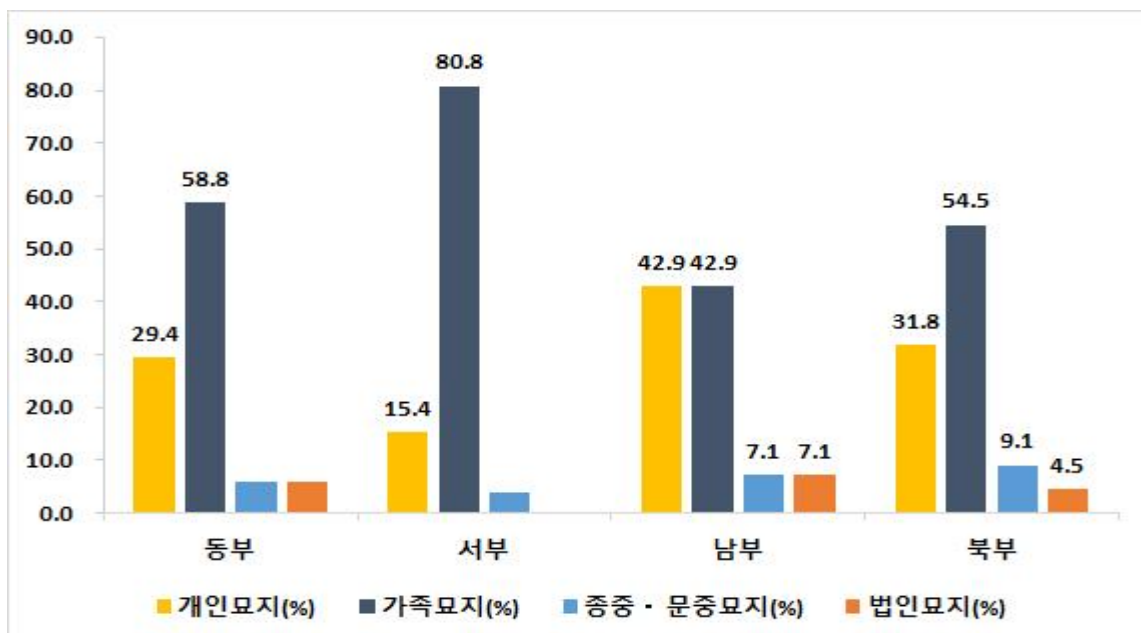
<그림 3-6> 권역별 희망하는 묘지 유형



(3) 희망하는 사설묘지 형태

- 희망하는 묘지형태로는 가족묘지 62.0%, 개인묘지 27.8%, 종중·문중묘지 6.3%, 법인묘지 3.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묘지 선호가 높은 것을 보아 죽음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의식이 큰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와 희망하는 묘지 유형을 비교해보면 가족묘지 56.9%, 종중·문중묘지 18.5%, 개인묘지 11.5%, 법인묘지 13.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중·문중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한 선호가 줄고 개인묘지에 대한 선호가 커졌음을 알 수 있음.
- 권역별 희망하는 사설묘지 형태를 살펴보면, 가족묘지는 서부 80.8%, 동부 58.8%, 북부 54.5%, 남부 42.9%로 나타났고 개인묘지는 남부 42.9%, 북부 31.8%, 동부 29.4%, 서부 15.4%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 지역 모두 사설묘지 중 가족묘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3-7> 권역별 희망하는 사설묘지 유형



(4) 부부합장묘 희망 여부

- 부부합장묘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116명 중 86명이 부부합장묘를 희망하여 74.1%가 부부합장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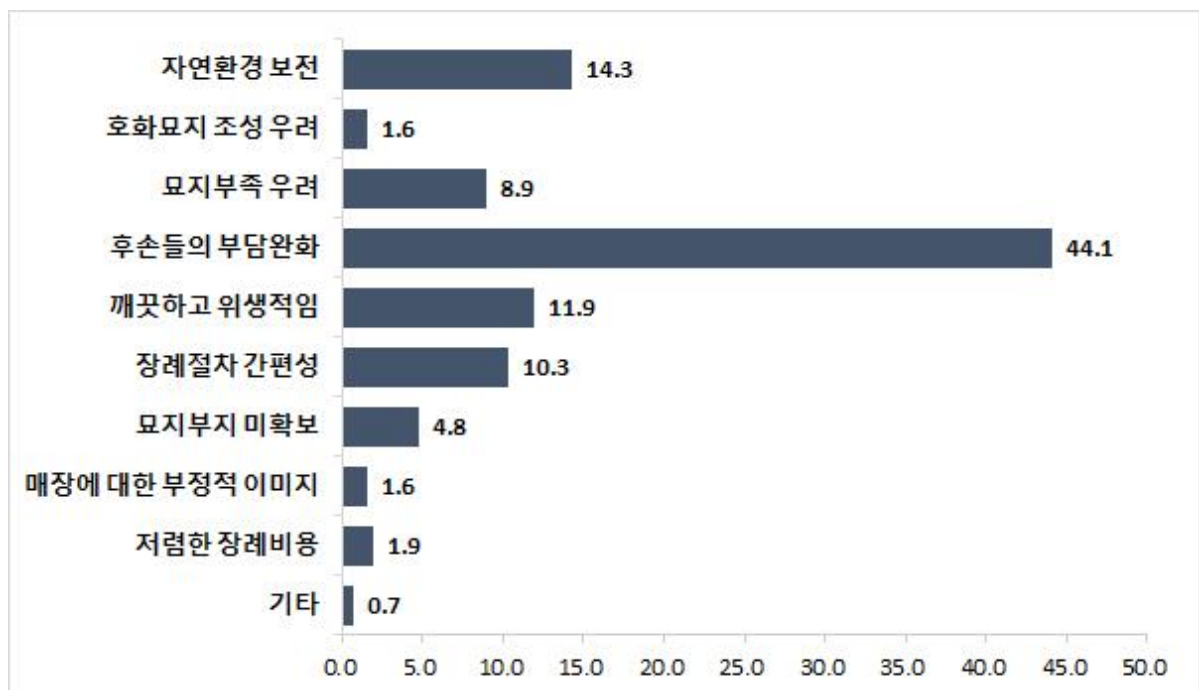
다. 화장

(1)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

- 화장을 선호하는 884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화장을 하면 후손들에게 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46.9%로 가장 높았음.
- ‘화장을 하면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12.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장례절차의 간편성’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성별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학력별, 종교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무관하게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화장을 희망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핵가족화, 1인 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적어지는데 반해 묘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향후 사회에서는 화장을 선호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3-8>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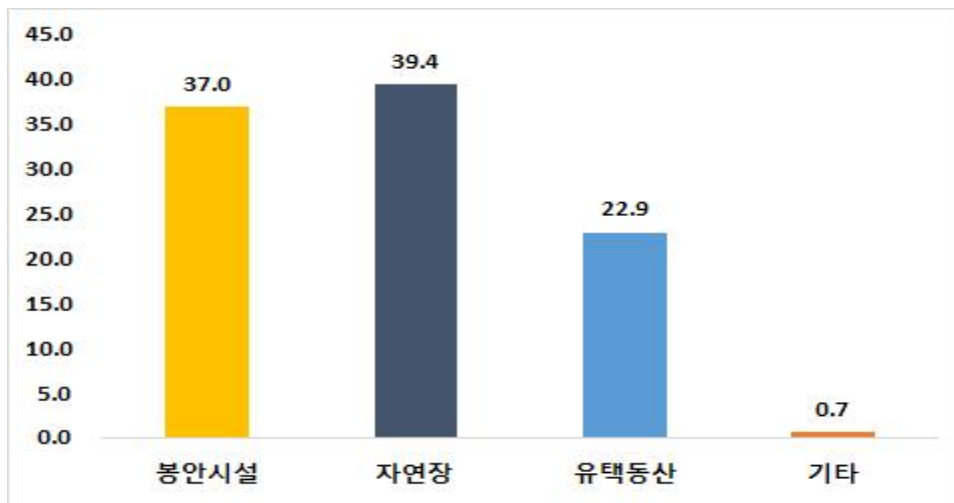
(2)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 화장을 선호하는 응답자 884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모시기)’ 39.4%, ‘봉안시설에 안치’ 37.0%, ‘유택동산에 뿌려 안치’ 22.9%, ‘기타’ 0.7%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에서는 자연장 51.2%, 봉안시설 41.6%로 응답자 대부분이 두 가지 방법을 선호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유택동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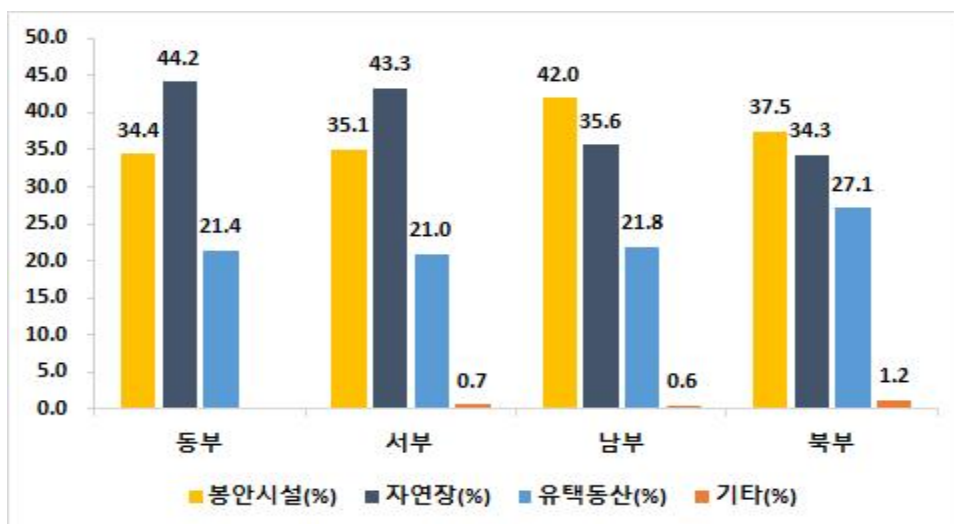
<그림 3-9>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단위 : %)



□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에 대해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모시기)’ 동부 44.2%, 서부 43.3%, 남부 42.0%, 북부 37.5%로 나타났다.

<그림 3-10> 권역별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표 3-5>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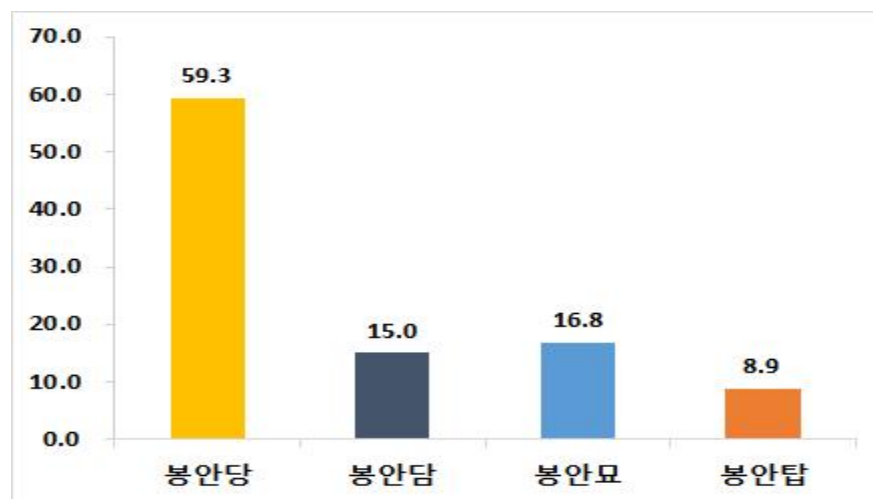
구분		인원수(명)	봉안시설	자연장	유택동산	기타
전체		884	37.0	39.4	22.9	0.7
성별	남성	433	40.2	38.6	20.8	0.5
	여성	451	33.9	40.1	25.1	0.9
연령	20대	106	40.6	33.0	21.4	0.0
	30대	209	42.1	39.2	21.0	0.7
	40대	327	36.4	41.3	21.8	0.6
	50대 이상	242	31.8	39.7	27.1	1.2
거주지역	동부	154	34.4	44.2	15.6	0.0
	서부	305	35.1	43.3	20.8	2.1
	남부	174	42.0	35.6	25.1	0.3
	북부	251	37.5	34.3	27.3	1.1
거주기간	5년 미만	96	47.9	36.5	20.3	0.0
	5년-10년	144	37.5	39.6	60.0	0.0
	10년-20년	299	36.8	37.8	28.3	1.0
	20년-30년	187	31.6	40.1	21.2	0.6
	30년 이상	158	36.7	43.0	25.6	0.6
학력	중졸 이하	5	40.0	0.0	16.5	0.8
	고졸	191	30.9	39.8	22.3	0.5
	대재 이상	688	38.7	39.5	20.2	1.0
종교	무교	468	35.7	38.0	16.7	0.0
	불교	127	39.4	43.3	29.7	2.7
	기독교	184	38.0	39.1	29.5	0.7
	천주교	99	37.4	41.4	17.6	0.0
	기타	6	50.0	33.3	25.5	1.6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7	43.2	24.3	22.7	0.0
	150만원-300만원	139	33.1	36.7	18.3	0.0
	300만원-450만원	227	42.7	39.6	21.2	0.9
	450만원-600만원	247	34.0	38.9	28.0	0.0
	600만원-750만원	119	40.3	37.0	17.6	5.0
	750만원 이상	115	31.3	50.4	13.9	4.3
장례경험 유무	있음	659	38.2	39.6	17.1	5.0
	없음	225	33.3	38.7	24.9	3.1

(3) 봉안시설

- 화장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봉안시설에 안치’에 응답한 32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봉안시설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공설 봉안시설이 71.9%로 사설 봉안시설에 비해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사설 봉안시설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사설 봉안시설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개인 및 가족 사설 봉안시설’이 57.6%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종교단체 사설 봉안시설’이 18.5%로 그 다음으로 높아 종교가 있는 경우 자체적인 종교단체의 장례절차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선호하는 사설 봉안시설의 유형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개인 및 가족 사설 봉안시설’이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화장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봉안시설에 안치’에 응답한 327명을 대상으로 부부합장 봉안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부합장묘 희망 여부와 비슷하게 75.8%가 희망하였음.
- 화장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봉안시설에 안치’에 응답한 32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을 물어본 결과, 1순위로 ‘봉안당’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전체 성별별, 거주지역별, 거주기간 별, 종교별, 월 가구소득별로 일관되게 ‘봉안당’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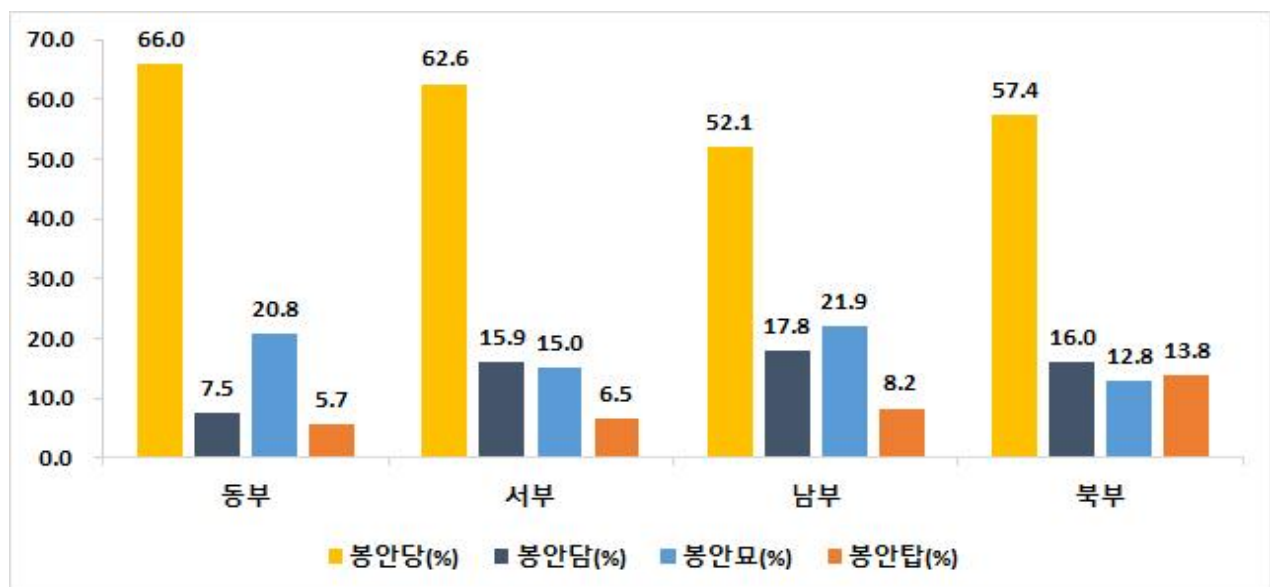
<그림 3-11> 선호하는 1순위 봉안시설 형태

(단위 : %)



- 선호하는 2순위 봉안시설 형태를 살펴보면, ‘봉안담’이 48%로 나타나 1순위 ‘봉안당’ 다음으로 선호하는 봉안시설 형태로 드러남.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전체 성별별, 거주지역별, 거주기간 별, 종교별, 월 가구소득별 등 일관되게 ‘봉안담’을 차순위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력 중졸 이하는 대다수의 응답자 특성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임.
 - 학력 중졸 이하에서는 1순위로 ‘봉안담’을 선택하였고 차순위로 ‘봉안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로 선호하는 봉안시설 형태에 관해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동부 66.0%, 서부 62.6%, 북부 57.4%, 남부 52.1%로 경기도 전 권역에서도 ‘봉안당’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선호 형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

<그림 3-12> 권역별 선호하는 1순위 봉안시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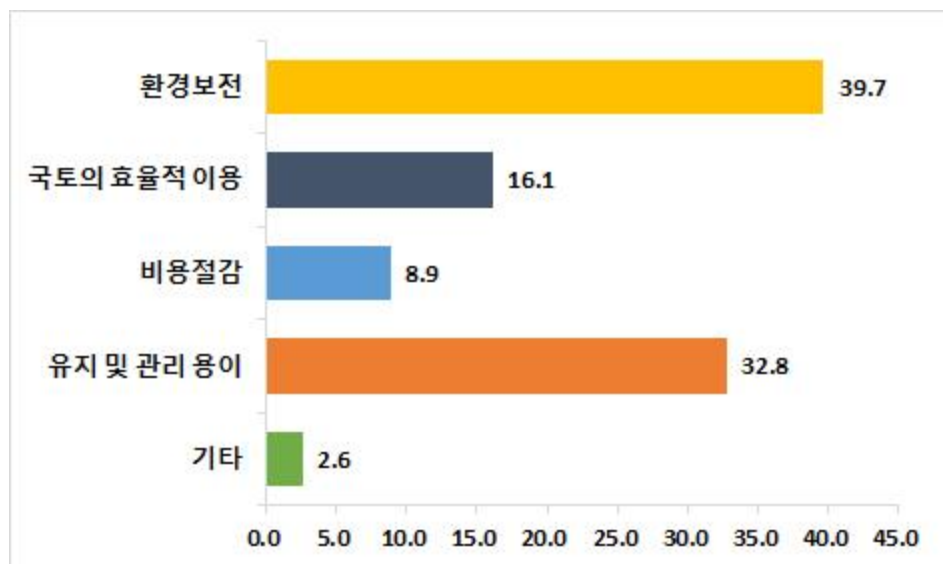
- 2순위 선호 형태에 대해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봉안담’에 대한 선호가 차순위로 높았으며, 동부 49.1%, 남부와 북부 47.9%, 서부 47.7%로 나타났다.

(4) 자연장

- 화장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자연장’에 응답한 348명을 대상으로 자연장을 선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 등 친환경적이기 때문에’라는 대답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기타 순으로 나타남.
- 유지 및 관리의 용이 혹은 비용 절감과 같이 개인적 이유에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보다 환경보전 혹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공의 측면에서 자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 화장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자연장’에 응답한 348명을 대상으로 부부합장 자연장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5.2%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로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를 물어본 결과, ‘수목형 자연장(수목장립 포함)’이 71.8%로 가장 높았고 ‘정원형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순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정원형 자연장’ 60.9%, ‘화초형 자연장’ 14.7%, ‘수목형 자연장(수목장립 포함)’ 14.1%, ‘잔디형 자연장’ 10.3%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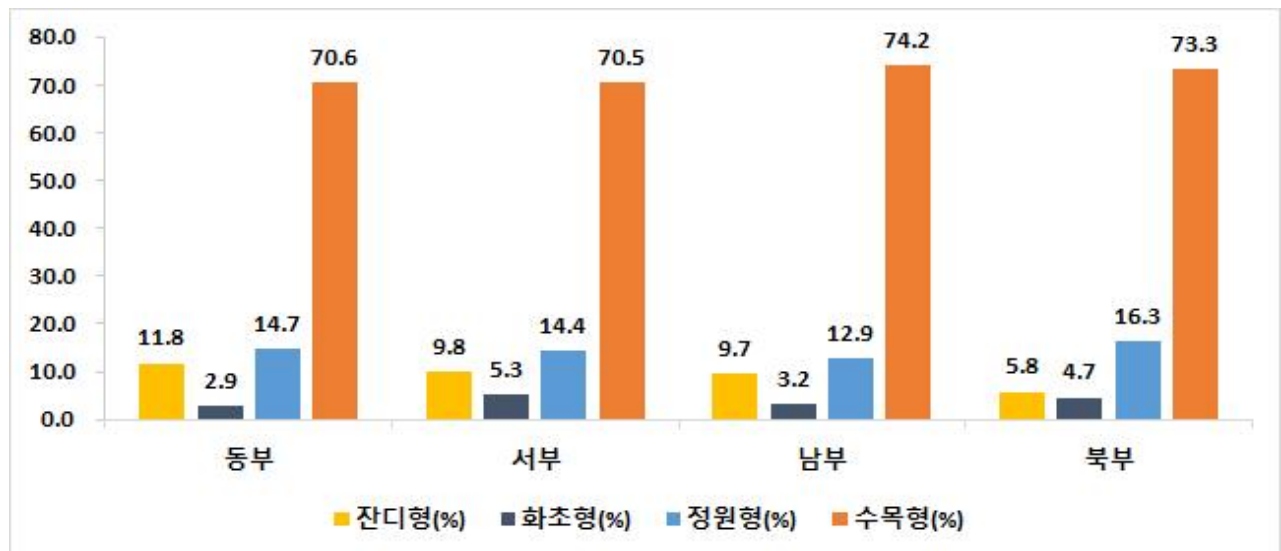
<표 3-6> 선호하는 1순위 자연장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전체		348	9.2	4.3	14.7	71.8
성별	남성	167	10.8	6.0	14.4	68.9
	여성	181	7.7	2.8	14.9	74.6
연령	20대	35	8.6	5.7	20.0	65.7
	30대	82	11.0	7.3	14.6	67.1
	40대	135	8.9	3.0	11.1	77.0
	50대 이상	96	8.3	3.1	17.7	70.8
거주지역	동부	68	11.8	2.9	14.7	70.6
	서부	132	9.8	5.3	14.4	70.5
	남부	62	9.7	3.2	12.9	74.2
	북부	86	5.8	4.7	16.3	73.3
거주기간	5년 미만	35	8.6	2.9	20.0	68.6
	5년-10년	57	10.5	3.5	19.3	66.7
	10년-20년	113	8.0	2.7	11.5	77.9
	20년-30년	75	10.7	6.7	13.3	69.3
	30년 이상	68	8.8	5.9	14.7	70.6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0.0	0.0
	고졸	76	5.3	2.6	11.8	80.3
	대재 이상	272	10.3	4.8	15.4	69.5
종교	무교	178	11.2	3.9	18.0	66.9
	불교	55	1.8	3.6	10.9	83.6
	기독교	72	9.7	6.9	12.5	70.8
	천주교	41	7.3	2.4	9.8	80.5
	기타	2	50.0	0.0	0.0	5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0.0	0.0	0.0	100.0
	150만원-300만원	51	11.8	3.9	13.7	70.6
	300만원-450만원	90	13.3	5.6	15.6	65.6
	450만원-600만원	96	4.2	2.1	12.5	81.3
	600만원-750만원	44	2.3	9.1	11.4	77.3
	750만원 이상	58	15.5	3.4	22.4	58.6
장례경험 유무	있음	261	8.4	4.6	15.7	71.3
	없음	87	11.5	3.4	11.5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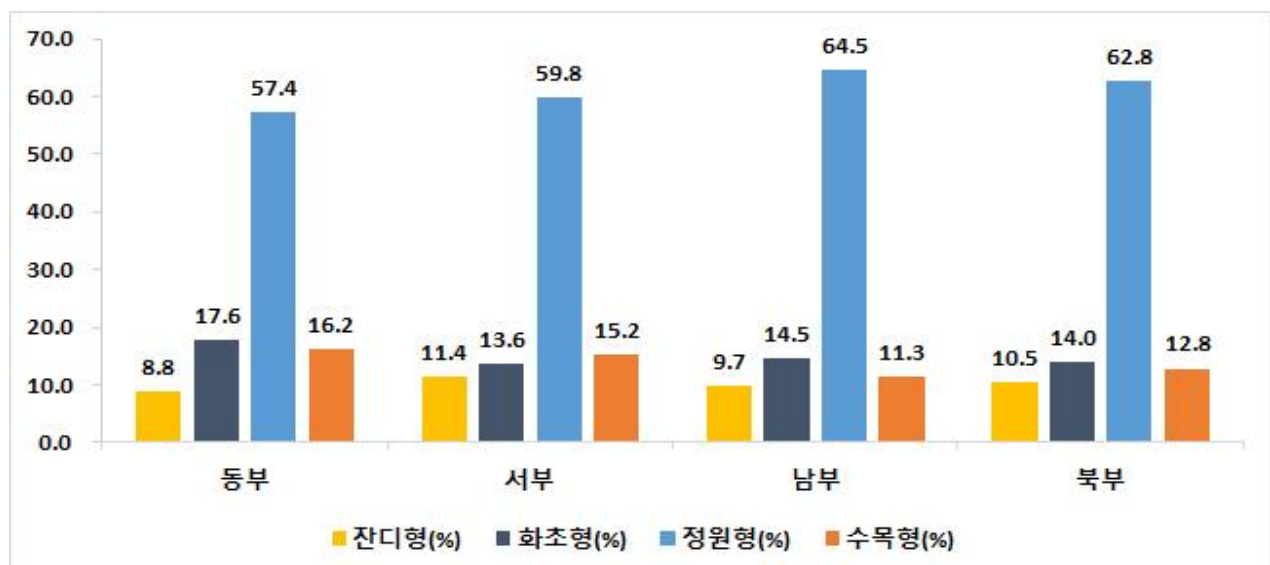
- 1순위로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에 관해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도 전 지역에서 ‘수목형 자연장(수목장림 포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남부 74.2%, 북부 73.3%, 동부 70.6%, 서부 70.5% 순으로 ‘수목형 자연장(수목장림 포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정원형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4> 권역별 선호하는 1순위 자연장 형태



- 차순위로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에 관해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원형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남부 64.5%, 북부 62.8%, 서부 59.7%, 동부 57.4%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 형태에 관해서는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그림 3-15> 권역별 선호하는 2순위 자연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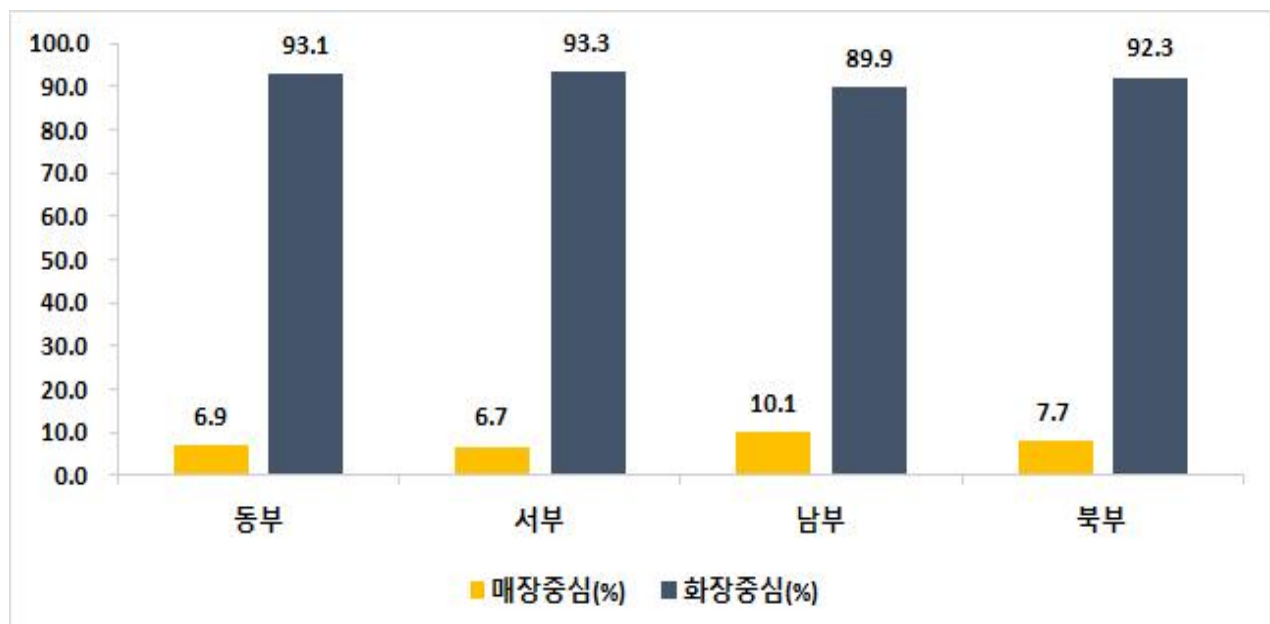


라. 경기도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1) 기본방향

- 경기도의 바람직한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3%가 ‘화장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전체 성별별, 거주지역별, 거주기간 별, 학력별, 종교별, 월 가구소득별, 장래경험 별로 살펴본 결과 특성과 상관없이 ‘화장중심’에 80~90%의 응답률을 보여, 응답자들이 앞으로 경기도 장사정책이 화장중심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에 대해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화장중심’이 서부 93.3%, 동부 93.1%, 북부 92.3%, 남부 89.9%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 전 지역 모두 ‘매장중심’보다 ‘화장중심’이 경기도 장사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16> 권역별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



<표 3-7>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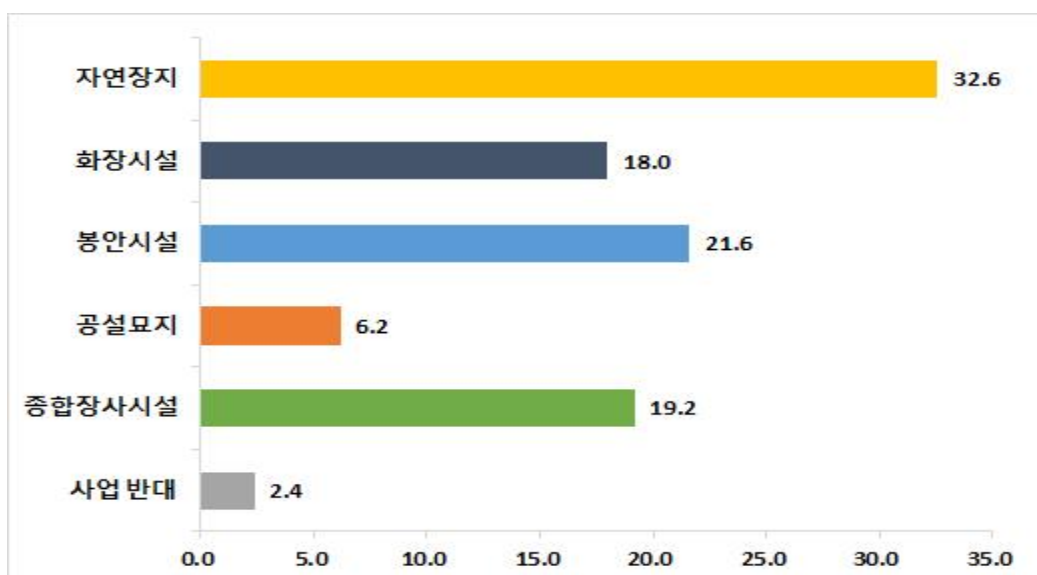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화장중심	매장중심
전체		1000	92.3	7.7
성별	남성	501	90.8	9.2
	여성	499	93.8	6.2
연령	20대	121	93.4	6.6
	30대	243	88.5	11.5
	40대	369	93.0	7.0
	50대 이상	267	94.4	5.6
거주지역	동부	175	93.1	6.9
	서부	343	93.3	6.7
	남부	198	89.9	10.1
	북부	284	92.3	7.7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92.7	7.3
	5년 이상-10년 미만	166	90.4	9.6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92.6	7.4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92.3	7.7
	30년 이상	179	93.3	6.7
학력	중졸 이하	5	100.0	0.0
	고졸	206	91.3	8.7
	대재 이상	789	92.5	7.5
종교	무교	523	92.5	7.5
	불교	147	91.2	8.8
	기독교	209	92.3	7.7
	천주교	114	93.0	7.0
	기타	7	85.7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90.0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92.5	7.5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92.1	7.9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93.8	6.2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93.5	6.5
	750만원 이상	135	88.9	11.1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92.4	7.6
	없음	251	92.0	8.0

- 거주하는 시·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가 37.6%로 가장 높았으며, ‘ 화장시설’ 29.0%, ‘봉안시설’ 23.0%, ‘공원화된 집단묘지(공원묘지)’ 10.4%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와 비교해보았을 때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하락한 반면 ‘ 화장시설’ 과 ‘공원화된 집단묘지(공원묘지)’에 대한 선호는 높아졌음.
- 거주하는 시·군에 가장 필요한 장사시설에 대해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가 동부 40.0%, 북부 39.1%, 서부 38.5%, 남부 31.8% 순으로 나타나 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장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 화장시설’은 남부 32.8%, 서부 29.7%, 동부 28.6%, 북부 25.7%로 나타났음.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묘지를 줄이고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 32.6%, ‘기존묘지를 줄이고 봉안시설 설치’ 21.6%, ‘기존묘지를 줄이고 종합장사시설의 설치’ 19.2%, ‘기존묘지를 줄이고 화장시설 설치’ 18.0%, ‘공설묘지 확대설치’ 6.2%, ‘재개발(공원화) 사업 반대’ 2.4% 순으로 나타났음.
-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게 묘지 확대설치보다는 기존묘지 재개발을 통해 화장 후 매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자연장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공원화 사업 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연장지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3-17>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

(단위 : %)



<표 3-8>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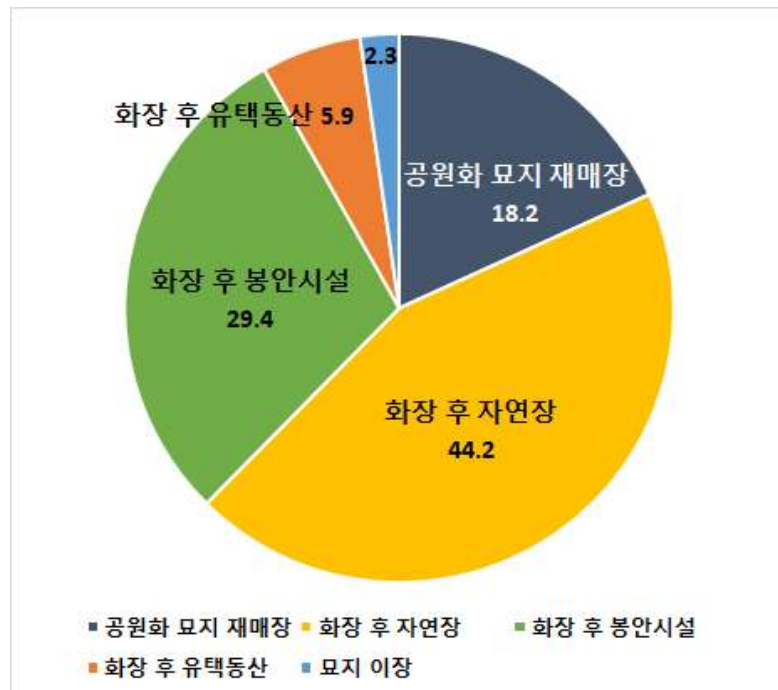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 설치	봉안시설 설치	공설묘지 확대설치	종합장사 시설의 설치	재개발 사업 반대
전체		1000	32.6	18.0	21.6	6.2	19.2	2.4
성별	남성	501	29.1	19.0	23.8	7.4	18.0	2.8
	여성	499	36.1	17.0	19.4	5.0	20.4	2.0
연령	20대	121	28.9	14.9	20.7	8.3	17.4	9.9
	30대	243	32.5	16.5	24.7	7.4	18.1	0.8
	40대	369	32.5	20.1	20.1	6.2	19.2	1.9
	50대 이상	267	34.5	18.0	21.3	4.1	21.0	1.1
거주지역	동부	175	35.4	16.6	21.1	8.6	17.1	1.1
	서부	343	35.3	17.2	17.8	5.2	22.7	1.7
	남부	198	31.8	22.2	23.7	4.0	15.7	2.5
	북부	284	28.2	16.9	25.0	7.4	18.7	3.9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27.3	13.6	29.1	9.1	18.2	2.7
	5년-10년	166	38.0	22.3	20.5	7.2	10.8	1.2
	10년-20년	337	31.2	19.9	22.3	4.5	20.2	2.1
	20년-30년	208	34.6	14.4	18.8	7.2	21.2	3.8
	30년 이상	179	31.3	17.3	20.1	5.6	23.5	2.2
학력	중졸 이하	5	0.0	20.0	20.0	20.0	0.0	40.0
	고졸	206	32.0	20.4	16.5	6.8	21.4	2.9
	대재 이상	789	33.0	17.4	22.9	6.0	18.8	2.0
종교	무교	523	30.6	20.1	19.7	6.7	20.3	2.7
	불교	147	37.4	15.0	25.9	6.8	12.9	2.0
	기독교	209	34.4	17.7	23.0	4.8	18.2	1.9
	천주교	114	31.6	14.0	23.7	5.3	22.8	2.6
	기타	7	42.9	0.0	0.0	14.3	42.9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30.0	17.5	20.0	7.5	17.5	7.5
	150만원-300만원	159	30.8	20.8	18.2	9.4	17.0	3.8
	300만원-450만원	253	27.3	19.0	25.3	5.1	21.3	2.0
	450만원-600만원	275	35.3	17.5	17.1	7.3	21.1	1.8
	600만원-750만원	138	31.9	19.6	27.5	2.2	18.8	0.0
	750만원 이상	135	40.7	12.6	22.2	5.9	14.8	3.7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33.0	17.4	21.4	6.1	20.2	2.0
	없음	251	31.5	19.9	22.3	6.4	16.3	3.6

- 기존 묘지 재개발 사업이 묘지가 있는 곳에서 진행될 시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으로는 ‘화장 후 자연장’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 후 봉안시설’, ‘공원화된 묘지에 다시 모시기 원함’, ‘화장 후 유택동산’, ‘다른 묘지로 이장’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8> 기존 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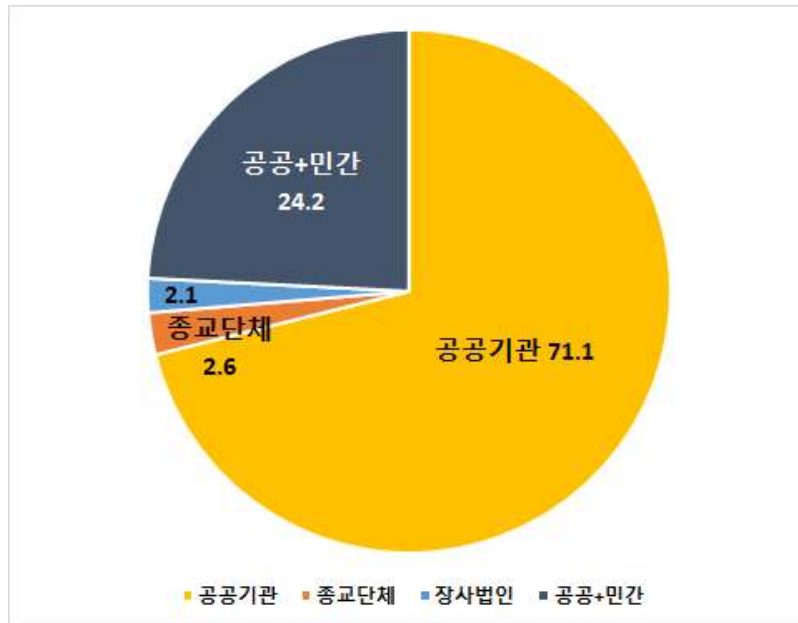
(단위 : %)



- 기존 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에 있어서 개장 후 재매장하는 방법보다는 화장 한 후 자연장,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집단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73.2%, ‘모름’ 20.6%, ‘반대’ 6.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소규모 집단묘지 재정비 후 자연장지로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남.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조성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71.1%,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 ‘종교단체’ 순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과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19>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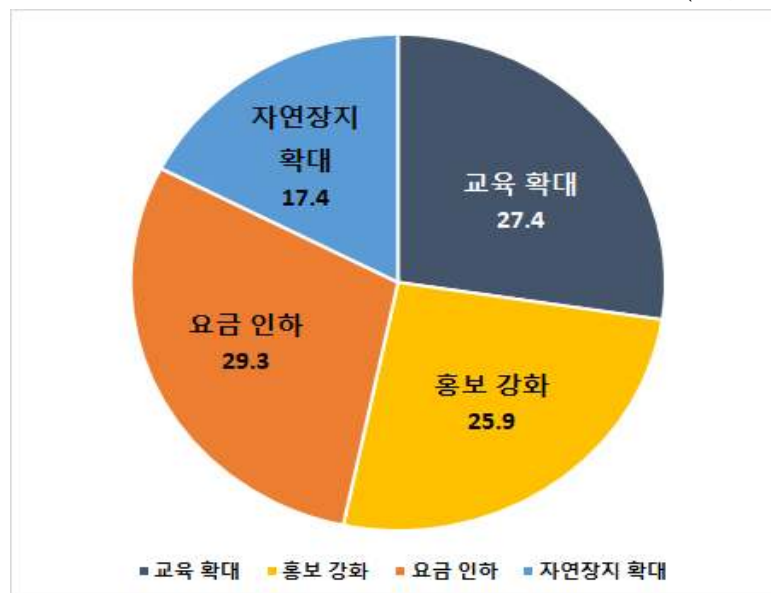
(단위 : %)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자연장 요금 인하’ 29.3%, ‘자연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27.4%, ‘자연장의 장점을 부각하는 홍보 강화’ 25.9%, ‘공설자연장지 조성 확대’ 17.4%로 고르게 나타남.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시 한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기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3-20>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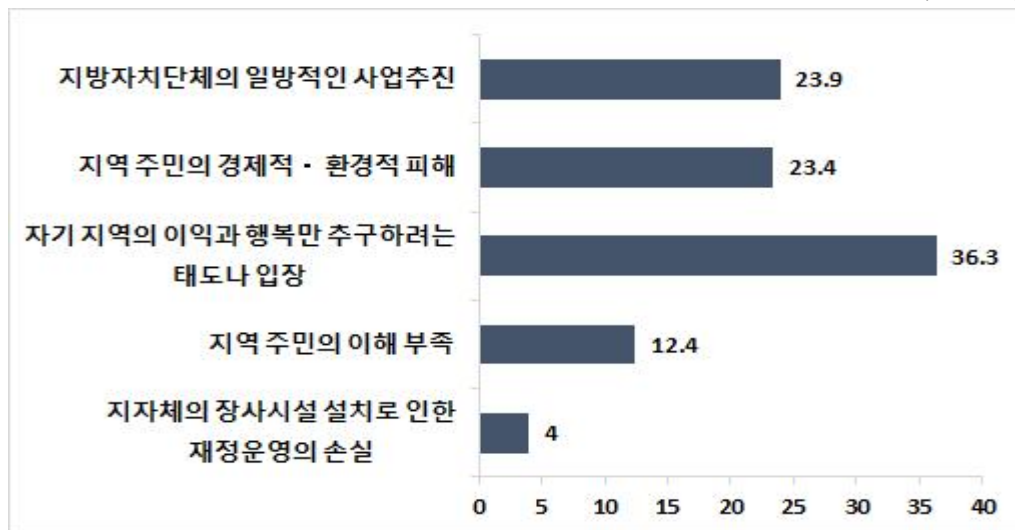
(단위 : %)



- 거주지 주변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하여, 장사시설의 설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핵심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순위와 2순위로 복수 응답이 가능토록 하였음.
-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시·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 1순위 주요요인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려는 태도나 입장’ 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1순위 주요요인

(단위 : %)



-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시·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 2순위 주요요인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 부족’ 이라고 답하였음.
-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시·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1순위 주요요인에 가중치를 두면, ‘자기 지역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려는 태도나 입장’ 이 월등히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장사시설 설치 시 갈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사시설 설치 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 홍보 및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3-9>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1순위 주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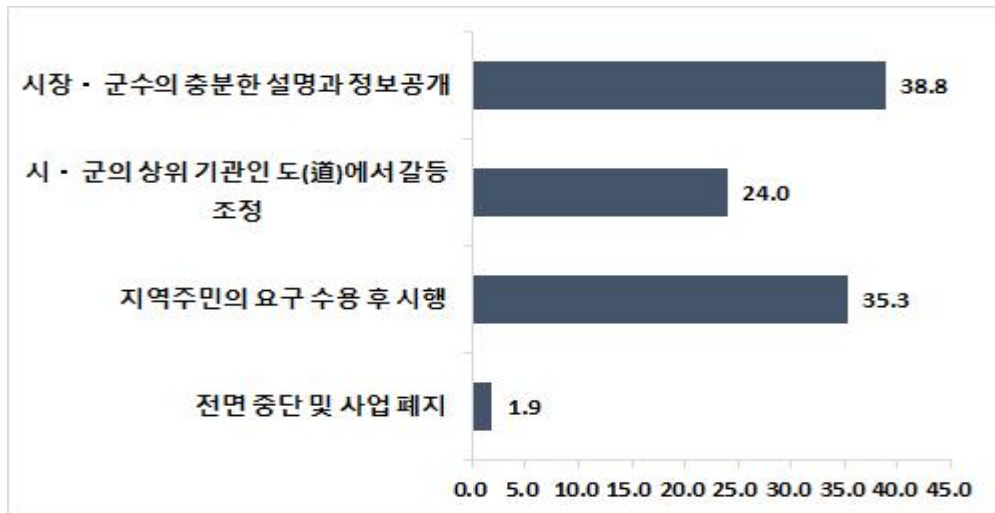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	지역 이기주의	지역 주민의 이해부족	지자체 재정운영 손실
전체		1000	23.9	23.4	36.3	12.4	4.0
성별	남성	501	23.6	21.0	39.3	11.8	4.4
	여성	499	24.2	25.9	33.3	13.0	3.6
연령	20대	121	22.3	28.1	33.9	11.6	4.1
	30대	243	23.9	24.3	32.1	14.8	4.9
	40대	369	26.0	22.8	35.8	12.7	2.7
	50대 이상	267	21.7	21.3	41.9	10.1	4.9
거주 지역	동부	175	21.7	24.0	34.9	15.4	4.0
	서부	343	23.9	25.4	35.3	11.1	4.4
	남부	198	22.7	25.8	35.9	12.6	3.0
	북부	284	26.1	19.0	38.7	12.0	4.2
거주 기간	5년 미만	110	22.7	28.2	30.9	13.6	4.5
	5년-10년	166	27.1	22.9	31.9	13.3	4.8
	10년-20년	337	24.0	25.2	35.6	12.2	3.0
	20년-30년	208	23.1	22.1	35.6	14.9	4.3
	30년 이상	179	22.3	19.0	45.8	8.4	4.5
학력	중졸 이하	5	0.0	40.0	60.0	0.0	0.0
	고졸	206	20.4	24.3	34.5	14.6	6.3
	대재 이상	789	25.0	23.1	36.6	11.9	3.4
종교	무교	523	22.9	25.6	34.4	13.2	3.8
	불교	147	28.6	21.1	36.7	8.2	5.4
	기독교	209	25.4	21.1	36.8	12.0	4.8
	천주교	114	19.3	20.2	43.9	14.9	1.8
	기타	7	28.6	28.6	28.6	14.3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0.0	35.0	25.0	7.5	12.5
	150만원-300만원	159	27.7	22.0	31.4	16.4	2.5
	300만원-450만원	253	20.6	24.5	37.9	12.3	4.7
	450만원-600만원	275	25.8	21.1	38.5	11.3	3.3
	600만원-750만원	138	24.6	24.6	37.0	10.1	3.6
	750만원 이상	135	22.2	23.0	37.0	14.1	3.7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23.8	23.0	38.2	11.7	3.3
	없음	251	24.3	24.7	30.7	14.3	6.0

- 이러한 갈등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는 ‘시장 군수의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 라는 답변이 38.8%로 가장 높았고, 바로 이어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후 시행’ 이 35.3%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2>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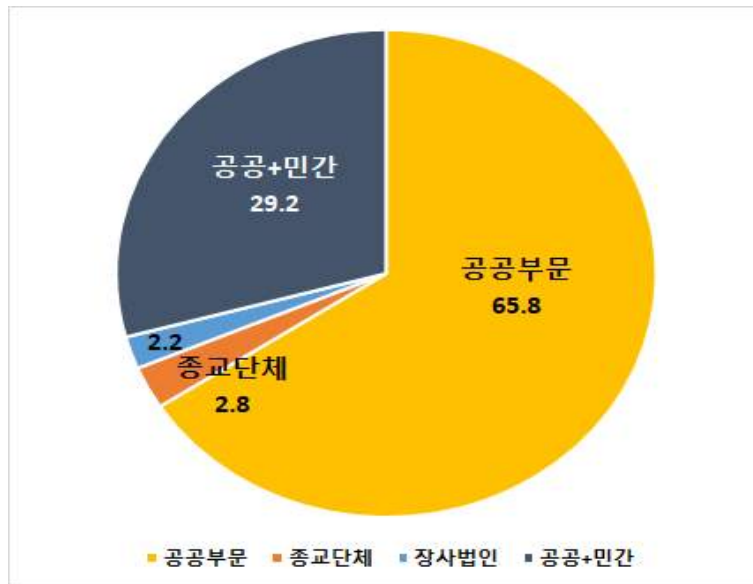
(2) 화장시설 (수원 · 성남 · 용인 · 고양 · 파주 지역 제외)

- 거주지역에 이미 화장시설이 있는 수원 · 성남 · 용인 지역과 서울의 화장시설을 서울시민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고양 · 파주 지역을 제외한 다른 경기도 시 · 군의 화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거주하는 시 · 군에 화장시설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3.0%, ‘필요하지 않다’ 28.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1.8%로 나타남.
- 반면, 같은 질문에 ‘필요하다’ 는 응답이 60.2%, ‘매우 필요하다’ 는 응답이 8.1%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나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꽤 높음을 알 수 있음.
- 거주하는 읍 · 면 · 동에 화장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 44.8%, ‘반대’ 20.2%, ‘모르겠음’ 35.0%로 나타나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기는 하지만 ‘모르겠음’ 의 비율도 높아 화장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거주하는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시 적합한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65.8%,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 ‘종교단체’, ‘장사법인’ 순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과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 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함.

<그림 3-23> 화장시설 설치 시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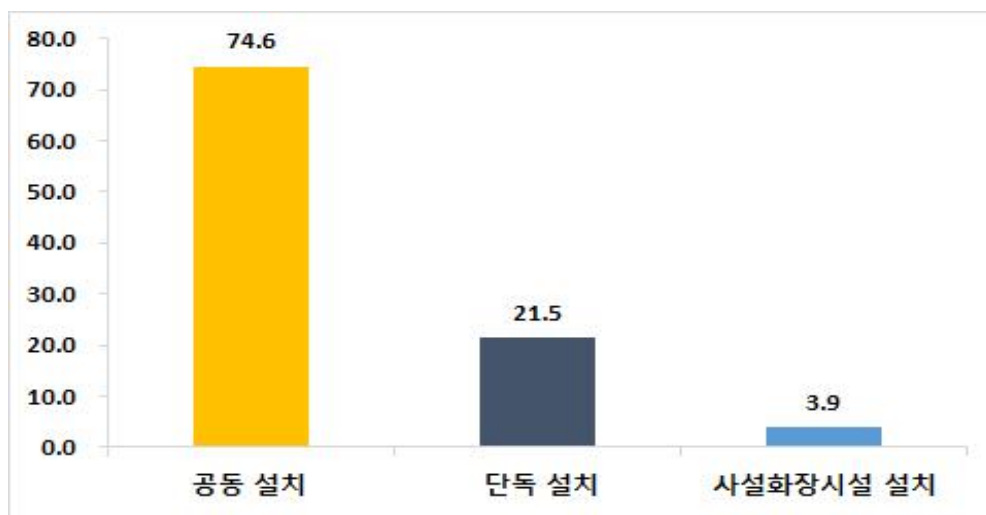
(단위 : %)



-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시 적합한 설치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른 시·군과 공동(권소사업 형태)으로 설치’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시·군의 독자적 설치’, ‘사설화장시설 설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4>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방법

(단위 : %)



- 비용 부담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화장시설의 설치 시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10>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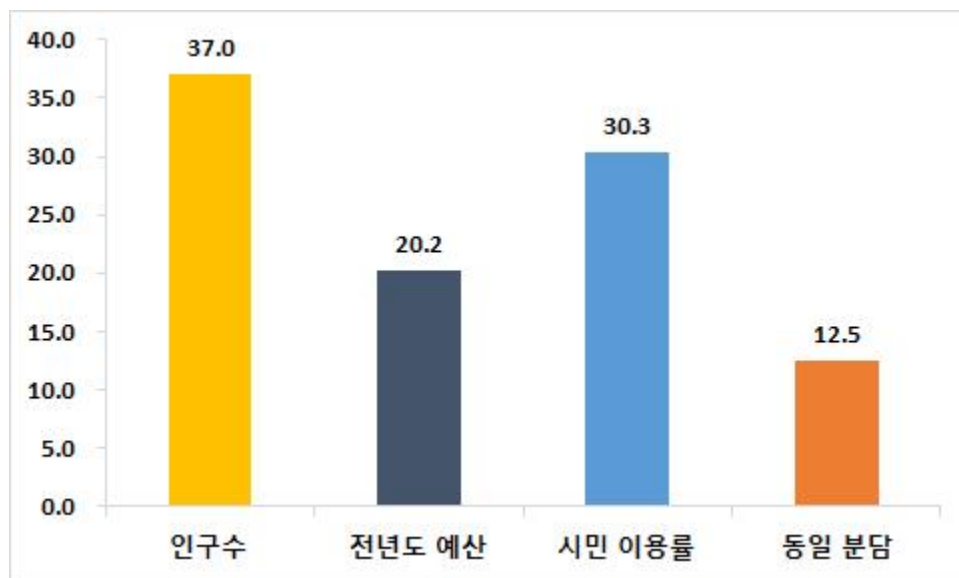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	독자적 설치	사설화장시설 설치
전체		743	74.6	21.5	3.9
성별	남성	372	74.7	21.8	3.5
	여성	371	74.4	21.3	4.3
연령	20대	87	71.3	23.0	5.7
	30대	187	79.7	17.6	2.7
	40대	263	73.8	20.9	5.3
	50대 이상	206	72.3	25.2	2.4
거주지역	동부	121	81.0	16.5	2.5
	서부	343	73.8	23.3	2.9
	남부	85	74.1	17.6	8.2
	북부	194	72.2	23.2	4.6
거주기간	5년 미만	86	79.1	17.4	3.5
	5년-10년	125	75.2	20.0	4.8
	10년-20년	236	75.8	20.3	3.8
	20년-30년	148	73.6	21.6	4.7
	30년 이상	148	70.3	27.0	2.7
학력	중졸 이하	4	50.0	50.0	0.0
	고졸	170	65.3	29.4	5.3
	대재 이상	569	77.5	19.0	3.5
종교	무교	394	72.6	21.8	5.6
	불교	114	81.6	17.5	0.9
	기독교	150	72.0	26.0	2.0
	천주교	80	80.0	18.8	1.3
	기타	5	60.0	0.0	4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51.6	35.5	12.9
	150만원-300만원	123	65.9	27.6	6.5
	300만원-450만원	199	71.4	26.1	2.5
	450만원-600만원	204	80.9	16.7	2.5
	600만원-750만원	96	81.3	16.7	2.1
	750만원 이상	90	80.0	14.4	5.6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76.9	20.6	2.5
	없음	189	67.7	24.3	7.9

-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시·군이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시, 바람직한 예산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37.0%가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른 분담’을 선호하였고 ‘시민의 이용률에 따라 분담’이 30.3%, ‘각 시·군의 전년도 예산에 따른 분담’ 20.2%, ‘동일하게 나누어 매년 분담’이 12.5%로 나타났다.
-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2014)에서는 ‘시민의 이용률에 따라 분담’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분담’ 36.9%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화성시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이 ‘이용률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음.

<그림 3-25> 화장시설 공동설치 시 예산분담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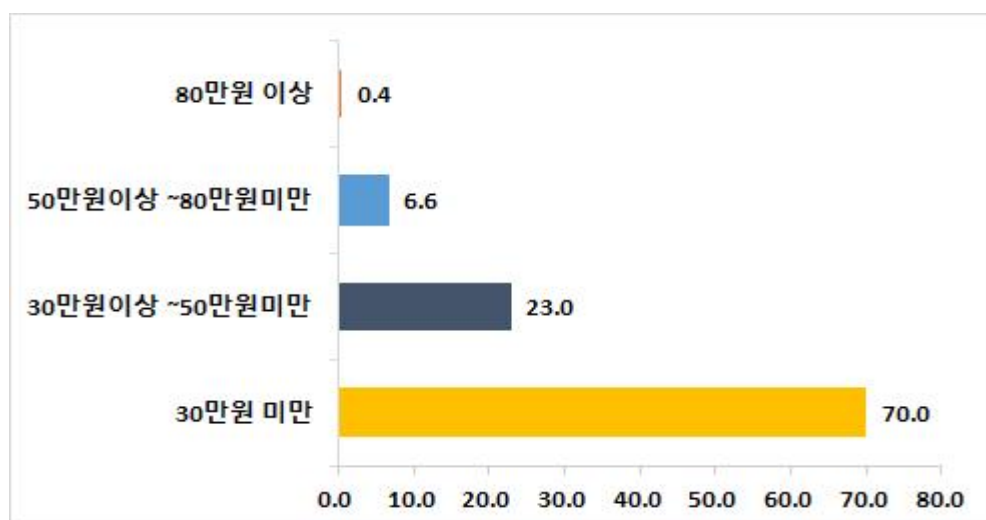


-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의 적정한 이용금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만원 미만’ 17.0%,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2.0%,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3.1%, ‘9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23.0%, ‘120만원 이상’ 5.0%로 나타남.
-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균 58.6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시·도민이 거주지역 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현재 해당 지역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요금을 내릴 필요가 있다’ 65.0%, ‘적정하다’ 30.4%, ‘현재보다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4.7%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의 적정한 이용금액에 대해 평균 약59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다른 시·군 주민이 거주지역 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현재 해당 지역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현재보다 비용을 내릴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향후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시·도민이 경기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경기도민과 다른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민의 사용료는 차이가 있어야 함’ 66.9%,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민의 사용료는 동일해야 함’ 이라는 의견이 25.7%로 나타나 화장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할 시 관내와 관외 사용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사용료에 차등을 둔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경기도민의 적정 사용료와 다른 시·도민의 적정 사용료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음.
- 경기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로는 <그림 5-34>과 같이 ‘30만원 미만’ 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시·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로는 <그림 5-35>와 같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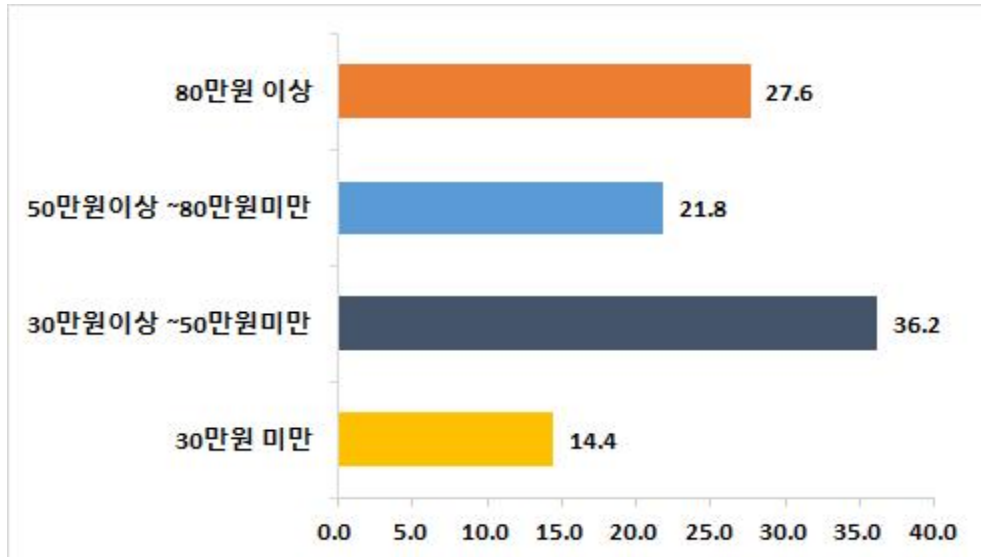
<그림 3-26> 경기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단위 : %)



<그림 3-27> 다른 시·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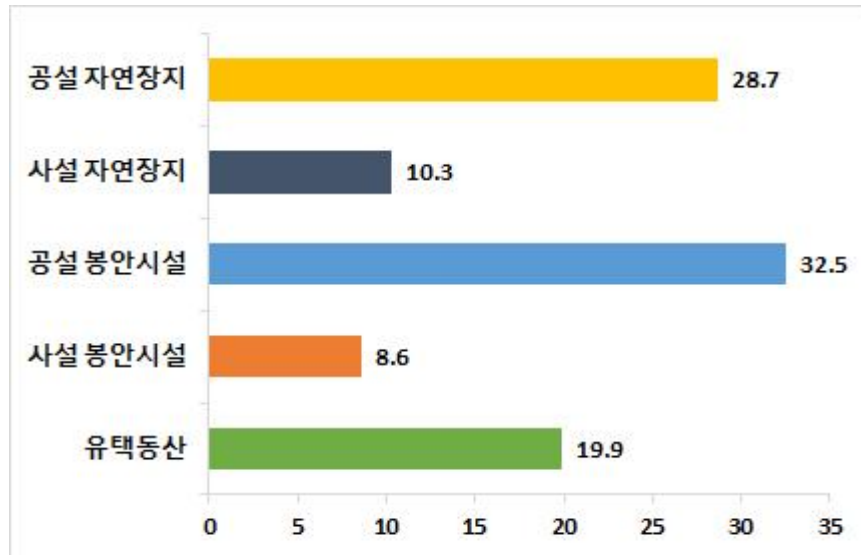


(3) 한시적 매장제도

- 2001년 1월 13일 이후 분묘 설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있다’는 대답이 26.5%였으며, ‘없다’는 대답이 61.1%, ‘모르겠다’는 대답이 12.4%로 나타남.
- 한시적 매장제도에 의해 분묘 설치기간이 종료된다면 이관 시 희망하는 장사시설을 조사한 결과, ‘공설 봉안시설’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공설 자연장지’가 30.5%로 높았고, ‘화장 후 산골(유택동산)’ 17.4%, ‘사설 자연장지’ 10.6%, ‘사설 봉안시설 8.0% 순으로 나타남.
- 같은 유형의 장사시설 중에서 사설 장사시설보다는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유택동산에 대한 선호도 또한 사설 장사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8> 한시적 매장제도에 의한 분묘 이관 시 희망하는 장사시설

(단위 : %)



- 한시적 매장제도의 60년 매장기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60년은 길다’ 43.1%, ‘60년은 짧다’ 23.4%, ‘모르겠음’ 33.5%로 나타났다.
-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정 매장기간이 평균 49.9년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매장기간인 60년을 길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정한 매장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장사문화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식을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경기도민 88.4%가 화장을 매장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조사 결과의 화장 선호율인 83%보다 더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 경기도 화장률인 88.3%보다 높은 수치임.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학력, 종교, 월 가구소득, 장례경험에 상관없이 모두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음.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무관하게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화장을 희망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적어지는데 반해 묘지관리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매장의 경우 선호도가 11.6%에 그쳐 지난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조사 결과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음.
 - 신규 묘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이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로 가고 있고, 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부합장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으므로 공설묘지 내 가족묘지 형태(부부합장묘 · 부부합장봉안 · 부부합장자연장 시설 등)을 확대하는 방안과 거주하는 시 · 군에 가장 필요한 장사시설로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이 가장 높으므로 기존의 묘지를 재개발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으로는 자연장과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가 각각 39.4%, 37.7%로 비슷하게 높았음.
 -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으로 자연장과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하나,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 시 선호하는 개발 형태나 이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자연장이 봉안시설보다 높아 앞으로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연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유지 및 관리의 용이 혹은 비용 절감과 같이 개인적 측면보다는 환경보전 혹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공의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자연장 형태에 대해서는 수목형(수목장립 포함)이 71.8%로 다른 형태보다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 자연장지 조성 시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봉안시설의 경우 공설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향후 안치가능구수가 적고 사설 봉안시설은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선호가 그리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경기도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은 화장중심으로 나아가야 함.

- 경기도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3%가 경기도의 바람직한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으로 화장중심을 선택하였음.
- 그러나 거주하는 시·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를 우선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화장시설로, 화장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넷째,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에 대해서는 자연장지 조성이 32.6%로 가장 높았고 공설묘지 확대설치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로 인한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에 있어서 개장 후 재매장하는 방법보다는 화장한 후 자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집단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73.2%가 찬성하였음.
-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게 묘지 확대설치보다는 기존묘지 재개발을 통해 화장 후 매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자연장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공원화 사업 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연장지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의 주체로는 공공기관을 선호함.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조성에 적합한 주체 및 거주하는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시 적합한 운영주체에 관한 설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각각 71.1%와 65.8%,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이 각각 24.2%와 29.2%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화장시설 설치 시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함.

□ 여섯째, 장사시설 설치 과정 중 주민 갈등이 발생할 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경기도민은 전반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장사시설 설치 시 갈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사시설 설치 시 공공기관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 홍보 및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 민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갈등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는 ‘시장 군수의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 라는 답변이 38.8%로 가장 높았고, 바로 이어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후 시행’ 이 35.3%, ‘시·군의 상위 기관인 도(道)에서 갈등조정’ 24.0%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주민갈등 해결에 관해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곱째, 화장시설 설치 시 적합한 설치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른 시·군과 공동(컨소시엄 형태)으로 설치’ 가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용 부담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화장시설의 설치 시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관외 화장시설 이용료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른 시·도민이 거주지역 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현재 해당 지역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이용료 인하 65.0%, 적정 30.4%, 이용료 인상 4.7% 순으로 나타나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민들도 현재 타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관외 시민에게 관내 시민의 이용료에 비해 5배에서 20배 정도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홉째, 한시적 매장제도의 매장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60년 매장기간에 대해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43.1%로 가장 높았고, 2014년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60년의 기간이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나 되었음.
-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정 매장기간으로는 20년 이상 ~ 40년 미만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매장기간은 49.9년으로 조사되어 적정한 매장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 4 장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제1절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

제2절 2013-2017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평가

제3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요 추계

제4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제 4 장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제 1 절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

1. 정책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적 변화

□ 선호하는 장법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 수요의 다변화

□ 죽음 자체를 조망하는 계획 수립 필요

- 장사제도 전반을 점검해 국민들의 요구와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

2.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가. 정책의 성과

□ 인프라 확대

- 화장률의 경우 연도별로 계획 대비 2% 내외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기간 내 화장로 공급계획 대비 96.4%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및 기존 화장시설에 화장로를 수급
- 자연장지 수급 계획 대비 26.3% 초과 달성하여 기간 내 자연장지 조성 시군구가 21개 증가
- 공설 봉안당 안치구수 공급계획 대비 10.9% 초과 달성

나. 정책의 한계

□ 장사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공급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 공설 봉안시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설 봉안시설과의 협력 또는 매입검토 방안 필요
-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확충 전략은 효과가 있었지만 시도별·지역별 편차 큼

□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및 국민선호도 반영의 부족

- 기존 장사방법 외 장사방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나 제도화가 미비
-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실제 자연장지 안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

□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국민인식 전환 미흡

- 이용자에게 장사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
-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장사시설을 인식하는 장례문화로의 전환 미흡

□ 가족구조 및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로 초점 전환 필요

3.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목표

<그림 4-1>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목표

비전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목표	•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 공급 •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 • 화장률 90% + 자연장지 이용률 30%		
정책 과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①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② 지역 간 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확대 ③ 친자연적·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조성 ④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 ⑤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 도입 등 갈등관리 체계 고도화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①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및 지역별 수급계획 내실화 ② 장사시설 평가제도 및 수목장림 인증기준 도입 ③ 산골 등 변화된 장사문화 수용 ④ 장사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⑤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관련 인력 운영 개선 ⑥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① 장사시설의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②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e하늘장사시스템 고도화 ③ 장사시설의 관리기준 내실화 ④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⑤ 무연고 사망자·위안부피해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국민인식 개선	①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 ②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 ③ 친자연적 장례문화 대국민 홍보 강화	

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추진방향

□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장 수요를 확대시켜 2022년 30% 도달을 목표로 추진
 - 전체적인 장사시설의 공급은 충분한데 반해 시도별 편차가 존재해 균형 있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
- 지역 간 공동·복합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 확대
 -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 공동 설치를 유도하여 장사시설의 과잉공급 방지, 재정 절감, 이용률 및 효율성 제고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One-Stop 장례 편의 제공
 - 공동·복합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설치 유도를 위한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 친자연적·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조성
 - 다양한 수요에 맞는 자연장 형태를 조성하고 공원 같은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
 - 장사시설을 추모·휴식·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생활공간의 일부로 재구성
-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
 - 지역수급계획에 집단형 불법분묘 정비 및 분묘 개장 촉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한시적 매장제도 적극 홍보
 -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원·자연장지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 분묘 개장 후 봉안 및 자연장할 경우 행정적 지원 강화
-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 도입 등 장사시설 갈등 관리체계 고도화
 -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계획의 심의·자문 및 갈등 조정 지원
 - 장사시설 설치대상 지역 선정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모·심사방식의 도입으로 객관성 제고
 - 광역시 갈등조정위원회, 지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및 과정의 정당성 확보
 -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인센티브 제공

□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 장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
 - 산골, 수목장림 운영 및 관리, 화장시설 대기질, 장사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 관련 사항 논의
-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지역별 수급계획 내실화
 - 장사시설 확충 관점에서 장사정책 전반의 종합계획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하고 장사정책 위원회에서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 지자체는 지역수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고 필요시 보건복지부가 지역수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시 · 군 · 구에 장사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만 시 · 군 · 구 지역수급계획 수립
- 장사시설 평가제도 및 수목장림 인증기준 단계적 도입
 - 장사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필요
 - 자연장지의 자연친화적 조성과 이후 생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우수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 검토
- 산골 등 변화된 장사 문화 수용
 - 자연장 범위 확대, 다양한 장례방법 수용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
 -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거부감 최소화
- 장사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등
 - 민간 참여 확대, 자연장지 조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법인묘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전환시 법인묘지의 변경 허가로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같음 검토
 - 자연녹지 · 생산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관련 인력 운영 개선
 -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실시
 - 장사 관련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검토
 - 장례식장 영업자 · 종사자 교육이수 주기 개선 검토
-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 자문단 운영 및 장사시설 평가 실시 등 역할 확대
 - 정부의 장사정책 개발 지원 및 연구 수행 기관으로 육성하고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 국가적 재난 · 재해시 신속한 장례지원 기능 확대 및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운영 등 기능 강화

□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제고

- 장사시설의 불공정 · 불법행위 방지(이용자 권익 보호)
 - 장사시설 관련 이용료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장사시설의 가격 변경 시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가격 현행화 규정 신설
 - 불공정 행위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e-하늘 장사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가 장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4시간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이용 불편사항 및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실시
- 장사시설 관리기준 내실화
 - 자연장지 조성 및 조성 후 보호 · 유지 ·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 규제물질 준수 및 노후화장시설의 공해방지시설 설치
 - 맞춤형 · 이동형 화장로 설치 · 운영 검토
-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운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 국가재난대비 장사지원센터 장례지원반의 체계적 관리 및 기능 확대
- 무연고 사망자 및 위안부 피해자 등 장례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장례절차 매뉴얼 개선
 - e-하늘 장사시스템에서 무연고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 위안부피해자 별도 묘역조성 및 추모비 건립으로 역사적 치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 활용
-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
 - 장사시설을 생활공간의 일부로 인식하는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조성
 - 지역친화적 소규모 공설자연장지 조성 시범사업 검토
-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
 -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실시
 -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
- 친자연적 장례문화 대국민 홍보 강화
 -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보, 한시적 매장제도, 불법분묘 개장신고 허용, 개 · 화장장려금 및 시설이용감면 등의 혜택 등
 - 장례문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식, 윤달, 명절 기간의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제 2 절 2013-2017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평가

1. 경기도 장사정책의 추진배경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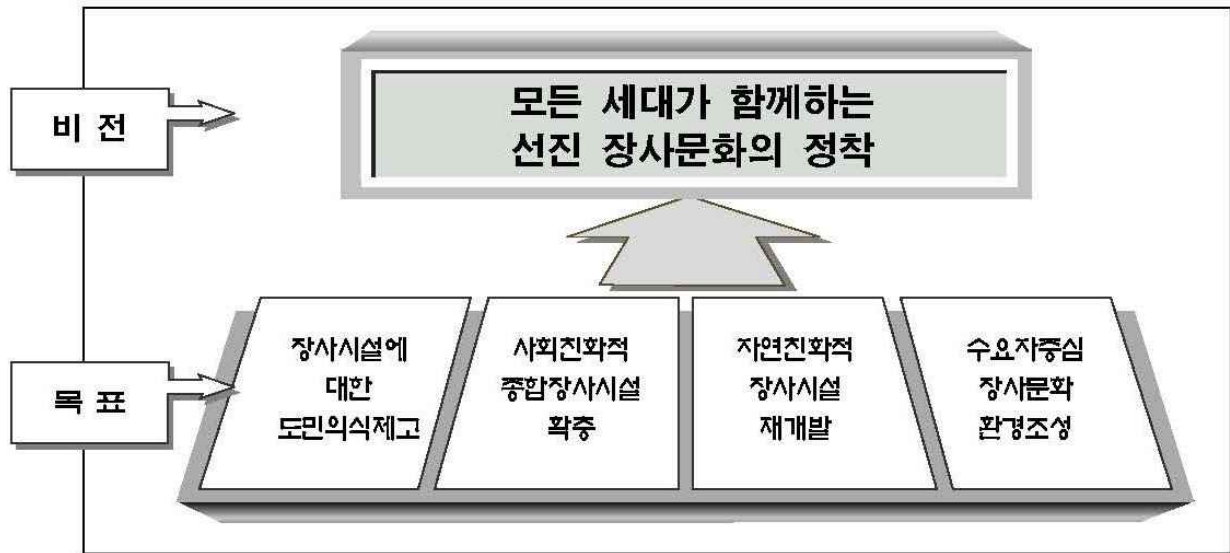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 장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사문화도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장사정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됨.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화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현재 수원 9로, 성남 15로, 용인 11로 등 총 35로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수요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지만, 장래 수요를 고려할 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장법(葬法)인 매장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인 자치단체가 많아 매장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반영한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비전 및 정책 목표

- 경기도 장사정책의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
 - 저출산·고령사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
 - 5년 중장기 수급 계획 및 매년 시행점검을 통한 장사시설의 적기공급
 - 사회경제적 발전과 전통이 잘 조화되는 장사문화의 합리적 개선
 - 장사문화 발전 장애요인 제거 및 제도적 기반강화
 - 수요자 중심의 장사문화산업 발전

<그림 4-2> 경기도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 경기도 장사정책의 정책 목표

-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
 - 삶과 죽음의 공간을 분리하는 장사문화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전환
 - 죽음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복지시설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선호시설인 종합문화시설로 승화
- 사회친화적 종합장사시설의 확충
 -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원화된 공간으로 시설 확충
-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개발
 - 기존 공원묘지에 대한 재개발을 진행하여 자연장과 같이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문화, 체육,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복지적인 종합장사시설의 확충
- 수요자 중심 장사문화 환경조성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합한 장사문화를 발전시키고 장사시설의 고품격 현대화 및 시설기준 마련으로 장사문화산업의 질적 수준 및 접근성을 제고

2. 경기도 장사시설의 확충 전략

가. 기본 방향

-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
 - 5년 주기의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장사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의 계획을 점검하고 행정적·재정적 전달 체계를 구축
-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사정책 추진
 -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차원에서 장사문화시설 확충
- 매장 및 화장 등 장사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개인묘지를 지양하고 집단화하여 사후 관리를 위한 행정정보를 전산화
- 민간 참여 유도
 - 화장시설 설치 후 운영 등에 민간(법인 등) 자원을 활용

나. 확충 전략

- 화장시설의 균형적 확충
 - 시·군간 권역별 공동설치를 장려 등 지역별, 유형별 장사시설 중장기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단계적 장사시설의 확충
- 자연장 중심의 장사 문화 확산
 - 여전히 화장 후 자연장보다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장사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
- 한시적 매장제도의 엄격한 시행 및 묘지 재개발로 매장 공간 확보
 - 시한부묘지제도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묘지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연장지로의 개발 및 전체 공원화의 방향으로 묘지 재개발

□ 봉안시설의 엄격한 관리

- 봉안묘(탑)를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봉안당, 봉안담으로의 설치 유도

▼ 경기도 장사시설 유형별 수급방안 (2014년~2018년)

구분	장사시설 수급여건	장사시설 수급방안	
묘지	▶ 2030년까지 공설공동묘지 여유 ▶ 2022년 31,000기 여유	▶ 신규설치 최대한 제한 ▶ 기존묘지 재개발로 화장시설 혹은 자연장지 설치	
화장시설	▶ 2014년부터 부족 ▶ 2022년 28개 화장로 부족	▶ 시·군간 공동설치 장려	
봉안시설	▶ 2021년부터 부족 ▶ 2022년 34,661구 부족	▶ 자연장지 조성 ▶ 봉안시설 설치 시 봉안당 혹은 봉안담 설치 장려	
자연장	▶ 2015년부터 부족 ▶ 2022년 235,494구 부족	▶ 자연장지 설치 확대 ▶ 기존묘지 재개발	

3.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

가. 정책의 성과

□ 인프라 확대

- 화장률의 경우 2013년 82.5%에서 2017년 87.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 화장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화장시설의 경우 시·군간 공동설치를 장려하여 도내 여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자연장 중심의 장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내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 2013년 8개소에서 2017년 12개소로 자연장지를 확충하였음.
- 공설 봉안당의 경우 2013년 16개소에서 2017년 20개소로 증가하였음.

나. 정책의 한계

□ 장사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경우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로 화장시설 확충이 되지 않고 있음.
- 화장시설의 경우 경기도 내 3개소가 있으며, 주로 남부 권역에 화장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북부 권역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경기동북부 8개 지역 공동 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되었음.
- 서부 권역의 경우도 2013년부터 화성시가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완공기한이 연기된 상태임.

□ 자연장에 대한 선호와 수요의 불일치 문제

- 도민 설문조사 결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실제 자연장지 안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함.
- 공설 자연장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개소수가 적고 수요자의 요구, 기호, 취향에 맞지 않는 시설 설비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설 자연장의 경우 비용이 비싸고 신뢰가 낮기 때문임.
- 선호가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요 추계

1. 장사시설 수요 추계 개요

-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국가전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경기도 장사시설을 추정함.
- 수요 추계는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수요는 장사방식 및 각 장사시설별 유형에 대한 선호도로 추정함. 공급은 각 장사시설 별로 추정된 수요를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을 뺀 값으로 산출함.
 - 적정 규모는 단순히 추정 수요에서 현재 공급 가능 규모를 뺀 값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규모를 의미함.
- 장사시설 수요 추계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계열자료와 경기도 장사시설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선호도 결과를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함.
 - 경기도민의 사망자 추이, 매·화장 추이 등의 기초자료는 통계청 자료와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를 활용함.
 - 장사시설의 유형별 수요 추계를 위해 경기도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함.
- 수요 추계 기간은 2035년까지 설정하였음.
- 수요 추계는 경기도 지역을 기본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북부권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북부와 서북부로 구분함.
 - 각 권역은 지리적 접근성,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부적으로 구분한 것임.
 - 5개 권역은 다음과 같음.

<표 4-1> 경기도 권역 구분

권역	해당 자치단체	비고
동부 (6)	광주, 성남, 양평, 여주, 이천, 하남	
서부 (10)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 화성	
남부 (5)	수원, 안성, 오산, 용인, 평택	
동북부 (7)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서북부 (3)	고양, 파주, 연천	

2.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위한 기초 통계 추정

가. 자료 및 예측방법

- 장사시설 수요 추계 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통계는 인구나 화장률임.
 - 인구는 통계청의 경기도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 화장률은 추정을 위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계열자료(2008년~2017년)를 사용,
 - 화장 후 유골안치를 위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장사시설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선호도 결과를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함.

나. 인구 및 사망자 추계

(1) 인구 추계

- 경기도의 장래인구추계를 위하여 통계청의 경기도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였음.
- 경기도의 2035년까지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경기도의 인구는 2018년 12,955,219명에서 2034년 13,972,1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35년에는 13,970,453명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4-2> 경기도 인구 전망

(단위 : 명)

구분	총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12,955,219	1,970,426	4,517,813	3,147,840	1,810,853	1,508,287	
2019	13,092,979	1,997,845	4,541,815	3,190,433	1,830,376	1,532,510	
2020	13,220,552	2,023,515	4,563,648	3,230,076	1,848,353	1,554,960	
2021	13,319,701	2,044,318	4,576,830	3,263,131	1,861,999	1,573,423	
2022	13,411,284	2,063,778	4,588,441	3,294,067	1,874,569	1,590,429	
2023	13,495,659	2,081,995	4,598,440	3,323,075	1,886,102	1,606,047	
2024	13,573,284	2,098,911	4,607,037	3,350,216	1,896,690	1,620,430	
2025	13,644,535	2,114,635	4,614,184	3,375,640	1,906,421	1,633,655	
2026	13,709,476	2,129,136	4,619,863	3,399,364	1,915,359	1,645,754	
2027	13,767,805	2,142,359	4,623,899	3,421,287	1,923,453	1,656,807	
2028	13,819,083	2,154,144	4,626,160	3,441,286	1,930,680	1,666,813	
2029	13,863,447	2,164,619	4,626,600	3,459,350	1,937,093	1,675,785	
2030	13,900,568	2,173,718	4,624,974	3,475,467	1,942,613	1,683,796	
2031	13,929,839	2,181,276	4,621,223	3,489,400	1,947,128	1,690,812	
2032	13,951,712	2,187,450	4,615,428	3,501,242	1,950,723	1,696,869	
2033	13,965,801	2,192,184	4,607,417	3,510,894	1,953,327	1,701,979	
2034	13,972,160	2,195,581	4,597,204	3,518,419	1,954,853	1,706,103	
2035	13,970,453	2,197,547	4,584,748	3,523,710	1,955,259	1,709,189	

(2) 사망자 추계

□ 사망자 추계는 인구수에 조사망률을 이용하는 방법과 생명표를 활용하여 추계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망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본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센서스자료를 기초로 경기도 인구 천명당 사망확률을 적용하여 경기도 사망자수를 산출함.

- 사망자수 추계를 위해 사용한 경기도 조사망률은 다음과 같음.

<표 4-3> 경기도 조사망률⁸⁾

연도	2018	2020	2025	2030	2035	비고
조사망률	4.8	5.1	5.8	6.6	7.6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8) 조사망률 : 한 국가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 발생한 총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표시한 것

- 또한, 각 권역별 사망자수는 권역별로 추계된 인구에 경기도 조사망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경우 과소 추계될 우려가 있으나 지역별 조사망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임.

<표 4-4> 경기도 사망자 추계

(단위 : 구)

구분	총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62,185	9,458	21,686	15,110	8,692	7,240	
2019	64,156	9,789	22,255	15,633	8,969	7,509	
2020	67,425	10,320	23,275	16,473	9,427	7,930	
2021	69,262	10,630	23,800	16,968	9,682	8,182	
2022	72,421	11,144	24,778	17,788	10,123	8,588	
2023	74,226	11,451	25,291	18,277	10,374	8,833	
2024	76,010	11,754	25,799	18,761	10,621	9,074	
2025	79,138	12,265	26,762	19,579	11,057	9,475	
2026	80,886	12,562	27,257	20,056	11,301	9,710	
2027	83,984	13,068	28,206	20,870	11,733	10,107	
2028	87,060	13,571	29,145	21,680	12,163	10,501	
2029	88,726	13,854	29,610	22,140	12,397	10,725	
2030	91,744	14,347	30,525	22,938	12,821	11,113	
2031	94,723	14,833	31,424	23,728	13,240	11,498	
2032	97,662	15,312	32,308	24,509	13,655	11,878	
2033	100,554	15,784	33,173	25,278	14,064	12,254	
2034	103,394	16,247	34,019	26,036	14,466	12,625	
2035	106,175	16,701	34,844	26,780	14,860	12,990	

3. 화장률 추정

가. 화장률 추정 방법

□ 지난 경기도 및 5개 권역의 화장률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

화장률	전체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08	69.2	66.8	71.3	67.2	70.4	69.4	
2009	72.0	69.2	73.3	70.9	72.6	73.1	
2010	73.8	71.3	75.9	72.9	73.9	73.5	
2011	77.5	75.7	79.3	76.3	77.7	77.5	
2012	80.0	78.1	81.2	79.1	80.5	80.7	
2013	82.5	80.6	83.4	82.1	83.0	82.9	
2014	84.9	83.2	86.9	83.8	84.4	85.1	
2015	86.2	85.0	87.3	85.7	86.4	85.4	
2016	87.1	86.4	88.4	85.5	87.8	86.4	
2017	88.3	87.0	89.4	87.1	89.3	88.2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모든 사망자는 예외 없이 매장 또는 화장하므로, 향후 화장률의 추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계적기법 중 성장곡선추정에 사용되는 로지스틱함수를 가정하여 추정함.

□ 로지스틱곡선은 다음과 같음.

$$f(t) = \frac{k}{1 + e^{\alpha + \beta t}}$$

α, β : 상수, k : 극한값, t : 시간

□ 경기도 및 권역별 화장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곡선으로 분석한 결과, 화장률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경기도의 화장률이 이미 90%에 근접하여 최대 한계점으로는 95%를 적용하였음.

$$f(t) = \frac{95}{1 + e^{-1.6898 + 0.1844t}}$$

- 화장 수요예측은 장래 발생할 수요로서 잠재적인 이용에 대한 수요이며, 경기도 전체의 수요를 의미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수요예측에 감안하지 않음.
- 타 지역 주민이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화장시설 이용 수요(유입)는 제외함.
 - 또한, 경기도민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유출)도 고려하지 않음.

나. 연도별 화장률 추정

- 앞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경기도 화장률⁹⁾을 추정하면 2020년에는 91.2%에 이르고, 2025년에 93.4%에 도달한 후, 2030년 94.4%, 2035년엔 94.7%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는 전국 화장률을 2018년 85.5%, 2020년 87.8%, 2022년 89.5%, 2027년 92.1%로 추정함.
 -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8년 89.2%, 2020년 90.9%, 2022년 92.1%, 2027년 93.8%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게 추정함.
- 세부적으로 2018년부터 2035년까지 경기도 전체 및 각 권역별 화장률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화장률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결과(2018년~2027년)를 반영함.

<표 4-5> 경기도 및 권역별 화장률 추계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5	2030	2035	비고
전국	85.5	86.7	87.8	88.7	89.5	91.3	-	-	
경기도	89.5	90.4	91.2	91.8	92.3	93.4	94.4	94.7	
동부	88.7	89.7	90.5	91.3	91.9	93.2	94.3	94.7	
서부	90.5	91.3	91.9	92.5	92.9	93.8	94.6	94.8	
남부	88.7	89.6	90.5	91.1	91.7	93.0	94.2	94.7	
동북부	90.0	90.8	91.5	92.1	92.6	93.6	94.5	94.8	
서북부	89.2	90.1	90.8	91.5	92.0	93.2	94.2	94.7	

9) 화장률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 4 절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 분석

1. 화장시설 수급분석¹⁰⁾

가. 화장수요 추계

□ 앞서 추계된 사망자수에 연도별 추정된 화장률을 적용하여 매장자수와 화장수를 산출함.

- 화장자 = 사망자 × 화장률
- 매장자 = 사망자 - 화장자

<표 4-6> 경기도 사망자 및 화장자

연도	사망자(구)	매장 및 화장			비고
		매장자(구)	화장		
			화장자(구)	화장률(%)	
2018	62,185	6,488	55,697	89.5	
2019	64,156	6,137	58,018	90.4	
2020	67,425	5,955	61,470	91.2	
2021	69,262	5,687	63,575	91.8	
2022	72,421	5,568	66,853	92.3	
2023	74,226	5,381	68,845	92.7	
2024	76,010	5,230	70,781	93.1	
2025	79,138	5,200	73,938	93.4	
2026	80,886	5,106	75,780	93.7	
2027	83,984	5,119	78,864	93.9	
2028	87,060	5,149	81,911	94.1	
2029	88,726	5,113	83,613	94.2	
2030	91,744	5,171	86,573	94.4	
2031	94,723	5,239	89,484	94.5	
2032	97,662	5,316	92,346	94.6	
2033	100,554	5,399	95,155	94.6	
2034	103,394	5,488	97,906	94.7	
2035	106,175	5,582	100,594	94.7	

주) 화장자 수가 사망자 수에 화장률을 곱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전 화장률을 곱했기 때문임.

10) 모든 장사시설 관련 수 추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권역별 화장자 수는 각 권역별로 산출된 사망자 수에 각 권역별 화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4-7> 경기도 권역별 화장자 추계

(단위: 구, %)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화장자	화장률	화장자	화장률	화장자	화장률	화장자	화장률	화장자	화장률
2018	8,389	88.7	19,628	90.5	13,400	88.7	7,820	90.0	6,459	89.2
2019	8,780	89.7	20,315	91.3	14,013	89.6	8,145	90.8	6,765	90.1
2020	9,343	90.5	21,395	91.9	14,901	90.5	8,627	91.5	7,204	90.8
2021	9,701	91.3	22,004	92.5	15,467	91.1	8,919	92.1	7,485	91.5
2022	10,237	91.9	23,019	92.9	16,319	91.7	9,374	92.6	7,904	92.0
2023	10,577	92.4	23,589	93.3	16,860	92.2	9,649	93.0	8,170	92.5
2024	10,908	92.8	24,141	93.6	17,387	92.7	9,916	93.4	8,429	92.9
2025	11,426	93.2	25,109	93.8	18,216	93.0	10,354	93.6	8,832	93.2
2026	11,741	93.5	25,630	94.0	18,722	93.3	10,609	93.9	9,078	93.5
2027	12,247	93.7	26,571	94.2	19,536	93.6	11,037	94.1	9,473	93.7
2028	12,747	93.9	27,496	94.3	20,342	93.8	11,462	94.2	9,864	93.9
2029	13,037	94.1	27,970	94.5	20,814	94.0	11,699	94.4	10,092	94.1
2030	13,522	94.3	28,863	94.6	21,601	94.2	12,113	94.5	10,473	94.2
2031	13,999	94.4	29,738	94.6	22,376	94.3	12,521	94.6	10,850	94.4
2032	14,467	94.5	30,596	94.7	23,139	94.4	12,924	94.6	11,221	94.5
2033	14,926	94.6	31,433	94.8	23,890	94.5	13,319	94.7	11,586	94.6
2034	15,376	94.6	32,249	94.8	24,626	94.6	13,707	94.8	11,946	94.6
2035	15,816	94.7	33,044	94.8	25,348	94.7	14,087	94.8	12,299	94.7

나. 적정 화장규모 산출

- 경기도의 적정 화장로 수는 일평균 화장처리건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일평균 처리건수는 화장시설별 화장로의 시설상태, 화장시설의 관리운영 방법 및 가용인력, 화장로 성능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도, 화장로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화장로 1로당 적정 처리건수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화장시설을 운용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는 1로당 처리 건 수를 3.5회로 지침을 주고 있는데 3.5회의 경우 죽은태아 및 개장유골을 포함할 경우이고 시신만을 기준하면 3회를 권장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화장시설의 경우 1로당 처리 건 수가 2회 이하가 대부분임.
 - 일본의 경우도 화장시설 설치 시 1로당 1일 2구를 기준으로 화장로 규모를 산정하고 있음 (경기개발연구원(2008)「화장시설 건립 모형 연구」).
 - 우리의 장례 관습상 장례식장에서 오전에 발인하여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통상적으로 약 2시간 소요),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으로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 하루 안(內)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화장이 적어도 오후 3시 이전에는 끝나야 하므로 1로당 2건이 적절함.
 - 더 나아가 상장례(喪葬禮)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도덕적 규범과 종교에 따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 절차이며,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례로 경건함 유지를 고려한다면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이 1일 1로당 2건 정도가 적당함. 현재와 같이 3건~3.5건씩 처리하게 되면 고인에 대한 경건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없음.
- 여기서는 경기도 지침을 준용하여 화장로 1로당 화장 처리건수를 3.5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필요 화장로를 산정하고, 화장로 1로의 운영 일수는 365일로 가정하여 산출함.
- 다만, 보건복지부가 화장시설 설치 시 적정 화장수요 외에 가동 중인 화장로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로 1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필요 화장로 수를 산정한 후 예비로 1로를 더한 적정 화장로 수를 산출함.
 - 다만, 10로가 넘을 경우 예비로는 10로 당 1로씩 추가하여 적정화장로를 산출함. 즉, 1~10로는 예비로 1로, 11~20로는 예비로 2로, 21~30로는 예비로 3로, 31~40로는 예비로 4로, 41~50로는 예비로 5로, 51~60로는 예비로 6로, 61~70로는 예비로 7로를 추가함.

□ 적정화장로 수는 <표 4-8>와 같이 2035년까지 권역별로 산출하여 그 합을 경기도 적정화장로수로 정함.

- 그 결과 2035년까지 적정로수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106로, 동부권역 17로, 서부권역 35로, 남부권역 26로, 동북부권역 15로, 서북부권역 13로로 나타남.

<표 4-8> 경기도 전체 적정 화장로수

(단위: 로, 건)

연도	경기도 전체		비고
	적정로수	화장건수	
2018	59	67,008	
2019	61	69,640	
2020	64	73,410	
2021	67	75,978	
2022	70	79,650	
2023	72	82,001	
2024	73	84,255	
2025	77	87,808	
2026	79	89,976	
2027	82	93,406	
2028	85	96,876	
2029	87	99,015	
2030	90	102,427	
2031	93	105,807	
2032	96	109,153	
2033	100	112,462	
2034	102	115,731	
2035	106	118,954	

주) 화장건수는 화장자 수에 죽은태아, 개장유골 건수를 더한 값으로 화장자 수와 화장건수가 다름.

<표 4-9> 경기도 권역별 적정 화장로수

(단위: 로, 건)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2018	9	10,093	20	23,614	15	16,121	8	9,409	7	7,771
2019	9	10,539	21	24,384	15	16,820	9	9,777	7	8,121
2020	10	11,158	22	25,550	16	17,795	9	10,303	8	8,604
2021	10	11,593	24	26,297	16	18,484	9	10,658	8	8,945
2022	11	12,197	24	27,425	17	19,443	10	11,168	8	9,417
2023	11	12,599	25	28,097	18	20,082	10	11,493	9	9,731
2024	11	12,984	25	28,737	18	20,697	10	11,803	9	10,033
2025	13	13,570	26	29,820	19	21,633	11	12,296	9	10,489
2026	13	13,940	27	30,432	19	22,229	11	12,596	9	10,779
2027	13	14,506	28	31,470	20	23,138	11	13,073	10	11,220
2028	14	15,076	28	32,520	21	24,058	13	13,556	10	11,666
2029	14	15,439	29	33,122	21	24,649	13	13,854	10	11,952
2030	15	15,999	30	34,149	22	25,557	13	14,331	11	12,391
2031	15	16,552	31	35,163	24	26,457	14	14,805	11	12,829
2032	15	17,100	31	36,164	24	27,350	14	15,276	11	13,263
2033	16	17,641	32	37,150	25	28,235	14	15,742	13	13,694
2034	16	18,176	33	38,121	26	29,110	15	16,203	13	14,121
2035	17	18,703	35	39,075	26	29,974	15	16,658	13	14,544

다. 화장시설 수급 분석

(1)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

□ 화장시설 수급분석을 위해 우선 경기도내 각 권역별로 설치된 화장시설 및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0>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수

권역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화장로수	35	15 (성남)	0	20 (수원, 용인)	0	0	

□ 경기도 전체 화장시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수급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4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경기도 전체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단위: 로, 건)

연도	화장로 수급			화장건수	비고
	적정 로수	공급 로수	과부족 로수		
2018	59	35	-24	67,008	
2019	61	35	-26	69,640	
2020	64	35	-29	73,410	
2021	67	35	-32	75,978	
2022	70	35	-35	79,650	
2023	72	35	-37	82,001	
2024	73	35	-38	84,255	
2025	77	35	-42	87,808	
2026	79	35	-44	89,976	
2027	82	35	-47	93,406	
2028	85	35	-50	96,876	
2029	87	35	-52	99,015	
2030	90	35	-55	102,427	
2031	93	35	-58	105,807	
2032	96	35	-61	109,153	
2033	100	35	-65	112,462	
2034	102	35	-67	115,731	
2035	106	35	-71	118,954	

- 권역별로 화장로 수급 분석을 보면, 화장시설이 없는 서부와 동북부·서북부 권역의 경우 적정 수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부 권역은 2033년부터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남부 권역의 경우는 2027년까지는 부족하지 않으나 이후에는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2>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단위: 로)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2018	9	15	6	20	0	-20	15	20	5	8	0	-8	7	0	-7
2019	9	15	6	21	0	-21	15	20	5	9	0	-9	7	0	-7
2020	10	15	5	22	0	-22	16	20	4	9	0	-9	8	0	-8
2021	10	15	5	24	0	-24	16	20	4	9	0	-9	8	0	-8
2022	11	15	4	24	0	-24	17	20	3	10	0	-10	8	0	-8
2023	11	15	4	25	0	-25	18	20	2	10	0	-10	9	0	-9
2024	11	15	4	25	0	-25	18	20	2	10	0	-10	9	0	-9
2025	13	15	2	26	0	-26	19	20	1	11	0	-11	9	0	-9
2026	13	15	2	27	0	-27	19	20	1	11	0	-11	9	0	-9
2027	13	15	2	28	0	-28	20	20	0	11	0	-11	10	0	-10
2028	14	15	1	28	0	-28	21	20	-1	13	0	-13	10	0	-10
2029	14	15	1	29	0	-29	21	20	-1	13	0	-13	10	0	-10
2030	15	15	0	30	0	-30	22	20	-2	13	0	-13	11	0	-11
2031	15	15	0	31	0	-31	24	20	-4	14	0	-14	11	0	-11
2032	15	15	0	31	0	-31	24	20	-4	14	0	-14	11	0	-11
2033	16	15	-1	32	0	-32	25	20	-5	14	0	-14	13	0	-13
2034	16	15	-1	33	0	-33	26	20	-6	15	0	-15	13	0	-13
2035	17	15	-2	35	0	-35	26	20	-6	15	0	-15	13	0	-13

(2)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분석 결과

- 통계적 방법에 의한 수급 분석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과대 분석의 우려가 있어 향후 화장시설 개원예정 지역의 경우 화장로 수급을 가정하여 화장로를 산출하였으며, 타 시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 지역을 제한 후 화장건수를 재산출하였음.
- 서부 권역의 경우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부터 화장로가 공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4-13>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권역별 화장로수

권역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화장로수	48	15 (성남)	13 (화성 예정)	20 (수원, 용인)	0	0	

주) 서부 권역은 2022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 화장로 13기가 공급될 것으로 가정

- 북부 권역의 고양시와 파주시는 협약을 통해 서울시 승화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및 서북부 권역의 화장건수를 재산출함.
- 동부 권역에 속한 여주시의 경우, 2019년 3월 개원예정인 원주 추모공원 광역 화장시설의 공동 설치를 추진해옴에 따라 앞으로 원주 추모공원의 화장시설을 사용할 여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동부 권역의 화장건수를 재산출함.

□ 타 시도의 화장시설 이용 및 향후 화장시설 개원예정 시 · 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전체의 적정 화장로수와 화장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4-14> 시 · 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전체 적정 화장로수

(단위: 로, 건)

연도	경기도 전체		비고
	적정 로수	화장 건수	
2018	53	59,428	
2019	54	61,239	
2020	57	64,517	
2021	59	66,720	
2022	62	69,913	
2023	63	71,927	
2024	65	73,867	
2025	67	76,957	
2026	69	78,813	
2027	72	81,795	
2028	75	84,800	
2029	77	86,630	
2030	79	89,596	
2031	82	92,520	
2032	85	95,414	
2033	87	98,273	
2034	89	101,097	
2035	92	103,879	

□ 타 시도의 화장시설 이용 및 향후 화장시설 개원예정 시 · 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권역별 적정 화장로수와 화장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4-15>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권역별 적정 화장로수

(단위: 로, 건)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적정 로수	화장 건수
2018	9	10,093	20	23,614	15	16,121	8	9,409	0.1	191
2019	9	10,060	21	24,384	15	16,820	9	9,777	0.2	198
2020	9	10,660	22	25,550	16	17,795	9	10,303	0.2	209
2021	10	11,065	24	26,297	16	18,484	9	10,658	0.2	215
2022	10	11,651	24	27,425	17	19,443	10	11,168	0.2	226
2023	10	12,024	25	28,097	18	20,082	10	11,493	0.2	232
2024	11	12,391	25	28,737	18	20,697	10	11,803	0.2	238
2025	11	12,959	26	29,820	19	21,633	11	12,296	0.2	248
2026	11	13,302	27	30,432	19	22,229	11	12,596	0.2	254
2027	13	13,850	28	31,470	20	23,138	11	13,073	0.2	264
2028	13	14,392	28	32,520	21	24,058	13	13,556	0.2	274
2029	14	14,726	29	33,122	21	24,649	13	13,854	0.2	280
2030	14	15,269	30	34,149	22	25,557	13	14,331	0.2	290
2031	14	15,794	31	35,163	24	26,457	14	14,805	0.2	300
2032	15	16,314	31	36,164	24	27,350	14	15,276	0.2	310
2033	15	16,826	32	37,150	25	28,235	14	15,742	0.3	320
2034	16	17,333	33	38,121	26	29,110	15	16,203	0.3	330
2035	16	17,832	35	39,075	26	29,974	15	16,658	0.3	340

□ 타 시도의 화장시설 이용 및 향후 화장시설 개원예정 시 · 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분석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 44로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6> 시 · 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전체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단위: 로, 건)

연도	화장로 수급			화장건수	비고
	적정 로수	공급 로수	과부족 로수		
2018	53	35	-18	59,428	
2019	54	35	-19	61,239	
2020	57	35	-22	64,517	
2021	59	35	-24	66,720	
2022 ¹¹⁾	62	48	-14	69,913	
2023	63	48	-15	71,927	
2024	65	48	-17	73,867	
2025	67	48	-19	76,957	
2026	69	48	-21	78,813	
2027	72	48	-24	81,795	
2028	75	48	-27	84,800	
2029	77	48	-29	86,630	
2030	79	48	-31	89,596	
2031	82	48	-34	92,520	
2032	85	48	-37	95,414	
2033	87	48	-39	98,273	
2034	89	48	-41	101,097	
2035	92	48	-44	103,879	

11) 공급 로수는 현재 추진 중인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 화장로 13기가 2022년부터 공급될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 이는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권역별로 화장로의 수급 분석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부 권역은 2034년부터 1로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서부 권역의 경우 2022년부터 13로의 화장로가 공급될 예정이나 화장로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역 중 화장건수가 가장 많아 2018년부터 2035년까지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부 권역의 경우는 2027년까지는 화장로가 부족하지 않으나 이후에는 화장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장시설이 없는 동북부 권역의 경우 2035년까지 적정 수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7> 시·군의 화장시설 수급을 반영한 경기도 권역별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단위: 로)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적정	공급	과부족
2018	9	15	6	20	0	-20	15	20	5	8	0	-8	0.1	0	0
2019	9	15	6	21	0	-21	15	20	5	9	0	-9	0.2	0	0
2020	9	15	6	22	0	-22	16	20	4	9	0	-9	0.2	0	0
2021	10	15	5	24	0	-24	16	20	4	9	0	-9	0.2	0	0
2022	10	15	5	24	13	-11	17	20	3	10	0	-10	0.2	0	0
2023	10	15	5	25	13	-12	18	20	2	10	0	-10	0.2	0	0
2024	11	15	4	25	13	-12	18	20	2	10	0	-10	0.2	0	0
2025	11	15	4	26	13	-13	19	20	1	11	0	-11	0.2	0	0
2026	11	15	4	27	13	-14	19	20	1	11	0	-11	0.2	0	0
2027	13	15	2	28	13	-15	20	20	0	11	0	-11	0.2	0	0
2028	13	15	2	28	13	-15	21	20	-1	13	0	-13	0.2	0	0
2029	14	15	1	29	13	-16	21	20	-1	13	0	-13	0.2	0	0
2030	14	15	1	30	13	-17	22	20	-2	13	0	-13	0.2	0	0
2031	14	15	1	31	13	-18	24	20	-4	14	0	-14	0.2	0	0
2032	15	15	0	31	13	-18	24	20	-4	14	0	-14	0.2	0	0
2033	15	15	0	32	13	-19	25	20	-5	14	0	-14	0.3	0	0
2034	16	15	-1	33	13	-20	26	20	-6	15	0	-15	0.3	0	0
2035	16	15	-1	35	13	-22	26	20	-6	15	0	-15	0.3	0	0

2. 화장 후 유골처리방법에 대한 선호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 후 유골처리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자연장(39.4%)이고 그 다음이 봉안시설에 안치(37.0%)하는 것임.

<표 4-18>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에 대한 선호

(단위: %)

권역	인원수(명)	선호 유형			비고
		자연장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	
계	884	39.4	37.0	23.6	
동 부	154	44.2	34.4	21.4	
서 부	305	43.3	35.1	21.6	
남 부	174	35.6	42.0	22.4	
동북부	162	30.2	41.4	28.4	
서북부	89	41.6	30.3	28.1	

- 각 연도별 화장자 수에 화장 후 선호하는 유골안치 방법에 대한 선호비율을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19> 경기도 전체 화장 후 안치방식별 수요 규모

(단위: 구)

연도	화장자	선호 유형			비고
		자연장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	
2018	55,697	21,926	20,603	13,168	
2019	58,018	22,840	21,462	13,717	
2020	61,470	24,199	22,738	14,533	
2021	63,575	25,027	23,517	15,031	
2022	66,853	26,318	24,729	15,806	
2023	68,845	27,102	25,467	16,277	
2024	70,781	27,864	26,182	16,734	
2025	73,938	29,107	27,350	17,481	
2026	75,780	29,832	28,032	17,916	
2027	78,864	31,046	29,173	18,646	
2028	81,911	32,246	30,300	19,366	
2029	83,613	32,915	30,929	19,768	
2030	86,573	34,081	32,024	20,468	
2031	89,484	35,227	33,101	21,156	
2032	92,346	36,353	34,160	21,833	
2033	95,155	37,459	35,199	22,497	
2034	97,906	38,542	36,216	23,147	
2035	100,594	39,600	37,211	23,783	

3. 자연장지 수급 분석

가. 자연장지 수요 추계

- 경기도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 규모는 위의 표와 같으며, 경기도 각 권역별 자연장지 수요는 경기도 전체 자연장지 수요에 자연장지에 대한 각 권역별 선호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 4-20> 권역별 자연장 선호도

(단위: %)

권역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서북부	비고
자연장 선호도	100.0	19.5	37.9	17.8	14.1	10.6	10.6	

- 상기의 비율을 각 권역별 화장자 수에 곱하여 자연장 수요를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21> 권역별 자연장지 수요 추계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21,926	4,284	8,317	3,906	3,087	2,331	
2019	22,840	4,463	8,663	4,069	3,216	2,428	
2020	24,199	4,728	9,179	4,311	3,407	2,573	
2021	25,027	4,890	9,493	4,459	3,524	2,661	
2022	26,318	5,143	9,983	4,689	3,706	2,798	
2023	27,102	5,296	10,280	4,829	3,816	2,882	
2024	27,864	5,445	10,569	4,964	3,923	2,963	
2025	29,107	5,688	11,041	5,186	4,098	3,095	
2026	29,832	5,829	11,316	5,315	4,200	3,172	
2027	31,046	6,066	11,776	5,531	4,371	3,301	
2028	32,246	6,301	12,231	5,745	4,540	3,428	
2029	32,915	6,432	12,485	5,864	4,635	3,500	
2030	34,081	6,659	12,927	6,072	4,799	3,624	
2031	35,227	6,883	13,362	6,276	4,960	3,745	
2032	36,353	7,104	13,789	6,477	5,119	3,865	
2033	37,459	7,320	14,209	6,674	5,274	3,983	
2034	38,542	7,531	14,619	6,867	5,427	4,098	
2035	39,600	7,738	15,021	7,055	5,576	4,210	

나. 자연장지 유형별 수요

- 자연장 유형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과반수 이상이 수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원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권역별 자연장 유형별 선호도

(단위: %)

권역	인원수(명)	선호 유형				비고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계	348	9.2	4.3	14.7	71.8	
동 부	68	11.8	2.9	14.7	70.6	
서 부	132	9.8	5.3	14.4	70.5	
남 부	62	9.7	3.2	12.9	74.2	
동북부	49	4.1	4.1	8.2	83.7	
서북부	37	8.1	5.4	27.0	59.5	

- 자연장 유형별 수요추계는 다음과 같음.

<표 4-23> 경기도 자연장 유형별 수요

(단위: 구)

연도	계	선호 유형				비고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2018	21,926	2,016	945	3,213	15,751	
2019	22,840	2,100	984	3,347	16,408	
2020	24,199	2,225	1,043	3,546	17,384	
2021	25,027	2,301	1,079	3,668	17,979	
2022	26,318	2,420	1,134	3,857	18,906	
2023	27,102	2,492	1,168	3,972	19,470	
2024	27,864	2,562	1,201	4,083	20,017	
2025	29,107	2,676	1,255	4,266	20,910	
2026	29,832	2,743	1,286	4,372	21,431	
2027	31,046	2,855	1,338	4,550	22,303	
2028	32,246	2,965	1,390	4,726	23,165	
2029	32,915	3,027	1,419	4,824	23,646	
2030	34,081	3,134	1,469	4,995	24,483	
2031	35,227	3,239	1,518	5,163	25,306	
2032	36,353	3,343	1,567	5,328	26,116	
2033	37,459	3,445	1,615	5,490	26,910	
2034	38,542	3,544	1,661	5,648	27,688	
2035	39,600	3,641	1,707	5,803	28,448	

□ 자연장 유형별 수요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4> 권역별 잔디형 자연장 수요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2,016	504	819	378	126	189	
2019	2,100	525	853	394	131	197	
2020	2,225	556	904	417	139	209	
2021	2,301	575	935	432	144	216	
2022	2,420	605	983	454	151	227	
2023	2,492	623	1,012	467	156	234	
2024	2,562	641	1,041	480	160	240	
2025	2,676	669	1,087	502	167	251	
2026	2,743	686	1,114	514	171	257	
2027	2,855	714	1,160	535	178	268	
2028	2,965	741	1,205	556	185	278	
2029	3,027	757	1,230	568	189	284	
2030	3,134	783	1,273	588	196	294	
2031	3,239	810	1,316	607	202	304	
2032	3,343	836	1,358	627	209	313	
2033	3,445	861	1,399	646	215	323	
2034	3,544	886	1,440	665	222	332	
2035	3,641	910	1,479	683	228	341	

<표 4-25> 권역별 화초형 자연장 수요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945	126	441	126	126	126	
2019	984	131	459	131	131	131	
2020	1,043	139	487	139	139	139	
2021	1,079	144	503	144	144	144	
2022	1,134	151	529	151	151	151	
2023	1,168	156	545	156	156	156	
2024	1,201	160	560	160	160	160	
2025	1,255	167	585	167	167	167	
2026	1,286	171	600	171	171	171	
2027	1,338	178	624	178	178	178	
2028	1,390	185	649	185	185	185	
2029	1,419	189	662	189	189	189	
2030	1,469	196	686	196	196	196	
2031	1,518	202	709	202	202	202	
2032	1,567	209	731	209	209	209	
2033	1,615	215	753	215	215	215	
2034	1,661	222	775	222	222	222	
2035	1,707	228	797	228	228	228	

<표 4-26> 권역별 정원형 자연장 수요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3,213	630	1,197	504	252	630	
2019	3,347	656	1,247	525	263	656	
2020	3,546	695	1,321	556	278	695	
2021	3,668	719	1,366	575	288	719	
2022	3,857	756	1,437	605	303	756	
2023	3,972	779	1,480	623	312	779	
2024	4,083	801	1,521	641	320	801	
2025	4,266	836	1,589	669	335	836	
2026	4,372	857	1,629	686	343	857	
2027	4,550	892	1,695	714	357	892	
2028	4,726	927	1,761	741	371	927	
2029	4,824	946	1,797	757	378	946	
2030	4,995	979	1,861	783	392	979	
2031	5,163	1,012	1,923	810	405	1,012	
2032	5,328	1,045	1,985	836	418	1,045	
2033	5,490	1,076	2,045	861	431	1,076	
2034	5,648	1,108	2,104	886	443	1,108	
2035	5,803	1,138	2,162	910	455	1,138	

<표 4-27> 권역별 수목형 자연장 수요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15,751	3,024	5,859	2,898	2,583	1,386	
2019	16,408	3,150	6,104	3,019	2,691	1,444	
2020	17,384	3,338	6,467	3,199	2,851	1,530	
2021	17,979	3,452	6,688	3,308	2,949	1,582	
2022	18,906	3,630	7,033	3,479	3,101	1,664	
2023	19,470	3,738	7,243	3,582	3,193	1,713	
2024	20,017	3,843	7,446	3,683	3,283	1,762	
2025	20,910	4,015	7,779	3,847	3,429	1,840	
2026	21,431	4,115	7,972	3,943	3,515	1,886	
2027	22,303	4,282	8,297	4,104	3,658	1,963	
2028	23,165	4,448	8,617	4,262	3,799	2,039	
2029	23,646	4,540	8,796	4,351	3,878	2,081	
2030	24,483	4,701	9,108	4,505	4,015	2,155	
2031	25,306	4,859	9,414	4,656	4,150	2,227	
2032	26,116	5,014	9,715	4,805	4,283	2,298	
2033	26,910	5,167	10,011	4,951	4,413	2,368	
2034	27,688	5,316	10,300	5,095	4,541	2,437	
2035	28,448	5,462	10,583	5,235	4,666	2,503	

다. 자연장지 수급 분석

□ 공설 자연장지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자연장 가능구수는 46,708기임.

-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분석은 공설 자연장지에 대한 분석과 공설과 사설을 합친 규모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으며, 유형별 수급분석은 공급현황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석하지 않음.

<표 4-28> 권역별 공설 자연장지 조성현황

(단위: 구)

권역	자연장능력	기자연장	향후자연장	비고
계	60,204	13,496	46,708	
동 부	29,773	7,416	22,357	
서 부	8,353	2,866	5,487	
남 부	18,378	2,477	15,901	
동북부	3,700	737	2,963	
서북부	0	0	0	

□ 공설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 분석 결과 2020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29> 경기도 공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21,926	46,708	24,782	
2019	22,840	24,782	1,942	
2020	24,199	1,942	-22,256	
2021	25,027	-22,256	-47,284	
2022	26,318	-47,284	-73,601	
2023	27,102	-73,601	-100,703	
2024	27,864	-100,703	-128,567	
2025	29,107	-128,567	-157,674	
2026	29,832	-157,674	-187,506	
2027	31,046	-187,506	-218,552	
2028	32,246	-218,552	-250,798	
2029	32,915	-250,798	-283,713	
2030	34,081	-283,713	-317,794	
2031	35,227	-317,794	-353,020	
2032	36,353	-353,020	-389,374	
2033	37,459	-389,374	-426,833	
2034	38,542	-426,833	-465,375	
2035	39,600	-465,375	-504,975	

□ 권역별로 공설 자연장지 과부족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연장지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서부 · 동북부 · 서북부 권역의 경우 2018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 권역의 경우 2022년부터, 남부 권역의 경우 2021년부터 자연장지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30> 권역별 공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부			서부			남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4,284	22,357	18,073	8,317	5,487	-2,830	3,906	15,901	11,995
2019	4,463	18,073	13,610	8,663	-2,830	-11,493	4,069	11,995	7,926
2020	4,728	13,610	8,881	9,179	-11,493	-20,672	4,311	7,926	3,614
2021	4,890	8,881	3,991	9,493	-20,672	-30,165	4,459	3,614	-845
2022	5,143	3,991	-1,152	9,983	-30,165	-40,148	4,689	-845	-5,533
2023	5,296	-1,152	-6,448	10,280	-40,148	-50,428	4,829	-5,533	-10,362
2024	5,445	-6,448	-11,892	10,569	-50,428	-60,997	4,964	-10,362	-15,326
2025	5,688	-11,892	-17,580	11,041	-60,997	-72,037	5,186	-15,326	-20,512
2026	5,829	-17,580	-23,409	11,316	-72,037	-83,353	5,315	-20,512	-25,827
2027	6,066	-23,409	-29,475	11,776	-83,353	-95,129	5,531	-25,827	-31,358
2028	6,301	-29,475	-35,776	12,231	-95,129	-107,360	5,745	-31,358	-37,103
2029	6,432	-35,776	-42,208	12,485	-107,360	-119,845	5,864	-37,103	-42,967
2030	6,659	-42,208	-48,867	12,927	-119,845	-132,772	6,072	-42,967	-49,039
2031	6,883	-48,867	-55,751	13,362	-132,772	-146,134	6,276	-49,039	-55,315
2032	7,104	-55,751	-62,854	13,789	-146,134	-159,923	6,477	-55,315	-61,792
2033	7,320	-62,854	-70,174	14,209	-159,923	-174,132	6,674	-61,792	-68,465
2034	7,531	-70,174	-77,705	14,619	-174,132	-188,751	6,867	-68,465	-75,332
2035	7,738	-77,705	-85,443	15,021	-188,751	-203,772	7,055	-75,332	-82,387

<표 4-30> 권역별 공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북부			서북부			비고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087	2,963	-124	2,331	0	-2,331	
2019	3,216	-124	-3,340	2,428	-2,331	-4,760	
2020	3,407	-3,340	-6,747	2,573	-4,760	-7,332	
2021	3,524	-6,747	-10,271	2,661	-7,332	-9,993	
2022	3,706	-10,271	-13,977	2,798	-9,993	-12,792	
2023	3,816	-13,977	-17,793	2,882	-12,792	-15,673	
2024	3,923	-17,793	-21,717	2,963	-15,673	-18,636	
2025	4,098	-21,717	-25,815	3,095	-18,636	-21,730	
2026	4,200	-25,815	-30,015	3,172	-21,730	-24,902	
2027	4,371	-30,015	-34,387	3,301	-24,902	-28,203	
2028	4,540	-34,387	-38,927	3,428	-28,203	-31,631	
2029	4,635	-38,927	-43,562	3,500	-31,631	-35,131	
2030	4,799	-43,562	-48,361	3,624	-35,131	-38,754	
2031	4,960	-48,361	-53,321	3,745	-38,754	-42,500	
2032	5,119	-53,321	-58,439	3,865	-42,500	-46,365	
2033	5,274	-58,439	-63,714	3,983	-46,365	-50,348	
2034	5,427	-63,714	-69,141	4,098	-50,348	-54,446	
2035	5,576	-69,141	-74,717	4,210	-54,446	-58,656	

-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63,904구 안치가 가능함.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31>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조성현황

(단위: 구)

권역	자연장능력	기자연장	향후자연장	비고
계	242,358	31,746	210,612	
동 부	110,853	8,718	102,135	
서 부	29,179	4,283	24,896	
남 부	81,528	11,465	70,063	
동북부	20,696	7,178	13,518	
서북부	102	102	0	

-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 분석 결과 2026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표 4-32> 경기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21,926	210,612	188,686	
2019	22,840	188,686	165,846	
2020	24,199	165,846	141,648	
2021	25,027	141,648	116,620	
2022	26,318	116,620	90,303	
2023	27,102	90,303	63,201	
2024	27,864	63,201	35,337	
2025	29,107	35,337	6,230	
2026	29,832	6,230	-23,602	
2027	31,046	-23,602	-54,648	
2028	32,246	-54,648	-86,894	
2029	32,915	-86,894	-119,809	
2030	34,081	-119,809	-153,890	
2031	35,227	-153,890	-189,116	
2032	36,353	-189,116	-225,470	
2033	37,459	-225,470	-262,929	
2034	38,542	-262,929	-301,471	
2035	39,600	-301,471	-341,071	

- 권역별로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과부족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연장지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서북부 권역의 경우 2018년부터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부 권역의 경우 2020년부터, 동북부 권역의 경우 2022년부터 자연장지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상대적으로 장연장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남부의 경우 2031년부터, 동부의 경우 2035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으로 자연장과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하나, 기존 공설 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 시 선호하는 개발 형태나 이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자연장이 봉안시설보다 높아 앞으로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자연장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자연장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례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장지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자연장지 확충 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별 공급 편차를 고려하여 장사시설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4-33>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부			서부			남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4,284	102,135	97,851	8,317	24,896	16,579	3,906	70,063	66,157
2019	4,463	97,851	93,388	8,663	16,579	7,916	4,069	66,157	62,088
2020	4,728	93,388	88,659	9,179	7,916	-1,263	4,311	62,088	57,776
2021	4,890	88,659	83,769	9,493	-1,263	-10,756	4,459	57,776	53,317
2022	5,143	83,769	78,626	9,983	-10,756	-20,739	4,689	53,317	48,629
2023	5,296	78,626	73,330	10,280	-20,739	-31,019	4,829	48,629	43,800
2024	5,445	73,330	67,886	10,569	-31,019	-41,588	4,964	43,800	38,836
2025	5,688	67,886	62,198	11,041	-41,588	-52,628	5,186	38,836	33,650
2026	5,829	62,198	56,369	11,316	-52,628	-63,944	5,315	33,650	28,335
2027	6,066	56,369	50,303	11,776	-63,944	-75,720	5,531	28,335	22,804
2028	6,301	50,303	44,002	12,231	-75,720	-87,951	5,745	22,804	17,059
2029	6,432	44,002	37,570	12,485	-87,951	-100,436	5,864	17,059	11,195
2030	6,659	37,570	30,911	12,927	-100,436	-113,363	6,072	11,195	5,123
2031	6,883	30,911	24,027	13,362	-113,363	-126,725	6,276	5,123	-1,153
2032	7,104	24,027	16,924	13,789	-126,725	-140,514	6,477	-1,153	-7,630
2033	7,320	16,924	9,604	14,209	-140,514	-154,723	6,674	-7,630	-14,303
2034	7,531	9,604	2,073	14,619	-154,723	-169,342	6,867	-14,303	-21,170
2035	7,738	2,073	-5,665	15,021	-169,342	-184,363	7,055	-21,170	-28,225

<표 4-33>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북부			서북부			비고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087	13,518	10,431	2,331	0	-2,331	
2019	3,216	10,431	7,215	2,428	-2,331	-4,760	
2020	3,407	7,215	3,808	2,573	-4,760	-7,332	
2021	3,524	3,808	284	2,661	-7,332	-9,993	
2022	3,706	284	-3,422	2,798	-9,993	-12,792	
2023	3,816	-3,422	-7,238	2,882	-12,792	-15,673	
2024	3,923	-7,238	-11,162	2,963	-15,673	-18,636	
2025	4,098	-11,162	-15,260	3,095	-18,636	-21,730	
2026	4,200	-15,260	-19,460	3,172	-21,730	-24,902	
2027	4,371	-19,460	-23,832	3,301	-24,902	-28,203	
2028	4,540	-23,832	-28,372	3,428	-28,203	-31,631	
2029	4,635	-28,372	-33,007	3,500	-31,631	-35,131	
2030	4,799	-33,007	-37,806	3,624	-35,131	-38,754	
2031	4,960	-37,806	-42,766	3,745	-38,754	-42,500	
2032	5,119	-42,766	-47,884	3,865	-42,500	-46,365	
2033	5,274	-47,884	-53,159	3,983	-46,365	-50,348	
2034	5,427	-53,159	-58,586	4,098	-50,348	-54,446	
2035	5,576	-58,586	-64,162	4,210	-54,446	-58,656	

4. 봉안시설 수급 분석

가. 봉안시설 수요 추계

□ 경기도 각 권역별 봉안시설 수요는 경기도 전체 봉안시설 수요에 봉안시설에 대한 각 권역별 선호도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 4-34> 권역별 봉안시설 선호도

(단위: %)

권역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봉안시설 선호도	100.0	16.2	32.7	22.3	20.5	8.3	

□ 상기의 비율을 통해 권역별 봉안시설 수요를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35> 권역별 봉안시설 수요 추계

(단위: 구)

연도	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비고
2018	20,603	3,339	6,742	4,599	4,221	1,701	
2019	21,462	3,478	7,023	4,791	4,397	1,772	
2020	22,738	3,685	7,440	5,076	4,659	1,877	
2021	23,517	3,812	7,695	5,250	4,818	1,942	
2022	24,729	4,008	8,092	5,521	5,067	2,042	
2023	25,467	4,128	8,333	5,685	5,218	2,103	
2024	26,182	4,244	8,567	5,845	5,365	2,162	
2025	27,350	4,433	8,950	6,106	5,604	2,258	
2026	28,032	4,543	9,172	6,258	5,744	2,315	
2027	29,173	4,728	9,546	6,513	5,977	2,409	
2028	30,300	4,911	9,915	6,764	6,208	2,502	
2029	30,929	5,013	10,121	6,905	6,337	2,554	
2030	32,024	5,190	10,479	7,149	6,561	2,644	
2031	33,101	5,365	10,831	7,389	6,782	2,733	
2032	34,160	5,537	11,178	7,626	6,999	2,821	
2033	35,199	5,705	11,518	7,858	7,212	2,906	
2034	36,216	5,870	11,851	8,085	7,420	2,990	
2035	37,211	6,031	12,176	8,307	7,624	3,072	

나. 보안시설 적정 규모 산출

□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 보안시설은 20개소이며, 향후 보안 가능구수는 161,030구임.

- 보안시설에 대한 수급분석은 공설 보안시설에 대한 분석과 공설과 사설을 합친 규모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음.

<표 4-36> 권역별 공설 보안시설 조성현황

(단위: 구)

권역	보안능력	기보안	향후보안	비고
계	286,248	125,218	161,030	
동 부	75,103	41,783	33,320	
서 부	91,597	32,911	58,686	
남 부	115,958	49,961	65,997	
동북부	3,590	563	3,027	
서북부	0	0	0	

□ 공설 보안시설에 대한 수급 분석 결과 2024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37> 경기도 공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20,603	161,030	140,427	
2019	21,462	140,427	118,966	
2020	22,738	118,966	96,227	
2021	23,517	96,227	72,710	
2022	24,729	72,710	47,981	
2023	25,467	47,981	22,514	
2024	26,182	22,514	-3,668	
2025	27,350	-3,668	-31,019	
2026	28,032	-31,019	-59,050	
2027	29,173	-59,050	-88,223	
2028	30,300	-88,223	-118,523	
2029	30,929	-118,523	-149,452	
2030	32,024	-149,452	-181,476	
2031	33,101	-181,476	-214,577	
2032	34,160	-214,577	-248,737	
2033	35,199	-248,737	-283,935	
2034	36,216	-283,935	-320,151	
2035	37,211	-320,151	-357,362	

□ 권역별로 공설 보안시설 과부족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연장지가 적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동북부·서북부 권역의 경우 2018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부 권역의 경우 2025년부터, 동부의 경우 2026년부터, 남부의 경우 2029년부터 보안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38> 권역별 공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부			서부			남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339	33,320	29,981	6,742	58,686	51,944	4,599	65,997	61,398
2019	3,478	29,981	26,502	7,023	51,944	44,922	4,791	61,398	56,607
2020	3,685	26,502	22,817	7,440	44,922	37,481	5,076	56,607	51,530
2021	3,812	22,817	19,005	7,695	37,481	29,786	5,250	51,530	46,280
2022	4,008	19,005	14,997	8,092	29,786	21,694	5,521	46,280	40,760
2023	4,128	14,997	10,869	8,333	21,694	13,361	5,685	40,760	35,075
2024	4,244	10,869	6,626	8,567	13,361	4,794	5,845	35,075	29,230
2025	4,433	6,626	2,193	8,950	4,794	-4,156	6,106	29,230	23,124
2026	4,543	2,193	-2,351	9,172	-4,156	-13,328	6,258	23,124	16,866
2027	4,728	-2,351	-7,079	9,546	-13,328	-22,874	6,513	16,866	10,353
2028	4,911	-7,079	-11,990	9,915	-22,874	-32,788	6,764	10,353	3,589
2029	5,013	-11,990	-17,003	10,121	-32,788	-42,909	6,905	3,589	-3,315
2030	5,190	-17,003	-22,193	10,479	-42,909	-53,388	7,149	-3,315	-10,465
2031	5,365	-22,193	-27,558	10,831	-53,388	-64,219	7,389	-10,465	-17,854
2032	5,537	-27,558	-33,095	11,178	-64,219	-75,397	7,626	-17,854	-25,480
2033	5,705	-33,095	-38,800	11,518	-75,397	-86,914	7,858	-25,480	-33,338
2034	5,870	-38,800	-44,670	11,851	-86,914	-98,765	8,085	-33,338	-41,423
2035	6,031	-44,670	-50,701	12,176	-98,765	-110,941	8,307	-41,423	-49,730

<표 4-38> 권역별 공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북부			서북부			비고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4,221	3,027	-1,194	1,701	0	-1,701	
2019	4,397	-1,194	-5,592	1,772	-1,701	-3,473	
2020	4,659	-5,592	-10,251	1,877	-3,473	-5,351	
2021	4,818	-10,251	-15,069	1,942	-5,351	-7,292	
2022	5,067	-15,069	-20,136	2,042	-7,292	-9,334	
2023	5,218	-20,136	-25,354	2,103	-9,334	-11,437	
2024	5,365	-25,354	-30,719	2,162	-11,437	-13,599	
2025	5,604	-30,719	-36,322	2,258	-13,599	-15,857	
2026	5,744	-36,322	-42,066	2,315	-15,857	-18,172	
2027	5,977	-42,066	-48,043	2,409	-18,172	-20,581	
2028	6,208	-48,043	-54,251	2,502	-20,581	-23,082	
2029	6,337	-54,251	-60,589	2,554	-23,082	-25,636	
2030	6,561	-60,589	-67,150	2,644	-25,636	-28,280	
2031	6,782	-67,150	-73,932	2,733	-28,280	-31,013	
2032	6,999	-73,932	-80,931	2,821	-31,013	-33,834	
2033	7,212	-80,931	-88,143	2,906	-33,834	-36,740	
2034	7,420	-88,143	-95,564	2,990	-36,740	-39,731	
2035	7,624	-95,564	-103,188	3,072	-39,731	-42,803	

- 사설 보안시설의 경우는 16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451,039구 안치가 가능함.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39> 권역별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 조성현황

(단위: 구)

권역	보안능력	기보안	향후보안	비고
계	2,166,292	554,223	1,612,069	
동 부	838,729	130,269	708,460	
서 부	230,194	81,902	148,292	
남 부	421,473	121,132	300,341	
동북부	237,979	56,009	181,970	
서북부	437,917	164,911	273,006	

-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에 대한 수급 분석 결과, 2035년까지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나타남.

<표 4-40> 경기도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20,603	1,612,069	1,591,466	
2019	21,462	1,591,466	1,570,005	
2020	22,738	1,570,005	1,547,266	
2021	23,517	1,547,266	1,523,749	
2022	24,729	1,523,749	1,499,020	
2023	25,467	1,499,020	1,473,553	
2024	26,182	1,473,553	1,447,371	
2025	27,350	1,447,371	1,420,020	
2026	28,032	1,420,020	1,391,989	
2027	29,173	1,391,989	1,362,816	
2028	30,300	1,362,816	1,332,516	
2029	30,929	1,332,516	1,301,587	
2030	32,024	1,301,587	1,269,563	
2031	33,101	1,269,563	1,236,462	
2032	34,160	1,236,462	1,202,302	
2033	35,199	1,202,302	1,167,104	
2034	36,216	1,167,104	1,130,888	
2035	37,211	1,130,888	1,093,677	

- 권역별로 공설 및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과부족을 살펴보면, 서부를 제외한 동부 · 남부 · 동북부 · 서북부 권역의 경우 2035년까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 권역의 경우 2034년부터 봉안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41> 권역별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부			서부			남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339	708,460	705,121	6,742	148,292	141,550	4,599	300,341	295,742
2019	3,478	705,121	701,642	7,023	141,550	134,528	4,791	295,742	290,951
2020	3,685	701,642	697,957	7,440	134,528	127,087	5,076	290,951	285,874
2021	3,812	697,957	694,145	7,695	127,087	119,392	5,250	285,874	280,624
2022	4,008	694,145	690,137	8,092	119,392	111,300	5,521	280,624	275,104
2023	4,128	690,137	686,009	8,333	111,300	102,967	5,685	275,104	269,419
2024	4,244	686,009	681,766	8,567	102,967	94,400	5,845	269,419	263,574
2025	4,433	681,766	677,333	8,950	94,400	85,450	6,106	263,574	257,468
2026	4,543	677,333	672,789	9,172	85,450	76,278	6,258	257,468	251,210
2027	4,728	672,789	668,061	9,546	76,278	66,732	6,513	251,210	244,697
2028	4,911	668,061	663,150	9,915	66,732	56,818	6,764	244,697	237,933
2029	5,013	663,150	658,137	10,121	56,818	46,697	6,905	237,933	231,029
2030	5,190	658,137	652,947	10,479	46,697	36,218	7,149	231,029	223,879
2031	5,365	652,947	647,582	10,831	36,218	25,387	7,389	223,879	216,490
2032	5,537	647,582	642,045	11,178	25,387	14,209	7,626	216,490	208,864
2033	5,705	642,045	636,340	11,518	14,209	2,692	7,858	208,864	201,006
2034	5,870	636,340	630,470	11,851	2,692	-9,159	8,085	201,006	192,921
2035	6,031	630,470	624,439	12,176	-9,159	-21,335	8,307	192,921	184,614

<표 4-41> 권역별 공설 및 사설 보안시설 수급분석 결과

(단위: 구)

연도	동북부			서북부			비고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4,221	181,970	177,749	1,701	273,006	271,305	
2019	4,397	177,749	173,351	1,772	271,305	269,533	
2020	4,659	173,351	168,692	1,877	269,533	267,655	
2021	4,818	168,692	163,874	1,942	267,655	265,714	
2022	5,067	163,874	158,807	2,042	265,714	263,672	
2023	5,218	158,807	153,589	2,103	263,672	261,569	
2024	5,365	153,589	148,224	2,162	261,569	259,407	
2025	5,604	148,224	142,621	2,258	259,407	257,149	
2026	5,744	142,621	136,877	2,315	257,149	254,834	
2027	5,977	136,877	130,900	2,409	254,834	252,425	
2028	6,208	130,900	124,692	2,502	252,425	249,924	
2029	6,337	124,692	118,354	2,554	249,924	247,370	
2030	6,561	118,354	111,793	2,644	247,370	244,726	
2031	6,782	111,793	105,011	2,733	244,726	241,993	
2032	6,999	105,011	98,012	2,821	241,993	239,172	
2033	7,212	98,012	90,800	2,906	239,172	236,266	
2034	7,420	90,800	83,379	2,990	236,266	233,275	
2035	7,624	83,379	75,755	3,072	233,275	230,203	

5. 묘지 수급 분석

가. 묘지 수요 추계

□ 매장자 수는 해당연도 사망자에서 화장자(각 연도 화장률을 적용하여 산출)를 제하여 산출함.

- 묘지의 운영주체별 수요를 보면 공설보다는 사설이 더 높음.

<표 4-42> 권역별 묘지 수요

(단위: %)

권역	인원수(명)	묘지 유형		비고
		사설	공설	
계	116	68.1	31.9	
동 부	21	81.0	19.0	
서 부	38	68.4	31.6	
남 부	24	58.3	41.7	
동북부	21	57.1	42.9	
서북부	12	83.3	16.7	

□ 경기도 및 각 권역별 공설묘지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43> 경기도 매장자 및 묘지 설치 주체별 수요

(단위: 기)

연도	사망자	매장자	공설						사설
			전체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2018	62,185	6,488	2,070	375	678	428	375	214	4,419
2019	64,156	6,137	1,958	354	641	405	354	203	4,179
2020	67,425	5,955	1,900	344	622	393	344	197	4,055
2021	69,262	5,687	1,814	328	594	375	328	188	3,873
2022	72,421	5,568	1,776	322	582	367	322	184	3,792
2023	74,226	5,381	1,716	311	562	355	311	178	3,664
2024	76,010	5,230	1,668	302	547	345	302	173	3,561
2025	79,138	5,200	1,659	300	543	343	300	172	3,541
2026	80,886	5,106	1,629	295	534	337	295	168	3,477
2027	83,984	5,119	1,633	296	535	338	296	169	3,486
2028	87,060	5,149	1,643	297	538	340	297	170	3,507
2029	88,726	5,113	1,631	295	534	337	295	169	3,482
2030	91,744	5,171	1,650	299	540	341	299	171	3,522
2031	94,723	5,239	1,671	303	547	346	303	173	3,568
2032	97,662	5,316	1,696	307	555	351	307	175	3,620
2033	100,554	5,399	1,722	312	564	356	312	178	3,677
2034	103,394	5,488	1,751	317	574	362	317	181	3,738
2035	106,175	5,582	1,781	322	583	368	322	184	3,801

나. 묘지 수급 분석

- 경기도 공설 · 공동묘지 수요에 대한 공급은 2018년 67,377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전제로 분석함.

<표 4-44> 권역별 매장 가능 묘지 수

(단위: 기)

권역	계			공설묘지			공동묘지		
	매장 능력	안치	향후 매장	매장 능력	안치	향후 매장	매장 능력	안치	향후 매장
계	276,326	202,918	67,377	85,418	78,848	6,570	190,908	124,070	60,807
동 부	110,963	52,118	58,788	11,049	9,739	1,310	99,914	42,379	57,478
서 부	59,523	58,345	879	27,112	26,945	167	32,411	31,400	712
남 부	27,966	27,362	212	13,409	13,197	212	14,557	14,165	0
동북부	45,996	37,573	7,067	29,733	25,283	4,450	16,263	12,290	2,617
서북부	31,878	27,520	431	4,115	3,684	431	27,763	23,836	0

- 경기도 전체 공설 · 공동묘지의 수급분석 결과, 2035년까지 공설 · 공동묘지 수급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5> 경기도 공설 · 공동묘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기)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2,070	67,377	65,307	
2019	1,958	65,307	63,350	
2020	1,900	63,350	61,450	
2021	1,814	61,450	59,636	
2022	1,776	59,636	57,860	
2023	1,716	57,860	56,144	
2024	1,668	56,144	54,476	
2025	1,659	54,476	52,817	
2026	1,629	52,817	51,188	
2027	1,633	51,188	49,555	
2028	1,643	49,555	47,913	
2029	1,631	47,913	46,282	
2030	1,650	46,282	44,632	
2031	1,671	44,632	42,961	
2032	1,696	42,961	41,265	
2033	1,722	41,265	39,543	
2034	1,751	39,543	37,792	
2035	1,781	37,792	36,012	

□ 권역별로 공설 · 공동묘지의 수급분석 결과, 권역별로 수급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공설 · 공동묘지 공급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동부 권역의 경우 2035년까지 묘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부 · 서부 권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가장 적어 남부는 2018년부터, 서부는 2019년부터 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북부 권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2035년까지 묘지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북부 경우는 2020년부터 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6> 권역별 공설 · 공동묘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기)

연도	동부			서부			남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75	58,788	58,413	678	879	201	428	212	-216
2019	354	58,413	58,059	641	201	-440	405	-216	-621
2020	344	58,059	57,715	622	-440	-1,063	393	-621	-1,014
2021	328	57,715	57,387	594	-1,063	-1,657	375	-1,014	-1,390
2022	322	57,387	57,065	582	-1,657	-2,239	367	-1,390	-1,757
2023	311	57,065	56,754	562	-2,239	-2,801	355	-1,757	-2,112
2024	302	56,754	56,452	546	-2,801	-3,347	345	-2,112	-2,457
2025	300	56,452	56,152	543	-3,347	-3,891	343	-2,457	-2,800
2026	295	56,152	55,857	534	-3,891	-4,424	337	-2,800	-3,137
2027	296	55,857	55,562	535	-4,424	-4,959	338	-3,137	-3,475
2028	297	55,562	55,264	538	-4,959	-5,497	340	-3,475	-3,815
2029	295	55,264	54,969	534	-5,497	-6,031	337	-3,815	-4,153
2030	299	54,969	54,670	540	-6,031	-6,572	341	-4,153	-4,494
2031	303	54,670	54,368	547	-6,572	-7,119	346	-4,494	-4,840
2032	307	54,368	54,061	555	-7,119	-7,675	351	-4,840	-5,190
2033	312	54,061	53,749	564	-7,675	-8,239	356	-5,190	-5,547
2034	317	53,749	53,432	574	-8,239	-8,812	362	-5,547	-5,909
2035	322	53,432	53,110	583	-8,812	-9,396	368	-5,909	-6,277

<표 4-46> 권역별 공설 · 공동묘지 수급분석 결과

(단위: 기)

연도	동북부			서북부			비고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375	7,067	6,692	214	431	217	
2019	354	6,692	6,338	203	217	14	
2020	344	6,338	5,994	196	14	-182	
2021	328	5,994	5,666	188	-182	-370	
2022	322	5,666	5,344	184	-370	-554	
2023	311	5,344	5,033	178	-554	-731	
2024	302	5,033	4,731	173	-731	-904	
2025	300	4,731	4,431	172	-904	-1,075	
2026	295	4,431	4,136	168	-1,075	-1,244	
2027	296	4,136	3,841	169	-1,244	-1,413	
2028	297	3,841	3,543	170	-1,413	-1,583	
2029	295	3,543	3,248	169	-1,583	-1,751	
2030	299	3,248	2,949	171	-1,751	-1,922	
2031	303	2,949	2,647	173	-1,922	-2,095	
2032	307	2,647	2,340	175	-2,095	-2,270	
2033	312	2,340	2,028	178	-2,270	-2,448	
2034	317	2,028	1,711	181	-2,448	-2,629	
2035	322	1,711	1,389	184	-2,629	-2,814	

□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매장할 묘지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역별로는 묘지 수급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묘지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게 함.

- 경기도 시 · 군 중 이천시와 양평군의 향후 매장기수가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나 다른 지역 주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각 시 · 군의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만장 혹은 향후 매장 계획이 없는 상태로 남은 매장 공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이 신규묘지 설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묘지를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묘지 재개발이나 화장 후 봉안 · 자연장 · 산골을 유도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장례식장 수급 분석

가. 장례식장 수요 추계

-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총 177개로 빈소수는 848개소로 나타남. 공설 장례식장의 경우 1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빈소수는 85개소, 사설 장례식장의 경우 165개가 운영되고 있고 빈소수는 763개소임.

<표 4-47> 권역별 장례식장 조성현황

(단위: 개소, 구)

권역	개소수	빈소수	안치능력	비고
계	177	848	1,503	
동 부	32	145	257	
서 부	54	260	437	
남 부	33	184	316	
동북부	37	151	287	
서북부	21	108	206	

- 경기도 장례식장에 대한 수급 분석 결과 2034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필요 빈소수(수요) : 사망자 × 3일장 ÷ 365일

<표 4-48> 경기도 공설 및 사설 장례식장 수급분석 결과

(단위: 개소)

연도	수요	공급	과부족	비고
2018	511	848	337	
2019	527	848	321	
2020	554	848	294	
2021	569	848	279	
2022	595	848	253	
2023	610	848	238	
2024	625	848	223	
2025	650	848	198	
2026	665	848	183	
2027	690	848	158	
2028	716	848	132	
2029	729	848	119	
2030	754	848	94	
2031	779	848	69	
2032	803	848	45	
2033	826	848	22	
2034	850	848	-2	
2035	873	848	-25	

- 권역별로 장례식장 과부족을 살펴보면, 남부 권역의 경우 2030년부터, 서부 권역은 2032년부터 장례식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2035년까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9> 권역별 공설 및 사설 장례식장 수급분석 결과

(단위: 개소)

연도	동부			서부			남부			동북부			서북부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수요	공급	과부족
2018	78	145	67	178	260	82	124	184	60	71	151	80	60	108	48
2019	80	145	65	183	260	77	128	184	56	74	151	77	62	108	46
2020	85	145	60	191	260	69	135	184	49	77	151	74	65	108	43
2021	87	145	58	196	260	64	139	184	45	80	151	71	67	108	41
2022	92	145	53	204	260	56	146	184	38	83	151	68	71	108	37
2023	94	145	51	208	260	52	150	184	34	85	151	66	73	108	35
2024	97	145	48	212	260	48	154	184	30	87	151	64	75	108	33
2025	101	145	44	220	260	40	161	184	23	91	151	60	78	108	30
2026	103	145	42	224	260	36	165	184	19	93	151	58	80	108	28
2027	107	145	38	232	260	28	172	184	12	96	151	55	83	108	25
2028	112	145	33	240	260	20	178	184	6	100	151	51	86	108	22
2029	114	145	31	243	260	17	182	184	2	102	151	49	88	108	20
2030	118	145	27	251	260	9	189	184	-5	105	151	46	91	108	17
2031	122	145	23	258	260	2	195	184	-11	109	151	42	95	108	13
2032	126	145	19	266	260	-6	201	184	-17	112	151	39	98	108	10
2033	130	145	15	273	260	-13	208	184	-24	116	151	35	101	108	7
2034	134	145	11	280	260	-20	214	184	-30	119	151	32	104	108	4
2035	137	145	8	286	260	-26	220	184	-36	122	151	29	107	108	1

제 5 장 장사시설 설치 사례

제1절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

제2절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

제 5 장 장사시설 설치 사례

제 1 절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

1. 묘지 재개발

가.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 중대공원 설립배경

- 중대동 공동묘지는 1957년에 설치되어 만장 상태로 매장 공간 부재와 관리의 문제, 지역 주민에게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었음.
- 이에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중대공원에는 사업비 7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원에는 2,2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자연장과 주차장, 관리동, 합동분향대, 휴게광장, 산책로 등을 마련함.
- 총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장묘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표 5-1> 광주시 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경위

구분	내용	비고
2001. 06.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검토	
2001. 09.	타당성 검토 용역	
2006. 12.	보건복지부의 자연장 승인	
2007. 05.	무연분묘 개장 공고	
2008. 05.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2008. 08.	조성공사 착공	
2008. 10.	분묘개장용역 착공	
2009. 09.	분묘개장 완료(자연장 재안치)	
2009. 12.	자연장 공사 준공	
2010. 11.	관리동 준공(베이커리와 카페 설치)	

※ 자료 : 「여주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2017)

□ 중대공원 현황

- 전국 최초로 기존 공동묘지 전체를 친환경적 공원 및 자연장지로 조성함.
- 문화복지 사업을 접목하여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개발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관리동에는 노인들이 직접 빵과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를 설치하였고, 공원관리사업단에서는 시설 관리 및 청소 등으로 고용 창출
-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
- 중대공원의 시설, 이용요금, 운영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2> 광주시 중대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09. 12.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92(중대동 50-1)	
면 적	60,690m ²	
자 연 장	2,200구, 면적 3,804m ²	
주차면수	총49면	
편의시설	관리동, 휴게광장, 휴게데크, 베이커리 카페 등	

※ 자료 : 경기도 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보고서 재구성

<표 5-3> 광주시 중대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잔디형, 화단형	300,000	450,000	- 사용기간 30년, 연장 불가

※ 자료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표 5-4> 광주시 중대공원 운영관리 현황

구분	현황	비고
제1세대 문화·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 베이커리 카페 운영(시장형) : 12명 - 공원관리사업단 운영(공익형) : 15명	
제2세대 문화·복지사업	여성 문화강좌 운영	
제3세대 문화·복지사업	어린이 요리교실 운영	

※ 자료 : 「남양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2017)

나. 경기도 여주시 여주추모공원

□ 여주추모공원 설립배경

- 여주시의 공설 및 공동묘지 만장에 따라 매장 공간 확보 및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11년 63개 공설 · 공동묘지(127만5천㎡)의 매장률이 90%를 넘어 매장 묘지가 부족한 실정이었음.
- 2011년 5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분묘를 이장 · 화장하고, 기존 분묘 지역에 자연친화적이고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공설묘지 재개발을 도모함.
- 관련 마을 주민들과 함께 파주시 서울시립승화원 및 광주시 중대공원을 견학
- 광주시 중대공원이 공원기능에 한계를 보인 것을 고려해 산책로, 광장, 운동시설, 쉼터 등 공원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이용을 증대하고자 함.
- 여주읍 가업리와 가남면 본두리, 점동면 처리 등 후보지 세 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 주민의견을 수렴 · 검토한 후 가남읍 본두리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기로 하고 약 93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부터 1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추모공원을 완공함.

<표 5-5> 여주 추모공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2011. 05.	군정발전위원회 장사시설 현장 견학	
2011. 07.	주민설명회 실시	
2011. 09.	5개리 지역주민 현장견학(서울시립승화원 외 1개소)	
2011. 10.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및 대상지 예비 선정	
2011. 11.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가남면 본두리)	
2012. 02.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용역 착수	
2012. 03.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2012. 04.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일제조사 실시(연고자 파악 1차)	
2012. 10.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2. 11.	경기도 투융자심사 통과	
2012. 11.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2012. 1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착수	
2012. 12.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2012. 12.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묘지 연고자 파악(2차)	
2013. 02.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3. 03.	유연분묘 이전방법 안내문 발송(직접개장 또는 여주시위임)	
2013. 05.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3. 06.	무연분묘 개장용역 착수(1차 207기)	
2013. 06.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2013. 07.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요청, 보상시작	
2013. 10.	위임유연분묘 봉안 완료(봉안함 64기 - 유토피아 추모관)	
2013. 11.	실시계획 인가	
2014. 05.	무연분묘 봉안당 안치(21기)	
2014. 06.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재심의회 개최	
2014. 07.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승인(경기도 교통정책과)	
2014. 11.	실시계획 인가고기	
2014. 11.	공사발주(토목 · 건축기계, 전기, 통신)	
2014. 12.	공사 착공	
2015. 12.	통신 및 전기공사 준공	
2016. 0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일부개정) 시행	
2016. 05.	여주추모공원 위·수탁계약 체결(여주시도시관리공단)	
2016. 06.	여주추모공원 개원	

※ 자료 : 「괴산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2013), 「남양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2017)

□ 여주추모공원 현황

- 2016년 6월 1일 개원한 여주시 최초의 시립추모공원
- 추모공원의 시설, 이용요금,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6> 여주 추모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6. 06.	
위 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69(본두리 768-1번지)	
면 적	41,578m ²	
봉 안 담	4,944구, 면적 2,030m ²	
자 연 장	7,008구, 면적 18,355m ²	
주차면수	총144면(승용차 133, 장애인 8, 대형 3)	
편의시설	매점,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파고라 등	

※ 자료 : 여주추모공원 홈페이지

<표 5-7> 여주 추모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납부금액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봉안담	개인단	500,000	400,000	100,000	- 관내자 기준, 관외자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부부단	750,000	600,000	150,000	
잔디형	개인장	350,000	200,000	150,000	- 관내자 기준, 관외자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부부장	525,000	300,000	225,000	

※ 자료 :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종합계획 연구」(2018)

<표 5-8> 여주 추모공원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구)

유형	안치능력	기안치	향후안치	비고
계	11,952	1,061	10,900	
잔디형	7,008	629	6,379	
봉안담	4,944	432	4,521	

※ 자료 :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종합계획 연구」(2018)

- 여주추모공원 봉안담

- 봉안담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며 실내 봉안당과 다르게 실외 공간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룸.
- 화장 유골, 개장 후 화장 유골, 보건복지부 인가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봉안담 안치 가능 유골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내자와 관외자의 적용기준이 다름.
-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여 총 45년까지 사용 가능함.

<그림 5-1> 여주 추모공원 봉안담



※ 자료 : 여주추모공원 홈페이지

- 여주추모공원 자연장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하며,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을 운영하고 있음.
- 화장 유골, 개장 후 화장 유골, 보건복지부 인가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봉안담 안치 가능 유골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내자와 관외자의 적용기준이 다름.
-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 15년 연장 가능함,

<그림 5-2> 여주 추모공원 자연장지



※ 자료 : 여주추모공원 홈페이지

다. 경기도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자연장 제도의 조기정착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장사시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조성함.
- 기존 공동묘지를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었으며, 자연장지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및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였음.
 - 주민 인센티브 제공
 - 경신리 주민 사용료 감면(개장 이전부터 거주자에 한함)
 - 자연장지 표지석 판매
 - 봉안당 사용료 수입의 12% 마을지원

<표 5-9>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2011. 03.	경신리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2011. 04.	묘지 일제조사(연고자 확인, 무연분묘 개장공고)	
2011. 11.	경신리 자연장지 조성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2012. 02.	경신리 자연장지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2012.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2. 12.	경신리 묘지 분묘이전 완료	
2013. 01.	조성공사 착공	
2014. 02.	관리동 용도 봉안당으로 계획 변경	
2014. 06.	조성공사 완공	
2015. 01.	봉안당 시설 설치	
2015. 04.	시설개장 및 운영	

※ 자료 :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동두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2018)

□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현황

- 경신하늘뜰공원의 시설, 이용요금,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10>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5. 04.	
위 치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 70	
면 적	4,713m ²	
봉 안 담	2,500구, 면적 1,481m ²	
자 연 장	2,360구, 면적 527m ²	
주차면수	총10대	
시 설	공동제례당,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	

※ 자료 :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표 5-11>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봉안담	개인단	500,000	1,000,000	- 사용기간 15년, 1회 연장가능
	부부단	1,000,000	2,000,000	
잔디형	개인장	400,000	600,000	- 사용기간 30년, 연장불가 - 식물, 잔디는 개인 실비부담
	부부장	400,000	600,000	

※ 자료 : 「구리시 제2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종합계획」(2018)

<표 5-12>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구)

유형	안치능력	기안치	향후안치	비고
합계	4,860	244	4,616	2016년 10월 기준
잔디형	2,360	110	2,250	
봉안담	2,500	134	2,366	

※ 자료 : 「용인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2017)

다. 경기도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 2000년 초반 안산시 와동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매장 공간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고 안산시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
- 테마공원, 벽천시설, 장미터널, 야간조명 등으로 자연장지 주변 조경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장사시설을 공원화하였음.

<표 5-13>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5. 11.	
위 치	경기도 안산구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37-2번지)	
면 적	5,613m ²	
수 목 형	1,800구, 면적 4,097m ²	
잔 디 형	660구, 면적 706m ²	
주차면수	총 100대	
시 설	식당, 매점 등	

※ 자료 :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표 5-14>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수목형	개인장	607,000	100% 가산징수	- 45년간 이용 가능, 연장불가
	부부장	1,214,000		
	가족장	4,856,000		
잔디형	개인장	489,000	100% 가산징수	- 45년간 이용 가능, 연장불가
	부부장	987,000		

※ 자료 :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라.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 인천가족공원 설립배경

- 부평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 전체 묘지의 일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및 공원을 조성함.

<표 5-15> 인천가족공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1936.	시립화장장 설립(남구 주안동)	
1977.	부평시립 승화원 현 위치로 이전(화장로 7기)	
1994. 10.	신축 화장로 준공(화장로 8기)	
2000. 07.	현대식 화장장 신축착공	
2002. 10.	구화장 철거 및 신축 화장로 가동	
2003. 01.	신축 화장장 준공(화장로 11기)	
2004. 09.	화장로 4기 증설(화장로 15기)	
2011. 04.	승화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화장로 5기 증설)	
2015. 02.	평온당 안치 시작	
2017. 01.	봉안당 안치 시작	

※ 자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 인천가족공원 현황

- 인천가족공원의 시설, 이용요금,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16> 인천가족공원 시설 현황

구분		현황	비고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부평동 산57-1번지)	
화장장	승화원	화장로 20로(1일 처리능력 72구), 면적 5,608.22㎡	
봉안당	금마총	16,675구 면적 818.07㎡ (2010. 5. 23. 만장)	
	추모의집	19,320구 면적 2,248.31㎡ (2007. 12. 29. 만장)	
	만월당	29,184구 면적 3,701.29㎡ (2015. 2. 24. 만장)	
	평온당	36,656구 면적 5,425.08㎡	

구분		현황	비고
봉안담	회장형 봉안담	3,990구, 456m ²	
	자연장 및 봉안담 I	자연장 1,602구 봉안담 3,990구 면적 10,752m ²	
	자연장 및 봉안담 II	자연장 2,528구 봉안담 1,696구 면적 17,760m ²	
	자연장 및 봉안담 III	자연장 624구 봉안담 4,116구 면적 12,140m ²	
자연장	수목장림	1,366구 면적 23,500m ² (2012. 6. 29. 만장)	
	늘푸른 잔디장	1,321구 면적 712m ² (2015 2. 1. 만장)	
	솔향기 정원식수목장	557구 면적 1,669m ² (2017. 4. 26. 만장)	
	하늘정원 잔디장	3,068구 면적 2,475m ² (2015. 2. 2.부터 운영)	
시설		카페, 식당, 매점, 주차장 등	

※ 자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표 5-17> 인천가족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기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	1,000,000
	만15세 미만			130,000	400,000
	개장유골			100,000	400,000
	죽은 태아(4개월 이상)			50,000	300,000
	인천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거주자 중 시 소재 병원 및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	600,000
봉안당	안치료		1구당	950,000/30년	사용불가
	관리료			10,000/1년	
자연장지	수목장림(만장) 및 자연장	사용료	1구당	600,000/30년	사용불가 (인천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거주자 중 시 소재 병원 및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의 경우 관내주민 요금 적용)
		관리료		10,000/1년	
		연장기간		30년, 연장불가	
	정원식 수목장 (만장)	사용료	1구당	1,000,000/30년	
		관리료		10,000/1년	
		연장기간		30년, 연장불가	

※ 자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2. 장사시설 공동 설치 · 운영

가. 전라북도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

□ 추모공원 설립배경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자체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은 시간적 ·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송화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
- 타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하면 6배~10배 이상 장례비를 더 부담하거나 화장장 수요가 많을 시에는 4~5일장을 치르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음.
-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인접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광역화장장의 공동건립을 추진함.
- 2011년 ‘화장시설 설치 상호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추모공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님비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음.
- 정읍시 감곡 통석리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인근의 김제시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힘.
-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김제시를 제외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2015년 11월 서남권추모공원을 개관하였음.
- 다음해 김제시 또한 서남권 광역 화장장 확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화장로를 확대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협의하였음.

<표 5-18>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2011. 06.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화장시설 설치 상호협약’ 양해 각서 체결	
2012. 10.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삼서(안전행정부)	
2013. 06.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2013. 08.	설계용역 착수	
2014. 05.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4. 06.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2014. 08.	공사 착공	
2015. 10.	사업 준공	
2015. 11.	추모공원 개관	
2016. 01.	김제시 서남권 광역 화장장 확장사업 참여 및 공동 운영 협의	

※ 자료 : 서남권추모공원 홈페이지

□ 서남권추모공원 현황

- 친환경 최첨단 화장시설, 품격있는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산골하는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을 보유한 종합장사시설임.
- 서남권추모공원의 시설현황,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음.

<표 5-19>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5. 11.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통석리 290-2)	
화 장 장	화장로 5로, 면적 2,400㎡	
봉 안 당	3,870구, 면적 500㎡	
자 연 장	4,000구, 면적 22,230㎡	
유택동산	면적 36.8㎡	
편의시설	매점, 카페테리아, 식당, 파고다쉼터 등	
운영주체	화장장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공동(4개시 관내 적용)	
	봉안당, 자연장지 : 정읍시 단독(정읍시만 관내 적용)	

※ 자료 : 서남권추모공원 홈페이지

<표 5-20>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납부금액			비고
		관내	도내	관외	
화장장	만 15세이상(1구)	70,000	300,000	500,000	
	만 15세미만(1구)	45,000	150,000	300,000	
	죽은태아(1구)	20,000	70,000	150,000	
	개장유골(1구)	30,000	150,000	300,000	
봉안당	개인단(1구)	500,000	800,000	1,000,000	
	부부단(2구)	1,000,000	1,600,000	2,000,000	
	무연유골(1구)	150,000	사용불가	사용불가	
자연장	개인장(1구)	500,000	800,000	1,000,000	잔디형, 수목형
	부부장(2구)	1,000,000	1,600,000	2,000,000	잔디형
유택동산	산골처리장	20,000	20,000	20,000	

※ 자료 : 서남권추모공원 홈페이지

-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로 화장로 5기를 보유함.
- 무연 · 무취 · 무색 · 무공해의 친환경 화장시설을 갖추.
- 이용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용료는 관내, 도내, 관외에 따라 상이함.
- 사용료 적용 기준은 대인 · 소인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장유골은 개장신고일 현재 기준 묘지의 소재지, 죽은태아는 사산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임.

-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

-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로 나뉨.
- 타지역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도 가능하나 도내, 관외 지역 무연유골은 사용에 제한이 있음.
-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이며, 2회 15년씩 연장 가능하여 총 사용기간은 45년임.

<그림 5-3>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장사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잔디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 자료 : 서남권추모공원 홈페이지

- 서남권추모공원 자연장지

- 자연장은 자연회귀를 기본으로 한 영구적인 장사법으로 한번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음.
- 총 사용기간은 45년임.

- 서남권추모공원 유택동산

- 화장된 유골을 깨끗하게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할 수 있는 장소

나. 충청남도 공주시 나래원

□ 나래원 공동운영 배경

- 나래원 개원 후 1년간 화장건수는 964구로 하루 평균 2.6구를 화장하였으나 하루에 단 1건의 화장 실적이 없는 날이 있는 등 이용이 저조하였음.
- 이에 공주시 나래원은 사용료, 관내기준 적용 완화, 봉안시설 사용 포기 시 반환규정 신설 등 이용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당시 인접 지역인 청양군에서는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으나 이미 인근 지역에서 장사시설을 운영 중이라 화장시설을 설치하여도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불리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었음.
- 청양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공주시 나래원을 공동 이용하자고 제안하였음.
- 공주시 · 부여군 · 청양군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을 선정하였고 2015년 12월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 공용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6년 5월 공주시가 장사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음.
- 협약에 따라 3개 시 · 군은 공주시 나래원을 공주시민과 같은 자격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확충과 시설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나래원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음.

<표 5-21> 공주시 나래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2007. 05.	추모공원 입지응모(이인면 운암리)	
2008. 02.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주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2008. 08.	입지확정	
2010. 0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0. 06.	공사 착공	
2011. 05.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	
2012. 04.	장사시설 운영조례 개정	
2012. 07.	추모공원시설 준공	
2013. 02.	장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3. 02.	나래원 개관, 운영 개시	
2013. 04.	장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 자료 : 나래원 홈페이지

□ 나래원 현황

- 무연 · 무취의 최신 화장설비, 봉안당, 잔디장, 옥외봉안시설, 수목장을 보유한 현대식 종합장사시설임.
- 나래원의 시설현황,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음.

<표 5-22> 공주시 나래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3. 02.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삼배살길 70(운암리)	
면 적	총 면적 246,100㎡, 건축연면적 6,398㎡	
화 장 장	화장로 3로, 면적 3,108㎡	
봉 안 당	면적 3,226㎡	
자 연 장	면적 2,500㎡	
옥외 봉안시설	600구(벽식)	
수 목 장	면적 3,400㎡	
편 의 시 설	식당, 매점, 주차장 등	

※ 자료 : 나래원 홈페이지

<표 5-23> 공주시 나래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납부금액		비고
		관내	관외	
화장시설	만 15세이상(1구), 대인	100,000	500,000	관내: 사망당시 공주시, 부여군, 청 양 군 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만 15세미만(1구), 소인	80,000	450,000	
	개장유골(1구)	80,000	200,000	
	죽은태아(1구)	50,000	100,000	
봉안시설	일반(1구, 15년)	500,000	1,000,000	
	부부(2구, 15년)	1,000,000	2,000,000	
	무연유골(1구, 10년)	100,000	사용불가	
자연장지	수목형(1구, 15년)	300,000	500,000	
	잔디형(1구, 15년)	300,000	500,000	
유택동산	사용료 1구당	10,000	10,000	
	죽은태아 1구당	5,000	5,000	

※ 자료 : 나래원 홈페이지

3. 종합장사시설 설치

가. 울산광역시 하늘공원

□ 울산하늘공원 설립 배경

- 1973년 설치된 울산 유일의 시립화장장은 시설이 낙후되어 많은 울산 시민들이 부산 등 인근 도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이었음.
- 울산의 화장률은 전국에서 높은 지역에 속해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공공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함.
- 화장시설 설치에 앞서 찬반 주민투표를 하였으나 투표자 중 14.2%만이 찬성하였음.
-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의 자발적 화장장 유치에 삼동면 주민숙원사업 19건 지원, 현금 200억 원,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 경영수익 사업권을 삼동면에 인센티브로 제공함.

<표 5-24> 울산하늘공원 연혁

구분	내용	비고
2003. 10.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	
2004. 1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화장장, 공원, 도로)	
2008. 10.	실시계획 승인	
2009. 06.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 착공	
2010. 03.	자연장지 신설 및 One Stop System 계획 수립	
2010. 09.	교통 영향평가 심의	
2010. 10.	지방건설기술변경심의	
2012. 11.	울산하늘공원 준공	
2013. 02.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정	
2013. 03.	울산하늘공원 개원	

※ 자료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 울산하늘공원 현황

- 운구,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절차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임.
- 무색 · 무취 · 무연의 친환경 장사복지시설로 생태계 보존지역인 무채치늪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위치함.
- 울산하늘공원의 시설, 이용요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25> 울산하늘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13. 03.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면 적	98,026㎡	
장례식장	빈소 5개, 면적 2,963㎡	
화 장 장	화장로 10로, 면적 7,957㎡	
봉 안 장	20,016구, 면적 2,420㎡	
자 연 장	잔디장 57,770구 수목장 2,730구 면적 30,087㎡	
편의시설	카페, 식당, 화원, 수유실, 옥외휴게실, 홍보관 등	

※ 자료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표 5-26> 울산하늘공원 이용요금

(단위: 원)

구 분			요 금		비고
			관내	관외	
승화원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140,000	800,000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12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50,000	250,000	
	개장유골 1구당		60,000	300,000	
장례식장	빈소 1실당 (24시간 기준)	148㎡ (201~204호)	112,000	224,000	
		181㎡ (205호)	137,000	274,000	
	가족휴게실 1실당(24시간 기준)		30,000	60,000	
	안치실 1구당(24시간 기준)		40,000	80,000	
	염습실 1회		30,000	60,000	
	영결식장 1실당(1시간기준)		30,000	60,000	
추 모 의 집	개인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사용불가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부부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1,000,000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400,000	
자연 장지	잔디형	사용료 1구당(30년)	300,000	1,000,000	
	수목형	사용료 1구당(30년)	1,400,000	사용불가	
유택동산		사용료 1구당	10,000	10,000	

※ 자료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 울산하늘공원 화장장(승화원)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로 화장로 10기를 보유함.
- 전국 최초의 3차 연소 공해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연 · 무취 · 무색의 완전연소 화장시설을 갖추.

<그림 5-4>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수목형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



유택동산

※ 자료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나. 경상남도 남해군 추모누리

□ 남해 추모누리 현황

- 남해 추모누리는 매장묘역, 평장시설, 봉안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기타 부대시설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임.
- 사망 → 운구 → 장례 → 매장(화장) → 봉안(안치) 등의 모든 장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객 만족의 선진장사행정을 구현함.
- 남해 추모누리의 시설, 이용요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27> 남해 추모누리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07. 05.(종합장사시설 구축)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번지 일원	
면 적	117,241m ²	
장례식장	빈소 2개, 면적 650m ²	민간위탁운영
화 장 장	화장로 2로, 면적 694m ² , 1일 최대 8구 화장	
매장묘역	1,450기 면적 46,886m ²	
평장시설	2,060기 면적 800m ²	봉안평장
봉 안 당	4,530구 면적 661.8m ²	
봉 안 담	360구 면적 198m ²	
자연장지	24,793m ²	
주차시설	승용차 100대, 대형버스 5대	

※ 자료 : 남해군 홈페이지

<표 5-28> 남해 추모누리 이용요금

(단위: 원)

구분	사용면적	계	사용료	관리비 (15년)	석물대 (석물업체)	비고
매장묘역 (기당)	8.25m ²	2,490,000	860,000	240,000	1,390,000	
봉안평장	1.35m ²	310,000	130,000	30,000	150,000	
봉안시설 (구당)	1개 안치단	280,000	160,000	120,000	-	관외 3배 징수

※ 자료 : 남해군 홈페이지

- 남해 추모누리 매장묘역

- 1997년부터 매장묘역과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1999년 매장묘역을 준공해서 현재 유자, 비자, 치자, 동백, 개나리 5개 매장묘역에 1,450여기의 매장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전매장묘역 1기당 사용면적은 8.25㎡이며, 부부(夫婦)중 일방의 사망으로 매장묘역을 사용할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는 정부의 화장정책과 남해군의 장사문화개선시책의 일환으로 기선분양 묘역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사용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이며 3번에 걸쳐 연장 가능하여 최장 60년이며 남해군민일 경우에만 안치가능.

<그림 5-5> 남해 추모누리 매장묘역



※ 자료 : 남해군 홈페이지

- 남해 추모누리 평장시설

- 남해군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봉안평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봉안묘에서 봉안평장으로 장사문화를 혁신하였음.
-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유골함에 넣어 자연적으로 부식되도록 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장사문화(㎡당 1기 이상을 개장 안치하고 와비 1개만 설치)임.
- 자연친화+면적 축소+관리 효율화+장례비용 경감 효과
- 사용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이며 3번에 걸쳐 연장 가능하여 최장 60년이며 남해군민일 경우에만 안치가능.

<그림 5-6> 남해 추모누리 평장시설



평장시설



봉안평장 시연

※ 자료 : 남해군 홈페이지

- 남해 추모누리 봉안시설

- 사용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이며 3번에 걸쳐 연장 가능하여 최장 60년이며, 타지역 이용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3배의 사용료를 징수함.

<그림 5-7> 남해 추모누리 봉안시설



봉안당(안락원)



봉안담

※ 자료 : 남해군 홈페이지

4.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에 대한 시사점

가. 묘지 재개발

-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은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의 대표적 사례로서 포화상태의 기존묘지 재개발을 통해 매장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공원을 조성하여 기피시설이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끈 성공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기존 공동묘지 재개발로 가능안치수를 약 30배 증가시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 공간 재활용 및 공원화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감을 줄임.
 - 또한 노인들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경기도 여주시 추모공원은 단순한 묘지 재개발이 아닌 추모공원으로서 주민의 이용을 증대시켰고 기존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여주 추모공원의 봉안담은 여주 세종도시의 문화를 접목 설치하여 지역문화를 장사시설에 접목한 사례임.
 - 용비어천가, 앵두나무 축제와의 결합 등 지역문화를 접목하여 장사시설을 휴식·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함.
 - 2013년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연장 및 봉안담과 같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함.
- 경기도 양주시 경신하늘뜰공원은 기존 공동묘지를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었으며, 자연장지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및 주민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음.
- 경기도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은 자연장지 주변 조경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장사시설을 공원화함으로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끈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인천특별시 인천가족공원은 정부의 친환경적 장사문화 정책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봉안당과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함.
 - 장사시설을 다양한 조경과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을 벌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시킴.

-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 친화형 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과 호흡하는 숲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공원화를 추진하고 불거리가 많은 가족나들이 장소로 만들어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 지역축제를 장사시설과 결부시켜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를 개최하였음. 장례문화전시관, 둘레길 걷기 등의 인천가족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화장시설과 봉안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

□ 국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원·자연장지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사시설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맞게 만장된 공설·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하는 추세임. 또한 신규부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나. 장사시설 공동 설치·운영

- 전라북도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은 장사시설의 과잉공급 방지, 재정절감, 이용률 및 효율성을 제고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사시설 공동 설치·운영 사례임.
- 실제 지자체 간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한 화합의 성공사례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방문을 하고 있음.
 - 부지 선정 시 외부 위원들이 공모·심사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확보, 지역 대상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 주요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차등을 두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등요소를 완화시킴.
 - 화장시설부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원스톱 장례 편의를 제공함.
- 충청남도 공주시 나래원은 기존 장사시설의 광역화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사시설 공동 운영 사례임.
- 부여군과 청양군은 나래원 공동운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주시민들과 동일한 요금으로 나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를 증진시킴.
 - 공주시는 적자이던 유지관리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절감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음.

-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반대, 지자체의 재정상의 부담을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해결한 사례들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줌.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동·복합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하려 하고 있으며, 설치 유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공동 복합형 장사시설은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설치 및 운영 방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장사시설 설치

- 울산광역시 하늘공원은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자연장까지 장례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로 주민들의 장사시설 자진 유치로 님비 현상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임.
 - 자발적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현금 200억 원과 주민숙원 사업 지원 및 장례식장 운영 경영수익 사업권을 제공함.
 -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님비현상 극복에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 경상남도 남해군 추모누리는 전국 최초로 봉안평장묘역을 조성하고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사문화개선사업의 시범사례로 볼 수 있음.
 - 남해군은 1999년부터 장사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매장묘지 면적을 줄여 정부의 묘지 실태 조사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묘지 1만 5천여 기를 분묘 개장하였고, 공설 화장장과 개장장려금 지원제도 등의 장사문화개선사업으로 화장률을 높였음.
 - 운구, 장례, 매장(화장), 봉안(안치) 등의 모든 장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고객 만족의 선진장사행정을 구현함.
 -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화장과 매장을 결합하여 개선된 장사문화를 추구함.
 - 묘지관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 장례비용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으며, 묘지 면적을 95%이상 축소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 자연친화적 공원화 시설로 기존묘지의 혐오감을 해소, 친족유대 강화, 휴식 공간 활용을 가능케 함.
-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원스톱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장사시설 설치 시에는 원스톱 장례가 가능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 2 절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

1. 스페인

가. 몬쥬익 묘지

□ 시설 개요

- 몬쥬익 묘지는 화장장 및 묘지의 역할 뿐 아니라 도서관, 맞춤형 투어, 콘서트 등 유족,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몬쥬익 묘지는 가파른 인구 성장과 19세기 전반에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의 결과로 만들어짐.
- 묘지를 확장할 수 없어 바르셀로나 시민의 요구에 맞게 화장시설을 개장한 후 봉안시설을 설치함.
- 바르셀로나 장사시설관리사무소는 묘지의 유지관리와 사용자 편의제공, 고인의 시신을 묘지까지 운구, 묘지의 문화와 역사의 보존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함.

<표 5-29> 스페인 몬쥬익 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983. 03.	
위 치	c/Mare de Deu de Port, 56-58. 08038 Barcelona	
면 적	567,934m ²	
현 매 장	152,474기	
개장시간	묘 지 : 월요일부터 일요일 08:00~18:00 화장장 : 월요일에서 금요일 9:30~14:30 / 16:30~18:00 주말 및 공휴일 09:30~14:30	
주요시설	안내소, 화장센터, 안식의 정원, 산골정원, 향기의 정원, 지중해의 정원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음료수대, 내부 버스서비스 등	

※ 자료 : 서울시설공단 「공단 내 장사시설의 변화 및 조경-기계 동향 파악을 위한 벤치마킹」 해외기획연수 결과보고(2017)

□ 시설 소개

- 화장시설
 - 몬쥬익 화장시설은 1997년 화장로 4기를 2층 건물에 설치하였음.

- 건물외부는 몬주익 내 돌로 꾸며져 있는데 이 돌은 화장시설이 지어지기 전 묘지의 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묘지 전체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일 최대 화장 건수는 45건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을 준수함.
- 화장시설 옆 건립식 묘소 지붕에 태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136,011kw를 발전하는데 이는 묘지 및 화장시설의 연간 총 전력소비량의 34%에 해당하는 발전량임.
- 이 설비로 대기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35톤, SO₂ 369kg, 질소산화물 246kg를 저감하였음.

- 매장묘역

- 분묘는 그 유형과 사용기한에 따라 15년, 30년, 50년, 99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영구사용도 가능하지만 임대를 기본방식으로 함.
- 152,474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풍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음.

- 자연장지

- 유골을 뿌리거나 유골용기를 묻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를 사용함.
- 화초형 자연장지 : 라벤더, 로즈마리 등 다양한 허브를 이용하며 몬주익 묘지의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어 바르셀로나 시내 전경과 지중해가 보임.
- 수목형 자연장지 : 사이프러스 나무를 이용하는데 이 나무는 하늘로 솟아오른다는 의미로 장사시설에 많이 이용됨.

- 봉안시설

- 나뭇잎 또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형상화
- 묘지 설치로 인한 석축을 봉안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건물의 외벽에 봉안담을 조성하였음.

- 유택동산

- 피라미드 모양의 공동유택동산인 안식의 정원
- 색이 있는 돌로 둘러싸인 큰 화단과 사각형 화단으로 구성된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뿌릴 수 있도록 조성함.
-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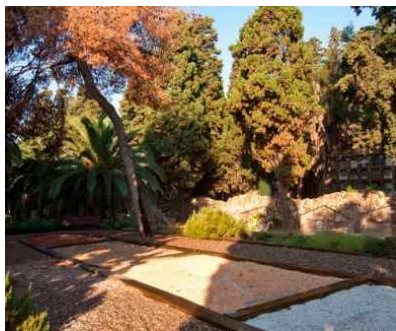
- 장례박물관

- 바로셀로나의 장례의식이 발전해 온 과정과 변화를 보여주고자 장례자동차의 출현부터 수레가 사라질 때까지 장례문화의 발전과 시민의식 변화를 전시하였음.
- 박물관을 다양한 테마와 주제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써 죽음이 자연스럽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장례 의식의 기술적인 상징과 인식의 촉진에 기여함.

- 도서관

- 죽음과 장례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서적, 사진, 영상자료 등 1,800여 가지의 자료를 보유함.
- 박물관 안쪽에 있어 어린이, 학생, 관광객 등 다양하게 도서관을 이용함.

<그림 5-8> 스페인 몬주익 묘지 장사시설



유택동산



묘지



몬주익 장례박물관

※ 자료 : <https://www.cbsa.cat/cementiris/cementiri-montjuic/sepultures/> (검색일: 2018.11.19.)

□ 시설 특징

- 투어 산책 등 묘지 내에서 다양한 테마의 루트와 이벤트 진행
- 포 블레 노우 루트(Poblenou Cemetery Route)
 - 19세기 바로셀로나의 판테온과 인물들을 위주로 방문하는 루트
 - 이 루트의 산책로에는 30개의 무덤이 있음
 - 1년에 두 번 야간에 운영하는데 바로셀로나의 역사와 관련 있는 유명인사들의 죽음,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몬주익 루트
 - 19세기를 대표하는 묘지를 방문하는 루트임.
 - 린드리 알베라다 건축가의 전당을 시작으로 유명인사의 묘지 등 기념비적인 묘지 투어

-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레코드 콘서트
 - 몬쥬익 묘지 내에서 유족의 슬픔 치유 및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월별로 테마를 정해 하나의 치유 문화로 발전시킬 예정임.

<그림 5-9> 스페인 몬쥬익 묘지의 투어 산책 루트



※ 자료 : <https://www.cbsa.cat/cemeteries/cementiri-montjuic/fossar-de-la-pedrera/?lang=en> (검색일: 2018.11.02.)

2. 오스트리아

가. 오스트리아의 장례문화

□ 국가차원의 사후관리보장

- 오스트리아 장사법(1970년 제정)에 의해 오스트리아 국민이라면 동등한 기준에 의해 매장화장이 가능함.
- 수도 빈 시민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안치가 가능하며, 최종 주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안식 구역 내에 안장함.

□ 구체적인 장사방법

- 1인 매장, 가족묘, 매장장소, 무덤이용에 관한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모든 무덤에 고유번호를 새겨 정확한 위치를 확인 가능함.

□ 장사시설 현황

- 전국에 13개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묘지가 부족함에 따라 봉안시설이 보급되고 있음.

나. 빈 중앙묘지(Wiener Zentralfriedhof)

<표 5-30>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874.	
위 치	Simmeringer Hauptstraße 337, 1110 Wien	
면 적	215,3834m ²	
현 매 장	46,279기	
개장시간	11월~2월 : 08:00~17:00 3월~11월 : 07:00~18:00 4월~9월 : 07:00~19:00 (5월~8월 중 매주 목요일 : ~20:00)	
주요시설	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식장, 다양한 묘역 등	
운영주체	GmbH 유한회사(장례&묘지관리 위탁기관)	

※ 자료 : 서울시설공단 「친환경·선진 장사시설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2015)

□ 빈 중앙묘지 소개

- 빈 중앙묘지는 1870년 설계되었으며 7번에 걸쳐 확장되었고 2차 세계대전 동안 입은 손상 복구작업 후 모든 종파의 묘지와 의식장소로 형성되었음.
- 종교묘지
 - 개신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 시리아 정교회, 무슬림 등 각 종교별 특징 담긴 묘역
- 명예묘역
 - 음악, 과학, 건축, 정치, 스포츠 분야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저명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음악가의 묘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임.
- 숲 묘지
 - 2009년 신규 조성된 수목형 자연장지는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 36주의 나무를 수목형 자연장지로 활용 중이며 각 나무를 중심으로 12개의 안장구획으로 정렬하고 각 구획은 2개의 유골함을 수용 가능함.

□ 짐머링 화장시설 소개

- 빈 중앙묘지 내에 위치한 짐머링 화장시설은 1922년 개설되었고 1960년대 시설 확장 후 2008년 새로운 필터시스템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였음.
- 전기화장로 2기와 가스화장로 1기 총 3기의 화장로가 있어 오스트리아 13개 화장장 중 큰 규모로 연간 약 6,500여건 화장이 이뤄짐.
- 자연장지
 - 화초형태로 분해용기에 담아 안장함.

<그림 5-10>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전경



※ 자료 : <https://www.friedhofewien.at/eportal3/ep/channelView.do?channelId=-54304> (검색일: 2018.11.19.)

다. 잘츠부르크 코뮌날 공설묘지

□ 잘츠부르크 코뮌날 공설묘지 소개

- 공공장외사가 주관하는 시영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기관에서 장례절차 및 법률 전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
- 전통 매장묘역 및 화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제공하며, 봉안시설, 수목형 자연장지, 익명묘역 등의 다양한 장사방법 이용 가능함.
- 수목형 자연장지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휴식장소 역할

<표 5-31>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코뮌날 공설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879.	
위 치	5020 Salzburg, Gneiser Straße 8	
면 적	250,000m²	
분 묘 수	20,000기	
운영시간	중앙묘지 11월~2월 - 08:00~17:00 3월, 10월 - 07:00~19:00 4월~9월 - 07:00~21:00	
주요시설	화장장, 전쟁기념관, 명예묘역, 네덜란드 군인묘지, 전사기념비 등	
운영주체	잘츠부르크 시 묘지관리소	

※ 자료 : 서울시설공단 「친환경·선진 장사시설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2015)

□ 시설소개

- 일반묘지 외에도 전쟁희생자 추모시설, 네덜란드 군인묘지, 명예묘역시설, 무슬림묘지 등이 있음.
- 2009년부터 자연매장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 앞 구역에 생분해성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수목형 자연장지를 설치하였음.
- 봉안담 : 하나의 공간에 2~4개의 유골함을 봉안할 수 있도록 구성, 봉안 칸의 개별디자인이 허용됨.
- 봉안기둥 :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제작된 원통형 모뉴먼트를 땅에 고정시켜 둔 것으로 5개의 유골함을 수용하여 가족봉안묘의 대안

3. 프랑스

가. 프랑스 장례문화

□ 도시공동체조합묘지 또는 범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묘지 설치

- 프랑스의 55,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후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에 따라 묘지 부족 문제에 직면한 대도시와 협력하여 도시공동체조합묘지 또는 범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묘지를 설치함.
- 5~30년 단위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여 묘지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묘지의 크기도 1평 미만으로 사용해 낮은 화장률에도 묘지문제가 크지 않음.
- 모든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묘지를 사용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장사시설 개발

- 개인의 다양한 요구, 기호, 취향에 맞는 장사시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공동묘지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박물관과 같은 느낌으로 묘지 자체가 관광 명소화 되고 있음.

□ 장사시설의 생활 공간화

- 공동묘지가 주거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달 평균 2회 성묘를 하고 공동묘지 옆의 주택이 타 지역보다 오히려 비쌈.
- 파리 시내에만 22개의 공동묘지가 있음.

나. 파리 종쉬를 묘지

□ 시설 소개

- 매장시설
 - 다양한 형태로 구역별로 매장묘를 제공함.
 - 전통묘 구역, 경관식묘 구역, 까보(지하 APT식 또는 선반식 분묘), 앙프(건립식 APT 묘역), 임시 매장지 등
 - 10년, 30년, 50년 등 한시적 매장제로 운영됨.
- 화장시설
 - 화장로는 총 3로로 각각의 공간이 다른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벽면의 그림으로 미관을 살림.

- 유럽 통합법에 의해 화장시설의 안전을 위해 환기통을 설치하고 가스관을 외벽에 설치하는 등 개조작업을 시행함.

- 야외벽식 봉안시설

- 야외벽식 봉안시설은 평지보다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4단의 봉안단이 있고 화단 역할을 하는 잔디공간이 있음.
- 독특한 형태의 지붕과 다양한 색상의 석재로 봉안단을 마감하였음.

- 지하 봉안시설

- 개인, 가족봉안묘가 분리되어 있으며 매장묘 크기보다 작고 다양한 형태의 조각물을 묘비로 사용함.
- 봉안시설의 경우에도 10년, 30년, 50년 한시적으로 운영됨.

<그림 5-11> 프랑스 중쉬롤 묘지 전경



※ 자료 : <http://www.cimetierejoncherolles.fr/> (검색일: 2018.11.02.)

다. 엑상프로방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 시설 소개

- 4개의 장례식장

- 각 장례식장은 독립적이며, 장례식을 앞두고 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함.
- 사망 장소에 상관없이 매장이나 화장 전에 의례를 행할 수 있으며, 계속 개방하며 편안한 공간과 개별 위생 시설을 갖추고 있음.

- 2개의 추모실(recueillement)과 1개의 재회실(retrouvailles)
 -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베이지 색의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의 인테리어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추모실과 재회실은 큰 유리문이 있어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을 통해 소나무 숲을 지나 Parc Mémorial®까지 경로가 이어짐.
- Parc Mémorial®
 - 언덕에 인접한 Parc Mémorial®은 자연적인 공간과 식물을 우선으로 하며, 수목형 자연장과 가족봉안묘를 갖춘.
 - 수목형 자연장지의 수목은 올리브 나무와 장미넝쿨 2종류가 있음.
 - 올리브 나무 : 평화, 힘, 빛을 상징하며, 여러 구의 유골 안치 가능
 - 장미 넝쿨 : 감정의 영원성을 의미하며 2구의 유골 안치 가능
 - 가족봉안묘는 4구의 유골 안치 가능, 위쪽으로 장미나무가 심어져 있음.
 - 모든 고인의 표지는 청동으로 제작된 동일 규격의 표지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와비가 아니라 세워 꽂아둠.
- 조경 : 편백나무과 사이프러스 나무 조성
 - 사이프러스 나무 : 프랑스에서는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편히 가시라는 의미와 기후조건에 알맞은 수목으로 프랑스의 묘지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음.
- 화장시설
 - 화장로 2기 보유, 장례식장마다 갖춰진 별도의 출구를 통해 화장시설까지 곧바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림 5-12>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자연장지



※ 자료 : <https://crematoriums.fr/etablisements.php?id=8> (검색일: 2018.11.02.)

라. 니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시설 소개

- 화장시설

- 화장로 3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비닛 방식으로 화장로마다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화장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함.
- 관내지역과 관외지역 간 사용료 차이는 없으며, 화장비용은 시청과 협의 후 공고함.
- 건립 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무해함을 설명하고 공장이 많은 지역이라 큰 마찰이 없었음.

- 봉안담

- 봉안담 사용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별도 장소에 처리함.

- 유택동산

- 본 건물 밖 양쪽으로 조경이 갖춰진 유택동산 구역이 있음.
- 그중 어린이동산이라는 아기 유택동산을 구분지어 놓음.

<그림 5-13> 프랑스 니스 장사시설



※ 자료 : <https://crematoriums.fr/etablissement-crematoriums-de-france-39-colomars,%20nice-06670.html>

(검색일: 2018.11.02.)

4. 스위스

가. 루체른 시립묘지(Stadt Luzern)

□ 루체른 시립묘지 소개

- 장사에 관한 안내 및 정보 등 일괄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됨.
- 스위스 장사법에 따라 장례의식 절차, 화장 및 매장을 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며 사용자는 정원관리, 묘비, 장례비용 등을 지불함.
-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는 장례식장을 보유함.
- 기피시설인 묘지와 마을 사이에 전이녹지대(녹지대내 가묘 설치)를 조성하여 시각적, 심리적 완충지대를 조성함.

<표 5-32> 스위스 루체른 시립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885.	
위 치	Friedentalstrasse 60 6004 Luzern	
면 적	70ha	
주요시설	매장, 화장시설, 관리사무소, 장례식장, 시신보관소	
운영주체	루체른시	

※ 자료 : 서울시설공단 「친환경·선진 장사시설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2015)

□ 매장관련 시설 소개

- 묘지의 사용기간은 20년이며 이장 후 매장부지는 새로운 매장지로 사용함.
- 배정묘과 전용묘 2가지로 구분됨.
 - 배정묘는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성인매장묘, 아동매장묘, 봉안묘, 공동체(봉안)묘가 있음.
 - 전용묘의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위치 선택 및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묘, 개인묘, 실내묘소, 평면묘, 가족봉안묘로 구분됨.
- 공동체묘
 - 유골함 없이 매장되어 유골이 공동체 묘 바닥에 모이게 설계됨.
 - 혼자 매장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덤 관리와 비싼 장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됨.
 - 지하 묘실에 1만 5천구 정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음.

- 가족묘

- 25년, 50년, 100년 단위로 임대하며 25년의 사용료는 3000스위스프랑, 장례비용은 800스위스프랑, 이외 식재 및 관리비는 별도임.

- 화장 후 장사방법

- 봉안 : 사용기간은 10년임.
- 산골 : 16만구의 재 수용 가능
- 자연장(잔디형) : 분해되는 용기함에 넣어 묻음.
- 자연장(수목형) : 사용기간은 25년임.

□ 루체른 화장시설 소개

- 스위스 환경기준에 맞게 2005년 새로운 화장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 일반 유족은 방문할 수 없으며 장례업자가 시신냉장보관에 두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 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3기 중 2기의 화장로에서 연간 3,300건 화장이 이루어짐.

<그림 5-14> 스위스 루체른 시립묘지 장사시설



※ 자료 : <http://www.stlf.ch/krematorium.htm> (검색일: 2018.11.19.)

5. 네덜란드

가. 암스테르담 뉴오스터 묘지

□ 암스테르담 뉴오스터 묘지 소개

- 현재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묘지 중 하나임.
- 장례식장, 매장지, 화장시설 및 고별식장, 다양한 각종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다중무덤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임.
- 2003년 묘지의 17개 무덤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였음.
- 묘지 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으며 학교들이 식물원 정원 가꾸기 수업을 진행함.
- 2007년 장례박물관을 개관하여 국가 장례문화 유산과 복합문화적인 네덜란드의 현대 장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5-33> 네덜란드 뉴오스터 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988.	
위 치	Kruislaan 126 1097 GA Amesterdam	
면 적	330,000m²	
분 묘 수	28,000기	
장사시설	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고별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장소 등	
특수시설	연합군묘지, 네덜란드군인추모비, 수목원, 장례박물관, 카페 등	

※ 자료 : 부산시설공단 「유럽 선진 장사시설 견학결과 보고」(2016)

□ 시설소개

- 매장 사용 기간
 - 개인묘 : 20~50년 사용하며 무덤꾸미기나 추모기념물 설치가 가능함.
 - 일반묘 : 10년 사용 후 합동무덤에 이장하며 작은 묘석 설치가 가능함.
 - 특별묘 : 10년 사용 후 합동무덤에 이장하며 묘석 배치 및 식물가꾸기가 가능함.
- 합동대량무덤
 - 분묘가 개장되었을 때 남은 유골은 친환경적인 포대에 담아 이곳에 매장함.
 - 여성 머리 형상의 대리석 모뉴먼트가 설치되어 있음.

- 봉안시설

- 초지정원형 : 나무와 잔디형, 화단형, 꽃밭형이 있음.
- 연못안치형 : 연못 안 물위에 더 있는 금빛 항아리(4기 가능) 내 안치
- 공간노출형 : 방문자가 주위로부터 차폐된 화장 정원 형태
- 일시안치형 : 화장 후 1개월간 임시 안치 1년후 자체 산골 처리

- 유족동산

- 수목과 진달래가 있는 초지에 뿌리고 영결할 수 있으며, 추모벽에 명패를 부착함.
- 산골은 유족 입회없이 진행됨.

<그림 5-15> 네덜란드 뉴오스터 묘지 전경



※ 자료 : <https://www.denieuweooster.nl/een-plek-voor-as/> (검색일: 2018.11.19.)

6. 오스트레일리아

가. 시드니 캐슬브룩 기념공원

<표 5-34>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960년대 초	
위 치	712-746 Windsor Road, Rouse Hill NSW 2155	
면 적	72ha	
운영시간	월~금 : 오전 8:30 - 오후 5시 토~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사시설	장례식장, 묘지, 화장장, 고별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장소 등	
특수시설	연합군묘지, 네덜란드군인추모비, 수목원, 장례박물관, 카페 등	

※ 자료 : 「하남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2017)

(1) 화장 추모시설

□ 유골함 (Ash container)

-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정원에 안치할 수 있는 PVC 용기가 제공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는 고인표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골을 보호할 수 있는 청동 용기를 선호함.
- 유족이 원하는 경우 안에 작은 유품을 넣을 수 있음.

□ 정자 (亭子, Gazebo)

- 정자를 중심으로 작은 개인 정원을 조성함.
- 각 정원에는 다양한 색상의 화강암과 청동 화병을 배치함.

□ 봉안시설 (Niche)

- 1인 봉안시설과 가족 봉안시설이 있음.
- 다양한 고인표지를 선택할 수 있음.

□ 의자 추모시설 (Chair memorial)

- 의자가 있는 정원 추모시설로 편안함을 제공

- 이 추모시설에는 10기까지 안치 가능하며, 식물과 고인표지로 식별가능함.

□ 장미 정원 (Rose garden)

- 사람들은 생명감 있는 추모시설을 선호함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장미를 이용하여 추모시설을 꾸밈.
- 화강암 위의 청동 고인표지가 추모 위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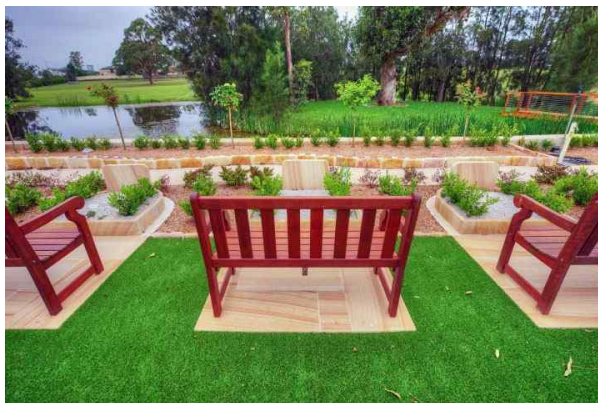
<그림 5-16>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화장 추모시설



봉안시설(Niche)



정자(Gazebo)



의자 추모시설(Chair memorial)



장미 정원(Rose garden)

※ 자료 : <https://www.castlebrook.com.au/memorials/cremation-memorials/> (검색일: 2018.11.19.)

(2) 매장 추모시설

□ 묘비

- 아름다움과 마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화강암을 사용함.
- 1인 묘지와 2인 합장 묘지가 있으며 형식이나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함.

- 모든 묘비에는 금, 은 또는 흰색으로 묘비명을 새김.

□ 상속가능한 부지(Heritage estate)

- 필요한 만큼 많이 안치할 수 있어 가족 묘지로 적합함.
- 정원을 둘러싼 식물, 묘비, 마감 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음.

□ 매장(지하)묘지(Crypts)

- 전통적인 추모시설로 1인, 2인, 가족 묘지로 조성 가능함.
- 모든 묘지는 청동의 고인표지, 화병 및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음.

□ 암석 부지(Rock estate)

- 원하는 만큼 많이 안치가 가능함.
- 화강암과 가족이름이 있는 청동 고인표지가 정원에 배치되어 있음.

□ 잔디 매장(Lawn burial)

- 특별한 상징, 사진, 화병으로 청동 고인표지를 꾸밀 수 있음.
- 이 고인표지는 다양한 색상의 화강암에 고정시킬 수 있음.

<그림 5-17>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매장 추모시설



암석 부지(Rock estate)



잔디 매장(Lawn burial)

※ 자료 : <https://www.castlebrook.com.au/memorials/burial-memorials/> (검색일: 2018.11.19.)

(3) 개인 및 문화적 추모구역

- 개인 및 문화적 추모구역은 종교, 전통 문화, 비용,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함.
- 유족의 개별 종교와 전통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음.
- 카톨릭, 개신교, 불교 또는 힌두교식으로 선택할 수 있음.
- Ga Fuk Log Yeun
 - 시드니 내 중국계 기독교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독교 전통과 동시에 중국만의 문화를 접목시킨 추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짐.
 - 지역 사회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중국계 기독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 Ga Fuk Log Yeun은 부활절 재현, 추모와 같은 정기적인 행사 진행함.
 - 중국계 유족들을 돕기 위해 중국어가 가능한 컨설턴트가 있음.

<그림 5-18> 오스트레일리아 캐슬브룩 기념공원 개인 및 문화적 추모구역



Ga Fuk Log Yeun

※ 자료 : <https://www.castlebrook.com.au/memorials/personal-cultural/> (검색일: 2018.11.19.)

7. 일본

□ 일본 장묘문화 소개

- 불교와 함께 화장 문화가 전해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나타냄.
- 그러나 화장 후 유골은 매장(봉안)방식을 지향함.
- 가족묘나 가족봉안을 선호하며 생활공간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어 있음.
- 주택가, 도심한복판 등에 자리해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원 공간 개념으로 이미지를 구축함.

가. 오사카 우리와라에이렌 묘지

□ 오사카 우리와라에이렌 묘지 소개

- 오사카 시에서 가장 큰 시립공원묘지임.
- 4계절 수목들이 어우러져 주변 주민의 휴식장소임.
- 우리와리유적과 하나츠카야마고분이 있어 역사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음.
-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병설되어 오사카시 남부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화장로 30기로 일본 최대급이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음.

<표 5-35> 일본 우리와라에이렌 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940.	
위 치	오사카시 히라노구 우리와리히카시 4-4-164	
면 적	280,000m ²	
화 장 동	3,050.57m ² , 화장로 30로	
합장식 묘지	244m ² , 합장실 24,000구 / 봉안단 4,000구	
주 차 장	버스 9대, 승용차 97대	
주 변 시 설	장례식장, 관리동 등	

※ 자료 : 「수원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연구」(2017),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 우리와라에이렌 합장식 묘지 소개

- 2010년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로 인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장식 묘지를 개설함.
- 유골을 공동 매장하는 형태로, 10년, 20년간 개별 보관한 후 함께 매장하는 형태도 가능함.
- 생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합장실의 경우 영구매장이기 때문에 승계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별도 묘석 등을 세울 필요 또한 없음.
- 연못 수면 위의 ‘추도의 언덕’이라는 인공섬 지하에 안치공간을 마련해 놓고 섬 가운데 둥근 모뉴먼트를 설치해 둠
- 개별 봉안단은 모빌랙(mobil rack) 방식으로 안치단에 유골항아리를 각각 안치하고, 합장실에는 유골을 지정한 포대에 담아 합장함.
- 섬 지하의 합장실이나 봉안단에는 관리소 직원만 출입가능하며 정면의 참배홀에서만 헌화와 참배가 가능함.
- 합장실에 공동 매장된 유골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봉안단에 안치된 유골은 다른 곳으로 개장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가능함.

나. 요코하마 메모리얼 그린

□ 요코하마 메모리얼 그린 소개

- 요코하마의 시립공설묘지임.
- 2003년 폐업한 한 놀이공원 부지에 건립을 시작하여 묘지, 야구장에 이어 2008년 공원 완공
- 도심지 내에 묘지와 함께 야구장, 공원을 조성하여 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없앴고 옆으로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기존의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여 수목, 화장장, 위령비형합장묘, 잔디형평장묘원 등을 조성함.

<표 5-36> 일본 메모리얼 그린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2006.	
위 치	요코하마시 도츠카구 타마노 1367번지 1	
면 적	6.1ha (공원 면적 3.0ha)	
묘 지	잔디형 7,500구획, 수목형 합장식 3,000구, 위령비형 합장식 12,000구	
주 차 장	400대	
주변시설	식당 및 편의시설	

※ 자료 :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2018),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2018)

□ 메모리얼 그린 시설 소개

- 잔디형 묘지(봉안시설)

- 묘역 전체가 잔디광장으로 보이도록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네모난 묘비에 고인의 이름 등을 새긴 명판을 설치함.
- 1구획엔 6구 정도를 봉안할 수 있음.
- 사용료(한 구획 당)는 영구사용 90만엔, 30년사용 45만엔, 관리비는 연간 8천엔임.

- 수목형 합장식묘지(봉안시설)

- 중심부에 큰 상징나무를 심고 주변에 키 작은 나무, 잔디, 꽃 등으로 꾸며진 구획에 유골항아리를 매장하고 헌화대에 참배하는 형식임.
- 크게 3곳이 있으며 1곳당 1,000구씩 총 3,000구 봉안이 가능함.

- 위령비형 합장식묘지(봉안시설)

- 일종의 지하 봉안당 형식임.
- 지상에 위령비를 설치하고 헌화대에서 참배하는 형태로 그 지하에 설치된 봉안시설 선반에 유골함을 안장함.
- 1개소에 1,2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음.

<그림 5-19> 일본 메모리얼 그린 묘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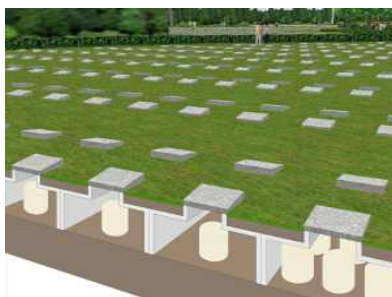
잔디형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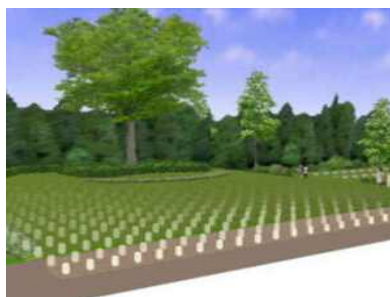
수목형합장식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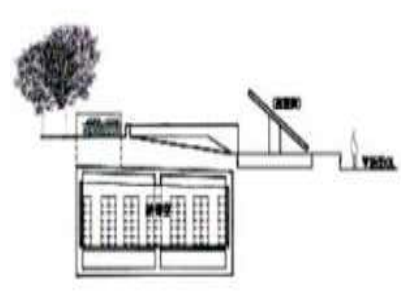
위령비형합장식묘지



잔디형묘지 봉안형태



수목형합장식 봉안형태



비령비형합장식 봉안형태

※ 자료 : <http://www.city.yokohama.lg.jp/kenko/memorialgreen/boen.html> (검색일: 2018.11.19.)

8. 스웨덴

□ 스웨덴 장묘문화 소개

- 전국 화장률이 7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 국가임.
-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화장률이 90%를 넘으며 이중 50%가 산골을 선택함.
- 스톡홀름에는 10개의 시립묘지 중 8개소에 산골장소가 설치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묘는 허용하지 않으며 집단묘지 문화임.
- 집단묘지 내 장례식장, 화장시설, 매장묘역, 봉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공동묘지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나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고 공원화 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가. 스톡홀름 스콕스시르코고덴 묘지

□ 스톡홀름 스콕스시르코고덴 묘지 소개

- 1994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1917년 유명건축가 레베렌츠가 설계하였으며 1920년 묘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1940년 화장장이 건립되었음.

<표 5-37> 스웨덴 스콕스시르코고덴 묘지 시설현황

구분	현황	비고
개 원	1920. (묘지조성완료)	
위 치	Skogskyrkogården, Sockenvägen, 122 33 Stockholm	
면 적	1000,000m ²	
장사시설	매장묘역, 봉안묘역, 옥벽식 봉안시설, 유택동산,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주변시설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스톡홀름 시	

※ 자료 :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2018)

□ 스콕스시르코고덴 묘지 시설 소개

- 매장시설(숲속 묘)
 - 푸른 잔디와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묘지를 알리는 십자가를 제외하면 공원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소나무, 전나무 등 나무 숲으로 평장묘를 조성하였음.
 - 첫 매장의 경우 4m 깊이로 파서 매장한 후 관과 관 사이에 흙으로 메워 계속 사용함.
- 화장시설
- 화장로 4기로 1일 평균 화장건수는 20건임.
 - 1989년부터 수은 분리를 위한 필터를 설치하여 99%까지 처리함.
 - 화장 시 유족은 참관할 수 없음.
- 봉안시설
- 지상봉안시설 : 화장시설 오른쪽에 독특한 형태의 지상봉안시설이 있으며 가족합동봉안이 가능함.
 - 지하봉안시설(봉안묘) : 1㎡ 크기의 봉안묘에 9기까지 안치가능하며 묘비를 사용하여 일반 매장묘지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음.

<그림 5-20> 스웨덴 스톡홀름시르코고덴 묘지 전경



※ 자료 : <https://whc.unesco.org/en/list/558> (검색일: 2018.11.19.)

9. 해외 장사시설 설치 사례에 대한 시사점

- 대부분의 해외 장사시설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혐오시설인 장사시설이라는 인식보다는 공원 혹은 문화유적지의 개념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방문명소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한국과 다르게 언제든 망자를 추모하려 가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 역사가 오랜 해외 장사시설들은 변화하는 장묘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조성된 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적인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유택동산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을 이용한 장사시설을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공원화하였으며, 장례문화를 알리기 위해 장사시설 내 박물관 혹은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문화유적지의 개념으로 묘지 투어나 콘서트 등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유족의 개별 종교나 전통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추모구역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사시설들도 있음.
- 화장시설의 경우 최첨단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유해물질 등을 최대한 저감시키려 노력하고, 유골함도 친환경적 소재로 제작하는 등 화장이나 매장에 따른 환경오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제한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여 묘지를 재사용하기도 하며, 공동체묘 · 합동대량무덤 · 합장식묘지 등 유골을 공동 매장하는 형태로 영구 매장할 수 있도록 한 장사시설들도 있음.
- 경기도의 장사시설이 주로 장기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장 · 단기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유족의 편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제 6 장 묘지 재개발 방안

제1절 묘지실태 조사 방법 및 무연분묘의 처리

제2절 묘지 재개발 방안

제 6 장 묘지 재개발 방안

제 1 절 묘지실태 조사 방법 및 무연분묘의 처리

1. 묘지실태 조사 방법

가.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공·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시행: 2001.1.13)

나. 조사 방법

(1) 조사 절차



(2) 사전 준비

□ 행정정보 및 기초자료 확보

- 각종 신고서(사망, 매장, 묘지설치, 개장, 화장), 묘적부 확보
- 법인묘지 등 집단묘지에 설치된 모든 분묘의 정보 입수 (설치자, 관리자)

□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확보

- 해당지역의 항공사진에 의한 묘지 판독 후 묘지분포 현황도 작성
- 조사지역의 조별 업무량 분담 및 일일업무량 파악
- 묘지분포 현황도를 추진단 사무실에 게시 후 수시로 점검

□ 준비물

- 묘지조사 구역도 출력(붙임) 및 취득정보(위치, 지번 등) 확인
- 현장 이동차량, GPS측정 장비, 줄자, 디지털카메라
- 안내판, 망치, 장갑, 바인더, 필기도구(유성매직), 스프레이(물)
- 조사지침서(매뉴얼), 실태조사표
- 작업복, 신발 등 복장 점검
- 기타 비상연락망 등 필요한 사항

(3) 현장조사

□ 분묘 위치측정(작업매뉴얼 참조)

- GPS측정 장비에 의한 분묘의 위치 측정
- 분묘(봉분, 평분)의 앞부분을 측정하고, 상석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와 상석의 중간 부분 측정

□ 분묘의 높이, 면적, 시설물의 측정 및 조사

- 법령 제·개정(강화)에 따라 과거에 조성·설치된 경우 현행 규정 적용 불가
- 본 조사는 개별 묘지·분묘의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분석에 있으며, 행정처분 목적이 아님
- * 향후 행정처분은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별도의 지적현황측량 필요

□ 면적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수평면적)
- * 지적공부(地籍公簿)와 대비한 분할측량식 측정면적이 아님

- 면적측정은 줄자를 이용한 간이측정 방식으로 산출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미포함)

① 개인묘지

- 설치기준 : 30㎡ 이하
- 해당 분묘와 상석, 비석, 묘테두리 등을 포함한 실측면적 기입
- 봉분과 간단한 시설물은 있으나 명시적·객관적 묘지테두리의 구분이 없는 경우 10㎡으로 기재
- 쌍분, 가족묘지 등 규모가 작고 묘지테두리의 구분이 있는 경우는 전체 측정면적의 1/n하여 기재(n : 분묘기수)

② 공설, 가족,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 설치기준 : 10㎡ 이하 (합장의 경우 15㎡)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 기입

□ 분묘의 높이 측정

□ 시설물 조사

- 시설물의 설치기준

- 분묘 등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 및 크기
(법제1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①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이하)
 - ② 상석 1개
 - ③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 다만, 인물상은 설치 할 수 없다.
- ★ 공적비 등(기념비, 추념비)은 비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 기록
- 비석의 높이 측정(줄자 이용)
 - 비석 하단의 지표면에서부터 상단부 최고 높은 부분까지 측정
 - 비석의 유형

□ 분묘형태 조사

- 봉 분¹²⁾ : 지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 평 분 : 납작하며 평평한 형태로서 높이 50cm이하
- 봉안묘¹³⁾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로서 높이 70cm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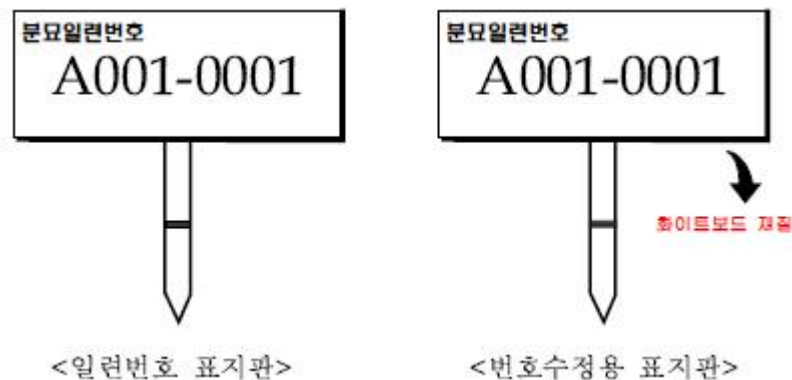
□ 현장사진(2매)

- 원경 : 묘지 주변이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10~15m전방)
- 근경 : 안내판(일련번호)이 잘 보이도록 촬영(3~5m전방)
- 크기 : 1024┳768, 가로(횡)로 촬영

□ 일련번호 표지판 설치

- 묘지관리시스템, 연고자 파악, 사진촬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분묘의 좌측에 설치
(사전조사 결과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분묘는 안내판 설치)

<그림 6-2> 묘지 일련번호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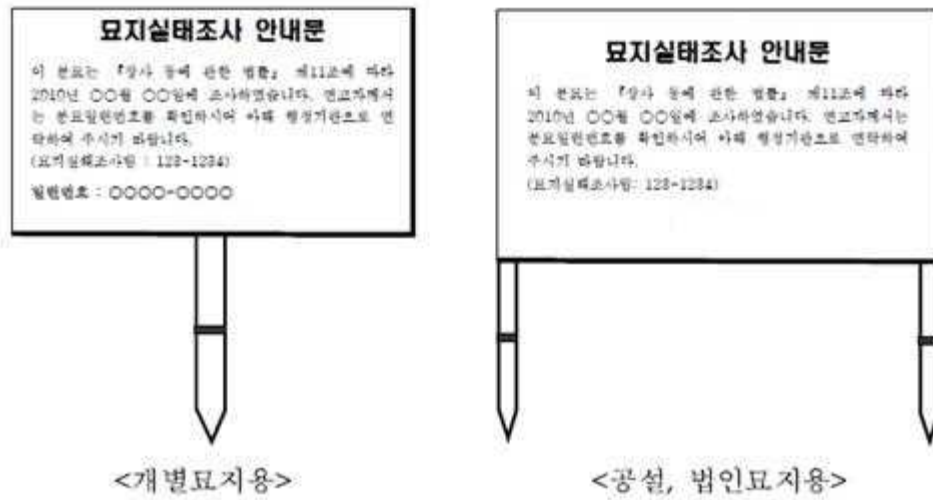
□ 안내판 설치

- 사전조사 결과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분묘에 설치 (향후 성묘 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활용)
- 분묘 정면을 기준하여 좌측 적정한 위치(1m내)에 설치
- 사진촬영 시 분묘일련번호가 보이도록 번호수정용 표지판 활용
- 공설(공동)묘지, 법인묘지 등 집단화되어 있는 묘지는 개별 안내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주요위치를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설치 (공설, 법인묘지용 안내판)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그림 6-3> 묘지 안내판



□ 연고자 조사

- 각종 신고서(사망, 매장, 묘지설치, 개장, 화장) 등 행정체계를 통한 매장정보 수집
- 항공사진 묘지판독 자료의 지번정보를 이용하여 연고자 추적 조사
 - * 소관청(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소유자, 주소) 등 일괄지 사항 조회
 - * 과세자료 등 세무과 협조
 -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자료
- 인접 지역주민 탐문조사 및 이·통장을 통해 연고자 정보 협조
- 이·통장
 - 관내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와 위치정보에 대한 현황파악 협조
 - 조사원의 실태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역주민에게 당부
- 미 확인 분묘의 연고자가 인근 지역주민으로 파악된 경우 가급적 동행을 요청하여 분묘의 위치 확인
- 현장에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요원과 상호 수시 협력
 - (비문의 내용과 묘적부 일치여부 등 각종 서류 대조확인 조사)
- 집단묘지(법인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설치자, 관리자로부터 정보 입수
 - * 조사지역에 소재한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묘지의 대표자를 통해 파악
- 조사기간 중에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진행

(4) 조사결과물 작성

□ 사용 좌표계

-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 사용
- 기본 맵은 연속지적도면을 기준으로 함

□ 분묘일련번호 부여 체계(18자리)

- 행정구역(10자리), 시설구분(영어 대문자 1자리), 일람도번호(3자리), 측정번호(4자리)
- 번호 중간에는 대시(언더바가 아님)기호를 붙여서 구분
- 숫자, 문자, 대시를 반드시 빈칸 없이 부여

(5) 실태조사표 작성 요령

□ 시설구분

- 개인, 가족, 종중·문중, 공설, 법인으로 구분하여 표시(“√”)
- 공설 및 법인묘지는 공설(법인)묘지명을 기입

□ 분묘일련번호

- 일련번호 부여체계에 의해 조사 순번 기입

□ 소재지

- 묘가 소재한 주소 기입(법정동 기준)

□ 지번

-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지적도 지번을 기입

□ 지목

-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지목을 구분하여 기입
- 지목의 종류(28종)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

□ 분묘형태 및 높이

- 봉분, 평분, 평장 구분하여 표시(해당 항목에 “√”)
- 높이는 미터 단위로 소수점둘째자리(cm)까지 기재 (예시: 0.75m, 1.23m)

□ 면적(m²)

- 실측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예시: 10m², 15m²)
- 조사지침서의 면적조사 방법에 의한 측정면적 기입

□ 분묘설치일자

- 해당 분묘의 설치 연·월·일 기입

□ 시설물 설치현황

- 상석, 비석(높이), 장명등, 망주석, 인물상, 기타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
- 비석의 높이는 미터 단위로 소수둘째자리(cm)까지 기재 (예시: 0.75m, 1.23m)

□ 분묘위치

- 분묘의 X값, Y값을 기재

□ 사망자

- 매장된 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나이), 매장일자, 사망일자, 주소(생존당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입
- 주소는 사망직전의 생활근거지를 시·도와 시·군·구 단위까지만 기입
- 합장일 경우 사망자 각각 기입

□ 연고자

- 연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배우자, 아들, 딸 등 사망자를 기준 구체적으로 기입), 주소,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 기입

□ 지형적 특성과 관리상태 기재

- 해당 분묘의 지형적 특성과 관리 상태, 울타리 상황 등 특이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

□ 봉안묘 실태조사표

- 개별 일람도 구역안의 봉안묘 단위의 설치기수 기입(봉안구수 아님)

2. 무연분묘의 처리

□ 개장의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장 절차 및 방법(시행규칙 제19조)

① 무연분묘의 처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공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3.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법 19조)

가. 적용대상 분묘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국가가 설치·운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葬事) 등에 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나.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기본적인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함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라. 위반 시 벌칙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마.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30년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1)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연장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 신청기관

구 분	신청기관	비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 ·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인	

□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법인묘지 설치 · 관리인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내용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

□ 연장신청 사항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 기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적부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인이 묘적부를 작성 · 보관하여야 함

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1)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2)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함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①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연락방법 ④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 개장신고서에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연고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 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봉안(화장 후 봉안 또는 화장 없이 봉안) 하여야 함
- 위반 시 행정처벌 :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②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봉안(화장 후 봉안) 하여야 함

- 위반 시 행정처벌 :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제 2 절 묘지 재개발 방안

1. 집단묘지의 재개발 및 종합장사시설로 전환 유도¹⁴⁾

- 매장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된 집단묘지 활용 및 한시적 매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묘지기능이 상실된 묘지 및 방치된 경우에 묘지규모에 따라 묘지재개발을 통해 묘지 부지를 확충하고 장사시설 공간의 추가적 확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토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묘지 재개발 시에는 마을별로 산재한 공동묘지를 우선하고, 무연분묘, 법인묘지 또는 종교단체 묘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생태환경 복원의 관점에서 자연장지나 수목장지로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규 공설묘지 설치의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여 체계적인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 환경을 공원화하는 등 지역주민 휴식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2. 무연분묘의 정비¹⁵⁾

-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설묘지를 재개발 하는 과정에는 여러 법적인 문제, 자원 문제, 인력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에서도 공설 묘지의 약 30~40%정도를 차지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는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불법묘지와 무연고묘지처럼 방치된 묘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묘지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묘적부상의 등록여부, 묘지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분묘의 설치 권한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장사법에는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므로 이장 혹은 개장을 통해 유골을 의무적으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묘지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단계적으로 무연분묘를 정비하도록 해야 함.

14) 전라남도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2018) 참조

15) 고덕기, 2000. “공공묘지의 공원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0권 참조

3. 묘지의 재개발 계획을 위한 법제도 정비¹⁶⁾

- 묘지면적 및 시설물 규제의 일원화, 묘지형태 혹은 매장방식의 조정, 납골시설의 설치 규제 완화
- 공설묘지를 도시공공시설로 지정하여 도시계획 시 공설묘지계획을 포함하며 신개발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소규모의 여러 시설이 인근 지역에 설치되도록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묘지현황파악 후 관리DB 구축 등 미비점을 개선
-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유택동산의 신축 혹은 재정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예산을 확보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계획을 수립
- 장사시설관리 및 장사정책수립을 이행함에 있어 민관합동조직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
- 장기적인 묘지관리 및 수급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대처하는 통합행정대처방안이 요구됨.
- 장사시설 및 묘지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장묘관련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함.

4. 묘지 유형별 분류 및 세부 재개발방안¹⁷⁾

- 현재 공설묘지 지역을 도시계획상 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용도에 따라 묘지 재개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묘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묘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유형 분류는 도시재개발 시행법을 기준으로 공원화 개발지역, 부분공원화개발지역, 사용보존지역, 자연보존(폐기)지역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묘지 유형별 분류 및 분류에 따른 세부 묘지 재개발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16) 엄기복. 2006. “대구광역시 시립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6 연구보고서 시민·복지분야 참조

17) 고덕기. 2000. “공공묘지의 공원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0권 참조

<표 6-1> 묘지 유형별 분류 및 세부 재개발방안

구분	공원화개발지역	부분공원화개발지역	사용보존지역	자연보존(폐기)지역
분류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있지 않아 재정비 및 확장을 통해 묘지의 공원화 및 종합 장사시설 설립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원화해야 할 공공묘지를 의미함	묘지 재개발을 통해 묘지 공원화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묘지 전체를 공원화하기에 일부 제한 요인을 지닌 지역을 의미함	묘지시설 관리가 비교 적 양호한 상태로 공공 묘지로는 적합한, 묘지 재개발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 상태의 묘지 기능을 유 지하되 추가 개발로 보 존해야 할 지역을 의미 함	이미 만장되어 공공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묘지 재개발 조건 및 주변 여건상 묘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후 매장을 금지하고 자연보전 혹은 타용도로 전환해야 할 지역을 의미함.
세부 재개발 방안	-지역별로 1~2개 공공 묘지의 개발이 유리한 조건(위치, 면적, 토지 용도 등)에 따라 우선 적으로 조성 -매장, 화장, 납골, 장례 시설 등을 설치해 원스톱 종합장사시설을 설립 -환경영향평가, 조경 및 건축전문가 등을 포함해 친환경적이며 현대적인 공간으로 조성	-공원화 사업을 위해 무연분묘 정리 및 구역 경계표시 실시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묘지의 주변환경 개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면적, 매장기수, 향후 매장가능기수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면적, 매장기수, 향후 매장가능기수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연 분묘 정리를 실시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구역경계 표시 등 묘지를 재정비 -향후 묘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화하거나 자연을 보존토록 함	-묘지 입구에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 -연고자를 파악하여 공원화 묘지로 이장할 것을 유도 -무연분묘를 파악해 법 절차에 따라 화장 후 납골 혹은 공원묘지에 집단화 -타용도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성 향상

※ 자료 : 고덕기. 2000. "공공묘지의 공원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0권

5. 묘지의 공원화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

- 제4장 장사시설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묘지 대부분의 경우 재개발 시 묘지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시설, 화장시설, 매장·봉안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스톱 장례가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적인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유택동산 등을
함께 운영하여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부응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묘지 재개발 혹은 장사시설 설치 시 묘지를 공원화하여 혐오감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이용을 증대하고자 하거나 운구,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절차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추세임.

□ 아래 <표 6-2>는 도내 묘지 재개발 유형에 따른 묘지의 공원화 또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정리한 표임.

<표 6-2> 경기도 묘지 재개발 사례

유형	지역	시설명	특징
묘지 전면 개발	광주시	중대공원	- 전국 최초로 기존 공동묘지 전체를 친환경적 공원 및 자연장지로 조성 -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총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장묘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문화복지 사업을 접목하여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개발
	여주시	여주추모공원	- 기존 분묘를 이장 . 화장하고, 기존 분묘 지역에 자연친화적이고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공설묘지 재개발을 도모 - 지역문화를 접목하여 장사시설을 휴식 · 문화 · 역사가 공존하는 생활공간으로 재구성 -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 후 자연장 및 봉안담과 같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
	양주시	경신하늘뜰 공원	- 기존 공동묘지를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전환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였으며, 자연장지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및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묘지 부분 개발	시흥시	정왕공설묘지	- 2011년 공설묘지가 만장되면서 자연장 설치를 위해 무연분묘를 정리한 후 전체묘지의 5.5% 면적에 유골 안치가능시설을 조성 - 장례방법 선호도는 화장 후 자연장이 가장 높지만 경기도내 공설 자연장지 이용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자연장을 장려하는 장사 시설 조성
	안산시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매장 공간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 - 테마공원, 벽천 시설, 장미터널, 야간 조명 등으로 자연장지 주변 조경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장사시설을 공원으로
	포천시	포천시 자연장지	- 공설묘지의 재개발로 자연지형 그대로를 이용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장지 조성

6. 경기도내 시·군 묘지 재개발 계획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검토, 정리하여 제시함. 다만, 구체적인 묘지 재개발 계획이 포함된 시·군의 내용만을 정리함.

□ 고양시

- 고양시 내 공동·공설묘지 재개발 대상지 검토
- 강매동, 내유동, 벽제동에 대하여 부지의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요건하여 재개발 우선순위 분석
- 3곳의 재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내유동, 강매동, 벽제동 순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후보지별 평가항목

묘지명		내유동	강매동	벽제동
부지특성	묘지면적	• 46,322㎡(1)	• 34,612㎡(2)	14,281㎡(3)
	잔여면적	• 29,314㎡(1)	• 27,246㎡(2)	13,439㎡(3)
	환경성평가	• 2등급	• 2등급	• 2등급
사회적 요건	기매장기수	• 1,330기(3)	• 414기(2)	• 47기(1)
	인근주거지	• 마을 초입구에 빌라 형성(1)	• 등산로 초입구에 마을 형성(2)	•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단지 형성(3)
지리적 요건	차폐율	• 높음(1)	• 보통(2)	• 낮음(3)
	진입로 확보여부	• 확보되어 있음(1)	• 등산로가 있으나 협소함(2)	• 소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협소함(3)
경제적 요건	도로망과의 거리	• 묘지초입구까지 도로가 이어져 있으며, 내부까지 차량이동이 가능하고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음(1)	• 직선거리 400m에 도로가 위치함(3)	• 직선거리 약 200m에 도로가 위치함(2)
	공시지가	• 27,500원/㎡(2)	• 31,200원/㎡(3)	• 22,100원/㎡(1)

주) ()는 평가항목별 순위

□ 용인시

- 용인시 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수립을 위하여 용인시 공동묘지 중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봉안시설 설치와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함.
- 재개발 검토 공설·공동묘지는 다음과 같음.

시설명칭	소재지	면적(㎡)	매장기수	지목
덕성공동묘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79	55,141	232	임야
천리공동묘지	처인구 이동면 천리 산 124	37,091	284	묘지
창리공동묘지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28-1	35,895	292	묘지
독성공동묘지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 133, 133-6	65,359	304	임야
맹리공동묘지	처인구 원삼면 맹리 산27	59,405	3	임야
백암공동묘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8, 224-3	53,980	46	묘지

- 주요 조사내용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분석과 접근성, 주변환경, 정비방안을 분석함.

묘지명	덕성공동묘지	천리공동묘지(부분개발)	창리공동묘지
법제도 분석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과 이해 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 공원화 및 공공시설 설치 검토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해 상충관계가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이해 상충관계가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접근성	- 시청에서 직선거리 8.6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9km 위치	- 시청에서 직선거리 5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15km 위치	- 시청에서 직선거리 11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8km 위치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있으나 자연재해 위험노출이 낮고, 대기 환경성과 수질 및 토양의 피해 가능성 낮음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으나, 재개발시 묘지 이장비용 소요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묘지입구는 경사도가 있고, 묘지 정상부는 완만하지만, 깊은 계곡의 양쪽으로 묘지설치가 되어 있어 집중호우 등 대비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진입도로 확장 필요 - 국토환경성평가도 4등급	- 묘지입구와 정상부의 경사도는 완만하나, 중간에 경사도가 있음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구릉지 형태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묘지명	독성공동묘지	맹리공동묘지	백암공동묘지
법제도 분석	- 보전관리지역, 가축 사육제한지역과 이해 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이해 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 -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용인 평온의 숲과 지역적 안내 차원에서 재정비를 통한 장사시설의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접근성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 16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20km 위치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 14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28km 위치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 20km - 용인평온의 숲에서 약 28km 위치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완만하여 자연 재해 위험노출 낮음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경사도가 있음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묘지일부 체육시설 사용 - 경사도가 완만하여 자연 재해 위험노출 낮음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4-5등급

□ 안산시

- 안산시 관내 기존 묘지 재개발은 다음의 4곳의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려고 함.
- 기존 묘지 재개발 계획 후보지

구분	묘지명	위치	면적(㎡)
후보지 1	와동공설공원묘지(꽃빛공원)	단원구 순환로 390	159,232
후보지 2	부곡동공설공원묘지(하늘공원)	상록구 수인로 1824	19,240
후보지 3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후보지 4	화정동공설(공동)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 안산시 관내 묘지는 모두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나, 본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예산확보 문제 등 동시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 지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 필요
- 입지요건별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이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시설 설치(공원화), 자연장지 조성, 봉안시설 설치 순으로 권장하고 있고, 묘지면적이 클수록 우선적인 재개발이 필요하며, 기존 재정비 여부에 따라 계획 추진이 수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항목		1. 와동	2. 부곡동	3. 군자동	4. 화정동
재개발 후 유형		자연장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자연장지	공원화
법.제도적 요건		시.도지정 문화재구역	-	-	-
부지특 성	묘지면적 (㎡)	159,232	19,240	15,868	48,000
	경사도	완경사	완경사	완경사	완경사
	향후 확장성	가능	가능	어려움	가능
개발용 이성	시설 인근 거주현황	500m 이내 주거밀집	1km 이내 주거밀집	1km 이내 주거밀집	1km 이내 주거밀집
	단지형성	자루형	부정형	부정형	사다리형
	공시지가 (원)	18,500	21,800	66,400	105,667
접근성	도심에서 접근성	2.3km (약 13분)	4.5km (약 13분)	4.4km (약 16분)	4km (약 21분)
	진출입 용이성	영동고속도로와 500m 이격	영동고속도로와 500m 이격	영동고속도로와 700m 이격	영동고속도로와 600m 이격
기타	재정비 여부	○	○	X	X
검토결과		3순위	2순위	4순위	1순위

- 화정동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추진방안

- 슬럼화된 공동묘지를 생명이 숨쉬는 공원으로 재개발
 - 시내 공설묘지의 순차적 재개발 추진
 - 공설묘지 전체 면적 대비 최소 면적으로 봉안담 및 자연장 등 현대식 묘지공원으로 조성, 잔여면적은 공원으로 재단장
 - 재탄생한 묘지공원은 친근감 있고, 그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명칭으로 순화개정
 - 우선적으로 해당 공설묘지 유골을 재조성한 자연장 등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 사망자 또는 개장유골 배치
- 기존 안산시 장사시설 내 존재하지 않는 유택동산의 조성
-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법률.행정적 절차 검토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화정동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 계획
 - 화정동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중기지방재정, 예비타당성, 경기도투자심사
 - 개발제한구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발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공유재산취득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장사시설 국비신청,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보상
- 공동묘지 무연고자 조사 및 연고자 묘지 동의 추진

□ 화성시

- 화성시 관내 57개 공설묘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개발이 가능한 묘지는 29개로 총면적은 360,302㎡이고, 매장구수는 6,362구로 조사됨.
- 재개발을 위한 사전조치로 경계 측량 후 사유지에 묻혀있는 묘지에 대한 이장 안내문 발송 작업 및 이장 안내문 설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묘지로서의 시설을 갖춘 일부 공설묘지를 제외하고 묘지의 조성상태, 묘지 내 조경 및 부대시설의 설치 상태, 진입로 상태 등이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공설묘지 중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지는 북양공설묘지, 활초공설묘지, 어천공설묘지, 상신공설묘지 4곳에 불가함.
- 무연고 등이 많아 묘지로서의 기능을 존속하기 어려운 공설묘지들은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묘지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설묘지 중 면적이 3만㎡ 이상으로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대양공설묘지와 북양공설묘지 2곳임.

□ 남양주시

- 남양주시내 공설·공동묘지 4곳 중 담내공동묘지와 장현공동묘지는 부분개발이 가능하고, 묵현공설·공동묘지의 경우는 기타 공공시설로의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개발을 시행한다면 월문리공동묘지가 가장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
- 월문리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결과
현황	• 면적: 59,823㎡, 분묘기수: 1,162기
법제도	•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이해상충관계 없음 • 종합장사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필요 • 재개발 시 자연장지에 설치 검토 필요
접근성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 약 5km
묘지 및 주변환경	• 묘지 근처에 군사시설인 사격장 위치 • 일부지역 경사도가 있으며, 주로 하단부는 경사도가 완만함 • 사유지이므로 부지확보비용 없음 • 묘지 이장비 소요 예상 •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

□ 안양시

- 안양시 관내에 있는 청계공설묘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묘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위 치 : 의왕시 청계동 산8-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628,000m² (189,970평)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까지
- 사 업 비 : 약79억원 추정 (안양시 : 100%)
- 목 적 :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조성되어오던 공동묘지로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환경 친화적 묘지공원을 조성코자 함.

- 추진경과

- 1972. 2.11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 공동묘지로 조성
※ 시흥군 안양읍 공동묘지로 조성
- 1973. 7. 1 :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재산승계(안양시 공동묘지로 관리)
- 1987.12. 1 : 건설부고시 제618호 청계공원(996,791m²)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95. 4.19 : 경기도고시 제128호 청계공원(989,275m²)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99. 7.29 :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의왕시→경기도)
- 1999.10. 1 :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경기도→건교부)
- 2002. 6.21 : 경기도고시 제138호 청계공원(628,000m²)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9.25 : 청계공원(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 수립
- 2018. 2. : 청계공원(묘지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청계공원묘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고
- 향후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변화하는 장묘문화를 수용하여 수목장 등 친환경 묘지공원으로 조성

□ 평택시

- 평택시 관내 33개 공설공동묘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재개발 대상 묘지를 선정함.
 1.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공설공동묘지
 2. 경사도 완만
 3.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 이하
 4. 면적 등급 “A” (10,000m² 이상)이며, 필요 시 “B” 도 가능
- 상기의 재개발 조건을 만족하는 묘지 중 장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청북면을 제외하고, 읍면동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선택한 결과, 현덕면 제4공동묘지, 서탄면 제1공동묘지, 포승읍 제2공동묘지, 안중공설묘지, 진위면 제1공동묘지, 오성면 공동묘지로 나타남.
- 재개발 대상 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는 안중읍이 25.5억원, 포승읍이 15.7억원, 진위면은 8.2억원, 오성면 5.4억원, 현덕면 4.7억원, 서탄면 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함.

□ 의정부시

-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 4개소(장암동, 용현동, 산곡동, 자일동)에 대하여 재정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묘지명	장암동	용현동	산곡동	자일동
현황	• 면적: 5,951m² • 자연녹지지역 • 환경영향평가등급 1-2등급	• 면적: 10,512m² • 제 1,2 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	• 면적: 26,760m² • 자연녹지지역 •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	• 면적: 28,463m² • 자연녹지지역 •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
입지 및 대상지 특성	• 유원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에 위치 •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	•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 및 공원이 있음	• 문화 공원과 교통 광장 등이 주변에 위치	• 입구에서 300m 거리에 43번국도 위치
재정비 가능성	• 개발제한구역 전제로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도 묘지 관련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전제로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 전제로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 가능

□ 시흥시

- 시흥시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활용 및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묘지명	포동공동묘지	매화동공동묘지	조남동공동묘지
검토결과	• 포동 산11에 위치 • 면적 5,851m²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	• 매화동 산28에 위치 • 면적 5,468m² • 매장기수 365기 •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접해 있어 장사시설 설치는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 조남동 산 19-1에 위치 • 면적 33,421m² •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로 개발행위 제한

묘지명	무지내동공동묘지	과림동공동묘지	장현동공동묘지
검토결과	• 무지내동 산47에 위치 • 면적 4,364m² • 매장기수 150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설묘지 정비 가능	• 과림동 산29와 389, 390에 위치 • 면적 12,119m² • 매장기수 396기 •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묘지 관련 시설 건축할 수 없음	• 장현동 산11에 위치 • 면적 23,802m² • 매장기수 200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장사시설 설치 불가

□ 김포시

- 김포시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묘지명	원산리공동묘지	갈산공동묘지
현황	• 면적 : 32,827m² • 매장기수 : 963기	• 면적 : 33,511m² • 매장기수 : 1,119기
법제도 분석	•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 인근 군부대 및 지역주민과 협의 필요 • 1차 분묘조사 완료	•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 인근 군부대 및 지역주민과 협의 필요 • 분묘관리가 잘 되고 있음
접근성	• 시청에서 직선거리 약13km • 접근로 포장되어 있음	• 시청에서 직선거리 약17km • 월화로와 경계를 하고 있어 접근 가능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완만함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1, 2등급	• 경사도가 완만함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5등급
묘지 재개발	• 전면 재개발로 자연장지 조성 가능 • 경사도 완만하여 자연장지 조성 검토 가능 • 김포추모공원 만장 이후 검토 필요	• 유연분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단계적 접근 필요 • 1차 분묘실태조사 필요

□ 광명시

- 광명시 관내 공설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함.

묘지명	위치	면적(m ²)	설치기수	검토결과
계	6개소	50,193	2,096	
광명7동	광명동 산127	8,727	698	입지우수
하안1동	하안동 314-14	14,768	492	입지양호
일직동	일직동 345-4	13,361	6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조성사업 정비 중
노온사동	노온사동 산100	6,492	449	도로와 거리 있음
가학동	가학동 707-2	3,880	421	면적 협소
소하2동	소하동 988-7	2,965	30	면적 협소

□ 오산시

- 외삼미동 공동묘지 재정비

1) 위치 : 외삼미동 515(1,800㎡)

2) 분묘기수 : 28기

3)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4) 사유 : 오산시 공동묘지 중 가장 규모가 적어 묘지 이용자들의 반대 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음.

5) 정비시기 : 2020 ~ 2021년

4) 정비방법

정비후 공원(또는 시에서 필요한 시설)으로 조성

유연분묘는 연고자들과 협의 후 개장토록 하고 무연고 분묘는 절차에 따라 공고 후 쉼터공원에 봉안 처리

5) 소요예산액 : 320백만원(시비)

□ 하남시

- 하남시 관내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통해 봉안시설 설치와 자연장지 조성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묘지명	천현동공설묘지	감북동공설묘지	춘궁동공설묘지
현황	• 면적 : 74,380㎡ • 분묘기수 : 1,958기	• 면적 : 27,471㎡ • 분묘기수 : 1,915기	• 면적 : 13,446㎡ • 분묘기수 : 522기
법제도 분석	•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접근성	• 시청에서 직선거리 약 2km • 하남마루공원과 인접 • 중부고속도로 하남IC 인접 접근이 편리함 •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시청에서 직선거리 약 6km • 서하남로에서 감초를 이용 접근 가능 • 자동차의 경우 도로가 없으므로 묘지입구까지 진입불가	• 시청에서 직선거리 약 4.5km • 하남마루공원에서 약 6km • 고골로를 이용 접근가능 • 묘지입구까지 진입가능
묘지 및 주변환경	• 상부 능선과 일부 능선지역을 제외하고 급경사지 • 사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묘지 이장비 발생 • 재개발은 묘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방안 검토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경사도가 완만함 • 묘지 뒤편에 동남로가 있고 중앙보훈병원 위치 • 일자산도시공원 인접 • 묘지경계까지 등산로 형성 • 재정경제원 소유로 매입비용 필요 • 진입도로 사유지 매입 필요 • 재정비시 묘지의 일부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설치가능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경사도가 완만함 • 묘지 중간 중간에 큰 바위들이 있음 • 재정비시 묘지의 일부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설치 가능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 구리시

- 2013년에 검토했다가 주민 반대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구리시립공설묘지 부지에 추모공원 설치 사업 재추진
- 구리시 추모공원 사업추진 계획(안)

사업추진사항	소요기간(개월)	비고
추모공원조서 기본계획 및 장례식장설치 설계 용역	-	기 완료(2013년)
부지매입(토지보상)	18개월	전담부서 및 추진위원회 구성 보상금액 결정 및 부지매입
시공업체 선정 및 준공	36개월	1단계 - 3단계
총 사업기간	48개월	자연장 개장까지 48개월 소요

- 구리추모공원 조성 계획안

단계	소요기간(개월)	주요사업
1단계	14개월	시공업체 선정, 장례식장, 주차장1,2,3,4 휴게광장, 완충녹지대, 도로 등
2단계	12개월	봉안당, 영생광장, 조각공원, 유택동산, 주차장5,6,7 등
3단계	10개월	자연장지, 휴게광장, 다목적광장 관리사무소 등
4단계	6개월	자연장지 확대(별도 계획 수립 필요)

- 구리추모공원 조성 세부계획안
장례식장: 빈소실 5개, 봉안당 31,300기 수용규모, 자연장(잔디장) 900기 규모

□ 포천시

- 포천시 관내 총 30개 공설묘지 중 향후 수요변화로 인한 재개발 필요성 대두 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일동면 공설묘지 자연장 계획(안)을 설정함.
- 입지여건

포천시청에서 직선거리로 약 16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 접근가능
전체 면적은 38,678㎡로 관내 공설묘지 중 가장 넓은 허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묘역
면적은 4,257㎡로 재개발 여력이 충분함.
경사도가 완만해 재개발이 용이하고, 인접마을까지의 거리는 0.8km임.

□ 여주시

- 여주시 관내 공설묘지 중 봉안시설 설치와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설묘지 중 본두리 여주추모공원과의 지역적 안배와 도심의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
- 재개발 검토 공설·공동묘지는 다음과 같음.

시설명칭	소재지	면적(m ²)	지목
가업동 공동묘지	여주시 가업동 산2-1	77,950	묘지
먹곡동 공동묘지	여주시 먹곡동 산16-1	32,331	묘지
울촌리 공동묘지	대신면 울촌리 82-1	26,570	묘지
중암리 공동묘지	북내면 중암리 71101	25,289	임야

- 주요 분석내용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분석과 사회·문화적 검토, 지리적 요건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묘지명	가업동	먹곡동	울촌리	중암리
현황	• 면적: 77,950m² • 분묘기수: 유연 463기, 무연 24기	• 면적: 32,331m²	• 면적: 26,579m² • 분묘기수: 유연 126기, 무연 32기	• 면적: 25,289m² • 분묘기수: 유연 56기, 무연 7기
법제도 분석	•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 계획의 변경 필요	• 생산관리지역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생산관리지역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 계획의 변경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 계획의 변경 필요
사회문화적 검토	• 1km이내 초.중.고.대학교 있음. • 시청에서 직선거리 3km • 장사시설보다 공원화 또는 공공시설 설치 검토 필요	• 여주추모공원에서 약 13km • 시청에서 직선거리 6km • 진입지역에 아파트 단지 있음. • 부분개발의 경우 수목형 자연장지 검토	• 대신IC 인접 • 시청에서 직선거리 16km • 주변인가 없음 • 여주추모공원에서 약 22km •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적절	• 당전로와 인접 • 시청에서 11km • 여주추모공원에서 약 21km •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적절
지리적 여건	• 경사도 완만 • 시내와 가까워 접근성 양호 •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 경사도 완만 •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조성 가능	• 경사도 완만 • 진입로는 대신 2로의 접근이 양호	• 경사도 완만 • 진입로의 폭이 좁음
경제적 검토	• 묘지 이장비 소요 • 진입도로에서 공성묘지까지 확장공사 필요 • 재개발 시 무연분묘 정리	• 경사도 완만하여 조성비용 낮음 예상	• 묘지 중앙의 사유지 매입 필요 • 대신 2로에서 접근을 위해 사유지 매입 필요	• 진입도로 공사 시 사유지 매입 필요 • 보상비용 적음

□ 양평군

- 양평군 관내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정비 및 재개발 방안은 다음과 같음

묘지명	양평공설공원묘지	도곡리.창대리공동묘지
현황	• 면적: 496,200㎡(묘역면적 176,190㎡) • 분묘기수: 1,578기(기 매장기수 1,354기) • 봉안담: 4,164기(안치가능구수 1,992기)	• 면적: 도곡리-12,388㎡, 창대리-18,248㎡ • 분묘기수: 도곡리-619기, 창대리-897기
법제도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보전관리지역과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접근성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1.7km • 중앙로에서 진입 가능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2.5km • 양근로에서 접근 가능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완만함 • 묘지 인접하여 경강로가 지나감	• 경사도가 완만함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정비 및 재개발	• 매년 분묘 개장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묘 정비계획 검토 • 158-3번지 경계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검토	• 1차 분묘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필요 • 초기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동 건축 검토 필요 • 자연장지 조성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묘지명	갈우리공동묘지	조현리공동묘지
현황	• 면적 : 75,075㎡(묘역면적 27,443㎡) • 분묘기수 : 1,829기	• 면적 : 50,479㎡(묘역면적 36,540㎡) • 분묘기수 : 884기
법제도 분석	• 농림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지목변경 필요)	•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접근성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24km • 증골로 24로를 통해 접근 가능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12km • 중원산로에서 접근 가능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심하고, 묘지 정상지역에 분묘 설치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	• 경사도가 완만함 • 시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
정비 및 재개발	• 1차 분묘실태조사를 통해 묘적부 관리필요 • 급경사지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1차 분묘실태조사를 통해 묘적부 관리 필요 • 묘지주변에 초등학교와 주거시설이 많아 재개발 검토단계부터 의견수렴 필요

묘지명	옥천리공동묘지	부용리공동묘지
현황	• 면적 : 41,860m² • 분묘기수 : 2,093기	• 면적 : 101,574m²(묘역면적 81,400m²) • 분묘기수 : 8,222기
법제도 분석	•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이해상충관계 없음 •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필요
접근성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3km • 마유산로와 옥천3리 통해 접근 가능	• 군청에서 직선거리 약15km • 목왕로에서 부용양지말길로 접근 가능
묘지 및 주변환경	• 경사도가 완만함 • 사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 경사도가 심함 • 사유지로 매입비용 없음 • 국토환경성평가도 2등급
정비 및 재개발	• 1차 분묘실태조사를 통해 묘적부 관리필요 • 장사시설 보다는 공공시설 또는 시민휴식공원 등으로 개발 검토	• 1차 분묘실태조사를 통해 묘적부 관리필요 • 장사시설은 양평군의 지역적 안배 고려 필요

□ 동두천시

-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안흥동공설묘지와 상패동공동묘지를 중심으로 봉안시설 설치와 자연장지조성, 공원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구분	안흥동공설묘지	상패동공동묘지
현황	• 면적: 127,456m² • 분묘기수: 1,500기 • 봉안담: 1,132구	• 면적: 11,070m²
법제도	•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이해 상충관계 없음 • 재개발 시 2008년 수립된 묘역전체 재정비 계획을 참고하여 봉안담과 자연장지 조성 검토 필요	•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이해 상충관계 없음
접근성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로 약 3km • 안흥로를 이용하여 공설묘지 접근 가능 • 승용차의 접근은 공설묘지 입구까지	• 시청에서의 직선거리로 약 1.4km • 상패로를 이용하여 공설묘지 접근 가능 •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자가용 이용 불편
묘지 및 주변환경	• 공설묘지 인근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직선거리 800m거리에 있음 • 진입로에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있음 • 사유지이므로 부지확보비용 없음 • 묘지 이장비 소요 예상 • 국토환경성평가 3-5등급	• 경사도가 완만하여 구릉지를 형성 • 안쪽으로 공공시설 인접 • 공동묘지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 있어 재개발시 국방부 우선협의 • 국토환경성평가 2-5등급

제 7 장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발전 방향

제1절 경기도 장사정책 방향

제2절 경기도 장사시설 재정 투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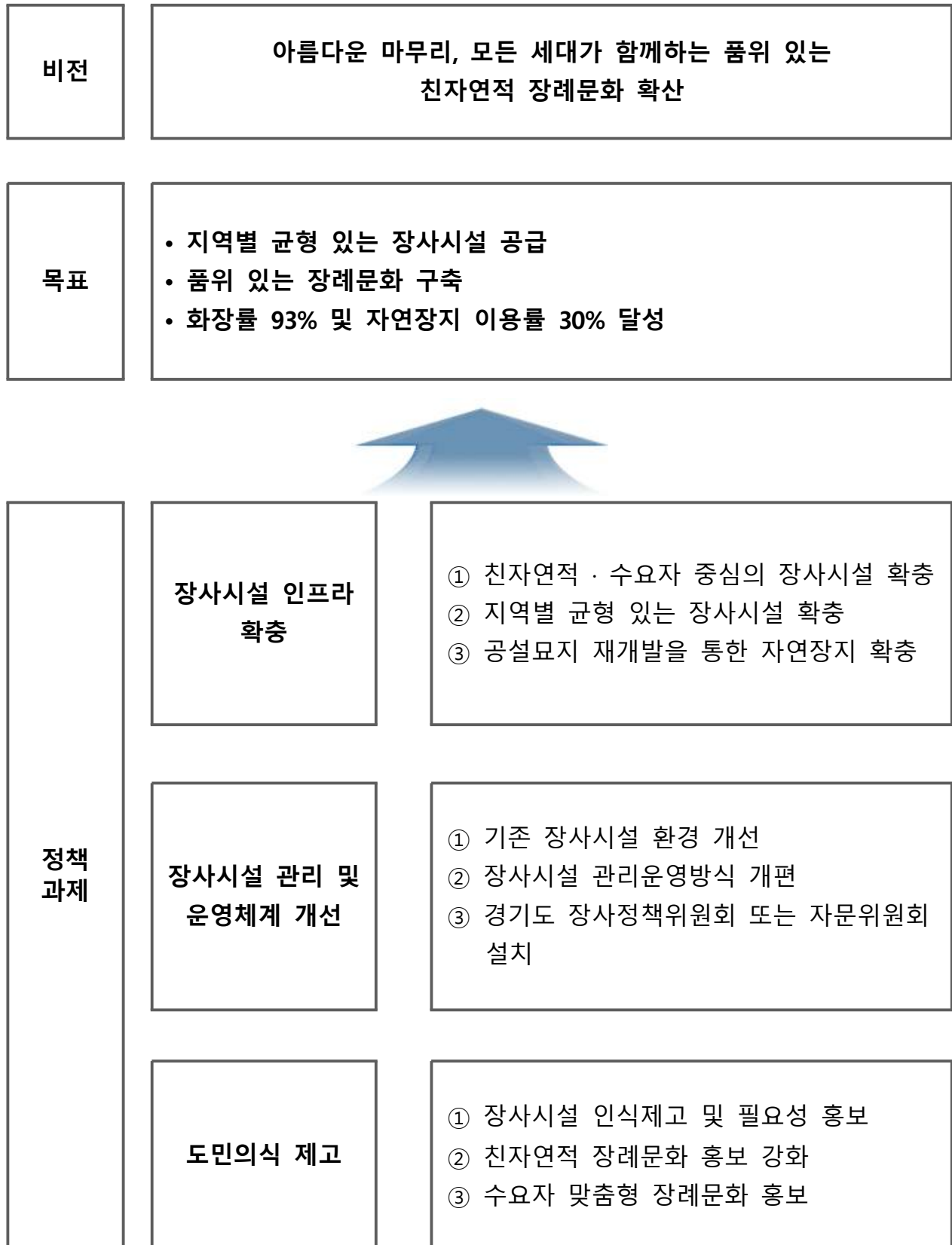
제 7 장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발전 방향

제 1 절 경기도 장사정책 방향

1. 경기도 장사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장사정책 비전을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였음.
- 장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품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 그리고 ‘화장률 93% + 자연장지 이용률 30%’의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국가 장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국민인식 개선’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1차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2013-2017)에서는 장사정책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으로 설정하고, 세부목표로는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 ‘사회친화적 종합장사시설 확충’,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재개발’, ‘수요자중심 장사문화 환경조성’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음.
-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정책과제와 제1차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비전 및 세부목표가 유사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의 장사정책이 국가의 장사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제2차 경기도 장사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국가의 장사정책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품위 있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어야 함.
- 장사정책은 생의 마지막까지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인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장사정책은 유족들에 국한되지 않고 일생생활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친근한 장사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그림 7-1> 경기도 장사정책 비전 및 목표(2018~2022)



가. 경기도 장사정책의 비전

- 경기도의 비전은 ‘아름다운 마무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으로 함.
 - 먼저, 경기도 장사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사회는 웰다잉, 엔딩산업의 확산,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 또한 2016년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비전을 포함함.
 - 장사정책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함과 동시에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사문화 조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2017년 경기도 화장률은 88.3%로 전국 평균 84.6%보다 3.7% 높기 때문에 화장 이후 친자연적인 장사문화 확산에 정책적인 비전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나. 정책목표

□ 권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 경기도 장사시설은 화장건수에 비해 화장로가 부족한 편이며, 권역별로 수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도내 3개의 화장시설은 동부와 남부 권역에만 있으며, 서울시의 화장시설을 관내 주민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북부의 고양 파주시를 제외하고 서부와 동북부 권역의 경우 화장로 수급분석 결과 2035년까지 화장로가 계속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자연장지의 경우에도 수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권역별 과부족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는 필요 장사시설의 확충 시, 장사시설이 없는 권역에 우선 설치를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주시가 원주시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한 사례처럼 경기도 인근의 지자체와도 공동설치 및 공동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품위 있는 장례문화 구축

-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설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죽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장사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함.
-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과 같이 장사시설의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휴식·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장사시설을 조성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장례문화로 초점을 전환해야 함.
- 또한, 장사시설이 일상생활 속의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성 및 다양성 등에 역점을 둔 시설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화장률 93% 및 자연장지 이용률 30% 달성

- 2017년 전국 화장률은 84.6%이고 경기도는 88.3%로 전국 화장률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 추정 결과 2019년 화장률 90%에 근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에서도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8.4%로 2013년(83%)에 비해 5.4% 상승한 결과가 나옴.
- 화장 후 유골처리 방법으로는 자연장 39.4%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에 대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정부의 장사정책 추진방향과 같이 자연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자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경기도 장사정책 과제

가.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 경기도 장사시설 중 자연장지의 경우 공설과 사설을 합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봉안시설의 경우 2035년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부터 공급이 부족하며 화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 경기도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화장시설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화장시설이 없는 서부 권역과 동북부 권역의 경우에는 인근 타 시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화장시설이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우선 설치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이 부족한 권역의 시·군과 협력하여야 함.

- ▷ 화장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용,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주민동의 과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이 실제 화장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적게 지원되고 있어 화장시설 신규설치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 및 지원항목 확대가 필요
- ▷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특정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 적정 규모의 화장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 무엇보다도 화장시설 설치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도심지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자치단체는 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해 인접한 자치단체와 분쟁이 되고 있어 공동건립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 지역 간 공동·복합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 추진

- 지리적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 공동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장사시설 과잉공급 방지, 재정절감, 이용률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One-stop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한 편의 제공
-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공동복합형 장사시설 설치·운영모델을 참조하여 도내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친근한 추모 공간으로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 수요자의 요구, 기호, 취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도심 속의 아름답고 친근한 추모 공간으로 재구성
- 장사시설을 죽은 자의 안치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일상생활공간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휴식·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
- 주변과 조화로우며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내 공원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 조성
-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테마를 결합한 장사시설 조성을 통해 문화유적지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 주변 환경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장사시설 개선방향

- ▷ 아름답고 친근한 휴식추모공간으로 조성
- ▷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사시설 조성
- ▷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테마를 접목한 문화유적지로서 공간을 재구성
- ▷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 ▷ 여주추모공원 :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추구를 위해 개인봉안담은 자음을, 부부봉안담은 모음을 소재로 하여 제목 부여, 각 봉안담은 용비어천가를 현대적 한글 문양으로 풀어낸 디자인 적용
- ▷ 인천가족공원 : 봄에 유채꽃, 여름에 백일홍을 심어 주민의 방문 증가

□ 노후화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유족 편의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설치

- 장사시설이 서비스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가동에 따른 공해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화장시설은 시신을 화장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 문제를 유발시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화장로 교체, 환경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환경공해방지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 시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 및 관 속 부장품 규제물질 준수

- 화장용 관은 친환경 재질로 쉽게 연소될 수 있어야 하고, 관 도장재료는 천연도료로 사용하도록 해당 업체 관리
- 예를 들어 관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 화장시간 20-30분 정도 지연되는 만큼 관 제작업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생산단계부터 친환경 화장용품이 제작되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함.
- 화장용 부속용품은 가연성 재질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물질로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 상기의 내용은 장례인식 개선교육 시 교육 자료에 포함하거나 도내 장례식장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통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단위연수 통일

- 도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에 대하여 가격비교가 용이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 단위연수를 통일함.(예: 5년 단위)

□ 장례식장의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가격 업데이트

- 장례식장의 관리 · 운영상황 보고 시 최신 가격표를 첨부토록 하고, 보고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하도록 유도해야 함.

다. 도민의식 제고

□ 도민의 인식수준에 맞는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장사에 대한 인식 개선

-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장사문화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서 희망하는 장사방법을 살펴보면, 20~30대의 청년 세대가 40~50대 이상 중장년 세대보다 화장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집단의 특성별로 죽음 또는 이를 정리하는 장사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줌.
- 따라서 각 집단의 특성별로 장사정책을 세분화하여 죽음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인식, 장사시설은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문화시설이라는 인식 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선호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3. 경기도 장사정책 세부 추진 과제

가.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1) 화장시설

- 경기도의 화장률은 2010년 73.8%에서 2017년 88.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90%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됨.
- 도내 화장시설은 수원(9기), 성남(15기), 용인(11기)로 총 35기가 있고, 원주시에 공동 설치한 여주의 2로와 고양시와 파주시가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승화원의 화장로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과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화장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화장시설의 확충은 권역별 중장기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의 극복, 규모의 경제달성, 재원조달 등의 난제가 많아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규모, 지리적 범위 등을 기준으로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동설치, 공동사용의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다만, 도내 권역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타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권역별 설치 시·군 공동사업이 전제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음.
 - 현재 서북부권역은 고양시와 파주시가 서울시의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화장시설의 설치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동북부권역은 포천시에서 공동형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의회 부결로 중단된 상태로 이 지역은 지자체 간 공동사업을 통해 화장시설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부권역은 화성시가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안양시와 사업비를 분담해 화장로 13기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 추계에 따르면 화장로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역 중 화장건수가 가장 많고 2018년부터 2035년까지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장사시설 내 화장로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부권역은 수원과 용인에 2개의 화장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수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 건수가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9로의 화장로 외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동부권역은 성남시에 화장시설이 있지만, 양평, 여주, 이천 등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 시설 이용이 어려움이 있음. 다만, 최근 원주시가 여주시 및 횡성군과 공동으로 화장로 7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갖춘 원주 추모공원을 2019년 3월 개원예정에 있어 수요 추계 결과, 동부권역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상당 기간 화장로 공급이 충족될 것으로 나타남.

□ 시·군간 공동설치를 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도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거나 중앙정부의 화장시설 설치계획과 함께 추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권역별 공동설치를 장려함.

- 만약 도내 권역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도의 인접 시·군과 공동설치 및 공동운영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장려에도 불구하고 공설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민간화장시설 설치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먼저, 화장장려금의 경우 경기도 내 17개 시·군¹⁸⁾에서 시행하고 있음. 시·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의 20~70%를 지원해주거나 화장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원 혹은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음.
-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화장시설이 있는 시에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관외 시민에게는 5배~20배정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실상 관내주민들은 화장장려금과는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기도민이 주로 사용하는 도내 혹은 인접 공설과 사설 장사시설의 평균 사용료를 비교해보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공설 장사시설이 있는 관내 주민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남. 관내 주민의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화장 후 자연장지 혹은 봉안시설 사용 시에도 관외주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단위 : 원)

평균 사용료		공설 장사시설		사설 장사시설		비고
		관내	관외	최저	최고	
화장시설		106,000	980,000	-	-	
자연장시설	잔디형	400,000	875,000	980,000	1,480,000	
봉안시설	봉안당	210,000	825,000	-	-	
	봉안담	-	-	433,000	6,664,000	
	봉안묘	800,000	1,300,000	13,133,000	105,147,000	

- 마지막으로 민간화장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대안으로 될 수 있지만, 시기적 ·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18) 부천, 안산, 안양, 김포, 광주, 군포,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군, 파천, 양주, 구리, 가평군, 연천군

(2) 봉안시설

- 봉안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990년대 이후 정부정책으로 장려되었으나 일부 봉안시설은 과도한 콘크리트와 석재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함.
- 장례의식의 근본취지가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석물의 사용으로 인한 봉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음(시군의 봉안당은 조례에 의해 안치기간이 정해져 있음).
- 이러한 봉안시설의 설치는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친자연적 방식인 자연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2022년 자연장 30%를 목표로 하여 봉안방식의 단계적 축소·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새로운 봉안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노후화된 봉안시설의 리모델링, 개·보수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공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시·군에는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재개발 차원에서 「만장된 공동묘지의 재개발」 사업으로 필요에 따라 봉안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음.
- 봉안시설의 설치 시 기존 봉안시설의 획일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봉안 안치 형태로 변화해 나아가야 함. 최근 사설 봉안시설은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봉안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음.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과 국민인식 전환을 위하여 공설 봉안시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부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설 봉안시설이 충분한 지자체는 사설 봉안시설 사용 검토 필요
 - 기존 장사시설의 개발로 봉안당 신축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자연장지 확대에 의한 봉안당 신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 시·군의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원화된 소규모 봉안당 설치 검토 필요
 - 또는 공설공동묘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봉안당 설치 검토 필요
 - 봉안당의 경우 회랑식 봉안당 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한 테마 접목 검토

<그림 7-2> 봉안시설 사례



자연장지와 봉안당의 어우러짐



여주추모공원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
현대적 문양 접목

(3) 자연장지

- 장사제도의 핵심과제는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장사시설의 확충과 장사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인식 및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장사방법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을 정착시키는데 있음.
- 자연장은 기본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과 화장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에 대한 예우 역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경건하고 품위있는 유골 안치방법과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리성, 경제적 효과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시설이어야 함.
- 자연장지는 기존의 공설공동묘지를 재활용하거나 집단묘지 내 소규모 단위로 자연장지 조성 또는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 중 산림지역을 자연장지로 전환·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지의 확대를 위하여 자연장 조성장소와 입지에 관한 사항, 규모와 면적에 관한 사항, 자연장 형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자연장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자연장 안치율 30% 달성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설 자연장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전체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자연장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권역의 경우 자연장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장기목표와 지침에 따라 자연장지의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종합장사시설 신설 시 또는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 시 자연장지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설 자연장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신규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품위 있는 장사시설로서 자연장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경 보완 필요 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연장 형태 변경 고려
 - 자연장지 조성 시 초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종 선택 필요
 - 장사시설 조성 시 지역의 역사, 문화를 고려한 테마 중심의 자연장지 조성 검토
 - 또한 storytelling 접목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장사시설 조성

나. 장사제도 개선

- 일반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지가하락, 생활환경 피해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접근성,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등 중·장기적, 종합적 검토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한 기반구축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묘지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야 함.
 - 복지부 종합계획에서는 장사정책협의회 구성을 검토하도록 함
 - 협의회 또는 자문회의를 통해 시·군 장사시설 자문 및 갈등조정 역할

다.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친근한 장사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사시설 시민견학 프로그램(아름다운 여행)을, 웰다잉 페어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을 한 바 있음.
- 경기도에서도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이벤트와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 가족축제, 서울시 생사문화주간 운영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순회 설명회’ 진행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순회 설명회 시·군 운영 확대
(강사지원 및 중식지원, 자연장지 견학 시 버스 지원)
 - 테마가 있는 장사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의 운영 검토
 - 인천가족공원은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백일홍 단지 운영
 - 인천가족공원의 소풍나들이 축제

제 2 절 경기도 장사시설 재정 투입 분석

□ 각 시군의 지역수급계획과 제출된 재정투입계획을 검토하여 시설 유형별로 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를 정리함.

1. 화장시설

□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와 원주 광역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여주시로 총 6개 지역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화장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86,628,714천원으로 나타남.

<표 7-1> 연도별 · 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설치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자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총계		16,506,000	35,995,714	34,127,000	-	-	86,628,714	
국비		1,000,000	10,000,000	7,596,000	-	-	18,596,000	
도비		64,000	642,857	488,000	-	-	1,194,857	
시비	소계	15,442,000	25,352,857	26,043,000	-	-	66,837,857	
	화성시	3,379,600	7,661,657	7,423,000	-	-	18,464,257	
	부천시	3,015,600	4,018,800	4,655,000	-	-	11,689,400	
	안산시	3,015,600	4,014,800	4,655,000	-	-	11,685,400	
	시흥시	3,015,600	4,018,800	4,655,000	-	-	11,689,400	
	광명시	3,015,600	4,018,800	4,655,000	-	-	11,689,400	
	여주시	-	1,620,000	-	-	-	1,620,000	

□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총 18,596,000천원이고, 도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94,857천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시비는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하는 5개 자치단체와 원주 광역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여주시를 포함하여 총 66,837,857천원을 투입할 계획임.

2. 자연장지

□ 자연장지 설치를 계획한 자치단체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가평군의 8개 자치단체임.

- 수원시는 연화장에 잔디형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인시 역시 평온의 숲에 잔디형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함.
- 안산시는 꽃빛공원인 와동 37-2와 부곡동 산12에 수목형 및 잔디형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함.
- 시흥시는 정왕공설묘지에 잔디형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포시 역시 김포시 추모공원 내에 잔디형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함.
- 이천시는 201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죽당리 자연장지에 잔디형을 설치할 예정임.

<표 7-2> 연도별 · 자치단체별 자연장지 설치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자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총계		328,047	2,233,570	2,381,094	2,381,094	2,188,428	9,512,233	
국비	소계	74,000	1,408,000	1,265,571	1,265,571	1,095,571	5,108,713	
	수원시	-	170,000	170,000	170,000	-	510,000	
	용인시	-	-	-	-	-	-	
	안산시	-	-	1,095,571	1,095,571	1,095,571	3,286,713	
	시흥시	-	492,000	-	-	-	492,000	
	김포시	-	384,000	-	-	-	384,000	
	광주시	-	362,000	-	-	-	362,000	
	이천시	-	-	-	-	-	-	
도비	가평군	74,000	-	-	-	-	74,000	
	소계	4,770	90,252	245,523	245,523	234,857	820,925	
	수원시	-	10,666	10,666	10,666	-	31,998	
	용인시	-	-	-	-	-	-	
	안산시	-	-	234,857	234,857	234,857	704,571	
	시흥시	-	31,629	-	-	-	31,629	
	김포시	-	24,685	-	-	-	24,685	
	광주시	-	23,272	-	-	-	23,272	
시비	이천시	-	-	-	-	-	-	
	가평군	4,770	-	-	-	-	4,770	
	소계	249,277	735,318	870,000	870,000	858,000	3,582,595	
	수원시	-	62,000	62,000	62,000	-	186,000	
	용인시	-	-	-	-	50,000	50,000	
	안산시	-	-	808,000	808,000	808,000	2,424,000	
	시흥시	-	179,228	-	-	-	179,228	
	김포시	-	139,886	-	-	-	139,886	
	광주시	-	131,871	-	-	-	131,871	
	이천시	222,333	222,333	-	-	-	444,666	
	가평군	26,944	-	-	-	-	26,944	

3. 보안시설

□ 보안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가평군 7개 자치단체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수원시는 2018년 연화장에 봉안당을 준공했고, 봉안당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인시는 2022년 평온의 숲에 봉안묘를 설치할 계획임.
- 안산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늘공원에 봉안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평택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립추모공원에 20,000기의 봉안능력을 갖춘 봉안당과 봉안당을 설치할 계획임.
- 김포시는 추모공원 내에 2,628기의 봉안능력을 갖춘 봉안당을 2019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천시는 시립 추모의 집에 15,000기의 봉안능력을 갖춘 봉안당을 2017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표 7-3> 연도별 · 자치단체별 보안시설 설치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자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총계		3,470,143	4,925,857	15,508,237	14,175,237	9,598,665	47,678,139	
국비	소계	2,429,000	3,448,000	5,255,666	4,322,666	977,666	16,432,998	
	수원시	350,000	1,500,000	3,345,000	3,345,000	-	8,540,000	
	용인시	-	-	-	-	-	-	
	안산시	765,000	677,000	977,666	977,666	977,666	4,374,998	
	평택시	-	-	-	-	-	-	
	김포시	-	338,000	-	-	-	338,000	
	이천시	933,000	933,000	933,000	-	-	2,799,000	
	가평군	381,000	-	-	-	-	381,000	
도비	소계	96,158	161,680	424,802	424,802	209,766	1,317,208	
	수원시	22,500	96,429	215,036	215,036	-	549,001	
	용인시	-	-	-	-	-	-	
	안산시	49,178	43,522	209,766	209,766	209,766	721,998	
	평택시	-	-	-	-	-	-	
	김포시	-	21,729	-	-	-	21,729	
	이천시	-	-	-	-	-	-	
	가평군	24,480	-	-	-	-	24,480	
시비	소계	944,985	1,316,177	9,827,769	9,427,769	8,411,233	29,927,933	
	수원시	127,500	546,428	1,218,536	1,218,536	-	3,111,000	
	용인시	-	-	-	-	202,000	202,000	
	안산시	278,679	246,621	209,233	209,233	209,233	1,152,999	
	평택시	-	-	8,000,000	8,000,000	8,000,000	24,000,000	
	김포시	-	123,128	-	-	-	123,128	
	이천시	400,000	400,000	400,000	-	-	1,200,000	
	가평군	138,806	-	-	-	-	138,806	

4. 묘지 재개발

□ 묘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안산시, 평택시, 동두천시의 3개 자치단체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묘지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는 많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개 지역에 불과함.

- 안산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화정동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평택시는 청북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동두천시는 안흥동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봉안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7-4> 연도별 · 자치단체별 묘지 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자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총계		-	-	7,472,000	7,472,000	6,872,000	21,816,000	
국비	소계	-	-	832,000	832,000	412,000	2,076,000	
	안산시	-	-	412,000	412,000	412,000	1,236,000	
	평택시	-	-	-	-	-	-	
	동두천시	-	-	420,000	420,000	-	840,000	
도비	소계	-	-	115,000	115,000	88,000	318,000	
	안산시	-	-	88,000	88,000	88,000	264,000	
	평택시	-	-	-	-	-	-	
	동두천시	-	-	27,000	27,000	-	54,000	
시비	소계	-	-	6,525,000	6,525,000	6,372,000	19,422,000	
	안산시	-	-	1,372,000	1,372,000	1,372,000	4,116,000	
	평택시	-	-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동두천시	-	-	153,000	153,000	-	306,000	

제 8 장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련 갈등해소 방안

제1절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의 원인 및 유형

제2절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해소방안

제 8 장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해소방안

제 1 절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의 원인 및 유형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은 먼저 설치 주체인 정부와 지역 주민, 정부와 정부 간, 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주민 간 갈등에 대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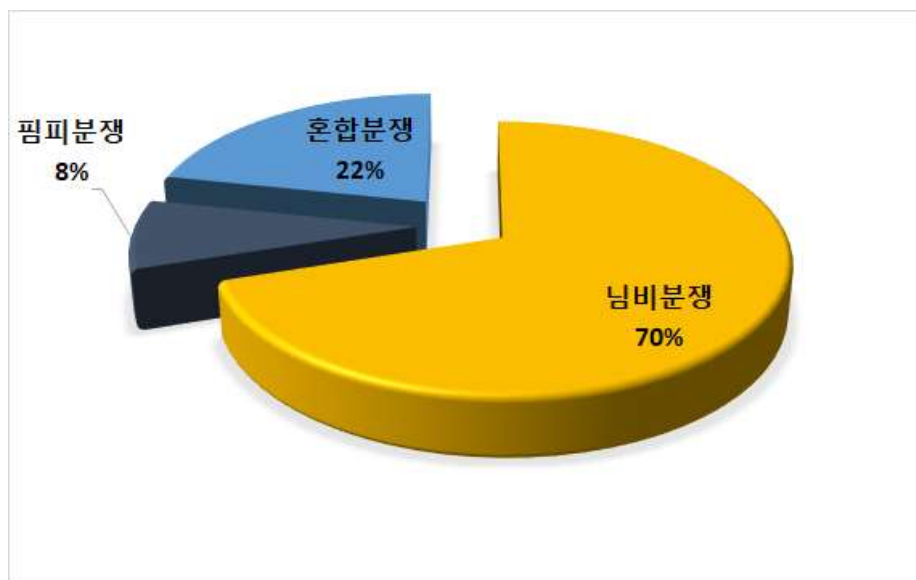
□ 공공갈등이란

-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함.

□ 경기도 비선호시설 기피 분쟁¹⁹⁾ 현황

-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2014)에 따르면 1990년~201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쟁 중 선호시설 유치(뽕피) 및 비선호시설 기피(님비) 현상과 관련된 분쟁은 전체의 약 52%인 60건으로 나타남.
- 이 중 님비현상이 42건으로 70%를 차지하였고 뽕피는 5건으로 8%, 님비와 뽕피의 혼합 분쟁이 13건 발생하였음.

<그림 8-1> 경기도 비선호시설 기피 분쟁 현황



19)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2014)에서는 갈등을 잠재적 대립 상태로, 분쟁은 대립 상태의 현재화로 규정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만 구축함.

1.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의 원인

- 장사시설 설치 · 조성과 관련한 갈등은 장사시설이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여 그 편익은 전 지역에 돌아가지 않으면 비용은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 · 편익의 불균형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장사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
 -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부족, 지역주민들의 의견무시, 설치 과정상 주민 참여 배제 등 민주적 절차 부재에 따른 불신감이 팽배함.
 - 기피시설 설치 시 정부는 ‘결정-발표-방어(Decide-Announce-Defend: DAD)’ 방식에 의해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과학적 조사 · 연구와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 발표한 후 주민들이 반발하면 이에 방어하는 사례가 많았음.
- 직 · 간접적 피해 우려
 - 환경오염, 시설주변 교통정체,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지가하락 등 시설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함.
- 비선호시설²⁰⁾에 대한 기피
 - 죽은 자의 공간이란 인식에서 오는 정서적 거부감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정책입안자 혹은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syndrome: NIMBYs)이 발생함.

20) 비선호시설 : 국가적·사회 전체적 또는 지역적으로는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나 해당 입지지역 차원에서는 해악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지닌 시설을 의미하며, Popper는 이러한 비선호시설을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라고 명명함(한국행정학회, 2014)

□ 다양한 장사시설 입지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갈등 내용	비고
입지선정 정책형성 과정 요인	• 사업집행주체 및 행정에 대한 불신감 • 정보공개 및 하향식 입지선정 정책결정 • 행정에 대한 불신감 및 입지결정과정의 비민주성 • 입지선정 방식과 그에 따른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수렴 여부 • 지방자치제의 실시 • 정부 간 갈등관계 • 정책 주체에 대한 신뢰성 • 정부 내 부처 간 분절현상과 이기주의 • 정치적 대응	
경제적 손실보상 요인	•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성 • 보상의 정도와 보상요구행태 • 자본과 노동의 생산력 관계	
생활환경 피해 요인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조 •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상 불편 초래 • 교통체증 유발, 지가 및 재산 가치 하락 •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및 불안 • 환경단체의 반발 • 시설의 위험성 · 유해성, 유해물질 배출 • 입지선정에 대한 언론의 추측보도 및 보도태도	
시설입지 반대인식 형성 요인	• 지역 이미지 손상 • 지역 주민 동원의 용이성 • 지방자치제 실시 • 주민권리 의식 향상 • 시설입지 반대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 인근지역주민의 동조 • 환경단체의 역할	
시설의 안정성 요인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 시설 규모 • 피해 복구 및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불만족 •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주민 사회적 요인	• 장묘복지운동 • 대인관계 변화	

※ 자료 : 김형락, 2009. "장사시설 입지갈등 요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 갈등의 유형

□ 장사시설 시설에 따른 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법적, 시설·환경적으로 나뉜.

요 인	유 형	원 인	비고
사회적	- 묘지공원 설치반대 - 묘지공원 장소(위치변경)	- 전통적 기피심리, 정서적 거부감 - 님비현상, 지역이미지 실추	
경제적	- 재산권 하락 - 토지보상 부당 등	- 상대적 피해의식 - 지가산정 부당	
법적	-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 개발제한구역 관련	- 부지협소, 도로협소, 마을통과 및 접근 - 자연산림 훼손	
시설·환경적	- 산수원보호구역 관련 - 교통혼잡 - 주거환경 침해 - 비선호 시설 집중 반대	- 상수원 오염 - 주변도로 장례행렬로 상습정체 우려 - 대기오염, 소음 등 - 다양한 기피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 유치되는 것에 대한 반대	

제 2 절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해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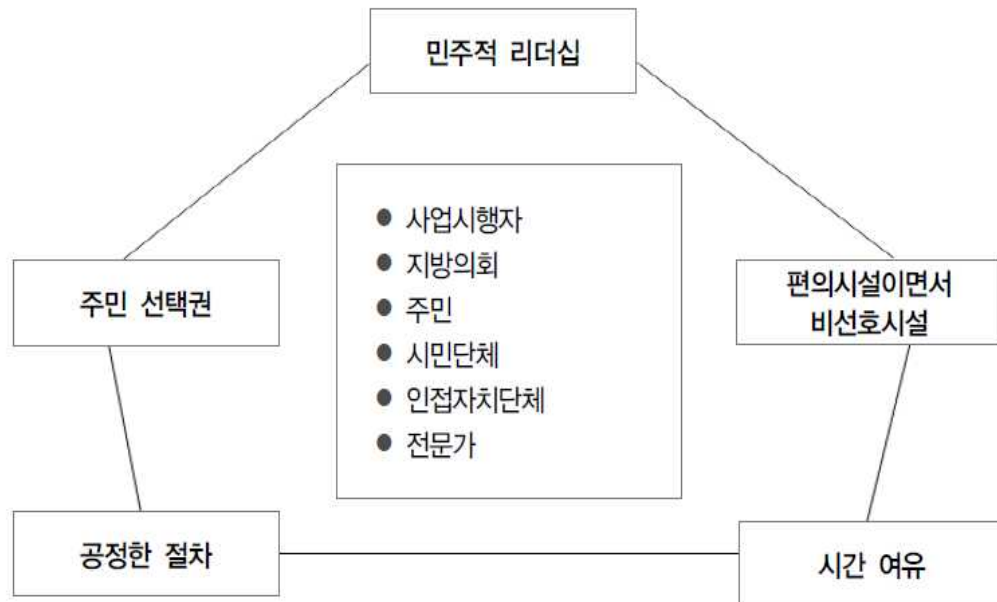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사업무 안내」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음.

가. 기본적 인식의 공유

- 장사시설 추진측과 반대측 모두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인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하며 타협 및 우수 조성 사례 등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충실해져 사업계획의 품질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 입지선정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 선택권에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형식의 선택권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규모와 종류, 위치,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선택권도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절차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소극적인 반대로 완화하는 성과를 가져옴.
-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상호협력적인 신뢰관계에서 문제해결 시한의 설정은 합의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불신관계에서 다급한 협상은 사업시행자의 양보를 강요하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림 8-2> 기본적 인식의 공유 모형



나.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상의 중요성

- 갈등요인 : 공론화 노력의 부족, 일방통행의 의사소통과 빈곤한 설득, 공론화의 부재와 일방적 추진, 대표성의 부족, 행정편의적 접근 등 이해관계자와 협상이 부족함.
- 성공요인 : 지속적인 주민대화, 개별설득, 주민의견 존중, 주민과 인간적인 유대감 형성, 화장시설 공사 시 주민협의체와 협정서 체결 후 착공, 주민 명예감동 임명 등의 주민참여 절차 확대

□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협상 참여의 중요성

- 협상에는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자, 주민,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와 특히 반대하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정치인 등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입지 선정에 참여하여야 결정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상의 필요성

- 협상은 사업계획의 입안 또는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지선정 후의 협상제외는 갈등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갈등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공모절차 활용에 따른 입지선정의 용이성

-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최적입지 선정방식과 적정입지 선정방식을 결합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2, 3의 입지를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함.
-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공모·협상·주민투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 신뢰형성을 위한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 사업시행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함.
- 입지조건에 대한 정보와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우려하는 환경·교통·재산피해 등의 우선순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대책과 불가피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음.

□ 공동 사실조사는 정보공유의 필요조건

- 공동 사실조사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환경단체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부정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계획의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정보공유 방식이자 상호학습 과정임.
- 국내외 선진 화장시설의 견학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협상에 있어서 중립적인 조정자의 필요성

- 중립적인 제3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도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수단임.
-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찾아가는 직접·개별면담 방식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들을 확인하고 쟁점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문제해결 가능성을 탐색,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경우 협상 참여자, 의제, 기간, 장소 등 협상의 기본규칙을 설계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함.

□ 다양한 협상의 목표

- 모든 쟁점에 합의하는 것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님.
- 예상할 수 있는 협의 결과는 4가지로 볼 수 있음.
 - 갈등종결 :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합의서에 서명
 - 갈등완화 : 합의서에 서명하진 않았으나 반대하지는 않는 소극적 찬성

- 갈등잠복 :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 소극적 반대
- 갈등심화 : 시위와 소송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반대
- 최선의 협상결과는 갈등종결이지만 소극적 찬성의 갈등완화 또는 소극적 반대의 갈등잠복과 같이 차선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음.
- 시위나 소송 등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협상과 조정에 의한 상호신뢰의 회복이 입지갈등 해결에 더 유용한 수단임.

다. 타당성 검토 강화

□ 사설장사시설의 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 특정시설의 특정지역 설치를 전제로 검토할 시 선택의 폭이 좁고 다양한 대안개발의 가능성이 봉쇄됨.

□ 소규모 분산설치의 타당성 검토

- 도심지에서 장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을 집단화, 공원화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임.
- 도시지역의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분리하거나 소규모로 분산하여 지역별로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묘지공원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

-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 사례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원묘지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의 입지를 선정한 것임.
- 입지 반대가 있어도 그 정도는 이미 장사시설이 입지하여 운영 중인 지역보다 신설지역의 반대가 더 크기 때문에 운영 중인 공원묘지 안의 장사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공원묘지와 화장시설도 포함해 낡은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교체, 아름다운 설계와 조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예방, 개발이익의 손실 보상방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과 형평성,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심지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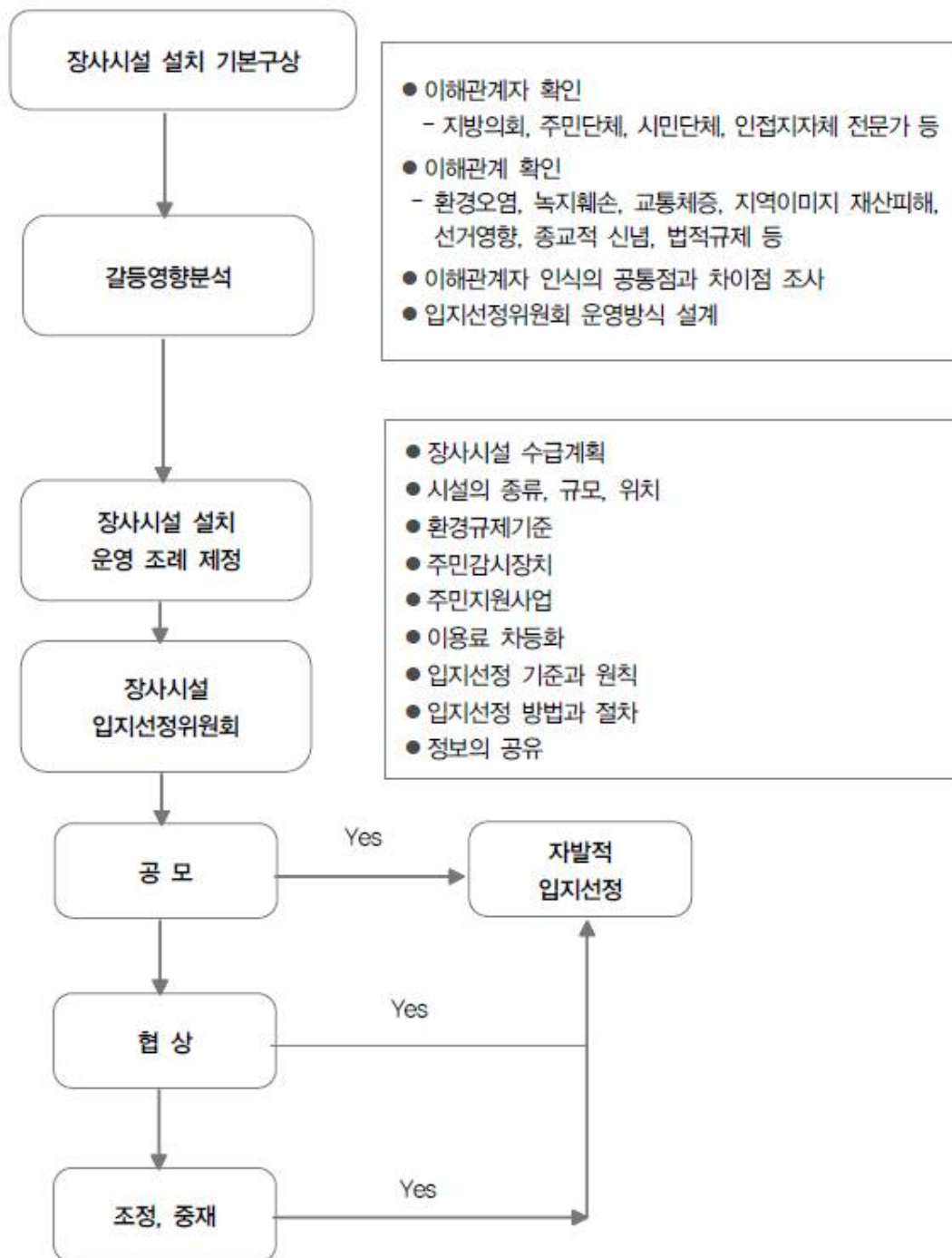
- 장사시설의 입지를 시청 옆에 선정하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 과정의 환경 피해와 교통피해를 줄이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한 재산 피해의 우려를 불식, 행정 경계지역의 입지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가능할 것임.

□ 광역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

- 화장 시설의 경우는 3~4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2018년 장사업무 안내」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모형은 다음과 같음.

<그림 8-3>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모형



2.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 최소화 방안

가. 기술적 접근

- 기술적 접근이란 장사시설 설치 · 조성 시 특수설비 장치 등 기술적 방법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말함.
- 주변 환경 또는 주민생활 등의 유해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공해방지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임.
 - 장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1조에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장사시설 설치 · 조성 시 공원화되고 품격 있는 시설을 갖추고 외부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함.
- 기술적 접근 사례 : 서울 추모공원
 - 배출가스 자동표출시스템과 냄새확산방지시스템 등 친환경설비를 갖추었으며 환경모니터(지킴이) 제도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배출가스 측정현황을 고지하고 있음.
 - 또한 외부로부터 인지를 최소화하여 주변 지형보다 낮게 설계하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개방형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낮추었음.

<그림 8-4> 서울 추모공원 배출가스 측정현황



대기배출가스

서울 > 추모공원 > 배출가스 측정현황 > 대기배출가스

대기배출가스	복합역위
--------	------

● **법정기준치**

구분	일산화탄소 (ppm)	연화수소 (ppm)	황산화물 (ppm)	질소산화물 (ppm)	먼지 (mg/5㎡)
법정기준	80	20	30	70	20

● **서울추모공원 측정량(화장시간 평균값)**

5개씩 ☒
측정일 - -

+ 전체 6828건, 현재페이지 1/1366 page

측정일	측정시각	측정호기	일산화탄소 (ppm)	연화수소 (ppm)	황산화물 (ppm)	질소산화물 (ppm)	먼지(mg/5㎡)
2018-11-30	7	6	52.53	-	0.0	64.38	0.0
2018-11-28	13	7	65.63	-	5.99	50.66	0.0
2018-11-26	8	7	69.56	-	0.0	48.68	0.0
2018-11-23	16	4	65.05	-	0.0	63.27	0.0
2018-11-21	7	3	48.95	-	0.0	63.28	0.0

«
<
1
2
3
4
5
6
7
8
9
10
>
»

※ 자료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나. 협상적 접근

- 협상적 접근은 입지예정 지역주민과의 이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임.
-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장사시설 설치·조성 시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관련 정보의 투명성, 충분성 및 확실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장사시설 설치·조성계획 규모 등 기본설계, 조감도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보공개의 의무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주민 대표와 실무자들이 현지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된 자치단체의 경우 장사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은 장사시설 설치·조성계획 시 장사시설 설치관련 행정절차,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원내용, 재정확보 방안, 추진과정상의 장애 및 극복방안 등에 대해 상위 기관인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상적 접근 사례 : 여주 추모공원

- 기존 분묘 지역에 자연친화적이고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공설묘지 재개발을 도모하고자 관련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립승화원 및 광주시 중대공원을 견학함.
- 여주읍 가엽리와 가남면 본두리, 점동면 처리 등 후보지 세 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함.

<그림 8-5> 여주군 장사시설 현장견학



※ 자료 : 세종신문 "여주군 타 시·군 장사시설 현장견학" (2011/09/07)

다. 보상적 접근

- 보상적 접근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경제적·비경제적 보상 등을 제공하여 장사시설 설치·조성을 추진하는 방식임.
-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따라 주민의 피해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사시설 설치·조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지원
 -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장사시설에 대한 수익사업의 운영권 제공 및 지역주민 고용
 - 설치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유치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바람직함.
- 보상적 접근 사례 : 울산하늘공원
 - 당시 울산시에서는 울산공설화장장을 대체할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구청장 및 군수업무협의회’에서 화장장 설치지역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로 120억원(사업착수 후 2년 이내 지원)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조건하에 입지를 공무하였음.
 - 울산 북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시립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자 중 14.2%만이 찬성하여 화장장 유치는 무산되었음.
 - 대상지 선정이 무산되면서 울산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청지역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5개 구·군별로 후보지역 2개소, 투표인단 200명씩을 추천하였고 당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단독으로 추모공원 유치를 신청하면서 협상 후 후보지로 결정되었음.
 -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의 자발적 화장장 유치에 울산시는 삼동면 주민숙원사업 19건 지원, 현금 200억 원,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 경영수익 사업권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

라. 정부 간 공동건립

- 장사시설은 설치 지역이 한정적이고 도심지보다 도시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해 인접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또한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정부 간 공동건립 사례 : 서남권추모공원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자체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은 시간적 ·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송화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
 -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인접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광역화장장의 공동건립을 추진함.
 - 2011년 ‘화장시설 설치 상호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추모공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넘비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음.
 -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김제시를 제외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2015년 11월 서남권추모공원을 개관하였음
 - 다음해 김제시 또한 서남권 광역 화장장 확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화장로를 확대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협의하였음.
 - 서남권추모공원의 운영비와 사용료 수익은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4시군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산하여 인구수 비례 공동부담하고 있음.

마. 기피시설의 상쇄

- 하나의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공동체에는 다른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²¹⁾이 있음.
 - 예를 들어 두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에는 화장장을 다른 한 곳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함.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결합하여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반대 요인을 제거하는 접근 방법²²⁾도 있음.
 -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기피시설에 대한 기피율과 선호시설에 대한 만족률이 서로를 상쇄시켜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반대할 요인을 원천적 제거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음.

21) 신창현. 2010. “지자체 역외기피시설 갈등해결 방안.” 한국NGO학회. 참조

22) 이상대 외 2명. 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참조

- 앞서 살펴본 해외 장사시설 사례에서 일본 요코하마 메모리얼 그린에 도심지 내에 묘지와 함께 야구장을 조성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음.
- 화장장과 문화센터, 화장장과 박물관의 결합 등과 같이 편익시설이나 문화관광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장사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

3. 장사시설 설치 · 조성관련 갈등 관리 전략

□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갈등관리란

-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
-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Bercovitch, 1984)
- 논란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합의형성절차를 통하여 갈등이 수용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Krauss, 1984)

가.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상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대화의 장을 조성하는 것임.

-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협의체를 통한 당사자 간 협상이 win-win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함.
- 당사자의 입장(position)이 아닌 이해(interest) 중심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능영역(Zone Of Potential Agreement : ZOPA)을 확인하고 통합적 합의안을 강구해야 함.
 - 합의가능영역(Walton & McKersie 1965)은 흥정영역(bargaining zone) 혹은 타협영역(settlement zone)으로 협상이 타결 가능한 범위로, 두 당사자의 유보치 사이의 영역을 의미함.
 - 당사자 간 협상은 합의가능영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당사자 간 유보치 영역의 교집합이 발생할 시 긍정적 흥정영역에 의해 협상이 가능해지며, 교집합이 없을 시 협상은 결렬됨²³⁾.
- 이해당사자 간 세부 쟁점별로 합의가능영역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함.

□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조성 사례²⁴⁾

- 시화호의 개발과 보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
- 이에 갈등관리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MTV 사업의 합의와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음.
-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임의기구였으나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공식기구가 되었음.
- 정부와 민간 간 공동위원장이 있으며, 조정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26인), 환경개선분과위원회(3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시화지속발전협의회는 2004년 구성된 후 2006년까지 22차례의 전체회의, 97차례의 분과회의, 27차례의 전문T/F팀과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음.
- 대통령령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적 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협의에서 더 나아가 정책결정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하였음.

나. 갈등조정기구의 활용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면 이들을 중재할 중립적인 조정자가 필요함.

-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기구로는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조정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 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행정형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실)가 있지만, 이러한 기구를 활용해 조정을 시도할지, 아니면 새로운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결정해야 함.

□ 분쟁의 문제와 그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을 조정할 경우 절차적 합리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중재자를 통해 편익과 비용의 부담, 정보공개와 공유, 신뢰성 제고가 가능
- 특히 협상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공, 협상기준과 원칙에 대한 학습 등을 통해 신뢰 제고 가능

23) 은채호 외 2명. 2011. “공공갈등에 있어서 원원협상 방안에 관한 연구.” KIPA 참조

24) 이상대 외 2명. 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참조

다. 갈등관리제도 재정비²⁵⁾

- 장사지원센터 내에 전문가로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 조성계획의 심의 · 자문 및 갈등 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을 운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갈등 해결능력은 미미한 편임.
- 경기도의 갈등조정협의회의 상설화 · 전문화를 통해 도정의 갈등상황을 수시로 관리해야 함.
 - 광역시 갈등조정위원회, 지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갈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함.
 -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사전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갈등영향분석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약식 갈등 영향분석표 도입 및 의무화해야 함.
 - 갈등조정관의 신설 혹은 소통담당관의 겸임 등
- 서울시 사례 : 갈등조정담당관 도입
 - 2012년 서울시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여 시의 모든 사업과 정책 중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의 관리를 맡김.
 - 갈등 사례를 등급별로 수집하고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처리방안을 지침화함.
 - 여러 부서가 연계된 사안이거나 복잡한 집단민원의 경우 갈등 조정을 지원해줌.
 - 사업규모 50억 이상의 사업, 실본부국장 전결 이상 사업 등을 갈등진단대상사업으로 리스트화하고 사업추진부서에 진단을 통보함.
 - 이후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회의’를 통해 갈등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함.
- 해외 여러 국가에서 국가의 특성과 역사에 맞는 갈등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계획 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 ‘제도를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음.
 -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 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법을 제도화하였음.

25) 이상대 외 2명. 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참조

라. 갈등 단계별 관리 전략²⁶⁾

□ 갈등 요인이 발생했을 시 협상과정에서 이를 한 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갈등의 잠재기부터 증폭기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갈등의 잠재기

- 장사시설 입지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 정보 공개,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입지를 선정해야함.
- 이 과정에서 실제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

□ 갈등의 표출기

- 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지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함.

□ 갈등의 증폭기

- 입지 선정 시 주민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절차가 지켜져야 함.
-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언제나 주민들이 사업의 전개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에 비해 약자로 인식하여 협상보다는 시위, 협상의 회피 등을 행하게 됨으로 주민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함.

□ 갈등의 조정기

-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게 하는 심판의 역할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맡길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이 장사시설 입지와 관련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관계공무원은 독려하는 한편 주민들과는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6) 김형락. 2009. “장사시설 입지갈등 요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참조

참 고 문 헌

- 고덕기. 2000. “공공묘지의 공원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0권: 54-61.
- 김형락. 2009. “장사시설 입지갈등 요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3: 113-137.
- 신창현. 2010. “지자체 역외기피시설 갈등해결 방안.” 한국NGO학회 발표자료.
- 은채호, 채종헌, 임동진. 2011. “공공갈등에 있어서 원원협상 방안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1-12.
- 이상대 정유선, 김보경. 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이슈&진단』 제190호: 1-26.
- 이재광, 김을식, 하보란. 2014.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4-20: 1-55.

첨 부 자 료

첨부1. 경기도민 의식조사 설문지

첨부2. 경기도민 의식조사 결과

첨부3. 경기도 공설묘지 목록

첨부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소개

첨부자료 1. 경기도민 의식조사 설문지

경기도 장사(葬事)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 및 장사시설, 장사정책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2-2(서초동, 대한세무협회 내)
- 연구담당 : 송원명 부소장
- 전화 : 02-3474-4666
- 메일 : kiailim@daum.net

응답자 일반사항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 _____ 세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경기도 시군 중,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시군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1. 가평군 | 2. 고양시 | 3. 과천시 | 4. 광명시 | 5. 광주시 |
| 6. 구리시 | 7. 군포시 | 8. 김포시 | 9. 남양주시 | 10. 동두천시 |
| 11. 부천시 | 12. 성남시 | 13. 수원시 | 14. 시흥시 | 15. 안산시 |
| 16. 안성시 | 17. 안양시 | 18. 양주시 | 19. 양평군 | 20. 여주시 |
| 21. 연천군 | 22. 오산시 | 23. 용인시 | 24. 의왕시 | 25. 의정부시 |
| 26. 이천시 | 27. 파주시 | 28. 평택시 | 29. 포천시 | 30. 하남시 |
| 31. 화성시 | | | | |

SQ4. 귀하의 거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 귀하께서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년 미만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0년 이상 ~ 20년 미만
4. 20년 이상 ~ 30년 미만
5. 30년 이상

SQ5. 귀하께서는 장례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SQ6.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참고로 중퇴나 재학은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재학 이상

SQ7.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무교(종교없음)
2. 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5. 기타()

SQ8. 귀하 가구의 월평균 가구총소득(급여, 기타 소득 모두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4. 45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 6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
6. 750만원 이상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

문1. 귀하의 가정에서 상(喪)을 당했을 때, 귀하께서 희망하는 장례 장소(조문객을 받고 예를 치르는 곳)는 어느 곳입니까?

1. 자택
2. 병원장례식장
3. 전문장례식장
4. 종교시설
5. 기타()

문2. 귀하께서 희망하는 장사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1. 매장(埋葬)
2. 화장(火葬)

-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종중묘지, 법인묘지
(공원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묘지 포함)
 - 공설묘지 : 시·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묘지
-
- 사설봉안시설 : 개인·가족, 문·종중, 종교단체, 장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봉안시설
 - 공설봉안시설 : 시·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봉안시설

문2-1.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묘지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1. 사설묘지
2. 공설묘지

문2-2. 귀하께서는 사설묘지 중 어떤형태를 희망하십니까?

1. 개인묘지
2. 가족묘지
3. 종중·문중묘지
4. 법인 묘지(공원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묘지 포함)

문2-3. 귀하께서 매장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후손들이 성묘를 할 수 있어서
2. 화장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3.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
4. 종교적 이유 때문에
5. 이미 묘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6. 기타 ()

문2-5. 귀하께서는 부부합장묘를 희망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2-6. 귀하께서 화장을 의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화장을 하면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2. 매장으로 인한 호화묘지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해서
3. 매장으로 인해 묘지 부지가 부족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4. 화장을 하면 후손들에게 덜 부담이 가기 때문에
5.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6. 장례절차의 간편성
7. 묘지 부지의 미확보
8. 매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9. 장례비용이 저렴해서
10. 기타()

문2-7. 귀하께서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 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천천히 읽어주신 후,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납골시설이라고 불리는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과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봉안시설에는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 등 유골함을 모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봉안시설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봉안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문중·종교단체·장사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모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유택동산 : 화장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모시는 곳

1. 봉안시설(납골)에 안치
2.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모시기)
3. 산, 강, 바다에 뿌림
3. 화장시설 내 유족동산에 뿌려 안치
4. 기타()

문2-8. 희망하는 봉안시설 유형

1. 공설봉안시설
2. 사설봉안시설

문2-7.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봉안시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개인 및 가족 사설봉안시설
2. 종중·문중 사설봉안시설
3. 종교단체 사설봉안시설
4. 장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5.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봉안시설
6. 기타()

문2-8. 귀하께서는 부부합장 봉안을 희망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2-9. 귀하께서는 다음의 봉안시설 중 어떤 형태의 봉안시설을 선호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봉안당	2. 봉안담	3. 봉안묘	4. 봉안탑
			
건축물 형태로 된 봉안시설	담과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문2-8. 귀하께서 자연장으로 유골을 모시는 것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것 보다 선호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환경보전 등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2.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3.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4.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해서
5. 기타()

문2-9. 귀하께서는 다음의 자연장 중 어떤 형태의 자연장을 선호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잔디형 자연장	2. 화초형 자연장	3. 정원형 자연장	4. 수목장림
			

문2-10. 귀하께서는 부부합장 자연장을 희망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경기도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경기도의 장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장중심
2. 화장중심

문4. 귀하께서 거주하는 시·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사시설은 무엇입니까?

1. 화장시설
2. 봉안(납골)시설
3. 자연장을 위한 자연장지
4. 공원화된 집단묘지 (공원묘지)

문5. 귀하께서는 기존 공설묘지가 모두 차서 더 이상 새로운 묘지를 만들 공간이 없게 되어 재개발(‘공원화 사업’이라고 함)할 때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묘지를 줄이고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
2. 기존묘지를 줄이고 화장시설 설치
3. 기존묘지를 줄이고 봉안(납골)시설 설치
4. 공설묘지 확대설치
5. 기존묘지를 줄이고 종합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의 설치
6. 재개발(공원화) 사업 반대

문6. 귀하께서는 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이 귀하 가족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 진행된다면 귀하 가족의 묘지를 어떻게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유택동산 : 화장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모시는 곳

1. 공원화된 묘지에 다시 모시기 원함
2. 화장 후 자연장
3. 화장 후 봉안시설
4. 화장 후 유택동산
5. 다른 묘지로 이장

문7.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연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2. 자연장의 장점을 부각하는 홍보 강화
3. 자연장 비용 인하
4. 공설자연장지 조성 확대

문8.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집단묘지(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3. 모르겠음

문9. 귀하께서는 자연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2. 종교단체 3. 장사법인 4. 공공과 민간의 공동 운영

문10. 귀하께서는 장사시설 설치 시 시·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1. (정보공개 부족, 의견수렴 미흡 등)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2. 지역 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3. 자기 지역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려는 태도나 입장
4. 지역 주민의 이해 부족
5. 지자체의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재정운영의 손실
6. 기타()

문11. 귀하께서는 시·군의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장·군수의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
2. 시·군의 상위 기관인 도(道)에서 갈등 조정
3.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후 시행
4. 전면 중단 및 사업 폐지

화장시설 관련 의견 - 성남 · 수원 · 용인 · 고양 · 파주 제외 지역

문12.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문13. 귀하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화장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3. 모르겠다

문14.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만약 화장시설이 설치된다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2. 종교단체 3. 장사법인 4. 공공과 민간의 공동 운영
5. 기타()

문15. 화장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비용 분담 차원에서 두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른 시·군과 공동(컨소시엄 형태)으로 설치
2. 우리 시·군의 독자적 설치
3. 사설화장시설 설치

문16.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시·군이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면 예산(재정)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분담
2. 각 시·군의 전년도 예산에 따라 분담
3. 시민의 이용률에 따라 분담
4. 동일하게 나누어 매년 분담

문17.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 용료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 이용료로 어느 정도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원)

화장시설 관련 의견 - 성남 · 수원 · 용인 · 고양 · 파주 지역

문18.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의 주민이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역에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보다 비용을 내릴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현재보다 비용을 올릴 필요가 있다

문19. 귀하께서는 다른 시·도의 주민이 경기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경기도민과 다른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 주민의 사용료는 차이가 있어야 함
2.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 주민의 사용료는 동일해야 함.
3. 모르겠음.

문20. 경기도민과 타 시·도민의 사용료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각각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민의 사용료, 타 시·도의 사용료에 대해서 보기에 있는 금액 중 한 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기도민의 사용료()
- 2) 타 시·도민의 사용료()

1. 30만원 미만
2.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3. 5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4. 80만원 이상

한시적 매장 제도에 대한 의견

지금부터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시적 매장제도]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모든 분묘는 15년을 기본적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5년씩 연장신청을 하되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분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시적 매장제도는 3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60년을 매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단,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시한부 묘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21. 귀하께서 돌보는 가족묘지 중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문22. 귀하께서 돌보시는 가족묘지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의해 설치기간이 종료된다면, 종료 후 귀하께서는 어떤 장사시설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1. 공설 자연장지
2. 사설 자연장지
3. 공설 봉안(납골)시설
4. 사설 봉안(납골)시설
5. 화장 후 산골(유택동산)

문23.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통해 15년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60년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해진 총 60년의 매장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60년은 길다
2. 60년은 짧다
3. 모르겠음

문2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묘지의 적절한 매장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응답 시 숫자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첨부2.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 희망하는 장례장소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종교시설	자택	기타
전체		1,000	64.5	30.9	2.4	2.1	0.1
성별	남성	501	61.5	33.7	2.6	2.0	0.2
	여성	499	67.5	28.1	2.2	2.2	0.0
연령	20대	121	55.4	35.5	5.0	3.3	0.8
	30대	243	69.1	28.0	0.4	2.5	0.0
	40대	369	62.9	31.7	3.0	2.4	0.0
	50대 이상	267	66.7	30.3	2.2	0.7	0.0
거주지역	동부	175	64.6	33.7	1.7	0.0	0.0
	서부	343	66.8	28.0	2.6	2.6	0.0
	남부	198	55.1	38.4	4.0	2.5	0.0
	북부	284	68.3	27.5	1.4	2.5	0.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66.4	25.5	3.6	4.5	0.0
	5년-10년	166	71.7	22.3	3.0	3.0	0.0
	10년-20년	337	62.3	32.9	2.4	2.1	0.3
	20년-30년	208	68.8	28.4	2.9	0.0	0.0
	30년 이상	179	55.9	41.3	0.6	2.2	0.0
학력	중졸 이하	5	60.0	20.0	20.0	0.0	0.0
	고졸	206	57.8	37.9	1.0	3.4	0.0
	대재 이상	789	66.3	29.2	2.7	1.8	0.1
종교	무교	523	63.1	34.2	0.2	2.5	0.0
	불교	147	66.7	29.3	2.7	1.4	0.0
	기독교	209	66.0	27.8	4.3	1.4	0.5
	천주교	114	64.9	23.7	8.8	2.6	0.0
	기타	7	71.4	28.6	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60.0	25.0	2.5	12.5	0.0
	150만원-300만원	159	67.3	27.7	2.5	2.5	0.0
	300만원-450만원	253	62.5	32.4	3.2	2.0	0.0
	450만원-600만원	275	64.7	31.6	1.8	1.5	0.4
	600만원-750만원	138	66.7	31.2	0.7	1.4	0.0
	750만원 이상	135	63.7	31.9	3.7	0.7	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64.8	30.6	2.3	2.4	0.0
	없음	251	63.7	31.9	2.8	1.2	0.4

▼ 희망하는 장사방법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매장	화장
전체		1,000	11.6	88.4
성별	남성	501	13.6	86.4
	여성	499	9.6	90.4
연령	20대	121	12.4	87.6
	30대	243	14.0	86.0
	40대	369	11.4	88.6
	50대 이상	267	9.4	90.6
거주지역	동부	175	12.0	88.0
	서부	343	11.1	88.9
	남부	198	12.1	87.9
	북부	284	11.6	88.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12.7	87.3
	5년 이상-10년 미만	166	13.3	86.7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11.3	88.7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10.1	89.9
	30년 이상	179	11.7	88.3
학력	중졸 이하	5	0.0	100.0
	고졸	206	7.3	92.7
	대재 이상	789	12.8	87.2
종교	무교	523	10.5	89.5
	불교	147	13.6	86.4
	기독교	209	12.0	88.0
	천주교	114	13.2	86.8
	기타	7	14.3	85.7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7.5	92.5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12.6	87.4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10.3	89.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10.2	89.8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13.8	86.2
	750만원 이상	135	14.8	85.2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12.0	88.0
	없음	251	10.4	89.6

▼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후손 들의 성묘	화장 문화에 부정적	관습 및 선례 존중	종교적 이유	묘지 부지 확보	기타
전체		116	38.8	15.5	26.7	6.0	10.3	2.6
성별	남성	68	35.3	13.2	32.4	5.9	10.3	2.9
	여성	48	43.8	18.8	18.8	6.3	10.4	2.1
연령	20대	15	53.3	26.7	13.3	0.0	6.7	0.0
	30대	34	35.3	14.7	32.4	5.9	8.8	2.9
	40대	42	35.7	19.0	28.6	4.8	9.5	2.4
	50대 이상	25	40.0	4.0	24.0	12.0	16.0	4.0
거주지역	동부	21	38.1	23.8	14.3	9.5	9.5	4.8
	서부	38	44.7	7.9	34.2	0.0	10.5	2.6
	남부	24	41.7	8.3	29.2	8.3	12.5	0.0
	북부	33	30.3	24.2	24.2	9.1	9.1	3.0
거주기간	5년 미만	14	35.7	7.1	42.9	7.1	7.1	0.0
	5년-10년	22	36.4	18.2	31.8	9.1	4.5	0.0
	10년-20년	38	39.5	18.4	21.1	5.3	10.5	5.3
	20년-30년	21	47.6	9.5	28.6	9.5	4.8	0.0
	30년 이상	21	33.3	19.0	19.0	0.0	23.8	4.8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0.0	0.0	0.0	0.0
	고졸	15	33.3	33.3	13.3	6.7	6.7	6.7
	대재 이상	101	39.6	12.9	28.7	5.9	10.9	2.0
종교	무교	55	41.8	14.5	23.6	1.8	14.5	3.6
	불교	20	40.0	20.0	25.0	0.0	10.0	5.0
	기독교	25	40.0	16.0	28.0	12.0	4.0	0.0
	천주교	15	20.0	13.3	40.0	20.0	6.7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	66.7	0.0	0.0	0.0	33.3	0.0
	150만원-300만원	20	30.0	20.0	35.0	10.0	0.0	5.0
	300만원-450만원	26	38.5	23.1	26.9	3.8	7.7	0.0
	450만원-600만원	28	42.9	14.3	25.0	3.6	10.7	3.6
	600만원-750만원	19	21.1	15.8	42.1	10.5	5.3	5.3
	750만원 이상	20	55.0	5.0	10.0	5.0	25.0	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90	44.4	13.3	26.7	4.4	7.8	3.3
	없음	26	19.2	23.1	26.9	11.5	19.2	0.0

▼ 희망하는 묘지 유형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공설묘지	사설묘지
전체		116	31.9	68.1
성별	남성	68	36.8	63.2
	여성	48	25.0	75.0
연령	20대	15	20.0	80.0
	30대	34	35.3	64.7
	40대	42	31.0	69.0
	50대 이상	25	36.0	64.0
거주지역	동부	21	19.0	81.0
	서부	38	31.6	68.4
	남부	24	41.7	58.3
	북부	33	33.3	66.7
거주기간	5년 미만	14	7.1	92.9
	5년 이상-10년 미만	22	59.1	40.9
	10년 이상-20년 미만	38	28.9	71.1
	20년 이상-30년 미만	21	38.1	61.9
	30년 이상	21	19.0	81.0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고졸	15	20.0	80.0
	대재 이상	101	33.7	66.3
종교	무교	55	25.5	74.5
	불교	20	30.0	70.0
	기독교	25	48.0	52.0
	천주교	15	33.3	66.7
	기타	1	0.0	10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	0.0	10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35.0	65.0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6	42.3	57.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8	28.6	71.4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9	15.8	84.2
	750만원 이상	20	40.0	6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90	32.2	67.8
	없음	26	30.8	69.2

▼ 희망하는 사설묘지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종 묘지	법인묘지
전체		79	27.8	62.0	6.3	3.8
성별	남성	43	32.6	62.8	4.7	0.0
	여성	36	22.2	61.1	8.3	8.3
연령	20대	12	16.7	83.3	0.0	0.0
	30대	22	27.3	59.1	9.1	4.5
	40대	29	41.4	55.2	3.4	0.0
	50대 이상	16	12.5	62.5	12.5	12.5
거주지역	동부	17	29.4	58.8	5.9	5.9
	서부	26	15.4	80.8	3.8	0.0
	남부	14	42.9	42.9	7.1	7.1
	북부	22	31.8	54.5	9.1	4.5
거주기간	5년 미만	13	23.1	69.2	7.7	0.0
	5년-10년	9	33.3	66.7	0.0	0.0
	10년-20년	27	25.9	66.7	3.7	3.7
	20년-30년	13	30.8	53.8	7.7	7.7
	30년 이상	17	29.4	52.9	11.8	5.9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0.0	0.0
	고졸	12	25.0	50.0	8.3	16.7
	대재 이상	67	28.4	64.2	6.0	1.5
종교	무교	41	36.6	56.1	4.9	2.4
	불교	14	28.6	50.0	14.3	7.1
	기독교	13	15.4	84.6	0.0	0.0
	천주교	10	10.0	70.0	10.0	10.0
	기타	1	0.0	10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	0.0	66.7	33.3	0.0
	150만원-300만원	13	46.2	46.2	0.0	7.7
	300만원-450만원	15	20.0	66.7	13.3	0.0
	450만원-600만원	20	25.0	60.0	5.0	10.0
	600만원-750만원	16	25.0	68.8	6.3	0.0
	750만원 이상	12	33.3	66.7	0.0	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61	29.5	60.7	6.6	3.3
	없음	18	22.2	66.7	5.6	5.6

▼ 부부합장묘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희망	비희망
전체		116	74.1	25.9
성별	남성	68	77.9	22.1
	여성	48	68.8	31.3
연령	20대	15	80.0	20.0
	30대	34	61.8	38.2
	40대	42	81.0	19.0
	50대 이상	25	76.0	24.0
거주지역	동부	21	81.0	19.0
	서부	38	81.6	18.4
	남부	24	62.5	37.5
	북부	33	69.7	30.3
거주기간	5년 미만	14	71.4	28.6
	5년 이상-10년 미만	22	86.4	13.6
	10년 이상-20년 미만	38	68.4	31.6
	20년 이상-30년 미만	21	81.0	19.0
	30년 이상	21	66.7	33.3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고졸	15	46.7	53.3
	대재 이상	101	78.2	21.8
종교	무교	55	72.7	27.3
	불교	20	85.0	15.0
	기독교	25	72.0	28.0
	천주교	15	73.3	26.7
	기타	1	0.0	10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	0.0	10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60.0	40.0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6	80.8	19.2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8	75.0	25.0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9	89.5	10.5
	750만원 이상	20	75.0	25.0
장례경험 유무	있음	90	78.9	21.1
	없음	26	57.7	42.3

▼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자연환경 보존	호화묘지 조성 우려	묘지 부족 우려	후손들의 부담완화	깨끗하고 위생적임
전체		884	14.3	1.6	8.9	44.1	11.9
성별	남성	433	12.5	2.1	8.8	46.9	10.2
	여성	451	16.0	1.1	9.1	41.5	13.5
연령	20대	106	18.9	3.8	10.4	27.4	14.2
	30대	209	13.4	1.4	11.5	41.6	10.5
	40대	327	13.5	0.6	7.3	48.9	12.2
	50대 이상	242	14.0	2.1	8.3	47.1	11.6
거주지역	동부	154	15.6	2.6	8.4	41.6	10.4
	서부	305	13.4	2.3	8.2	43.9	12.5
	남부	174	12.6	0.6	13.2	40.8	13.2
	북부	251	15.5	0.8	7.2	48.2	11.2
거주기간	5년 미만	96	15.6	0.0	8.3	36.5	11.5
	5년-10년	144	10.4	0.7	11.1	45.8	15.3
	10년-20년	299	15.7	2.0	8.7	45.2	11.7
	20년-30년	187	16.0	2.7	8.0	39.0	12.3
	30년 이상	158	12.0	1.3	8.9	51.3	8.9
학력	중졸 이하	5	0.0	0.0	0.0	80.0	0.0
	고졸	191	11.0	1.6	6.8	51.3	10.5
	대재 이상	688	15.3	1.6	9.6	41.9	12.4
종교	무교	468	14.3	1.3	8.3	44.9	13.0
	불교	127	10.2	1.6	9.4	47.2	12.6
	기독교	184	16.3	1.1	11.4	39.7	10.9
	천주교	99	15.2	4.0	7.1	45.5	7.1
	기타	6	16.7	0.0	0.0	33.3	16.7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7	21.6	2.7	2.7	37.8	5.4
	150만원-300만원	139	12.9	2.2	10.8	40.3	14.4
	300만원-450만원	227	13.2	0.9	8.4	44.1	12.3
	450만원-600만원	247	15.4	0.8	7.7	47.0	11.3
	600만원-750만원	119	14.3	0.8	8.4	45.4	13.4
	750만원 이상	115	13.0	4.3	13.0	43.5	9.6
장례경험 유무	있음	659	13.4	1.7	8.5	45.4	12.4
	없음	225	16.9	1.3	10.2	40.4	10.2

▼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장례절차 간편성	묘지부지 미확보	매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저렴한 장례비용	기타
전체		884	10.3	4.8	1.6	1.9	0.7
성별	남성	433	9.0	5.5	2.1	2.3	0.7
	여성	451	11.5	4.0	1.1	1.6	0.7
연령	20대	106	10.4	7.5	0.9	5.7	0.9
	30대	209	11.5	6.2	0.5	1.9	1.4
	40대	327	10.4	3.7	1.2	1.5	0.6
	50대 이상	242	9.1	3.7	3.3	0.8	0.0
거주지역	동부	154	12.3	3.2	1.3	3.9	0.6
	서부	305	11.1	5.6	1.0	1.0	1.0
	남부	174	10.9	4.6	2.9	1.1	0.0
	북부	251	7.6	4.8	1.6	2.4	0.8
거주기간	5년 미만	96	16.7	6.3	2.1	3.1	0.0
	5년-10년	144	9.7	4.2	0.7	0.7	1.4
	10년-20년	299	9.7	4.0	1.3	1.0	0.7
	20년-30년	187	9.6	5.3	2.7	3.7	0.5
	30년 이상	158	8.9	5.1	1.3	1.9	0.6
학력	중졸 이하	5	0.0	20.0	0.0	0.0	0.0
	고졸	191	9.4	4.7	2.1	2.1	0.5
	대재 이상	688	10.6	4.7	1.5	1.9	0.7
종교	무교	468	9.8	4.5	1.3	2.1	0.4
	불교	127	7.9	7.1	1.6	0.0	2.4
	기독교	184	12.0	3.8	2.7	2.2	0.0
	천주교	99	12.1	5.1	1.0	2.0	1.0
	기타	6	16.7	0.0	0.0	16.7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7	10.8	13.5	0.0	2.7	2.7
	150만원-300만원	139	9.4	3.6	2.2	2.2	2.2
	300만원-450만원	227	12.3	5.7	1.3	1.3	0.4
	450만원-600만원	247	8.9	4.5	1.6	2.8	0.0
	600만원-750만원	119	9.2	4.2	2.5	1.7	0.0
	750만원 이상	115	11.3	2.6	0.9	0.9	0.9
장례경험 유무	있음	659	10.3	4.4	1.7	1.5	0.8
	없음	225	10.2	5.8	1.3	3.1	0.4

▼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처리 방법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봉안시설	자연장	유택동산	기타
전체		884	37.0	39.4	22.9	0.7
성별	남성	433	40.2	38.6	20.8	0.5
	여성	451	33.9	40.1	25.1	0.9
연령	20대	106	40.6	33.0	21.4	0.0
	30대	209	42.1	39.2	21.0	0.7
	40대	327	36.4	41.3	21.8	0.6
	50대 이상	242	31.8	39.7	27.1	1.2
거주지역	동부	154	34.4	44.2	15.6	0.0
	서부	305	35.1	43.3	20.8	2.1
	남부	174	42.0	35.6	25.1	0.3
	북부	251	37.5	34.3	27.3	1.1
거주기간	5년 미만	96	47.9	36.5	20.3	0.0
	5년-10년	144	37.5	39.6	60.0	0.0
	10년-20년	299	36.8	37.8	28.3	1.0
	20년-30년	187	31.6	40.1	21.2	0.6
	30년 이상	158	36.7	43.0	25.6	0.6
학력	중졸 이하	5	40.0	0.0	16.5	0.8
	고졸	191	30.9	39.8	22.3	0.5
	대재 이상	688	38.7	39.5	20.2	1.0
종교	무교	468	35.7	38.0	16.7	0.0
	불교	127	39.4	43.3	29.7	2.7
	기독교	184	38.0	39.1	29.5	0.7
	천주교	99	37.4	41.4	17.6	0.0
	기타	6	50.0	33.3	25.5	1.6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7	43.2	24.3	22.7	0.0
	150만원-300만원	139	33.1	36.7	18.3	0.0
	300만원-450만원	227	42.7	39.6	21.2	0.9
	450만원-600만원	247	34.0	38.9	28.0	0.0
	600만원-750만원	119	40.3	37.0	17.6	5.0
	750만원 이상	115	31.3	50.4	13.9	4.3
장례경험 유무	있음	659	38.2	39.6	17.1	5.0
	없음	225	33.3	38.7	24.9	3.1

▼ 희망하는 봉안시설의 유형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공설 봉안시설	사설 봉안시설
전체		327	71.9	28.1
성별	남성	174	74.1	25.9
	여성	153	69.3	30.7
연령	20대	43	79.1	20.9
	30대	88	71.6	28.4
	40대	119	70.6	29.4
	50대 이상	77	70.1	29.9
거주지역	동부	53	64.2	35.8
	서부	107	77.6	22.4
	남부	73	65.8	34.2
	북부	94	74.5	25.5
거주기간	5년 미만	46	78.3	21.7
	5년 이상-10년 미만	54	64.8	35.2
	10년 이상-20년 미만	110	74.5	25.5
	20년 이상-30년 미만	59	74.6	25.4
	30년 이상	58	65.5	34.5
학력	중졸 이하	2	50.0	50.0
	고졸	59	67.8	32.2
	대재 이상	266	72.9	27.1
종교	무교	167	76.6	23.4
	불교	50	70.0	30.0
	기독교	70	74.3	25.7
	천주교	37	54.1	45.9
	기타	3	0.0	10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6	68.8	31.3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6	71.7	28.3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97	69.1	30.9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4	79.8	20.2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48	66.7	33.3
	750만원 이상	36	69.4	30.6
장례경험 유무	있음	252	71.0	29.0
	없음	75	74.7	25.3

▼ 선호하는 사설 보안시설 유형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개인 및 가족	중증·문증	종교단체	재단법인
전체		92	57.6	12.0	18.5	12.0
성별	남성	45	46.7	20.0	15.6	17.8
	여성	47	68.1	4.3	21.3	6.4
연령	20대	9	77.8	0.0	0.0	22.2
	30대	25	72.0	16.0	12.0	0.0
	40대	35	45.7	11.4	28.6	14.3
	50대 이상	23	52.2	13.0	17.4	17.4
거주지역	동부	19	84.2	0.0	5.3	10.5
	서부	24	45.8	25.0	20.8	8.3
	남부	25	48.0	16.0	24.0	12.0
	북부	24	58.3	4.2	20.8	16.7
거주기간	5년 미만	10	60.0	10.0	30.0	0.0
	5년-10년	19	52.6	5.3	26.3	15.8
	10년-20년	28	67.9	3.6	17.9	10.7
	20년-30년	15	53.3	20.0	13.3	13.3
	30년 이상	20	50.0	25.0	10.0	15.0
학력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고졸	19	73.7	5.3	10.5	10.5
	대재 이상	72	52.8	13.9	20.8	12.5
종교	무교	39	71.8	10.3	2.6	15.4
	불교	15	46.7	13.3	33.3	6.7
	기독교	18	55.6	11.1	16.7	16.7
	천주교	17	35.3	17.6	41.2	5.9
	기타	3	66.7	0.0	33.3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5	40.0	20.0	20.0	20.0
	150만원-300만원	13	46.2	15.4	23.1	15.4
	300만원-450만원	30	56.7	16.7	16.7	10.0
	450만원-600만원	17	82.4	0.0	5.9	11.8
	600만원-750만원	16	62.5	6.3	12.5	18.8
	750만원 이상	11	36.4	18.2	45.5	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73	58.9	11.0	16.4	13.7
	없음	19	52.6	15.8	26.3	5.3

▼ 부부합장 봉안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희망	비희망
전체		327	75.8	24.2
성별	남성	174	81.0	19.0
	여성	153	69.9	30.1
연령	20대	43	67.4	32.6
	30대	88	79.5	20.5
	40대	119	70.6	29.4
	50대 이상	77	84.4	15.6
거주지역	동부	53	81.1	18.9
	서부	107	74.8	25.2
	남부	73	68.5	31.5
	북부	94	79.8	20.2
거주기간	5년 미만	46	78.3	21.7
	5년 이상-10년 미만	54	74.1	25.9
	10년 이상-20년 미만	110	73.6	26.4
	20년 이상-30년 미만	59	78.0	22.0
	30년 이상	58	77.6	22.4
학력	중졸 이하	2	100.0	0.0
	고졸	59	64.4	35.6
	대재 이상	266	78.2	21.8
종교	무교	167	71.9	28.1
	불교	50	80.0	20.0
	기독교	70	80.0	20.0
	천주교	37	81.1	18.9
	기타	3	66.7	33.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6	43.8	56.3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6	69.6	30.4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97	69.1	30.9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4	84.5	15.5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48	85.4	14.6
	750만원 이상	36	83.3	16.7
장례경험 유무	있음	252	79.0	21.0
	없음	75	65.3	34.7

▼ 선호하는 1순위 보안시설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보안당	보안담	보안묘	보안탑
전체		327	59.3	15.0	16.8	8.9
성별	남성	174	61.5	12.6	19.0	6.9
	여성	153	56.9	17.6	14.4	11.1
연령	20대	43	76.7	18.6	2.3	2.3
	30대	88	59.1	15.9	12.5	12.5
	40대	119	59.7	14.3	16.8	9.2
	50대 이상	77	49.4	13.0	29.9	7.8
거주지역	동부	53	66.0	7.5	20.8	5.7
	서부	107	62.6	15.9	15.0	6.5
	남부	73	52.1	17.8	21.9	8.2
	북부	94	57.4	16.0	12.8	13.8
거주기간	5년 미만	46	60.9	10.9	15.2	13.0
	5년-10년	54	63.0	9.3	20.4	7.4
	10년-20년	110	60.0	18.2	12.7	9.1
	20년-30년	59	55.9	13.6	22.0	8.5
	30년 이상	58	56.9	19.0	17.2	6.9
학력	중졸 이하	2	0.0	50.0	50.0	0.0
	고졸	59	57.6	13.6	22.0	6.8
	대재 이상	266	60.2	15.0	15.4	9.4
종교	무교	167	62.9	15.0	13.8	8.4
	불교	50	48.0	8.0	28.0	16.0
	기독교	70	60.0	18.6	15.7	5.7
	천주교	37	56.8	18.9	18.9	5.4
	기타	3	66.7	0.0	0.0	33.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6	75.0	18.8	6.3	0.0
	150만원-300만원	46	69.6	15.2	10.9	4.3
	300만원-450만원	97	56.7	12.4	17.5	13.4
	450만원-600만원	84	61.9	13.1	17.9	7.1
	600만원-750만원	48	43.8	18.8	25.0	12.5
	750만원 이상	36	61.1	19.4	13.9	5.6
장래경험 유무	있음	252	56.3	14.7	20.2	8.7
	없음	75	69.3	16.0	5.3	9.3

▼ 선호하는 2순위 보안시설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보안당	보안담	보안묘	보안탑
전체		327	18.0	48.0	15.0	19.0
성별	남성	174	14.9	51.7	16.7	16.7
	여성	153	21.6	43.8	13.1	21.6
연령	20대	43	16.3	53.5	14.0	16.3
	30대	88	19.3	44.3	17.0	19.3
	40대	119	16.8	44.5	16.8	21.8
	50대 이상	77	19.5	54.5	10.4	15.6
거주지역	동부	53	9.4	49.1	13.2	28.3
	서부	107	18.7	47.7	15.0	18.7
	남부	73	19.2	47.9	15.1	17.8
	북부	94	21.3	47.9	16.0	14.9
거주기간	5년 미만	46	19.6	56.5	6.5	17.4
	5년-10년	54	16.7	44.4	14.8	24.1
	10년-20년	110	18.2	47.3	17.3	17.3
	20년-30년	59	15.3	54.2	15.3	15.3
	30년 이상	58	20.7	39.7	17.2	22.4
학력	중졸 이하	2	50.0	0.0	0.0	50.0
	고졸	59	18.6	44.1	8.5	28.8
	대재 이상	266	17.7	49.2	16.5	16.5
종교	무교	167	14.4	46.7	16.8	22.2
	불교	50	22.0	38.0	18.0	22.0
	기독교	70	18.6	57.1	12.9	11.4
	천주교	37	27.0	51.4	5.4	16.2
	기타	3	33.3	33.3	33.3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6	12.5	75.0	12.5	0.0
	150만원-300만원	46	10.9	54.3	10.9	23.9
	300만원-450만원	97	19.6	41.2	14.4	24.7
	450만원-600만원	84	17.9	50.0	19.0	13.1
	600만원-750만원	48	20.8	35.4	16.7	27.1
	750만원 이상	36	22.2	58.3	11.1	8.3
장례경험 유무	있음	252	19.8	46.0	14.3	19.8
	없음	75	12.0	54.7	17.3	16.0

▼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친환경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	비용 절감	유지 및 관리 용이	기타
전체		348	39.7	16.1	8.9	32.8	2.6
성별	남성	167	41.3	16.8	11.4	28.7	1.8
	여성	181	38.1	15.5	6.6	36.5	3.3
연령	20대	35	37.1	11.4	11.4	25.7	14.3
	30대	82	36.6	20.7	6.1	31.7	4.9
	40대	135	38.5	15.6	9.6	36.3	0.0
	50대 이상	96	44.8	14.6	9.4	31.3	0.0
거주지역	동부	68	35.3	14.7	10.3	38.2	1.5
	서부	132	40.2	18.9	6.1	30.3	4.5
	남부	62	33.9	22.6	6.5	33.9	3.2
	북부	86	46.5	8.1	14.0	31.4	0.0
거주기간	5년 미만	35	37.1	11.4	5.7	42.9	2.9
	5년-10년	57	40.4	17.5	12.3	28.1	1.8
	10년-20년	113	42.5	15.9	8.8	31.9	0.9
	20년-30년	75	42.7	14.7	9.3	28.0	5.3
	30년 이상	68	32.4	19.1	7.4	38.2	2.9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0.0	0.0	0.0
	고졸	76	38.2	13.2	6.6	42.1	0.0
	대재 이상	272	40.1	16.9	9.6	30.1	3.3
종교	무교	178	37.1	15.2	9.0	34.8	3.9
	불교	55	41.8	12.7	7.3	34.5	3.6
	기독교	72	38.9	25.0	8.3	27.8	0.0
	천주교	41	46.3	9.8	12.2	31.7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44.4	11.1	11.1	33.3	0.0
	150만원-300만원	51	35.3	13.7	9.8	39.2	2.0
	300만원-450만원	90	35.6	15.6	10.0	35.6	3.3
	450만원-600만원	96	43.8	14.6	7.3	32.3	2.1
	600만원-750만원	44	36.4	18.2	9.1	31.8	4.5
	750만원 이상	58	44.8	20.7	8.6	24.1	1.7
장례경험 유무	있음	261	41.8	16.9	7.3	31.0	3.1
	없음	87	33.3	13.8	13.8	37.9	1.1

▼ 부부합장 자연장 희망 여부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희망	비희망
전체		348	65.2	34.8
성별	남성	167	71.3	28.7
	여성	181	59.7	40.3
연령	20대	35	60.0	40.0
	30대	82	72.0	28.0
	40대	135	64.4	35.6
	50대 이상	96	62.5	37.5
거주지역	동부	68	63.2	36.8
	서부	132	64.4	35.6
	남부	62	67.7	32.3
	북부	86	66.3	33.7
거주기간	5년 미만	35	71.4	28.6
	5년 이상-10년 미만	57	64.9	35.1
	10년 이상-20년 미만	113	60.2	39.8
	20년 이상-30년 미만	75	66.7	33.3
	30년 이상	68	69.1	30.9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고졸	76	59.2	40.8
	대재 이상	272	66.9	33.1
종교	무교	178	69.7	30.3
	불교	55	56.4	43.6
	기독교	72	69.4	30.6
	천주교	41	51.2	48.8
	기타	2	50.0	5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44.4	55.6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1	47.1	52.9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90	73.3	26.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6	63.5	36.5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44	72.7	27.3
	750만원 이상	58	69.0	31.0
장례경험 유무	있음	261	68.2	31.8
	없음	87	56.3	43.7

▼ 선호하는 1순위 자연장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전체		348	9.2	4.3	14.7	71.8
성별	남성	167	10.8	6.0	14.4	68.9
	여성	181	7.7	2.8	14.9	74.6
연령	20대	35	8.6	5.7	20.0	65.7
	30대	82	11.0	7.3	14.6	67.1
	40대	135	8.9	3.0	11.1	77.0
	50대 이상	96	8.3	3.1	17.7	70.8
거주지역	동부	68	11.8	2.9	14.7	70.6
	서부	132	9.8	5.3	14.4	70.5
	남부	62	9.7	3.2	12.9	74.2
	북부	86	5.8	4.7	16.3	73.3
거주기간	5년 미만	35	8.6	2.9	20.0	68.6
	5년-10년	57	10.5	3.5	19.3	66.7
	10년-20년	113	8.0	2.7	11.5	77.9
	20년-30년	75	10.7	6.7	13.3	69.3
	30년 이상	68	8.8	5.9	14.7	70.6
학력	중졸 이하	0	0.0	0.0	0.0	0.0
	고졸	76	5.3	2.6	11.8	80.3
	대재 이상	272	10.3	4.8	15.4	69.5
종교	무교	178	11.2	3.9	18.0	66.9
	불교	55	1.8	3.6	10.9	83.6
	기독교	72	9.7	6.9	12.5	70.8
	천주교	41	7.3	2.4	9.8	80.5
	기타	2	50.0	0.0	0.0	5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0.0	0.0	0.0	100.0
	150만원-300만원	51	11.8	3.9	13.7	70.6
	300만원-450만원	90	13.3	5.6	15.6	65.6
	450만원-600만원	96	4.2	2.1	12.5	81.3
	600만원-750만원	44	2.3	9.1	11.4	77.3
	750만원 이상	58	15.5	3.4	22.4	58.6
장례경험 유무	있음	261	8.4	4.6	15.7	71.3
	없음	87	11.5	3.4	11.5	73.6

▼ 선호하는 2순위 자연장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전체		348	10.3	14.7	60.9	14.1
성별	남성	167	13.2	12.0	59.3	15.6
	여성	181	7.7	17.1	62.4	12.7
연령	20대	35	0.0	8.6	74.3	17.1
	30대	82	12.2	13.4	59.8	14.6
	40대	135	11.1	17.0	60.7	11.1
	50대 이상	96	11.5	14.6	57.3	16.7
거주지역	동부	68	8.8	17.6	57.4	16.2
	서부	132	11.4	13.6	59.8	15.2
	남부	62	9.7	14.5	64.5	11.3
	북부	86	10.5	14.0	62.8	12.8
거주기간	5년 미만	83	10.8	14.5	61.4	13.3
	5년-10년	35	14.3	20.0	48.6	17.1
	10년-20년	57	7.0	21.1	54.4	17.5
	20년-30년	113	13.3	14.2	60.2	12.4
	30년 이상	75	8.0	6.7	72.0	13.3
학력	중졸 이하	68	8.8	16.2	61.8	13.2
	고졸	0	0.0	0.0	0.0	0.0
	대재 이상	76	11.8	19.7	59.2	9.2
종교	무교	272	9.9	13.2	61.4	15.4
	불교	178	7.9	15.2	59.0	18.0
	기독교	55	16.4	14.5	61.8	7.3
	천주교	72	15.3	12.5	58.3	13.9
	기타	41	4.9	17.1	70.7	7.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	0.0	0.0	100.0	0.0
	150만원-300만원	9	11.1	22.2	66.7	0.0
	300만원-450만원	51	9.8	27.5	51.0	11.8
	450만원-600만원	90	12.2	15.6	57.8	14.4
	600만원-750만원	96	9.4	7.3	71.9	11.5
	750만원 이상	44	13.6	15.9	63.6	6.8
장례경험 유무	있음	58	6.9	12.1	53.4	27.6
	없음	261	10.0	14.6	60.2	15.3

▼ 경기도 장사정책의 진행 방향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화장중심	매장중심
전체		1000	92.3	7.7
성별	남성	501	90.8	9.2
	여성	499	93.8	6.2
연령	20대	121	93.4	6.6
	30대	243	88.5	11.5
	40대	369	93.0	7.0
	50대 이상	267	94.4	5.6
거주지역	동부	175	93.1	6.9
	서부	343	93.3	6.7
	남부	198	89.9	10.1
	북부	284	92.3	7.7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92.7	7.3
	5년 이상-10년 미만	166	90.4	9.6
	10년 이상-20년 미만	337	92.6	7.4
	20년 이상-30년 미만	208	92.3	7.7
	30년 이상	179	93.3	6.7
학력	중졸 이하	5	100.0	0.0
	고졸	206	91.3	8.7
	대재 이상	789	92.5	7.5
종교	무교	523	92.5	7.5
	불교	147	91.2	8.8
	기독교	209	92.3	7.7
	천주교	114	93.0	7.0
	기타	7	85.7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90.0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9	92.5	7.5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3	92.1	7.9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5	93.8	6.2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38	93.5	6.5
	750만원 이상	135	88.9	11.1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92.4	7.6
	없음	251	92.0	8.0

▼ 거주하는 시 · 군에 가장 필요한 장사시설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묘지
전체		1000	29.0	23.0	37.6	10.4
성별	남성	501	31.9	23.6	33.9	10.6
	여성	499	26.1	22.4	41.3	10.2
연령	20대	121	24.8	29.8	37.2	8.3
	30대	243	27.2	27.2	34.6	11.1
	40대	369	28.2	22.0	38.8	11.1
	50대 이상	267	33.7	17.6	39.0	9.7
거주지역	동부	175	28.6	22.3	40.0	9.1
	서부	343	29.7	22.2	38.5	9.6
	남부	198	32.8	26.8	31.8	8.6
	북부	284	25.7	21.8	39.1	13.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21.8	30.0	38.2	10.0
	5년-10년	166	31.9	18.7	37.3	12.0
	10년-20년	337	28.5	22.3	38.0	11.3
	20년-30년	208	29.3	21.6	40.4	8.7
	30년 이상	179	31.3	25.7	33.5	9.5
학력	중졸 이하	5	20.0	20.0	40.0	20.0
	고졸	206	30.6	18.0	43.2	8.3
	대재 이상	789	28.6	24.3	36.1	10.9
종교	무교	523	31.4	22.9	34.8	10.9
	불교	147	22.4	21.1	45.6	10.9
	기독교	209	27.3	24.4	38.8	9.6
	천주교	114	29.8	21.9	39.5	8.8
	기타	7	28.6	42.9	14.3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42.5	25.0	22.5	10.0
	150만원-300만원	159	32.1	20.8	36.5	10.7
	300만원-450만원	253	29.6	23.3	36.8	10.3
	450만원-600만원	275	28.4	24.4	36.0	11.3
	600만원-750만원	138	26.8	26.8	37.0	9.4
	750만원 이상	135	23.7	17.8	48.9	9.6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29.2	23.2	37.7	9.9
	없음	251	28.3	22.3	37.5	12.0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시 바람직한 개발 형태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 설치	봉안시설 설치	공설묘지 확대설치	종합장사 시설의 설치	재개발 사업 반대
전체		1000	32.6	18.0	21.6	6.2	19.2	2.4
성별	남성	501	29.1	19.0	23.8	7.4	18.0	2.8
	여성	499	36.1	17.0	19.4	5.0	20.4	2.0
연령	20대	121	28.9	14.9	20.7	8.3	17.4	9.9
	30대	243	32.5	16.5	24.7	7.4	18.1	0.8
	40대	369	32.5	20.1	20.1	6.2	19.2	1.9
	50대 이상	267	34.5	18.0	21.3	4.1	21.0	1.1
거주지역	동부	175	35.4	16.6	21.1	8.6	17.1	1.1
	서부	343	35.3	17.2	17.8	5.2	22.7	1.7
	남부	198	31.8	22.2	23.7	4.0	15.7	2.5
	북부	284	28.2	16.9	25.0	7.4	18.7	3.9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27.3	13.6	29.1	9.1	18.2	2.7
	5년-10년	166	38.0	22.3	20.5	7.2	10.8	1.2
	10년-20년	337	31.2	19.9	22.3	4.5	20.2	2.1
	20년-30년	208	34.6	14.4	18.8	7.2	21.2	3.8
	30년 이상	179	31.3	17.3	20.1	5.6	23.5	2.2
학력	중졸 이하	5	0.0	20.0	20.0	20.0	0.0	40.0
	고졸	206	32.0	20.4	16.5	6.8	21.4	2.9
	대재 이상	789	33.0	17.4	22.9	6.0	18.8	2.0
종교	무교	523	30.6	20.1	19.7	6.7	20.3	2.7
	불교	147	37.4	15.0	25.9	6.8	12.9	2.0
	기독교	209	34.4	17.7	23.0	4.8	18.2	1.9
	천주교	114	31.6	14.0	23.7	5.3	22.8	2.6
	기타	7	42.9	0.0	0.0	14.3	42.9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30.0	17.5	20.0	7.5	17.5	7.5
	150만원-300만원	159	30.8	20.8	18.2	9.4	17.0	3.8
	300만원-450만원	253	27.3	19.0	25.3	5.1	21.3	2.0
	450만원-600만원	275	35.3	17.5	17.1	7.3	21.1	1.8
	600만원-750만원	138	31.9	19.6	27.5	2.2	18.8	0.0
	750만원 이상	135	40.7	12.6	22.2	5.9	14.8	3.7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33.0	17.4	21.4	6.1	20.2	2.0
	없음	251	31.5	19.9	22.3	6.4	16.3	3.6

▼ 기존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개장 후 처리방법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공원화된 묘지에 재매장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봉안시설	화장 후 유택동산	다른 묘지로 이장
전체		1000	18.2	44.2	29.4	5.9	2.3
성별	남성	501	18.8	43.1	30.1	5.2	2.8
	여성	499	17.6	45.3	28.7	6.6	1.8
연령	20대	121	19.8	33.1	33.1	7.4	6.6
	30대	243	19.8	37.9	34.2	6.2	2.1
	40대	369	16.8	48.8	29.3	3.3	1.9
	50대 이상	267	18.0	48.7	23.6	8.6	1.1
거주지역	동부	175	20.0	45.1	25.7	6.9	2.3
	서부	343	16.6	44.9	29.2	7.0	2.3
	남부	198	16.2	43.9	31.3	4.5	4.0
	북부	284	20.4	43.0	30.6	4.9	1.1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15.5	40.0	39.1	3.6	1.8
	5년-10년	166	22.3	41.0	31.9	3.0	1.8
	10년-20년	337	16.0	48.1	27.6	6.5	1.8
	20년-30년	208	21.6	44.7	22.6	7.2	3.8
	30년 이상	179	16.2	41.9	32.4	7.3	2.2
학력	중졸 이하	5	40.0	40.0	20.0	0.0	0.0
	고졸	206	12.6	50.0	26.7	9.2	1.5
	대재 이상	789	19.5	42.7	30.2	5.1	2.5
종교	무교	523	18.4	44.2	28.1	6.3	3.1
	불교	147	19.7	44.9	29.9	5.4	0.0
	기독교	209	15.8	44.5	33.5	3.8	2.4
	천주교	114	19.3	43.9	26.3	8.8	1.8
	기타	7	28.6	28.6	42.9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0.0	30.0	40.0	10.0	0.0
	150만원-300만원	159	15.7	48.4	30.2	5.0	0.6
	300만원-450만원	253	19.4	43.5	32.4	2.4	2.4
	450만원-600만원	275	18.5	44.7	25.1	8.7	2.9
	600만원-750만원	138	17.4	42.0	32.6	5.1	2.9
	750만원 이상	135	18.5	45.9	25.2	7.4	3.0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19.0	44.5	29.8	5.2	1.6
	없음	251	15.9	43.4	28.3	8.0	4.4

▼ 소규모 집단묘지 재정비 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찬성	반대	모름
전체		1000	29.0	23.0	37.6
성별	남성	501	77.0	6.4	16.6
	여성	499	69.3	6.0	24.6
연령	20대	121	53.7	12.4	33.9
	30대	243	69.1	7.8	23.0
	40대	369	76.4	4.6	19.0
	50대 이상	267	81.3	4.1	14.6
거주지역	동부	175	73.7	5.1	21.1
	서부	343	73.8	6.1	20.1
	남부	198	74.2	6.6	19.2
	북부	284	71.5	6.7	21.8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74.5	5.5	20.0
	5년-10년	166	75.3	4.2	20.5
	10년-20년	337	72.7	6.2	21.1
	20년-30년	208	71.6	9.1	19.2
	30년 이상	179	73.2	5.0	21.8
학력	중졸 이하	5	20.0	0.0	80.0
	고졸	206	71.4	5.3	23.3
	대재 이상	789	74.0	6.5	19.5
종교	무교	523	70.0	6.5	23.5
	불교	147	77.6	3.4	19.0
	기독교	209	74.6	8.1	17.2
	천주교	114	80.7	5.3	14.0
	기타	7	57.1	0.0	42.9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62.5	2.5	35.0
	150만원-300만원	159	66.0	5.7	28.3
	300만원-450만원	253	70.8	6.7	22.5
	450만원-600만원	275	75.6	6.5	17.8
	600만원-750만원	138	77.5	5.1	17.4
	750만원 이상	135	80.0	7.4	12.6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76.8	5.3	17.9
	없음	251	62.5	8.8	28.7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공공기관	종교단체	장사법인	공공 및 민간의 공동운영
전체		1000	71.1	2.6	2.1	24.2
성별	남성	501	72.9	3.4	2.0	21.8
	여성	499	69.3	1.8	2.2	26.7
연령	20대	121	57.0	2.5	5.8	34.7
	30대	243	69.1	2.9	2.5	25.5
	40대	369	72.4	1.9	1.6	24.1
	50대 이상	267	77.5	3.4	0.7	18.4
거주지역	동부	175	69.7	2.3	0.6	27.4
	서부	343	72.3	2.6	2.3	22.7
	남부	198	71.2	3.5	3.0	22.2
	북부	284	70.4	2.1	2.1	25.4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60.9	1.8	0.9	36.4
	5년-10년	166	75.9	3.0	2.4	18.7
	10년-20년	337	70.6	1.8	2.7	24.9
	20년-30년	208	70.7	4.3	1.9	23.1
	30년 이상	179	74.3	2.2	1.7	21.8
학력	중졸 이하	5	60.0	20.0	0.0	20.0
	고졸	206	70.9	1.5	2.4	25.2
	대재 이상	789	71.2	2.8	2.0	24.0
종교	무교	523	71.3	0.6	2.5	25.6
	불교	147	73.5	0.7	2.0	23.8
	기독교	209	71.3	7.2	1.9	19.6
	천주교	114	66.7	5.3	0.9	27.2
	기타	7	71.4	14.3	0.0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72.5	5.0	0.0	22.5
	150만원-300만원	159	69.2	3.1	0.6	27.0
	300만원-450만원	253	68.8	2.0	4.3	24.9
	450만원-600만원	275	73.1	2.2	0.7	24.0
	600만원-750만원	138	73.9	1.4	2.9	21.7
	750만원 이상	135	70.4	4.4	2.2	23.0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73.6	2.4	1.7	22.3
	없음	251	63.7	3.2	3.2	29.9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교육확대	홍보강화	요금 인하	공설 자연장지 확대
전체		1000	27.4	25.9	29.3	17.4
성별	남성	501	26.5	27.7	28.7	17.0
	여성	499	28.3	24.0	29.9	17.8
연령	20대	121	20.7	21.5	36.4	21.5
	30대	243	31.7	26.7	25.9	15.6
	40대	369	24.4	24.7	33.3	17.6
	50대 이상	267	30.7	28.8	23.6	16.9
거주지역	동부	175	30.3	26.3	32.6	10.9
	서부	343	26.8	28.6	25.9	18.7
	남부	198	28.3	25.3	25.3	21.2
	북부	284	25.7	22.9	34.2	17.3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30.9	27.3	21.8	20.0
	5년-10년	166	24.7	27.1	34.9	13.3
	10년-20년	337	28.8	25.8	30.3	15.1
	20년-30년	208	28.8	24.0	28.8	18.3
	30년 이상	179	23.5	26.3	27.4	22.9
학력	중졸 이하	5	20.0	20.0	40.0	20.0
	고졸	206	19.9	24.3	35.4	20.4
	대재 이상	789	29.4	26.4	27.6	16.6
종교	무교	523	27.0	24.1	31.5	17.4
	불교	147	29.9	29.9	21.1	19.0
	기독교	209	26.8	25.8	32.1	15.3
	천주교	114	28.1	28.9	23.7	19.3
	기타	7	14.3	28.6	42.9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15.0	30.0	42.5	12.5
	150만원-300만원	159	24.5	23.3	34.6	17.6
	300만원-450만원	253	29.2	23.3	30.4	17.0
	450만원-600만원	275	32.0	24.7	26.2	17.1
	600만원-750만원	138	21.7	29.7	26.8	21.7
	750만원 이상	135	27.4	31.1	25.9	15.6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27.5	26.8	28.6	17.1
	없음	251	27.1	23.1	31.5	18.3

▼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1순위 주요요인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	지역 이기주의	지역 주민의 이해부족	지자체의 재정운영 손실
전체		1000	23.9	23.4	36.3	12.4	4.0
성별	남성	501	23.6	21.0	39.3	11.8	4.4
	여성	499	24.2	25.9	33.3	13.0	3.6
연령	20대	121	22.3	28.1	33.9	11.6	4.1
	30대	243	23.9	24.3	32.1	14.8	4.9
	40대	369	26.0	22.8	35.8	12.7	2.7
	50대 이상	267	21.7	21.3	41.9	10.1	4.9
거주 지역	동부	175	21.7	24.0	34.9	15.4	4.0
	서부	343	23.9	25.4	35.3	11.1	4.4
	남부	198	22.7	25.8	35.9	12.6	3.0
	북부	284	26.1	19.0	38.7	12.0	4.2
거주 기간	5년 미만	110	22.7	28.2	30.9	13.6	4.5
	5년-10년	166	27.1	22.9	31.9	13.3	4.8
	10년-20년	337	24.0	25.2	35.6	12.2	3.0
	20년-30년	208	23.1	22.1	35.6	14.9	4.3
	30년 이상	179	22.3	19.0	45.8	8.4	4.5
학력	중졸 이하	5	0.0	40.0	60.0	0.0	0.0
	고졸	206	20.4	24.3	34.5	14.6	6.3
	대재 이상	789	25.0	23.1	36.6	11.9	3.4
종교	무교	523	22.9	25.6	34.4	13.2	3.8
	불교	147	28.6	21.1	36.7	8.2	5.4
	기독교	209	25.4	21.1	36.8	12.0	4.8
	천주교	114	19.3	20.2	43.9	14.9	1.8
	기타	7	28.6	28.6	28.6	14.3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0.0	35.0	25.0	7.5	12.5
	150만원-300만원	159	27.7	22.0	31.4	16.4	2.5
	300만원-450만원	253	20.6	24.5	37.9	12.3	4.7
	450만원-600만원	275	25.8	21.1	38.5	11.3	3.3
	600만원-750만원	138	24.6	24.6	37.0	10.1	3.6
	750만원 이상	135	22.2	23.0	37.0	14.1	3.7
장래경험 유무	있음	749	23.8	23.0	38.2	11.7	3.3
	없음	251	24.3	24.7	30.7	14.3	6.0

▼ 장사시설 설치 시 우려되는 주민갈등 2순위 주요요인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주민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	지역 이기주의	지역 주민의 이해부족	지자체 재정운영 손실
전체		1000	19.7	22.9	22.4	27.0	8.0
성별	남성	501	19.2	23.0	22.8	28.7	6.4
	여성	499	20.2	22.8	22.0	25.3	9.6
연령	20대	121	19.8	19.8	21.5	26.4	12.4
	30대	243	18.9	22.6	26.7	25.1	6.6
	40대	369	19.8	25.5	21.7	27.6	5.4
	50대 이상	267	20.2	21.0	19.9	28.1	10.9
거주 지역	동부	175	18.9	19.4	18.9	34.3	8.6
	서부	343	19.2	20.4	24.2	26.8	9.3
	남부	198	23.7	24.2	22.7	22.7	6.6
	북부	284	18.0	27.1	22.2	25.7	7.0
거주 기간	5년 미만	110	25.5	18.2	29.1	21.8	5.5
	5년-10년	166	19.9	23.5	24.7	24.7	7.2
	10년-20년	337	19.6	21.7	24.0	27.3	7.4
	20년-30년	208	18.8	22.1	18.3	30.8	10.1
	30년 이상	179	17.3	28.5	17.9	27.4	8.9
학력	중졸 이하	5	0.0	20.0	20.0	40.0	20.0
	고졸	206	21.4	23.8	20.4	27.7	6.8
	대재 이상	789	19.4	22.7	22.9	26.7	8.2
종교	무교	523	19.5	21.0	24.7	26.6	8.2
	불교	147	19.0	22.4	18.4	32.0	8.2
	기독교	209	19.6	26.3	20.6	25.4	8.1
	천주교	114	19.3	27.2	20.2	26.3	7.0
	기타	7	57.1	0.0	28.6	14.3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30.0	32.5	17.5	15.0	5.0
	150만원-300만원	159	17.6	22.0	26.4	26.4	7.5
	300만원-450만원	253	22.5	20.9	18.2	28.9	9.5
	450만원-600만원	275	17.8	25.8	23.3	24.4	8.7
	600만원-750만원	138	20.3	18.1	21.0	31.9	8.7
	750만원 이상	135	17.0	23.7	26.7	28.1	4.4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21.0	22.6	22.8	26.0	7.6
	없음	251	15.9	23.9	21.1	29.9	9.2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시장·군수의 설명 및 정보공개	상위기관의 갈등조정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후 시행	전면 중단 및 사업폐지
전체		1000	38.8	24.0	35.3	1.9
성별	남성	501	38.3	27.1	32.5	2.0
	여성	499	39.3	20.8	38.1	1.8
연령	20대	121	35.5	27.3	33.1	4.1
	30대	243	30.0	28.8	38.7	2.5
	40대	369	40.9	22.8	34.7	1.6
	50대 이상	267	45.3	19.9	34.1	0.7
거주지역	동부	175	42.3	25.1	31.4	1.1
	서부	343	39.1	23.9	35.6	1.5
	남부	198	35.4	25.3	36.9	2.5
	북부	284	38.7	22.5	36.3	2.5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40.0	20.0	37.3	2.7
	5년-10년	166	37.3	22.9	39.2	0.6
	10년-20년	337	38.9	26.1	32.9	2.1
	20년-30년	208	38.5	26.9	33.2	1.4
	30년 이상	179	39.7	20.1	37.4	2.8
학력	중졸 이하	5	20.0	0.0	80.0	0.0
	고졸	206	43.7	20.4	32.0	3.9
	대재 이상	789	37.6	25.1	35.9	1.4
종교	무교	523	38.2	23.1	36.1	2.5
	불교	147	42.2	21.1	36.1	0.7
	기독교	209	34.4	28.2	35.4	1.9
	천주교	114	45.6	22.8	30.7	0.9
	기타	7	28.6	42.9	28.6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32.5	35.0	27.5	5.0
	150만원-300만원	159	39.0	21.4	37.7	1.9
	300만원-450만원	253	38.3	26.1	34.8	0.8
	450만원-600만원	275	37.8	20.0	38.9	3.3
	600만원-750만원	138	39.1	27.5	31.9	1.4
	750만원 이상	135	43.0	24.4	31.9	0.7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40.1	24.0	34.7	1.2
	없음	251	35.1	23.9	37.1	4.0

▼ 거주하는 시 · 군에 화장시설 필요 여부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743	3.0	28.8	60.2	8.1
성별	남성	372	2.2	26.1	59.4	12.4
	여성	371	3.8	31.5	60.9	3.8
연령	20대	87	1.1	36.8	57.5	4.6
	30대	187	2.7	28.9	59.9	8.6
	40대	263	3.8	29.7	60.1	6.5
	50대 이상	206	2.9	24.3	61.7	11.2
거주지역	동부	121	2.5	27.3	66.1	4.1
	서부	343	2.9	30.6	56.6	9.9
	남부	85	0.0	22.4	69.4	8.2
	북부	194	4.6	29.4	58.8	7.2
거주기간	5년 미만	86	2.3	33.7	61.6	2.3
	5년-10년	125	4.0	30.4	60.0	5.6
	10년-20년	236	3.4	28.4	60.6	7.6
	20년-30년	148	2.7	31.8	56.1	9.5
	30년 이상	148	2.0	22.3	62.8	12.8
학력	중졸 이하	4	0.0	50.0	50.0	0.0
	고졸	170	3.5	31.8	58.2	6.5
	대재 이상	569	2.8	27.8	60.8	8.6
종교	무교	394	3.3	29.2	59.6	7.9
	불교	114	1.8	29.8	60.5	7.9
	기독교	150	2.7	33.3	56.0	8.0
	천주교	80	3.8	17.5	71.3	7.5
	기타	5	0.0	20.0	40.0	4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6.5	41.9	45.2	6.5
	150만원-300만원	123	0.8	26.8	67.5	4.9
	300만원-450만원	199	3.0	28.1	60.3	8.5
	450만원-600만원	204	3.4	30.9	57.8	7.8
	600만원-750만원	96	2.1	24.0	61.5	12.5
	750만원 이상	90	4.4	28.9	58.9	7.8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3.2	27.4	60.3	9.0
	없음	189	2.1	32.8	59.8	5.3

▼ 거주하는 읍 · 면 · 동에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찬성	반대	모르겠음
전체		743	44.8	20.2	35.0
성별	남성	372	53.0	16.1	30.9
	여성	371	36.7	24.3	39.1
연령	20대	87	37.9	20.7	41.4
	30대	187	40.6	18.7	40.6
	40대	263	46.8	21.7	31.6
	50대 이상	206	49.0	19.4	31.6
거주지역	동부	121	43.8	16.5	39.7
	서부	343	44.3	22.4	33.2
	남부	85	49.4	15.3	35.3
	북부	194	44.3	20.6	35.1
거주기간	5년 미만	86	31.4	25.6	43.0
	5년-10년	125	44.0	21.6	34.4
	10년-20년	236	44.1	20.3	35.6
	20년-30년	148	49.3	16.2	34.5
	30년 이상	148	50.0	19.6	30.4
학력	중졸 이하	4	25.0	0.0	75.0
	고졸	170	42.9	17.6	39.4
	대재 이상	569	45.5	21.1	33.4
종교	무교	394	46.4	19.0	34.5
	불교	114	43.0	14.9	42.1
	기독교	150	38.0	26.0	36.0
	천주교	80	51.3	21.3	27.5
	기타	5	60.0	4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32.3	25.8	41.9
	150만원-300만원	123	43.1	14.6	42.3
	300만원-450만원	199	41.7	21.1	37.2
	450만원-600만원	204	46.1	21.6	32.4
	600만원-750만원	96	53.1	22.9	24.0
	750만원 이상	90	46.7	17.8	35.6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48.7	19.1	32.1
	없음	189	33.3	23.3	43.4

▼ 화장시설 설치 시 운영주체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공공부문	종교단체	장사법인	공공 및 민간의 공동운영
전체		743	65.8	2.8	2.2	29.2
성별	남성	372	68.8	3.0	2.2	26.1
	여성	371	62.8	2.7	2.2	32.3
연령	20대	87	57.5	0.0	2.3	40.2
	30대	187	63.1	3.7	2.1	31.0
	40대	263	64.6	2.7	1.9	30.8
	50대 이상	206	73.3	3.4	2.4	20.9
거주지역	동부	121	63.6	1.7	1.7	33.1
	서부	343	67.6	3.2	2.6	26.5
	남부	85	56.5	4.7	1.2	37.6
	북부	194	68.0	2.1	2.1	27.8
거주기간	5년 미만	86	60.5	2.3	0.0	37.2
	5년-10년	125	63.2	4.8	1.6	30.4
	10년-20년	236	64.8	2.1	2.5	30.5
	20년-30년	148	66.9	2.7	3.4	27.0
	30년 이상	148	71.6	2.7	2.0	23.6
학력	중졸 이하	4	75.0	0.0	0.0	25.0
	고졸	170	67.6	1.8	2.4	28.2
	대재 이상	569	65.2	3.2	2.1	29.5
종교	무교	394	66.5	1.5	2.3	29.7
	불교	114	68.4	2.6	1.8	27.2
	기독교	150	66.0	4.7	1.3	28.0
	천주교	80	58.8	5.0	3.8	32.5
	기타	5	60.0	20.0	0.0	2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58.1	0.0	3.2	38.7
	150만원-300만원	123	61.0	3.3	1.6	34.1
	300만원-450만원	199	66.3	3.5	2.0	28.1
	450만원-600만원	204	65.7	2.5	2.5	29.4
	600만원-750만원	96	66.7	1.0	3.1	29.2
	750만원 이상	90	73.3	4.4	1.1	21.1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69.9	2.5	1.8	25.8
	없음	189	54.0	3.7	3.2	39.2

▼ 거주지역에 화장시설 설치 방법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다른 시·군과 공동 설치	독자적 설치	사설화장시설 설치
전체		743	74.6	21.5	3.9
성별	남성	372	74.7	21.8	3.5
	여성	371	74.4	21.3	4.3
연령	20대	87	71.3	23.0	5.7
	30대	187	79.7	17.6	2.7
	40대	263	73.8	20.9	5.3
	50대 이상	206	72.3	25.2	2.4
거주지역	동부	121	81.0	16.5	2.5
	서부	343	73.8	23.3	2.9
	남부	85	74.1	17.6	8.2
	북부	194	72.2	23.2	4.6
거주기간	5년 미만	86	79.1	17.4	3.5
	5년-10년	125	75.2	20.0	4.8
	10년-20년	236	75.8	20.3	3.8
	20년-30년	148	73.6	21.6	4.7
	30년 이상	148	70.3	27.0	2.7
학력	중졸 이하	4	50.0	50.0	0.0
	고졸	170	65.3	29.4	5.3
	대재 이상	569	77.5	19.0	3.5
종교	무교	394	72.6	21.8	5.6
	불교	114	81.6	17.5	0.9
	기독교	150	72.0	26.0	2.0
	천주교	80	80.0	18.8	1.3
	기타	5	60.0	0.0	4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51.6	35.5	12.9
	150만원-300만원	123	65.9	27.6	6.5
	300만원-450만원	199	71.4	26.1	2.5
	450만원-600만원	204	80.9	16.7	2.5
	600만원-750만원	96	81.3	16.7	2.1
	750만원 이상	90	80.0	14.4	5.6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76.9	20.6	2.5
	없음	189	67.7	24.3	7.9

▼ 화장시설 공동설치 시 예산분담 방식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인구수	전년도 예산	시민의 이용률	동일분담
전체		743	37.0	20.2	30.3	12.5
성별	남성	372	39.2	23.1	29.3	8.3
	여성	371	34.8	17.3	31.3	16.7
연령	20대	87	27.6	14.9	32.2	25.3
	30대	187	37.4	20.9	29.4	12.3
	40대	263	33.8	25.1	28.9	12.2
	50대 이상	206	44.7	15.5	32.0	7.8
거주지역	동부	121	34.7	27.3	25.6	12.4
	서부	343	38.5	19.5	29.4	12.5
	남부	85	38.8	18.8	30.6	11.8
	북부	194	35.1	17.5	34.5	12.9
거주기간	5년 미만	86	31.4	18.6	33.7	16.3
	5년-10년	125	37.6	23.2	27.2	12.0
	10년-20년	236	38.1	22.0	27.5	12.3
	20년-30년	148	39.2	14.9	29.7	16.2
	30년 이상	148	35.8	20.9	35.8	7.4
학력	중졸 이하	4	0.0	0.0	75.0	25.0
	고졸	170	34.7	20.0	31.8	13.5
	대재 이상	569	38.0	20.4	29.5	12.1
종교	무교	394	35.8	22.1	29.9	12.2
	불교	114	30.7	20.2	36.0	13.2
	기독교	150	42.0	18.0	28.0	12.0
	천주교	80	42.5	15.0	28.8	13.8
	기타	5	40.0	20.0	20.0	2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41.9	16.1	32.3	9.7
	150만원-300만원	123	31.7	17.9	29.3	21.1
	300만원-450만원	199	37.2	23.1	30.2	9.5
	450만원-600만원	204	32.8	21.6	32.4	13.2
	600만원-750만원	96	41.7	18.8	30.2	9.4
	750만원 이상	90	46.7	16.7	26.7	1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36.1	20.4	31.2	12.3
	없음	189	39.7	19.6	27.5	13.2

▼ 다른 시·군에 위치한 화장시설의 적정한 이용금액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80만원 미만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체		743	17.0	12.0	43.1	23.0	5.0	58.6
성별	남성	372	19.1	12.1	42.5	21.5	4.8	57.1
	여성	371	14.8	11.9	43.7	24.5	5.1	60.3
연령	20대	87	24.1	9.2	37.9	24.1	4.6	54.4
	30대	187	18.7	10.7	41.7	24.6	4.3	57.9
	40대	263	18.3	10.3	45.2	20.9	5.3	58.8
	50대 이상	206	10.7	16.5	43.7	23.8	5.3	61.0
거주지역	동부	121	13.2	58.7	10.7	13.2	4.1	54.9
	서부	343	18.1	43.7	10.2	22.2	5.8	62.1
	남부	85	18.8	52.9	12.9	12.9	2.4	49.5
	북부	194	16.5	46.4	16.0	16.0	5.2	57.2
거주기간	5년 미만	86	16.3	14.0	40.7	27.9	1.2	56.1
	5년-10년	125	10.4	18.4	43.2	25.6	2.4	58.8
	10년-20년	236	21.2	7.6	42.8	20.3	8.1	58.9
	20년-30년	148	14.9	11.5	42.6	25.7	5.4	63.4
	30년 이상	148	18.2	12.8	45.3	19.6	4.1	55.0
학력	중졸 이하	4	0.0	25.0	0.0	75.0	0.0	77.5
	고졸	170	15.9	15.3	42.9	21.8	4.1	56.1
	대재 이상	569	17.4	10.9	43.4	23.0	5.3	59.3
종교	무교	394	19.8	11.4	41.9	22.1	4.8	57.3
	불교	114	10.5	14.0	43.9	28.9	2.6	62.1
	기독교	150	16.0	8.7	44.0	25.3	6.0	60.6
	천주교	80	12.5	16.3	47.5	16.3	7.5	59.0
	기타	5	40.0	40.0	20.0	0.0	0.0	27.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1	35.5	12.9	32.3	16.1	3.2	44.3
	150만원-300만원	123	18.7	13.0	47.2	19.5	1.6	51.0
	300만원-450만원	199	15.6	10.6	50.3	18.6	5.0	57.7
	450만원-600만원	204	17.2	13.7	39.2	24.0	5.9	59.2
	600만원-750만원	96	13.5	9.4	41.7	28.1	7.3	67.9
	750만원 이상	90	14.4	12.2	35.6	32.2	5.6	65.4
장례경험 유무	있음	554	15.7	11.6	43.7	24.0	5.1	60.6
	없음	189	20.6	13.2	41.3	20.1	4.8	53.2

▼ 다른 시·도민이 거주지역 내 화장시설 이용시 지불금액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요금인하 필요	적정	요금인상 필요
전체		257	65.0	30.4	4.7
성별	남성	129	65.1	31.8	3.1
	여성	128	64.8	28.9	6.3
연령	20대	34	64.7	26.5	8.8
	30대	56	66.1	32.1	1.8
	40대	106	67.0	28.3	4.7
	50대 이상	61	60.7	34.4	4.9
거주지역	고양시	55	58.2	30.9	10.9
	성남시	54	64.8	35.2	0.0
	수원시	59	78.0	20.3	1.7
	용인시	54	57.4	37.0	5.6
	파주시	54	65.7	28.6	5.7
거주기간	5년 미만	35	75.0	25.0	0.0
	5년-10년	24	61.0	34.1	4.9
	10년-20년	41	66.3	28.7	5.0
	20년-30년	101	66.7	28.3	5.0
	30년 이상	60	54.8	38.7	6.5
학력	중졸 이하	31	0.0	0.0	100.0
	고졸	1	75.0	19.4	5.6
	대재 이상	36	63.6	32.3	4.1
종교	무교	220	64.3	30.2	5.4
	불교	129	69.7	27.3	3.0
	기독교	33	67.8	32.2	0.0
	천주교	59	58.8	29.4	11.8
	기타	34	50.0	5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	55.6	33.3	11.1
	150만원-300만원	9	77.8	19.4	2.8
	300만원-450만원	36	64.8	31.5	3.7
	450만원-600만원	54	60.6	36.6	2.8
	600만원-750만원	71	64.3	26.2	9.5
	750만원 이상	42	64.4	31.1	4.4
장례경험 유무	있음	45	65.6	30.3	4.1
	없음	195	62.9	30.6	6.5

▼ 경기도민과 다른 시·도민과의 사용료 차등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사용료 차등	사용료 동일	모름
전체		257	65.0	30.4	4.7
성별	남성	129	64.3	27.9	7.8
	여성	128	69.5	23.4	7.0
연령	20대	34	64.7	29.4	5.9
	30대	56	60.7	28.6	10.7
	40대	106	71.7	20.8	7.5
	50대 이상	61	65.6	29.5	4.9
거주지역	고양시	55	72.7	23.6	3.6
	성남시	54	66.7	24.1	9.3
	수원시	59	61.0	35.6	3.4
	용인시	54	64.8	24.1	11.1
	파주시	35	71.4	17.1	11.4
거주기간	5년 미만	24	62.5	16.7	20.8
	5년-10년	41	70.7	29.3	0.0
	10년-20년	101	67.3	27.7	5.0
	20년-30년	60	65.0	23.3	11.7
	30년 이상	31	67.7	25.8	6.5
학력	중졸 이하	1	100.0	0.0	0.0
	고졸	36	72.2	19.4	8.3
	대재 이상	220	65.9	26.8	7.3
종교	무교	129	65.9	25.6	8.5
	불교	33	69.7	24.2	6.1
	기독교	59	71.2	25.4	3.4
	천주교	34	64.7	23.5	11.8
	기타	2	0.0	10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55.6	44.4	0.0
	150만원-300만원	36	52.8	25.0	22.2
	300만원-450만원	54	63.0	29.6	7.4
	450만원-600만원	71	74.6	19.7	5.6
	600만원-750만원	42	57.1	35.7	7.1
	750만원 이상	45	82.2	17.8	0.0
장래경험 유무	있음	195	66.2	29.2	4.6
	없음	62	69.4	14.5	16.1

▼ 경기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전체		257	70.0	23.0	6.6	0.4
성별	남성	129	69.8	24.0	6.2	0.0
	여성	128	70.3	21.9	7.0	0.8
연령	20대	34	64.7	26.5	8.8	0.0
	30대	56	69.6	26.8	3.6	0.0
	40대	106	67.9	22.6	8.5	0.9
	50대 이상	61	77.0	18.0	4.9	0.0
거주지역	고양시	55	65.5	23.6	9.1	1.8
	성남시	54	72.2	20.4	7.4	0.0
	수원시	59	83.1	13.6	3.4	0.0
	용인시	54	70.4	25.9	3.7	0.0
	파주시	35	51.4	37.1	11.4	0.0
거주기간	5년 미만	24	79.2	16.7	4.2	0.0
	5년-10년	41	70.7	26.8	2.4	0.0
	10년-20년	101	60.4	29.7	8.9	1.0
	20년-30년	60	78.3	15.0	6.7	0.0
	30년 이상	31	77.4	16.1	6.5	0.0
학력	중졸 이하	1	0.0	100.0	0.0	0.0
	고졸	36	72.2	22.2	5.6	0.0
	대재 이상	220	70.0	22.7	6.8	0.5
종교	무교	129	78.3	17.1	3.9	0.8
	불교	33	60.6	24.2	15.2	0.0
	기독교	59	69.5	27.1	3.4	0.0
	천주교	34	50.0	35.3	14.7	0.0
	기타	2	50.0	5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9	77.8	22.2	0.0	0.0
	150만원-300만원	36	75.0	25.0	0.0	0.0
	300만원-450만원	54	66.7	24.1	9.3	0.0
	450만원-600만원	71	73.2	22.5	4.2	0.0
	600만원-750만원	42	64.3	21.4	11.9	2.4
	750만원 이상	45	68.9	22.2	8.9	0.0
장례경험 유무	있음	195	68.7	24.6	6.7	0.0
	없음	62	74.2	17.7	6.5	1.6

▼ 다른 시·도민의 도내 화장시설 이용 시 적정 사용료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전체		257	14.4	36.2	21.8	27.6
성별	남성	129	17.8	34.1	22.5	25.6
	여성	128	10.9	38.3	21.1	29.7
연령	20대	34	11.8	47.1	20.6	20.6
	30대	56	16.1	41.1	23.2	19.6
	40대	106	14.2	32.1	18.9	34.9
	50대 이상	61	14.8	32.8	26.2	26.2
거주지역	고양시	55	9.1	34.5	16.4	40.0
	성남시	54	14.8	33.3	25.9	25.9
	수원시	59	25.4	44.1	16.9	13.6
	용인시	54	13.0	37.0	20.4	29.6
	파주시	35	5.7	28.6	34.3	31.4
거주기간	5년 미만	35	12.5	37.5	25.0	25.0
	5년-10년	24	14.6	41.5	14.6	29.3
	10년-20년	41	10.9	36.6	24.8	27.7
	20년-30년	101	20.0	31.7	21.7	26.7
	30년 이상	60	16.1	35.5	19.4	29.0
학력	중졸 이하	31	0.0	100.0	0.0	0.0
	고졸	1	8.3	38.9	25.0	27.8
	대재 이상	36	15.5	35.5	21.4	27.7
종교	무교	220	17.8	38.0	17.8	26.4
	불교	129	6.1	36.4	30.3	27.3
	기독교	33	13.6	35.6	27.1	23.7
	천주교	59	8.8	29.4	20.6	41.2
	기타	34	50.0	50.0	0.0	0.0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	22.2	33.3	11.1	33.3
	150만원-300만원	9	19.4	44.4	27.8	8.3
	300만원-450만원	36	18.5	31.5	20.4	29.6
	450만원-600만원	54	9.9	39.4	25.4	25.4
	600만원-750만원	71	16.7	35.7	14.3	33.3
	750만원 이상	42	8.9	31.1	22.2	37.8
장례경험 유무	있음	45	14.9	33.8	24.1	27.2
	없음	195	12.9	43.5	14.5	29.0

▼ 2001년 1월 13일 이후 분묘 설치 유무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예	아니오	모름
전체		1000	26.5	61.1	12.4
성별	남성	501	27.1	63.5	9.4
	여성	499	25.9	58.7	15.4
연령	20대	121	19.0	56.2	24.8
	30대	243	25.9	58.8	15.2
	40대	369	26.3	64.2	9.5
	50대 이상	267	30.7	61.0	8.2
거주지역	동부	175	29.7	54.3	16.0
	서부	343	25.7	64.4	9.9
	남부	198	23.7	62.6	13.6
	북부	284	27.5	60.2	12.3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20.0	61.8	18.2
	5년-10년	166	26.5	62.7	10.8
	10년-20년	337	28.8	59.3	11.9
	20년-30년	208	26.9	61.5	11.5
	30년 이상	179	25.7	62.0	12.3
학력	중졸 이하	5	40.0	20.0	40.0
	고졸	206	24.8	60.7	14.6
	대재 이상	789	26.9	61.5	11.7
종교	무교	523	24.9	60.0	15.1
	불교	147	26.5	64.6	8.8
	기독교	209	27.3	60.3	12.4
	천주교	114	34.2	61.4	4.4
	기타	7	0.0	85.7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0.0	55.0	25.0
	150만원-300만원	159	18.2	66.0	15.7
	300만원-450만원	253	26.9	63.6	9.5
	450만원-600만원	275	28.0	56.7	15.3
	600만원-750만원	138	31.9	59.4	8.7
	750만원 이상	135	28.9	63.0	8.1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32.4	57.4	10.1
	없음	251	8.8	72.1	19.1

▼ 한시적 매장제도에 의한 분묘 이관 시 희망하는 장사시설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공설 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	공설 봉안시설	사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전체		1000	28.7	10.3	32.5	8.6	19.9
성별	남성	501	30.5	10.6	33.5	8.0	17.4
	여성	499	26.9	10.0	31.5	9.2	22.4
연령	20대	121	32.2	9.9	38.8	6.6	12.4
	30대	243	29.2	9.1	32.1	11.9	17.7
	40대	369	24.9	11.9	33.9	8.9	20.3
	50대 이상	267	31.8	9.4	28.1	6.0	24.7
거주지역	동부	175	28.6	10.3	31.4	10.3	19.4
	서부	343	30.6	9.3	35.6	5.0	19.5
	남부	198	27.8	10.6	30.3	11.6	19.7
	북부	284	27.1	11.3	31.0	9.9	20.8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26.4	11.8	30.9	15.5	15.5
	5년-10년	166	28.3	11.4	32.5	10.2	17.5
	10년-20년	337	26.7	10.4	33.8	6.5	22.6
	20년-30년	208	33.7	10.6	29.3	5.8	20.7
	30년 이상	179	28.5	7.8	34.6	10.1	19.0
학력	중졸 이하	5	0.0	20.0	20.0	0.0	60.0
	고졸	206	33.5	10.7	26.7	6.3	22.8
	대재 이상	789	27.6	10.1	34.1	9.3	18.9
종교	무교	523	27.0	11.5	34.6	7.6	19.3
	불교	147	34.7	11.6	28.6	7.5	17.7
	기독교	209	27.3	10.0	32.5	6.7	23.4
	천주교	114	33.3	4.4	28.9	14.9	18.4
	기타	7	0.0	0.0	14.3	57.1	28.6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5.0	5.0	42.5	10.0	17.5
	150만원-300만원	159	38.4	7.5	29.6	6.9	17.6
	300만원-450만원	253	25.7	11.9	33.6	9.9	19.0
	450만원-600만원	275	27.6	9.5	33.8	6.5	22.5
	600만원-750만원	138	26.8	10.1	32.6	12.3	18.1
	750만원 이상	135	28.1	14.1	28.1	8.1	21.5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27.5	10.3	32.7	9.5	20.0
	없음	251	32.3	10.4	31.9	6.0	19.5

▼ 한시적 매장제도의 매장 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인원수(명)	60년은 길다	60년은 짧다	모르겠음
전체		1000	43.1	23.4	33.5
성별	남성	501	45.7	25.9	28.3
	여성	499	40.5	20.8	38.7
연령	20대	121	24.0	30.6	45.5
	30대	243	34.2	26.7	39.1
	40대	369	43.9	23.6	32.5
	50대 이상	267	58.8	16.9	24.3
거주지역	동부	175	40.6	25.7	33.7
	서부	343	44.6	21.6	33.8
	남부	198	44.4	23.2	32.3
	북부	284	41.9	24.3	33.8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32.7	28.2	39.1
	5년-10년	166	42.2	21.1	36.7
	10년-20년	337	46.0	23.7	30.3
	20년-30년	208	48.1	24.5	27.4
	30년 이상	179	39.1	20.7	40.2
학력	중졸 이하	5	20.0	20.0	60.0
	고졸	206	42.7	20.9	36.4
	대재 이상	789	43.3	24.1	32.6
종교	무교	523	42.3	22.8	35.0
	불교	147	47.6	19.0	33.3
	기독교	209	39.7	29.2	31.1
	천주교	114	47.4	20.2	32.5
	기타	7	42.9	42.9	14.3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0.0	22.5	57.5
	150만원-300만원	159	30.2	25.2	44.7
	300만원-450만원	253	37.5	23.3	39.1
	450만원-600만원	275	52.0	19.6	28.4
	600만원-750만원	138	47.8	26.8	25.4
	750만원 이상	135	52.6	25.9	21.5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46.6	23.8	29.6
	없음	251	32.7	22.3	45.0

▼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정 매장기간

(단위 : %)

구분		인원수 (명)	~20년 미만	~40년 미만	~60년 미만	~80년 미만	~100년 미만	100년 이상~	평균 (년)
전체		1000	12.8	33.5	20	9.1	5.5	19.1	49.9
성별	남성	501	12.4	35.1	17.6	8.8	5.6	20.6	50.7
	여성	499	13.2	31.9	22.4	9.4	5.4	17.6	49.2
연령	20대	121	17.4	10.7	5.0	66.9	5.2	23.7	57.4
	30대	243	21.0	19.8	2.5	56.8	3.6	19.8	54.1
	40대	369	25.5	23.8	3.3	47.4	6.2	16.6	49.1
	50대 이상	267	26.2	29.2	4.1	40.4	5.9	20.0	44.0
거주지역	동부	175	12.6	33.1	19.4	9.1	6.3	19.4	51.0
	서부	343	11.7	35.0	21.6	9.3	4.1	18.4	49.5
	남부	198	13.6	34.3	18.7	8.1	7.1	18.2	48.6
	북부	284	13.7	31.3	19.4	9.5	5.6	20.4	49.9
거주기간	5년 미만	110	3.6	30.9	15.5	11.8	4.5	33.6	63.1
	5년-10년	166	14.5	31.3	22.9	8.4	4.2	18.7	48.1
	10년-20년	337	15.7	34.1	18.1	8.6	7.4	16.0	47.1
	20년-30년	208	11.5	33.2	23.1	11.5	4.8	15.9	48.5
	30년 이상	179	12.8	36.3	20.1	6.1	4.5	20.1	50.5
학력	중졸 이하	5	20.0	20.0	0.0	0.0	0.0	60.0	68.0
	고졸	206	15.5	35.0	19.4	9.2	5.3	15.5	46.0
	대재 이상	789	12.0	33.2	20.3	9.1	5.6	19.8	50.8
종교	무교	523	14.5	31.4	21.6	8.8	5.9	17.8	49.1
	불교	147	10.9	40.1	12.9	10.2	6.8	19.0	49.8
	기독교	209	7.2	33.0	22.5	10.5	3.8	23.0	54.0
	천주교	114	17.5	36.8	17.5	6.1	5.3	16.7	44.9
	기타	7	14.3	14.3	14.3	14.3	0.0	42.9	82.1
월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40	27.5	7.5	17.5	22.5	2.5	22.5	51.7
	150만원-300만원	159	11.3	27.0	20.1	13.2	4.4	23.9	55.1
	300만원-450만원	253	11.1	33.2	20.9	9.1	5.9	19.8	51.4
	450만원-600만원	275	9.8	38.9	24.4	6.9	5.5	14.5	46.6
	600만원-750만원	138	13.8	36.2	18.8	5.1	6.5	19.6	48.1
	750만원 이상	135	18.5	35.6	11.1	8.9	5.9	20.0	49.4
장례경험 유무	있음	749	11.5	34.8	20.7	8.7	5.3	19.0	50.3
	없음	251	16.7	29.5	17.9	10.4	6.0	19.5	48.7

첨부3. 경기도 공설묘지 목록

시군구	묘지명	위치	비고
용인시	송전공설묘지	이동면 경기동로 793	
안산시	꽃빛공원(와동공설공원묘지)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하늘공원(부곡동공설공원묘지)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안양시	청계공설묘지	의왕시 청계동 산 8-5	
	안산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445-4번지	
화성시	상신공원묘지	향남읍 상신리 산 96	
	북양공원묘지	남양읍 북양리 산 109-14	
평택시	송탄공설묘지	가재동 산 64	
	청북공설묘지	청북면 울북리 산 41	
	안중공설묘지	안중읍 학현리 산 12-1	
시흥시	시흥시정왕공설공원묘지	정왕동 산 2-1, 산 3	
김포시	양택리공설묘지	하성면 양택리 산 109-6, -7, -8	
	초원지리공설묘지	대곶면 초원지리 산 14, 산 15, 산 19	
	포내리공설묘지	월곶면 포내리 산 36	
광명시	광명시 공설묘지	광명동 산 127번지	
	광명시 공설묘지	노온사동 산 100번지	
	광명시 공설묘지	일직동 345-4	
	광명시 공설묘지	소하동 988-7	
	광명시 공설묘지	하안동 314-14번지 외 2필지	
	광명시 공설묘지	가학동 707-2	
광주시	문형공설묘지	오포읍 문형리 산 65	
	신월공설묘지	초월읍 신월리 산 68	
오산시	오산시 공설공원묘지	가장동 산 72-2	
이천시	이천시 백사 공설공원묘지	백사면 조읍리 산 99-1	
	이천시 장호원 공설공원묘지	장호원읍 방추리 산 64-7	
	이천시 대월면 공설공원묘지	대월면 초지리 산 107	
	이천시 설성 공설공원묘지	설성면 수산리 산 64	
안성시	사곡동 공설묘지	사곡동 241-11	
	금광 공설묘지	금광면 금광리 산 29	
의왕시	이동 공설묘지	이동 산 58	
	오전동 공설묘지	오전동 산 2	
	학의동 공설묘지	학의동 산 14	

시군구	묘지명	위치	비고
여주시	점봉동 공원묘지	점봉동 산 11-3	
	처리 공원묘지	점동면 처리 735-2	
	현수리 공원묘지	점동면 현수리 164-2	
	광대리 공원묘지	능서면 광대리 198-18	
	하다리 공원묘지	흥천면 하다리 78-3	
양평군	양평 공설공원묘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59-2	
고양시	내유동 공설묘지	덕양구 내유동 산 82	
	성석동 공설묘지	일산동구 성석동 973-23	
남양주시	화도 공설묘지	화도읍 묵현리 산 151	
	수동 공설묘지	수동면 운수리 400-1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설묘지	광적면 석우리 산 19	
파주시	월롱 공설묘지	월롱면 덕은리 169-3	
	탄현 공설묘지	탄현면 금승리 산22	
	파평 공설묘지	파평면 울곡리 산 5-3	
	통일촌 공설묘지	군내면 백연리 산 23	
구리시	구리시 공설묘지	산마루로 174-21(사노동)	
양주시	방성리 공설묘지	백석읍 방성리 산 41	
	복지리 공설묘지	백석읍 복지리 산 21 외 1	
	용암리 공설묘지	은현면 용암리 산 65-1	
	선암리 공설묘지	은현면 선암리 산 66-1 외 2	
	하패리 공설묘지	은현면 하패리 산 77	
	도하리 공설묘지	은현면 도하리 산 47	
	두곡리 공설묘지	남면 두곡리 산 44	
	상수리 공설묘지	남면 상수리 산 21 외 3	
	입암리 공설묘지	남면 입암리 산 8	
	한산리 공설묘지	남면 한산리 산 220	
	황방리 공설묘지	남면 황방리 산 8 외 1	
	신산리 공설묘지	남면 신산리 산 13	
	신암리 공설묘지	남면 신암리 산 69	
	구암리 공설묘지	남면 구암리 산 16	
	가납리 공설묘지	광적면 가납리 산 14	
	광석리 공설묘지	광적면 광석리 산 1	
	우고리 공설묘지	광적면 우고리 산 1	
	덕도리 공설묘지	광적면 덕도리 산 37	

시군구	묘지명	위치	비고
양주시	석우리 공설묘지	광적면 석우리 산 27	
	비암리 공설묘지	광적면 비암리 산 18외1	
	삼상리 공설묘지	장흥면 삼상리 산 34-1	
	삼하리 공설묘지	장흥면 삼하리 산 35	
	유양동 공설묘지	유양동 산 99	
	어둔동 공설묘지	어둔동 산 102	
	마전동 공설묘지	마전동 산 3	
	광사동 공설묘지	광사동 산 137-1	
	삼송동 공설묘지	삼송동 산 84-1 외 2	
	봉양동 공설묘지	봉양동 산 87	
	회정동 공설묘지	회정동 산 13	
포천시	소흘읍 제2공설묘지	소흘읍 무림리 산 41	
	소흘읍 제3공설묘지	소흘읍 고모리 산 99	
	군내면 제1공설묘지	군내면 구읍리 산2-1	
	군내면 제2공설묘지	군내면 구읍리 산 20-1	
	군내면 제3공설묘지	군내면 구읍리 산 20-1	
	내촌면 제2공설묘지	내촌면 진목리 산 292	
	내촌면 제3공설묘지	내촌면 마명리 산 38	
	내촌면 제4공설묘지	내촌면 신평리 산 167	
	가산면 제1공설묘지	가산면 감암리 산 12	
	가산면 제2공설묘지	가산면 가산리 산 72	
	가산면 제3공설묘지	가산면 금현리 740	
	가산면 제4공설묘지	가산면 우금리 산 6-1	
	신북면 제1공설묘지	신북면 가채리 산 3	
	신북면 제2공설묘지	신북면 갈월리 산 222	
	신북면 제3공설묘지	신북면 삼성당리 산 83	
	신북면 제4공설묘지	신북면 고일리 산 83	
	신북면 제5공설묘지	신북면 삼정리 산 181	
	신북면 제6공설묘지	신북면 삼정리 산 179	
	창수면 제1공설묘지	창수면 추동리 산 128	
	창수면 제2공설묘지	창수면 주원리 산 128	
	창수면 제3공설묘지	창수면 가양리 산 208	
	영중면 제1공설묘지	영중면 금주리 산 180	
	영중면 제2공설묘지	영중면 거사리 산 151	

시군구	묘지명	위치	비고
포천시	일동면 공설묘지	일동면 사직리 산 141	
	영북면 제1공설묘지	영북면 운천리 산 25	
	영북면 제2공설묘지	영북면 자일리 산 7	
	관인면 제1공설묘지	관인면 사정리 산 11	
	관인면 제2공설묘지	관인면 냉정리 산 149-1	
	화현면 공설묘지	화현면 지현리 산 24	
	선단동 공설묘지	동교동 산 32	
동두천시	안흥동 공설묘지	안흥동 산 62	
가평군	가평읍 공설묘지	가평읍 상색리 산 64-4	
	설악면 공설묘지	설악면 선촌리 산 50	
	청평면 공설묘지	가평읍 상색리 산 64-3	
	상면 공설묘지	상면 연하리 산 88-6	
	하면 공설묘지	조종면 현리 산 5-12	
	북면 공설묘지	북면 제령리 산 78-2	
연천군	연천읍 공설묘지	연천읍 현가리 산 16-1	
	전곡읍 공설묘지	전곡읍 고능리 산 21-2	
	군남면 공설묘지	군남면 선곡리 산 193	
	답곡리 공설묘지	신서면 답곡리 산 269	
	신서면 공설묘지	신서면 도신리 산 37-1	

첨부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소개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사정보제공 및 통합화장예약 등을 운영하고 있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안내
 - 홈페이지 : <http://www.ehaneul.go.kr>
 - 장사지원센터 : 1577-4129
- 화장예약 단일화
 - 화장예약 창구를 e하늘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유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예약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시설의 가동 효율성을 향상시킴.
- 장사시설 현황 및 용품·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
 - 장사시설 설치·조성 현황 및 용품·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조회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례 및 장사행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유가족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절차 및 문상절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매장·화장 등 장사방법 및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함.
- 사망정보 제공을 통한 국고 누수 방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가장 빠른 사망정보 취득 및 제공 시스템으로 조기 취득한 사망정보를 각종 연금 및 급여 지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급업무의 내실화와 국고누수의 원천적 차단에 기여하고 있음.

연구진

- 연구책임 송원명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실장)
- 공동연구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노근철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위원)